

발간등록번호

11-1371000-000335-01

전국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및 운영활성화 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제 출 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귀하

“전국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및 운영활성화 방안 연구”에 관하여
귀 기관과 체결한 연구용역 계약에 의하여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011년 8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정 갑 영

제1장 서론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3
1.1 연구 배경	3
1.2 연구 목적	8
2. 연구 범위 및 방법	9
2.1 연구 범위	9
2.2 연구 방법	10
3. 연구의 기대효과	13
 제2장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기반	17
1. 법적 기반	19
1.1 도서관법의 작은도서관 규정	19
1.2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설치기준 관련 법	23
1.3 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	30
1.3.1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 분석	30
1.3.2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 분석	42
1.4 작은도서관 관련 행정체계	57
1.4.1 공공도서관 행정체계의 현황	57
1.4.2 작은도서관 행정체계의 다원화	62
1.4.3 작은도서관 관련 행정부서 분석	63
2. 통계적 기반	71
2.1 작은도서관 통계조사의 내용 분석	71
2.2 작은도서관 운영 평가 지표	78
3. 작은도서관 네트워크	83
3.1 국내 작은도서관 운영 사례	83
3.2 해외 작은도서관 운영 사례	92
3.3 작은도서관과 기업의 협력	101

제3장 전국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 조사 105

1. 조사개요	107
1.1. 작은도서관 통계관리와 실태조사	107
1.2. 2011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과정	109
1.2.1. 조사 1단계	109
1.2.2. 조사 2단계	111
1.2.3. 조사 3단계	114
1.2.4. 조사 4단계	117
2. 분석결과	118
2.1 전국 작은도서관 실태 파악	118
2.2 작은도서관 기초 통계	121
2.2.1 기본 정보	121
2.2.2 소장자료	126
2.2.3 시설 및 설비	129
2.2.4 인적자원	134
2.2.5 예산 현황	137
2.2.6 이용 및 이용자	138
2.2.7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연계	141
2.2.8 정보서비스	144
3. 시사점	145

제4장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수요조사 149

1. 조사개요	151
2. 분석결과	159
2.1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운영자 대상 설문조사 분석	159
2.1.1 작은도서관 설치 현황	159
2.1.2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	161
2.1.3 작은도서관 운영자 현황	163
2.1.4 작은도서관 시설 현황	166
2.2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주민 대상 설문조사 분석	174

2.2.1 공동주택단지 내 설치된 공공시설 이용 현황	174
2.2.2 작은도서관 이용에 대한 욕구-비경험자	182
2.2.3 작은도서관 이용 현황 - 경험자	190
3. 시사점	196

제5장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201

1. 기본 방향	203
2. 활성화 방안	206
2.1 제도적 기반 정비	206
2.1.1 관련 법조항 정비	206
2.1.2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212
2.1.3 행정기구의 정비	219
2.2 통계적 기반 구축	223
2.2.1 통계지표 개선	223
2.2.2 통계 관리시스템 보완	229
2.2.3 기타 통계조사 효율화 방안	232
2.3 행정기관 역할의 체계화	233
2.3.1 중앙정부의 역할	233
2.3.2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238
2.4 작은도서관 연계망 구축	243
2.4.1 작은도서관 컨소시엄 구성	243
2.4.2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컨소시엄 협력	246
2.4.3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연계망 구축	250
2.5 사회적 기업의 참여	262
2.5.1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기업의 활용 방안	262
2.5.2 사회적 기업의 참여방식	264
2.5.3 사회적 기업 활동에 대한 지원	267
2.6 지역협의회의 구성	270
2.6.1 지역협의회의 구성	270
2.6.2 시민단체의 참여	272
2.7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운영 현실화	273

3. 주요 정책과제	275
참고문헌	277
부록	281
[부록 1] 2011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설문지	283
[부록 2]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수요조사 설문지	288
[부록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 비교	300
[부록 4] 전국 작은도서관 현황 일람표	316

〈표 1〉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설치 기준	20
〈표 2〉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사서직원 배치 기준	21
〈표 3〉 광역지방자치단체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의 구성	31
〈표 4〉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 제정 시기	32
〈표 5〉 광역지방자치단체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조례 제정시기 비교	33
〈표 6〉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	43
〈표 7〉 기초지방자치단체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의 구성	46
〈표 8〉 기초지방자치단체(단체장)의 책무	49
〈표 9〉 지방자치단체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 분석	53
〈표 10〉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공공도서관 행정체계 현황	58
〈표 11〉 기존의 공공도서관 행정체계 개선대안의 비교	61
〈표 12〉 광역지방자치단체 작은도서관 행정부서의 형태	64
〈표 13〉 기초지방자치단체 작은도서관 행정부서의 형태	65
〈표 14〉 관청 직속부서 형태의 행정부서	66
〈표 15〉 소속행정기관 형태의 행정부서	69
〈표 16〉 하부행정기관 형태의 행정부서	70
〈표 17〉 국가도서관통계의 작은도서관 통계 지표와 항목	72
〈표 18〉 작은도서관 관련 통계조사 항목 비교	77
〈표 19〉 기존의 작은도서관 운영 평가 지표	78
〈표 20〉 기존의 작은도서관 운영 평가지표의 항목 비교	80
〈표 21〉 작은도서관 운영 유형	83
〈표 22〉 순천시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운영시스템	85
〈표 23〉 부천시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운영시스템	87
〈표 24〉 창원시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운영시스템	89
〈표 25〉 미국의 도서관 수 및 주당 서비스 시간: 25,000명 미만 지역	93
〈표 26〉 조사 1단계에서 확인한 전국 작은도서관의 수	110
〈표 27〉 전국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내용(조사 3단계)	115
〈표 28〉 전국 작은도서관 실태 : 광역지방자치단체 운영 현황	119
〈표 29〉 전국 작은도서관 실태 : 공립·사립 작은도서관 분포 현황	120

〈표 30〉 전국 작은도서관 실태 : 작은도서관 특성	122
〈표 31〉 전국 작은도서관 실태 : 운영개월 및 운영요일	123
〈표 32〉 전국 작은도서관 실태 : 일주일 중 운영일 수	123
〈표 33〉 전국 작은도서관 실태 : 운영시간	124
〈표 34〉 전국 작은도서관 실태 : 운영기간	125
〈표 35〉 전국 작은도서관 실태 : 현재 총도서 현황	127
〈표 36〉 전국 작은도서관 실태 : 전용면적	129
〈표 37〉 전국 작은도서관 실태 : 열람석	131
〈표 38〉 전국 작은도서관 실태 : 설립기준 충족 여부	132
〈표 39〉 전국 작은도서관 실태 : 인터넷 가능 컴퓨터 보유	133
〈표 40〉 전국 작은도서관 실태 : 인력 수	134
〈표 41〉 전국 작은도서관 실태 : 사서자격증 유무	135
〈표 42〉 전국 작은도서관 실태 : 교육 경험 유무	136
〈표 43〉 전국 작은도서관 실태 : 수입원 및 예산지출내역	137
〈표 44〉 전국 작은도서관 실태: 외부대출 가능 여부	138
〈표 45〉 전국 작은도서관 실태 : 대출도서 관리방법	138
〈표 46〉 전국 작은도서관 실태 : 상호정보협력망 구축여부	139
〈표 47〉 전국 작은도서관 실태 : 이용자 관련	140
〈표 48〉 전국 작은도서관 실태 : 상호대차 서비스 유무	141
〈표 49〉 전국 작은도서관 실태 : 순회사서 유무	141
〈표 50〉 전국 작은도서관 실태 : 지자체 및 공공도서관 지원 유무	142
〈표 51〉 전국 작은도서관 실태 : 지자체 및 공공도서관 지원 내용	142
〈표 52〉 전국 작은도서관 실태 : 독서문화 프로그램 실시 여부	143
〈표 53〉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수요조사의 표본 배분 : 권역 및 세대별	152
〈표 54〉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개요	154
〈표 55〉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운영자 설문 조사내용	155
〈표 56〉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주민 설문 조사내용	156
〈표 57〉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수요조사 자료분석 방법 : 설문 유형별 응답자 특성 구성	158
〈표 58〉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설치 여부	160
〈표 59〉 공동주택단 내 작은도서관 전용 면적 현황	169
〈표 60〉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열람석 현황	170
〈표 61〉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자료보유 현황	1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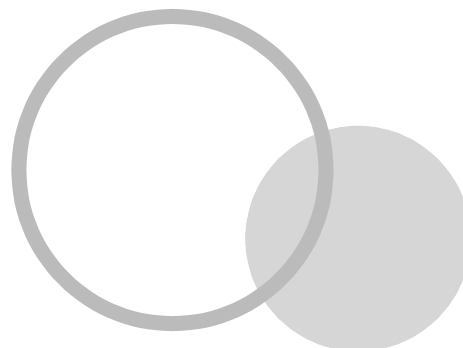
〈표 62〉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시설관련 조례 부합 여부	173
〈표 63〉 공동주택단지 내 공공시설 이용 경험 : 작은도서관	175
〈표 64〉 공동주택단지 내 공공시설 이용 만족도 : 작은도서관	177
〈표 65〉 공동주택단지 내 가장 많이 이용한 공공시설(1순위, 2010년)	179
〈표 66〉 공동주택단지 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공공시설	181
〈표 67〉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이용 경험이 없는 이유	183
〈표 68〉 향후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이용 의향	185
〈표 69〉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필요도	187
〈표 70〉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이 필요한 이유	189
〈표 71〉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이용 목적	191
〈표 73〉 시설기준에 따른 해당 도서관 수	209
〈표 74〉 작은도서관의 인력기준 보완 방안	210
〈표 75〉 새로운 통계지표의 항목 선정 과정	224
〈표 76〉 부천시 작은도서관 현황	250
〈표 77〉 순천시 작은도서관 현황	254
〈표 78〉 김해시 작은도서관 현황	258
〈표 79〉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	275

[그림 1] 연구수행방법	12
[그림 2] 공공도서관의 이원화된 행정체계	57
[그림 3] 작은도서관 및 새마을문고 정책·행정 체계의 비교	63
[그림 4] 국가 도서관 정보시스템의 조사항목 및 조사결과	73
[그림 5] 전국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2단계 과정	112
[그림 6] 전국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3단계 과정	116
[그림 7] 전국 작은도서관 실태 : 2010년 도서 증가 현황	128
[그림 8] 전국 작은도서관 실태 : 기준별 미달 현황	132
[그림 9] 전국 작은도서관 실태 : 사용대상별 컴퓨터 보유 현황	133
[그림 10] 전국 작은도서관 실태 : 도서관 관리 프로그램 현황	144
[그림 11]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수요조사 진행절차	153
[그림 12]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수요조사 자료처리방법	157
[그림 13]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설치 여부	159
[그림 14]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미설치 이유	161
[그림 15]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운영여부	161
[그림 16]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의 미운영 이유	162
[그림 17]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운영자 여부	163
[그림 18]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운영자 사서자격증 유무	164
[그림 19]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운영자의 주 소속	165
[그림 20]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의 지자체 등록 여부	166
[그림 21]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의 지자체 미등록 이유	167
[그림 22]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전용 면적 현황	168
[그림 23]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열람석 현황	170
[그림 24]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자료보유 현황	171
[그림 25]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시설 관련 조례 부합 여부	173
[그림 26] 공동주택단지 내 공공시설 이용 경험	174
[그림 27] 공동주택단지 내 공공시설 이용 만족도	176
[그림 28] 공동주택단지 내 가장 많이 이용한 공공시설(2010년)	178
[그림 29] 공동주택단지 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공공시설	180

[그림 30]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이용 경험이 없는 이유	182
[그림 31] 향후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이용 의향	184
[그림 32]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필요도	186
[그림 33]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이 필요한 이유	188
[그림 34]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이용 목적(복수응답)	190
[그림 35]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운영 및 환경 관련 만족도	192
[그림 36]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이용시 가장 중요한 항목	193
[그림 37]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필요도	194
[그림 38]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이 필요한 이유	195
[그림 39]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기본 방향	203
[그림 40] 경기도 작은도서관 담당 행정체계	221
[그림 41] 경상남도 김해시 작은도서관 행정체계	222
[그림 42] 2011 작은도서관 실태조사의 온라인조사 방식 사례	230
[그림 43] 작은도서관 통계조사 과정 제안	231
[그림 44] 중앙정부와 작은도서관의 연계(안)	238
[그림 45] 지방자치단체와 작은도서관 연계(안)	242
[그림 46]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컨소시엄’ 협력 모델 제안	246
[그림 47] 공공도서관의 ‘작은도서관 컨소시엄’ 컨설팅 지원 안	247
[그림 48] 부천시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협력 특징	251
[그림 49] 부천시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협력 개선 모델 제안	253
[그림 50] 부천시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협력 개선 모델 적용 사례	253
[그림 51] 순천시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협력 특징	255
[그림 52] 순천시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협력 개선 모델 제안	256
[그림 53] 순천시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협력 개선 모델 적용 사례	257
[그림 54] 김해시 통합도서관시스템 구축과 제공서비스	259
[그림 55] 김해시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협력 특징	259
[그림 56] 김해시 공립 작은도서관과 사립 작은도서관 협력 개선 모델 제안	261
[그림 57] 김해시 공립 작은도서관과 사립 작은도서관 협력 개선 모델 적용 사례	261
[그림 58] 부천시 작은도서관 협의회의 시행사업	271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3. 연구의 기대효과



1. 연구 배경 및 목적

1.1 연구 배경

□ 국내·외 작은도서관의 역할 증대

- 공공도서관 서비스를 보충하는 주민밀착형 생활문화공간으로서 작은도서관의 역할 증대
 - 지식정보화의 진행으로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의 소장 중심에서 평생교육과 지역공동체 문화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며, 시민중심의 지식정보화를 위한 핵심기관으로 부상하고 있음.
 - 작은도서관은 거리상의 접근성을 높이고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대행함과 동시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그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거리상의 이점을 이용하여 도서관으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주민의 자발적 참여 공간, 마을 단위의 지역 공동체 문화 형성의 장으로서 사랑방 역할을 함.
 - 농산어촌 및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 등으로 정보소외 계층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의 제공의 기회를 넓힘.
 - 정보의 획득 및 이용에 있어 취약한 지역의 경우, 작은도서관은 지역 속에서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도서관으로 건전한 지역문화 건설과 주민 개개인들에게 자기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 작은도서관의 기능을 강화하는 해외 공공도서관의 사례 증가
 - 싱가포르, 유럽연합, 영국, 일본 등에서는 지식정보 활동과 창의성 배양, 평생학습의 토대로서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음.
 - 싱가포르에서는 우리나라의 작은도서관과 유사한 니치(틈새) 도서관을 운영하며, 청소년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도서관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도서관을 독서와 놀이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고 책에서 보고 배운 내용을 직접 연습하고 적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친밀감과 기능을 강화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도서관으로서의 기본적인 기능 뿐 아니라 지역사회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로써 분관형태의 도서관과 이동도서관이 활성화되어 지역주민들에게 밀착된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함.
- 아울러 런던이나 뉴욕 등 선진 글로벌 도시에서는 지역사회 공동체를 위한 지식정보 활동을 지원하고, 다양한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화의 중심지로 공공도서관의 기능이 강조되고 있음.

□ 작은도서관 발전을 위한 정부의 관심과 노력 지속

● 작은도서관에 대한 정부의 관심

- 정부는 2004년 [문화비전 21; 창의한국]을 통하여 작은도서관 확충운동을 제시하였음.
- 2006년에는 국립중앙도서관 내 작은도서관 활성화사업을 전담할 별도의 “작은도서관 진흥팀”이 신설되었음.
- 21세기 선진 지식강국 도약을 위한 장기지속발전과제(20개년)로서 “작은도서관 진흥팀”의 주도하에 진행되었으며, 그동안 많은 작은도서관의 확충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어 왔음.

● 작은도서관 시설 확충을 위한 정부의 노력

- 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2011년 기준 전국의 작은도서관은 3,719개가 운영 중에 있음.(자료 : 2011년 도서관 및 독서정책 대국민 업무보고, 문화체육관광부).
- 2011년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작은도서관 114개관을 증설할 예정이며,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의 상호 정보 협력망을 구축할 예정임(자료: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11년도 시행계획 추진경과,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 작은도서관의 운영상 어려움 발견

● 작은도서관의 현황

-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에 게재되어 있는 2008년 작은도서관(문고)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작은도서관 중 공립은 30.9%, 사립은 69.1%로 나타남.
- 국가도서관통계에 등록되어 있는 작은도서관을 보면 사립 작은도서관의 비율이 공립

작은도서관보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사립 작은도서관의 경우, 통계입력에 대한 정보 부족과 입력 시스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곳도 많을 것으로 예상됨.

● 작은도서관 운영상의 어려움

-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공립 작은도서관을 제외한 대다수의 작은도서관은 시설 설비 및 운영상태가 열악한 실정임.
- 작은도서관의 열악한 재정상황은 신간도서의 부족, 전문 인력의 부재로 이어져 작은도서관이 도서관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함.

● 도서 순환 및 전문 인력 수급의 어려움

- 도서보급시스템의 부족, 전문 인력 수급의 부족으로 인해 운영상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공공도서관과 연계되어 있는 작은도서관의 경우 상호대차서비스의 실시로 도서 순환에 대한 어려움이 비교적 적은 편이지만 사립 작은도서관의 경우 인력지원이나 장서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자체적인 수급에 어려움이 있음.
- 도서관 운영의 기본요소가 되는 인력과 장서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 및 수급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 정부지원사업으로 시작된 순회사서지원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완하여 작은도서관의 인력문제 해결책으로써 방안 제시가 필요함.

● 작은도서관 행정체계의 부정립

-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행정·재정적 지원 및 체계의 정립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임.
- 지방자치단체 행정부서의 역할 부정립(不定立) 및 담당자의 부재로 인해 행정적 지원 및 시스템 정립에 어려움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 내 작은도서관의 행정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및 업무의 모호함으로 작은도서관의 행정관리 및 처리에 어려움이 있음.

□ 작은도서관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 미흡

● 도서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전면적인 실태조사의 필요성

- 2006년을 기점으로 작은도서관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 되고 있으며, 현재까지의 작은도서관에 대한 연구는 설립 및 개념에 대한 연구와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및 공공도서관의 협력 방안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룸.
- 도서관법시행령에 따라 문고의 기준을 이어받은 작은도서관의 근거 법률에 의해 발생된 공립과 사립의 작은도서관의 난립으로 정확한 실태파악이 미흡한 상태임.
- 현재 전국에 산재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의 실제적인 규모와 환경을 정확하게 짚어 낼 수 있는 체계적인 실태조사 및 현황 파악이 필요함.

● 통계 산출을 위한 작은도서관 통계조사 지표 개선안 마련의 필요성

- 현재의 부실한 작은도서관 통계조사 방식을 개선하여 향후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의 작은도서관 분야 통계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통계조사 개선방안이 도출되어야 함.
- 현재 공공도서관의 통계조사 자료에 준해서 작은도서관의 통계자료가 산출되고 있으나, 현재 작은도서관의 운영 상태에서 불필요하거나 전문적인 통계자료를 요구하는 것으로 파악됨.

●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설치 의무화에 따른 관리감독 및 정확한 실태파악의 필요성

- 주택법 제21조 제1항, 주택법 시행령 제22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 제5항, 도서관법시행령 별표1,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661호에 따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 작은도서관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음.
- 설치의 의무화에도 불구하고 노인정, 보육시설 등 공동주택단지 내 타 시설과는 달리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은 미흡한 실정이며, 다른 용도로 전환되거나 축소되는 경우도 빈발함.
-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미설치 사유 및 운영의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원인을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함.

□ 작은도서관의 실효성 있는 활성화 방안 마련 시급

● 전국의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기업의 노력

- 2004년 이후 매년 50여개소의 작은도서관 건립 및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등 활성화를 위한 기업 및 정부의 지원이 있었지만 인프라 지원 사업 정도에 그침.
-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MBC 등의 민간기업이 참여한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 캠페인

등을 통해 대기업의 사회적 공헌 형태로 작은도서관 건립과 도서 기부 등의 작은도서관 양적 증가에 기여하고 있으나 설립 후의 운영에는 참여하고 있지 않아 운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운영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작은도서관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운영상의 어려움은 작은도서관 본연의 목적이 퇴색되어 설립 취지와 다르게 공간이 활용되고 있는 실정으로 정확한 용도로의 활용을 위한 방안이 필요함.

● 정부의 지원과 기업의 참여로 운영상의 활성화 필요

- 기존의 시설에 대한 법적기준 뿐만 아니라 작은도서관의 운영상 규제와 정부의 개입을 기반으로 기업이 참여하는 형태의 작은도서관의 모델을 제시해 줌으로써 점차적인 기업 참여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도모함.
- 기업이 사회적 공헌 형태의 참여에서 나아가 직접 작은도서관의 운영을 담당하고 그 안에서의 수익구조와 수익 분배의 역할을 담당하여 새로운 인력 창출과 재투자의 형태를 갖춘 사회적 기업으로의 작은도서관 운영 참여를 도모함.
- 기업의 일방적인 공헌이 아닌 사회적 기업의 형태로 기업의 수익률과 재투자율의 비율을 맞춘 고용인과 근로자가 공생하는 이상적인 기업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궁극적으로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함.

● 작은도서관 관련 법 재정비의 필요성

- 체계적인 틀이 미비한 상황에서 양적인 성장을 위한 작은도서관 설립에만 치중한 결과, 실제 작은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 부족한 상태임.
- 작은도서관을 위한 실효성 있는 근거법을 바탕으로 시설, 전문 인력 배치, 운영 등의 체계적인 틀의 제공이 필요함.
- 근거법의 재정비를 통하여 난립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의 설립을 규제하고 양적인 증가가 아닌 작은도서관의 기능과 용도에 맞는 시설과 서비스로 질적인 향상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음.

1.2 연구 목적

- 작은도서관의 체계적인 실태조사 및 현황파악을 통해 도서관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 전국에 산재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의 운영관련 실태 파악을 통해 정확한 통계자료를 구축하고자 함.
 - 향후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의 작은도서관 분야 통계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통계수집 과정에서 수집 방법이나 분석 항목을 체계화하여 향후 지속적인 통계조사가 가능하도록 통계조사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비교분석 가능한 데이터를 수치화하여 전국 작은도서관의 현황을 파악하고 통계자료로 분석 가능한 문제점들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작은도서관을 활성화시켜 양질의 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선방안 도출
 - 생활권내 작은도서관의 기반을 통해 실질적인 양질의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거시적인 정책 방향과 체계에 기반을 둔 종합적인 차원의 작은도서관 지원 정책 및 사업의 수행은 미흡한 실정이며, 이에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고자 함.
 - 민간 참여, 공공도서관의 네트워크 등 정책현장에 실제 접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 정책 틀을 전환할 수 있는 다각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
-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실용성 있는 정책 수립
 -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작은도서관의 분관시스템 구축방안, 선진형 모형 및 프로그램 개발연구, 조성평가, 운영매뉴얼 등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을 통하여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 있으나 현장에 적용시키기에 다소 미흡한 상황임.
 - 지역의 대표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과의 연계방안, 사회적기업의 지속적인 참여 형식, 지역협의회 구성과 시민단체의 참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연계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작은도서관 실태 전반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현장에 적용 가능한 정책수립을 통한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목적이 있음.

2. 연구 범위 및 방법

2.1 연구 범위

□ 공간적 범위

- 전국 작은도서관
 - 전국 230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작은도서관(공립 및 사립 포함)
-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연구에서 검토되어야함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2006년 1월 9일 개정)단지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작은도서관

□ 시간적 범위

- 기준 년도
 - 2010년~2011년
 - ▶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 분석은 2011년 4월 기준으로 분석
 - ▶ 전국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및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실태조사는 2010년 운영 현황을 기준으로 조사

● 과업 기간

- 2010년 12월 17일 ~ 2011년 8월 14일

□ 내용적 범위

- 전국의 작은도서관 현황 및 운영실태 파악
-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운영현황 및 주민들의 수요 파악

-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안
 - 제도적 기반 정비(법, 조례, 행정기구 정비)
 - 통계적 기반 구축(통계지표, 통계시스템 보완)
 - 행정기관 역할의 체계화(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도서관 등 역할 체계 규명)
 - 연계망 구축(공공도서관 연계, 사회적 기업 참여, 협의회, 시민단체 참여 등)
 -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운영 개선

2.2 연구 방법

□ 자료조사

- 목적 : 전국 작은도서관 운영상의 문제점 분석 및 활성화 방안의 기본방향 설정
- 내용
 - 법적기반 : 「도서관법」,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기타 관련 법률내용
 - 지자체의 조례 :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 자료,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탑재된 자치법규 내용
 - 통계적 기반 : 작은도서관 실태분석에 대한 선행자료, 통계자료(도서관통계시스템, 한국도서관통계, 시도별 새마을문고현황 통계 등)

□ 사례조사

- 목적 : 국내외 작은도서관의 활성화 사례 조사를 통한 협력네트워크 제안
- 내용
 - 작은도서관 협력 네트워크 사례 : 국내 사례의 경우 작은도서관 협력유형별로 사례 제시, 해외 사례의 경우 미국, 영국, 일본, 덴마크 등의 공공도서관 분관체계와 작은도서관 협력 네트워크 사례 제시
 - 기업협력 사례 : 국내 기업의 작은도서관 지원활동 및 사회적 기업 참여 형태 소개
 - 지자체별 연계모델 사례 : 공공도서관과 공립 및 사립 도서관의 연계 활성화된 지자체

의 사례 소개를 통해 새로운 협력망 제안

□ 전국 작은도서관 실태 조사

- 목적 : 2010년 현재 전국에 설치·운영된 작은도서관의 실태조사를 통해 운영상의 문제점 분석
- 내용
 - 전국 230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작은도서관 대상 현황 및 운영실태 조사
 - 작은도서관 대상 통계조사를 위한 통계지표 제안
 - 통계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분석을 기초로 개선안 마련

□ 공동주택 단지 내 작은도서관 주민 대상 설문조사

- 목적 : 2006년 이후 준공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내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현황과 주민들의 만족도 및 수요 파악
- 내용
 - 전국의 160개 표본단지 선정, 공동주택단지별 5명씩 총 800명 주민과 작은도서관 운영자 160명 대상 설문조사
 -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현황, 작은도서관 이용현황, 이용에 대한 욕구 및 만족도 등 조사
 - 수요 조사 결과를 통한 시사점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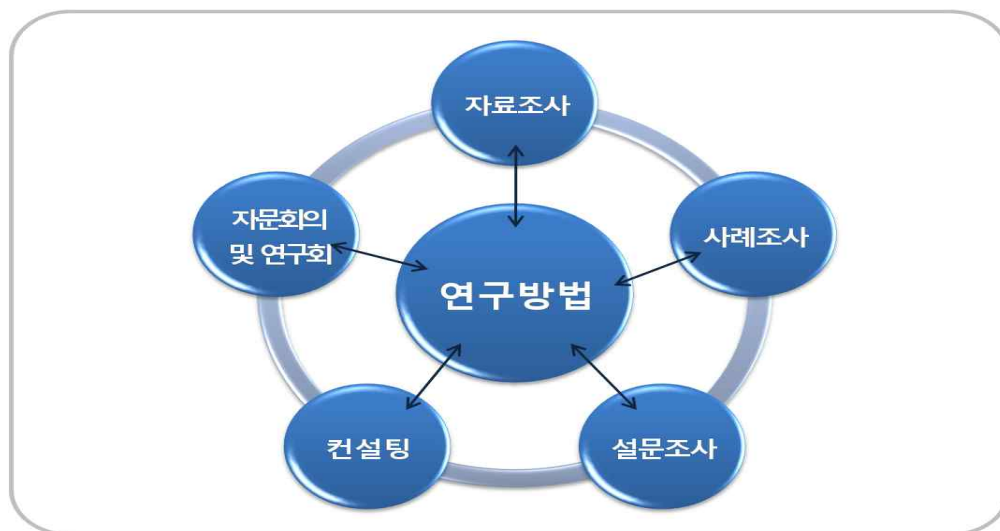
□ 컨설팅 진행

- 목적 :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대상으로 작은도서관 통계관리 및 운영활성화를 위한 방안 설명 및 관련 업무에 대한 소통
- 내용
 - 전국 작은도서관 실태를 포괄하는 통계자료 산출 방식 개선방안 설명

-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활성화 추진 방향 제시
- 전국 작은도서관 실태조사를 위한 협조 요청
- 관련 업무에 대한 담당자들의 소통과 공감대 형성

□ 자문회의 및 연구회

- 목적 : 작은도서관 통계조사 및 운영활성화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자문회의 및 연구회를 통한 협의
- 내용
 - 전국 작은도서관 실태조사를 위한 접근방법과 통계지표, 공동주택 단지 내 작은도서관 수요조사를 위한 표집과정 및 조사내용, 작은도서관 운영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수렴 및 관련 연구자의 연구 협의 진행



[그림 1] 연구수행방법

3. 연구의 기대효과

□ 전국 작은도서관 통계지표 구축 및 활용

● 작은도서관 통계지표의 개선안 마련

- 통계조사 지표의 항목수를 줄이고, 항목 조정을 통하여 응답이 가능한 항목으로 실용성 있는 통계조사 지표를 제시함.
- 작은도서관의 장기적인 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대부분의 비전문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력구조를 고려한 단순화된 통계지표를 통해 통계조사의 장애요인을 감소시킴.

● 작은도서관 통계조사 수립을 위한 체계 구축

- 기존의 도서관통계에서 공공도서관 통계조사의 일부분으로 진행되었던 통계조사방법을 보완하여 통계조사의 참여율을 높임.
- 작은도서관 통계지표를 개선하여 주기적인 작은도서관의 현황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며, 통계지표의 이해도를 높여 응답률을 높이는데 기여함.

● 도서관 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

- 전국의 작은도서관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하여 현재 설립되어 있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정확한 실태와 요구사항을 파악함.
- 이러한 실태파악을 바탕으로 작은도서관이 현실적으로 직면해있는 문제점과 보완되어야 할 부분을 도출함.
- 도출된 점을 바탕으로 작은도서관의 건립과 지원체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도서관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함.

□ 정부·기업 등의 작은도서관에 대한 참여 활성화

● 정부의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 및 필요성 인식의 증가

- 작은도서관의 현 실태에 대하여 파악하고 정부의 지휘 아래 작은도서관의 설립 및 운영·관리가 이루어져야함을 인식함.

-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지원에 관한 사항의 기준과 평가에 대한 방법 개선을 통해 합리적이고 총체적인 지원 방법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함.

● 기업 참여를 통한 작은도서관 설립 및 운영의 활성화

- 기존의 단기적인 프로젝트 형식으로 진행되었던 작은도서관 설립 지원의 형태에서 나아가 작은도서관의 운영지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방법을 도출함.
- 기업의 사회공헌 형식의 운영지원 및 도서기부의 차원에서 벗어나 작은도서관을 매개로 한 사회적기업의 참여를 유도하여 기업의 합리적인 수익창출과 공정한 상거래의 발판을 마련함.

● 시민단체의 작은도서관 활성화 기여

- 기존 시민단체의 작은도서관 설립·운영에 대한 우수사례를 통하여 모범적인 시민단체의 참여 모델을 제시해 줌으로써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작은도서관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함.
- 시민단체의 작은도서관 설립·운영의 참여를 통하여 정부 및 기업의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의 한계를 보완하여 작은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

□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통한 독서 문화 및 독서 환경 개선

● 국민의 정보 접근권의 향상

- 작은도서관의 접근성이 용이한 점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생활공간 속에서 독서 및 생활 문화를 향상하는데 기여함.

● 지식정보서비스 제공 거점으로서의 작은도서관

- 정보소외 지역과 대상에 대한 문화·복지적 서비스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으로 정보지식에 대한 사회양극화를 해소함.

● 작은도서관을 통한 독서의 생활화

- 작은도서관을 통하여 전 국민의 도서의 접근과 활용을 높여 독서의 생활화에 기여함.
- 독서 인구 저변 확대 및 지식강국 기반 구축에 기여함.

□ 주민밀착형 생활문화공간으로서 작은도서관 활성화

● 작은도서관의 사랑방 역할 확대

- 작은도서관의 권역별, 체계적인 설립을 통하여 지역 사랑방으로서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기여함.
- 사람이 모이는 장소로써 작은도서관의 역할 확대로 다양한 커뮤니티 증진 프로그램을 구성함으로써 지역구성원의 활발한 지역 커뮤니티 형성에 기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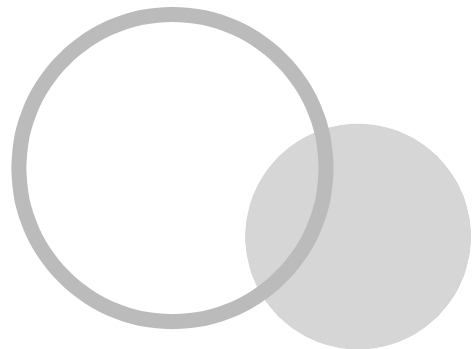
● 지역사회 통합과 화합에 기여

- 작은도서관의 근간이 되는 이용자의 자치적 운영 방식을 통해 지역주민의 참여와 봉사, 기부문화를 조성함.
- 현대 사회에서 약화되어가는 지역 구성원 간 화합의 구심적 역할로 작은도서관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장려함.



제2장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기반

1. 법적 기반
2. 통계적 기반
3. 작은도서관 네트워크



1. 법적 기반

1.1 도서관법의 작은도서관 규정

□ 도서관법의 작은도서관 기준

● 작은도서관의 법적 개념

- 2006년 9월에 개정된 「도서관법」과 이전의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서는 공공도서관과 문고에 대한 정의가 명시되어 있을 뿐 작은도서관에 대한 별도의 법적인 개념은 나타나 있지 않음.
- 작은도서관에 대한 법적인 개념의 명시는 이후 2009년 3월에 개정된 「도서관법」에서 이루어졌음.
- 즉, 공립 공공도서관의 일정한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도서관으로서,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나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지칭함. 이전의 문고형태라도 작은도서관으로 등록·신고한 경우라면 이에 포함시키고 있음.

■ 도서관법 (법률 제10558호 일부개정 2011. 04. 05.)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공공도서관"이라 함은 공중의 정보이용·문화활동·독서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이하 "공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 또는 법인(「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단체 및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이하 "사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음 각 목의 시설은 공공도서관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

가.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제5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작은도서관

부 칙[2009.3.25 제9528호]

- ② (작은도서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등록·신고된 문고는 제2조제4호가목의 개정 규정에 따른 작은도서관으로 본다.

● 작은도서관의 시설과 자료 기준

- 도서관법 시행령에서는 작은도서관의 시설과 자료기준에 대해 ‘면적 33제곱미터(약 10평)이상, 열람석 6석, 도서관 장서 1,000권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도서관법에 제시된 작은도서관의 기준은 문고의 기준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어서 명칭의 변화만 있을 뿐 규모나 시설측면은 문고에서 벗어나지 못함.
- 공공도서관 보다는 시설과 자료의 규모면에서 작지만 이용자의 근거리에서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대신함.
- 면적에 대한 단서 조항으로 “건물면적에 현관·휴게실·복도·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표 1>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설치 기준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시설	(인구2만 미만 일 때) - 면적 264㎡(약 80평), - 열람석 60석 이상	- 면적 33㎡(약 10평) 이상 - 열람석 6석 이상
자료	- 장서 3,000권 이상 - 연간증가 300권 이상	- 장서 1,000권 이상

자료 :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 별표1.

● 작은도서관의 사서직원 배치 기준

- 공공도서관에는 사서직원의 기준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반면 작은도서관의 경우 ‘공립 작은도서관에는 사서직원을 1인 이상 둘 수 있다’ 는 기준 뿐, 구체적인 기준 제시나 강제성이 배제되어 있음.
- 작은도서관에 한해 도서관 운영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사서직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표 2>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사서직원 배치 기준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직원	- 330㎡(약 100평)이하 사서직원 3인 - 330㎡(약 100평)이상인 경우 초과하는 330㎡마다 사서직원1인 추가 - 장서가 6000권이상인 경우 초과하는 6000권마다 사서직원 1인 추가	- 공립 작은도서관에는 사서직원을 1인 이상 둘 수 있다.

자료 : 도서관법 시행령 제4조 1항 별표2.

■ 작은도서관의 순회사서제도

- 작은도서관 사서직원의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작은도서관 근무 역시 도서관 근무경력으로 인정되지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임.
- 작은도서관 사서직원의 부족으로 자원봉사자들에게만 의존하거나 아예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전문 인력의 충원을 위한 대안으로 순회사서제도 도입
- 순회사서는 도서관법상 준사서의 자격요건으로 일정기간 근무경력을 인정하여 사서 인력확보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인력지원 방법.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사이버대학을 포함한다)이 있는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을 전공한 자가 작은도서관 규모 이상의 도서관에서 1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기관을 이수한 자에게 준사서의 자격이 주어지도록 법적 기준을 정비함.
- 2010년 전국적으로 344개소에 77명이 배치되고, 2011년에는 200개소에 50명이 배치됨
- 현재 순회사서의 경우 역할에 대한 명확한 명시가 없기 때문에 순회사서의 업무가 작은도서관 운영자의 자리 지킴이 또는 위탁공공도서관의 부족한 직원 대신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므로 정확한 역할 분담에 대한 지침이 필요하며,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 순회사서의 직무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통해 역할과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함.
- 순회사서의 역할이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이 사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작은도서관이 자발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담당하여야 하므로 순회사서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파견을 나가기 전 순회사서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 또한 필요함.
- 순회사서에게 실시하는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파견을 나가기 전에는 순회사서로써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2달에 한번 씩은 재교육을 실시하여 지원 업무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특정 사안에 대한 처리 방법 또는 실무지식에 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이를 통하여 순회사서들 사이의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장을 마련 해 주도록 함.
- 2010년에 진행된 8개월 단위의 순회사서 지원 사업에서 1년 단위의 재계약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궁극적으로 일시적인 사업의 형태가 아닌 공공도서관에 소속되는 순회사서 업무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는 계획하고 지원하여야 함.
- 1인당 현재 4개 이상의 작은도서관을 담당하고 있어 제대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됨. 순회사서의 담당하는 작은도서관의 수를 1개관 또는 2개관으로 제한하는 법적 기반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됨

□ 현재 법규의 한계점

- 문고의 설치기준을 그대로 반영한 작은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 기준
 - －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운영여건에는 미치지 못하는 도서관으로 현행법상 도서관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지만 공공도서관보다는 규모면에서 작은도서관을 지칭하고 있으나, 현행 작은도서관의 설치기준은 기존의 문고 기준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도서관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 현행법상의 시설기준은 도서관법상에서 정의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의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을 수행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부분임.
 - － 작은도서관의 설치를 장려하기 위한 차원에서 작은도서관의 까다로운 설립기준은 장애가 될 수 있으나, 이러한 완화된 기준은 작은도서관 설치에 대한 용이성을 높여 양적 증가를 가져올 수 있는 반면에 작은도서관의 질적 향상을 기대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작은도서관의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설치기준을 제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작은도서관의 전문 인력 배치에 대한 법적 기준의 모호성
 - － 사서직원의 고용이 공공도서관과는 달리 작은도서관의 경우 권장사항으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 － 이는 도서관 운영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 전문 인력의 배치의 중요성을 작은도서관에서 배제하고 있어 도서관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 인적자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의 부재로 인해 작은도서관이 문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1.2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설치기준 관련 법

□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설치기준 관련 법규

● 관련 법규의 제정 및 개정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1991년 1월 15일에 제정된 이래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쳐 1994년 12월 30일에 개정된 규정에서 처음으로 ‘문고’가 언급됨.
- 1994년에 개정된 규정 제55조 제5항에서 ‘5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시행령」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문고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1994년 법이 개정된 이후 지속되어 오던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문고 의무 설치’에 기준이 2006년 1월 9일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개정됨.
- 2009년 3월 도서관법의 개정으로 ‘문고’를 포함한 기준을 ‘작은도서관’으로 개정하면서 2009년 9월 21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도 ‘작은도서관’으로 명칭이 개정됨.

● 현행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설치 기준 관련 법규

- 주택법 제21조 제1항, 주택법 제97조9(별칙), 주택법 시행령 제 22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 제5항,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09-661호에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설치 기준이 명시되어 있음.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에서 주민공동시설을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으며, 도서실(「도서관법」 제2조 제4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과 정보통신망을 갖추고 인터넷 등을 할 수 있는 정보문화시설 포함)도 주민공동시설로 포함되어 규정되어 있음.
- 설치에 대한 규정은 주택법 제97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주택건설기준을 이행하지 않을 시 그에 상응하는 벌칙이 주어지는 것으로 명확히 명시되어 있음.
- 그러나 운영에 있어서의 규제는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의 운영은 주민들의 자율로 이루어지며, 건설 당시에는 작은도서관으로 만들어진 장소가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용도로 활용되거나 방치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남.

■ 주택법 제21조(주택건설기준 등) 제1항

제21조(주택건설기준 등)

제1항 사업주체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의 건설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준(이하 "주택건설기준등"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주택의 배치, 세대 간의 경계벽, 구조내력 등에 관한 주택건설기준
2. 부대시설의 설치기준
3.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4.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 비율
5. 대지조성기준
6.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의 특징, 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의 범위에서 조례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3항 사업주체는 제1항의 주택건설기준 등 및 제2항의 기준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주택법 제97조(벌칙)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호 또는 7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자는 2년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21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시행한 자.

■ 주택법 시행령 제22조

제22조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법 제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5조

제55조(경로당 등)

제5항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작은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작은도서관에 비치하는 도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가격기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5조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문고에 비치하는 도서의 가격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고의 도서가격)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문고에 비치하여야 하는 도서의 총가액은 850만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도서가격의 상승률이 5%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다시 정할 수 있다.

□ 국토해양부의 일부 개정안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2010년 11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게재함.
- 개정의 이유를 ‘아파트 위주의 주거문화가 형성된 상황에서 최근 아파트 단지 내 공동체 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나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시설별 설치기준이 정해져 있어 주민수요에 맞는 다양한 활용이 곤란하다’라고 명시함.
- 개정안의 내용 중 작은도서관과 관련 사항으로는 의무설치 주민공동시설 축소(제55조 제5항 삭제)에 대한 것으로 ‘이용률과 선호도가 낮아 방치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작은도서관은 의무시설에서 제외’하자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

● 국토해양부에서 실시한 주민공동시설 개선안을 위한 연구 분석

-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기초로 개선안을 제안함.
- 이 연구는 선행연구 고찰, 기준 법규 검토, 설치현황에 대한 조사, 주민공동시설 이용 현황 및 요구, 설치기준 관련 전문가 조사, 설치 기준 개선 방향 도출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하는 과정으로 진행됨.
- 공동주택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설치현황에 대한 조사 결과로 작은도서관은 북카페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줌.

■ 공동주택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설치현황 및 특성의 현장 사례조사 (*출처:국토해양부)

1. 조사개요

- 조사기간 : 2010년 4월26일~5월3일 까지
- 조사대상 : 총 5단지
(서울 영등포구, 경기도 화성시, 인천시 연수구, 서울시 중구, 서울시 서초구 소재)
- 조사방법 : 현장방문 후, 사진 촬영 및 관리사무소장의 인터뷰를 통해 주민공동시설의 특성 파악

2. 주요 조사결과

- 작은도서관을 주로 북카페의 형태로 설치하고 있음.
- 북카페는 작은도서관의 기능을 넘어 주민이 교류의 장소로 이용되고 있으며, 도서관의 기능만 넣은 작은도서관보다 이용 활성화와 커뮤니티 활성화 측면에서 바람직한 시설임.

- 조사는 공동주택거주자 면담조사와 설문조사로 이루어졌으며, 북카페와 도서관에 대해서는 단지 내 이웃과 교류하는 장소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설로서 인식하고 이용률이나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공동주택단지 내 거주자의 주민공동시설 이용현황 및 요구 (*출처: 국토해양부)

▷ 공동주택거주자 면담조사

1. 조사개요

- 조사기간 : 2010년 4월26일~5월3일 까지
- 조사대상 : 총 5단지(서울 영등포구, 경기도 화성시, 인천시 연수구, 서울시 중구, 서울시 서초구 소재) 사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입주자 대표회장 및 부녀회장을 포함한 주민37명
- 조사방법 : 공동체 의식, 이용하는 커뮤니티 시설, 요구하는 커뮤니티 시설, 시설의 만족도 등의 문항을 포함하는 반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일대일 면접 실시

2. 주요 조사결과

- 단지 내 이웃과 교류하는 장소로써의 북카페와 도서관의 높은 비중
: 단지내 주민과 교류하는 장소로는 놀이터가 29.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집(12.5%), 북카페(8.3%), 구름 카페(6.3%), 키즈룸(4.2%), 경로당(4.2%), 클럽하우스(4.2%), 아파트 단지 내 공원(4.2%), 정자(2.1%), 정원 티가든(2.1%), 휘트니스센터(2.1%), 도서관(2.1%), 엘리베이터(2.1%), 입주자대표회의실(2.1%), 커뮤니티센터(2.1%) 등으로 나타나, 주민들은 단지 내 다양한 내외부 커뮤니티 시설에서 이웃간의 교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설로써의 역할
: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설로는 스포츠관련 시설(헬스, 수영, 요가, 걷기, 댄스, 골프)과 키즈룸, 경로당, 영어마을, 놀이터, 북카페, 독서실, 휴게소, 정자 등 주민이 함께 모여 여가 및 운동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을 주민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설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북카페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 이용과 요구
: 주민공동시설의 이용현황은 주로 어린이놀이터, 휘트니스센터, 북카페 등을 많이 이용하고 있음.

▷ 공동주택거주자 설문조사

1. 조사개요

- 조사기간 :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조사대상 : 8 단지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단지별 50명 임의 표집, 총400명 대상
- 조사방법 : 조사대상 단지, 대상자에 대한 특성 및 공동체의식과 이웃관계,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시설, 주민공동시설의 이용현황 및 만족도,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요구 등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2. 주요 조사결과

- 공동체의식이 낮은 이유에 대한 답변 '모일 장소 부족'
- 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하는 단지 내 시설로써 작은도서관의 역할
- 커뮤니티 활성화에 필요한 시설에 대한 항목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북카페
- 주민공동시설 중 작은도서관에 대한 높은 이용현황
-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만족도에도 작은도서관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
-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요구
: 주민들이 요구하는 주민공동시설에 북카페와 같은 도서관 시설 포함되어 있음.
분양가와 관리비 상승에도 작은도서관 시설을 단지에 설치 요구

- 한편, 동일조사 내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위해 전문가 대상 소그룹 워크숍과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작은도서관(문고)에 대한 유지 의견, 북카페(작은도서관)에 대한 기능 복합화, 복합화 커뮤니티 센터 운영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됨, 특히 델파이조사에서 작은도서관 필수 설치에 대한 낮은 적합도와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범주의 개선안을 제안함.
- 그러나 일반주민들의 이용률과 요구도가 높은 점과 달리 전문가 집단의 의견으로 설치 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더욱이 전문가대상 소그룹 워크숍과 델파이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집단이 건설관련 분야 전문가로 편중되어 있어서 결과에 대한 일반화에 어려움이 있음.

■ 공동주택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설치 기준 관련 전문가 조사 (*출처:국토해양부)

▷ 전문가 대상 소그룹 워크숍

1. 조사개요

- 조사기간 : 2010년 4월26일~5월3일 까지
- 조사대상 : 각 분야의 전문가 14인
 건설분야 5인 (대림건설, 대우건설, 삼성건설,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학계 및 연구관련 분야 4인 (주거, 도시, 건축, 정책분야)
 관리분야 5인 (우리관리, 모스퍼실리티, 타워개발)
- 조사방법 : 주민공동시설의 정의, 공동체의식, 현재주민공동시설(부대복리시설)기준의 문제점, 주민공동시설(부대복리시설)기준개선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소규모 워크숍을 진행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 수렴 및 반영

2. 주요 조사결과

- 주민공동시설 기준 설정에서 작은도서관(문고)시설에 대한 유지 의견
 : 현행 '세대수' 기준 주민공동시설 설치와 관련된 법적기준인 관리사무소(부대시설), 휴게소(조경시설)와 복리시설인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문고, 보육시설, 주민공동시설은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함.
- 북카페(작은도서관)에 대한 취미 및 교육 공간으로의 기능 복합화에 대한 의견
 : 교육시설+회의실+독서실, 주민운동시설+주민공동시설 등은 복합화가 가능한 공간으로 봄.
 : 북카페(작은도서관)는 사용하는 시간대를 달리하여 주민의 취미 및 교육 공간으로의 기능 복합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함.
- 복합화 커뮤니티 센터 운영에 대한 의견 제시
 : 규모가 크거나 관리 운영비가 많이 드는 시설의 경우 지역사회 공통의 커뮤니티 시설로 확대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으로 봄.
 : 복합커뮤니티 센터에 들어올 수 있는 시설로는 수영장, 도서관, 실내스포츠 센터와 같이 규모가 큰 시설들이 될 것이라고 봄.

▷ 전문가 델파이 조사

1. 조사개요

- 조사기간 : 2010년 8월13일~23일 까지
- 조사대상 : 건축학(6인) 및 주거학(4인)을 전공한 학계, 연구소, 공공기관, 건설사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 10인 대상
- 조사방법 : 주민공동시설 설치기준 규정 개선, 주민공동시설 유형 및 세부시설 구분안 및 설치기준안, 총량제 도입안, 주민공동시설의 지역 개방화, 기타주민공동시설 규정개정 등에 대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

2. 주요 조사결과

- 정보문화시설에 작은도서관 필수설치에 대한 낮은 평균값
: 현재 주택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법적 부대복지시설 8개를 시설 기능에 따라 재분류하여 주민공동시설의 종류를 총 7개 유형(관리사무소 등, 주민운동시설 등, 노인복지시설, 보육시설, 정보문화시설 등, 주민휴게시설 등, 기타 주민공동시설)으로 제시

▶ 주민공동시설 유형 및 세부시설 구분(안)에 대한 의견

주민공동 시설유형	기초시설		평균 점수	기타 의견
	필수설치시설	권장설치시설		
정보문화 시설 등	작은 도서관	정보문화시설, 독서실, 청소년수련실	2.8	도서관을 필수시설로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임 / 작은도서관도 권장시설로 조정하면 좋겠음/ 청소년 수련시설은 주거기능과 배치됨/

*평균점수: 각 문항별로 매우 부적절(1점)~매우 적절(4점)에 대한 응답자들의 점수에 대한 평균값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내 정보문화시설(작은도서관 권장사항) 설치에 대한 개선안 제안

▶ 주민공동시설 설치기준(안)에 대한 의견

	구분	시설유형	50	100	300	500	1000	2000
현행	부대 시설	관리사무소	○	○	○	○	○	○
		조경시설(휴게소)			○	○	○	○
	복지 시설	경로당		○	○	○	○	○
		놀이터	○	○	○	○	○	○
		보육시설			○	○	○	○
		작은도서관			○	○	○	○
		주민공동시설			○	○	○	○
		주민운동시설				○	○	○
개선안	주민 공동 시설	관리사무소 등	●	●	●	●	●	●
		주민운동시설 등 (어린이놀이터포함)	●	●	●	●	●	●
		노인복지시설		●	●	●	●	●
		보육시설			●	●	●	●
		정보문화시설 등			●	●	●	●
		주민휴게시설 등			●	●	●	●
		기타 주민공동시설						

■ 전문가 조사에 대한 검토내용 (*출처: 국토해양부)

조사방법	조사대상	검토사항
전문가 대상 소그룹 워크숍	각 분야의 전문가 - 건설분야 5인: 대림건설, 대우건설, 삼성건설,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 학계 및 연구관련 분야 4인: 주거, 도시, 건축, 정책분야 - 관리분야 5인: 우리관리, 모스퍼실리티, 타워 개발	※선정된 전문가들의 전문 분야에 대한 제고 필요 - 건설 관련 분야에 조사대상자가 편중되어 있어 결과에 대한 일반화에 어려움이 있음.
전문가 델파이 조사	건축학(6인) 및 주거학(4인)을 전공한 학계, 연구소, 공공기관, 건설사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 10인	- 그에 따라 건설 분야 뿐 아니라 다양한 전문가 그룹의 의견 반영이 필요함.

1.3 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

1.3.1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 분석

□ 분석 과정

- 1차로,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을 통해 확인
 -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에서 검색어 ‘작은도서관’을 통해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를 확인함(2011년 4월 기준).
 -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를 통해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가 확인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강원도,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3곳임.
- 2차로, 광역지방자치단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자치법규시스템을 통해 확인
 -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에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자치법규를 확인해 봄(2011년 4월 기준).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경상남도 등 8곳은 도서관(공공도서관, 대표도서관) 관련 조례는 명시되어 있었으나 작은도서관에 대한 별도 조례는 없음.
 -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등 4곳은 도서관 관련 조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대구광역시의 경우 작은도서관 운영 규정(훈령)만 명시되어 있음.
- 분석대상
 -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를 제정한 곳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에 등재되어 있는 강원도,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3곳으로 나타남.
 - 이 3곳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함.

□ 분석 결과

- 조례의 구성
 - 제주특별자치도와 전라북도의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는 총칙(목적, 용어의 정의), 작은

도서관 설치(작은도서관 기능, 공간 및 위치, 설립 기준 등, 책무, 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 운영인력), 작은도서관 운영(운영시간, 휴관, 회원제, 자료대출, 입관의 제한,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의 설치, 구성, 위원장의 직무, 운영위원회의 기능), 보칙(부칙)으로 구성되어있음.

- 「강원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의 구성은 목적, 정의, 기능, 책무, 시행계획의 수립, 예산의 지원, 포상, 시행규칙으로 이루어짐.

<표 3> 광역지방자치단체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의 구성

	제주특별자치도	전라북도	강원도
전 체 구 성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작은도서관 기능 제4조 공간 및 위치 제5조 설립기준 등 제6조 도지사의 책무 제7조 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 제8조 운영인력 제9조 운영시간 제10조 휴관 제11조 회원제 제12조 자료대출 제13조 입관의 제한 제14조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제15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제16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제17조 위원장의 직무 제18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제19조 권한의 위임·위탁 제20조 시행규칙 부칙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작은도서관 기능 제4조 공간 및 위치 제5조 설립기준 등 제6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7조 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 제8조 운영인력 제9조 운영시간 제10조 휴관 제11조 회원제 제12조 자료대출 제13조 입관의 제한 제14조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제15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제16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제17조 위원장의 직무 제18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제19조 시행규칙 부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기능 제4조 책무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6조 예산의 지원 등 제7조 포상 제8조 시행규칙 부칙

● 조례 제정 시기

-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는 최근에 제정된 것임을 알 수 있음.
- 작은도서관 조례 제정 시기와 관련하여 ‘작은도서관’이라는 용어가 법에 의해 규정된 시점이 2009년 3월이라는 것은 주목할 점임.

- 제주특별자치도와 전라북도는 ‘작은도서관’이 법적인 용어로서 정립되기 이전에 이미 만들어진 조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강원도의 경우는 ‘작은도서관’이 법적으로 정립된 시점 이후에 제정된 조례라는 것을 알 수 있음.
- 즉, 제주특별자치도와 전라북도의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를 살펴보면 상위법인 「도서관법」에서 ‘작은도서관’을 규정하기 이전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이를 자세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었음.
- 반면에, 강원도 조례의 경우 2009년 3월에 개정된 「도서관법」에서 ‘작은도서관’도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까지 조례에 포함할 필요가 없었고, 그러한 이유로 조례의 내용이 매우 간략해졌음을 알 수 있음.

<표 4>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 제정 시기

제주특별자치도	전라북도	강원도
2008-04-02	2009-04-24	2010-03-12

- 공공도서관이나 대표도서관 관련 조례가 제정된 시기와 비교 해보면,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제정일은 2008년 1월 9일로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의 제정일인 2008년 4월 2일 보다 앞서 제정된 것을 알 수 있음.
- 「전라북도 대표도서관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제정일은 2007년 11월 2일로 2009년 4월 3일 일부개정 되었지만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의 제정일인 2009년 4월 24일보다 앞서서 제정된 것을 알 수 있음.
- 강원도의 경우, 작은도서관 관련 지원 조례만 제정되어 있을 뿐 공공도서관이나 대표도서관 등과 관련된 조례는 없음.
- 위와 같이, 강원도를 제외한 제주 특별자치도와 전라북도에서는 도서관에 대한 조례가 먼저 제정된 이후에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음을 알 수 있음.
- 이는 도서관법에 의해 정의되어 있는 바와 같이, 작은도서관을 도서관의 범주 안에서 해석하는 것으로 큰 범주인 공공도서관이나 대표도서관에 대한 조례의 제정을 바탕으로 작은도서관에 대한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보임.

<표 5> 광역지방자치단체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조례 제정시기 비교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조례명	제정시기	조례명	제정시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2008-01-09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2008-04-02
	제주특별자치도 도서관 진흥 및 대표도서관 설립 등에 관한 조례	2008-03-05		
전라북도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007-11-02	전라북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2009-04-24
강원도	관련 조례 없음		강원도 작은도서관지원 조례	2010-03-12

● 조례의 목적

- 조례의 목적을 정의한 부분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도서관”이라는 점임.
- 이를 해석해 보면, 주민들의 ‘지역 생활권’에 위치해 있는 도서관을 말하며, 지역생활권이란 지역주민들의 사회활동 및 일상생활이 이루어지고 기본적인 편의시설과 서비스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함.
- 작은도서관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의미로 지역 도서관의 역할을 해주는 작은도서관을 주민들의 지역생활권 중심으로 “도보 10분 이내 지점마다 공공도서관 조성”이라는 표현과 같이 생활밀착형 도서관으로 확충하려는 의지로 해석됨.

■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 35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4조, 제27조 2항, 제44조에 의거하여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도서관을 통해, 차별과 장애 없이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이하 “작은도서관”이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지원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전라북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340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4조와 제27조,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도서관을 통해, 차별과 장애 없이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작은도서관(이하 “작은도서관”이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지원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강원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조례 제 338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는 도서관을 통해 손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한 작은도서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서관 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공간 및 위치

- 작은도서관의 위치에 대하여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 개방에 있어서 용이한 곳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접근성과 개방성이 중요함을 언급함.

■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 355호)

제4조(공간 및 위치) 작은도서관의 공간 및 위치는 다음과 같이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1. 작은도서관은 주민접근성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된 지역에 위치하여야 한다.
2. 다만, 공공기관 소유의 유휴 시설이 있을 경우 주민접근성이 다소 취약하더라도 위치할 수 있다.

■ 전라북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3404호)

제4조(공간 및 위치) 작은도서관의 공간 및 위치는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의 접근에 장애가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공공시설 내에 도서관이 마련될 경우, 공공시설의 업무외 시간에도 작은도서관이 개방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 설립 기준 등

- 제5조 2항에서는 설비에 대한 조건을 언급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와 전라북도의 조례가 제정될 시기에는 도서관법에서 작은도서관에 대한 명시가 없을 시점으로 두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문고의 기준보다 작은도서관을 더 큰 범위로 간주하고 시설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보임.
- 제5조 1항과 3항에서는 자치단체에서 설립 계획서를 제출 받아 심사를 거쳐 작은도서관을 지정하고 3년마다 심사하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자치단체가 작은도서관의 운영에 개입할 여지가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자치단체가 작은도서관의 운영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으며 작은도서관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됨.

■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 355호)

제5조(설립 기준 등)

- ① 작은도서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작은도서관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어야 한다.
 2. 운영자는 구체적인 작은도서관 설치 예정 장소를 포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추진하는 작은도서관 관련 정책(이하 “관련 정책”이라 한다)의 기준에 적합한 작은도서관 운영계획서 또는 사업계획서(이하 “관련 계획서”라 한다) 등을 작성하고, 제주자치도가 관련 계획서를 심사하여 지정조건에 부합할 경우 작은도서관으로 지정한다.
- ② 작은도서관의 설비에 대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1,000권 이상의 장서가 구비되어야 한다.
 2. 15석 이상의 열람석을 구비하여야 하며 유아들도 불편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유아와 동반자를 위한 열람공간도 마련되어야 한다.
 3. 건물면적이 85㎡ 이상의 규모이어야 한다.
 4. 어린이를 비롯한 전 계층을 고려한 장서들을 고루 구비하여야 한다.
- ③ 제주자치도는 3년마다 작은도서관을 심사하여 기준에 미달하는 곳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전라북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3404호)

제5조(설립 기준 등)

- ① 작은도서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작은도서관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어야 한다.
 2. 운영자는 구체적인 작은도서관 설치예정 장소를 포함하여 전라북도(이하 “전라북도”라 한다)가 추진하는 작은도서관 관련 정책(이하 “관련 정책”이라 한다)의 기준에 적합한 작은도서관 운영계획서 또는 사업계획서(이하 “관련 계획서”라 한다) 등을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하고, 시·군에서는 관련 계획서를 심사하여 지정조건에 부합할 경우 작은도서관으로 지정한다.
- ② 작은도서관의 설비에 대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1,000권 이상의 장서가 구비되어야 한다.
 2. 10석 이상의 열람석을 구비하여야 하며 유아들이 불편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유아와 동반자를 위한 열람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3. 건물면적은 33제곱미터 이상 규모를 갖추어야 한다.
 4. 어린이를 비롯한 전 계층을 고려한 장서들을 고루 구비하여야 한다.
- ③ 시·군에서는 3년마다 작은도서관을 심사하여 기준에 미달하는 곳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주특별자치도와 전라북도의 책무에 대한 조항은 같은 내용으로 예산 지원, 관리감독, 운영에 관한 세부 계획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나, 강원도의 조례에서는 포괄적이며 지향점이 높은 내용을 언급하고 있음.
- 즉, 제주특별자치도와 전라북도의 조례에서는 광역의회가 도지사에게 실효가능하며 강

력한 요구 사항을 규정해놓은 반면, 강원도의 조례에서는 실효성이 낮은 책무를 조항으로 규정해 놓음.

■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 355호)

제6조(도지사의 책무)

- ① 지역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 읍·면·동 당 1개소 이상의 작은도서관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일정한 기준에 의해 지정된 작은도서관이 원활히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설립을 위한 공간, 설비, 자료구입, 인건비, 운영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작은도서관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 ④ 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작은도서관 설립·확대·보수와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마다 운영에 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전라북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3404호)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① 지역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 읍·면·동 당 1개소 이상의 작은도서관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작은도서관이 원활히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설립을 위한 공간, 설비, 자료구입, 인건비, 운영경비 등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③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작은도서관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 ④ 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작은도서관 설립·확대·보수와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마다 운영에 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강원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조례 제 3383호)

제4조(책무)

도지사는 작은도서관의 조성·운영에 대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등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독서 시설 및 독서문화 혜택이 미비한 지역 및 계층에 대한 우선지원.
2.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지역주민 참여확산을 위한 사회활동 전개 등 민간의 후원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3. 작은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의 분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공도서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

● 운영자 및 운영인력

- 운영자는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보존·축적·제공·열람·대출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작은도서관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한다”라고 역할을 명시해 놓았음.
- 운영자의 자격은 예외조항을 두었지만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자’라고 명시하여 운영자에 대한 전문성을 규정하였음.

- 운영인력에 대한 조항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전라북도의 조례에 차이가 있으며, 강원도 조례에는 조항이 없음.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자원봉사자를 포함 읍·면 지역은 4명이상, 동지역은 6명이상을 확보”라고 명시하였으며, 전라북도에서는 “자원봉사자를 포함 읍·면 지역은 2명이상, 동지역은 4명 이상을 확보”라고 언급하였으며, 이는 운영인력에 대한 인원수만 규정을 하였을 뿐 운영인력의 전문성은 배제한 조항이라고 보여짐.
- 그러나 이 2곳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연1회 교육을 실시하여야한다”라고 규정하여 운영인력의 교육적 측면을 자치단체에서 관할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 또한, “지역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중심으로 자원봉사단을 조직”하여 자원봉사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채용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하고 있어, 작은도서관의 지역사회 내에서의 역할을 다시 언급하며 관에서의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작은도서관 운영

- 작은도서관의 운영의 측면에서는 ‘운영시간’, ‘휴관’, ‘회원제’, ‘자료대출’, ‘입관의 제한’,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에 대한 조항을 명시하고 있음.
- 운영시간에 있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조례는 토요일과 일요일 중 1일을 포함하여 주5일 이상을 개관하여야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전라북도에서는 주5일 1일 8시간 이상을 개관하여야한다고 명하고 있으며, “운영시간은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를 통해 각 작은도서관마다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운영자가 없는 시간은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작은도서관마다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있음.
- 휴관일은 국경일과 정부지정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으며, 운영위원장의 권한으로 임시 휴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회원제에 대하여서는 회원신청서를 제출하여 회원증을 발급한다고 나타나있으며 “독서인구의 저변확대 및 작은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증을 발급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회원제를 통해 작은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소속감과 편의성을 제공하고자하는 것으로 사료됨.
- 제12조와 제14조에 명시되어 있는 자료대출과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에 대한 조항에서 이 조항에 대한 조정 및 승인에 대한 부분을 운영위원회에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 355호)

제9조(운영시간)

작은도서관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주5일 이상 작은도서관을 개관하여야 하며, 토요일과 일요일 중 1일은 개관하여야 한다.
2. 운영시간은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통해 각 작은도서관마다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운영자가 없는 시간은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휴관)

작은도서관은 국경일과 정부 지정 공휴일은 휴관하며, 운영위원장은 독서문화환경 조성에 차질이 없는 한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제11조(회원제)

- ① 독서인구의 저변확대 및 작은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한다.
- ② 회원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회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원에게는 회원증을 발급한다.

제12조(자료대출)

회원에게는 도서 등 자료의 대출이 가능하며, 도서 대출의 기간은 7일, 대출도서는 1회 3권 이내로 하며 필요시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입관의 제한)

운영자는 도서관 내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작은도서관의 설립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이용자에 대하여 입관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4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 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타 도서관에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사유를 명기한 목록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 ② 기타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전라북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3404호)

제9조(운영시간)

작은도서관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5일 1일 8시간 이상 작은도서관을 개관하여야 한다.
2. 운영시간은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통해 각 작은도서관마다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운영자가 없는 시간은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휴관)

작은도서관은 국경일과 정부 지정 공휴일은 휴관하며, 운영위원장은 독서문화환경 조성에 차질이 없는 한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제11조(회원제)

- ① 독서인구의 저변확대 및 작은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한다.
- ② 회원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회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원에게는 회원증을 발급한다.

제12조(자료대출)

회원에게는 도서 등 자료의 대출이 가능하며, 도서 대출의 기간은 7일, 대출도서는 1회 3권 이내로 하며 필요시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입관의 제한)

운영자는 도서관 내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입관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4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 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타 도서관에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사유를 명기한 목록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 ②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 이내로 하되 당해연도 장서구입량의 100분의 50을 초과 할 수 없다.

● 운영위원회

- － 운영위원회에 관련된 조항은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운영위원회의 기능’이 명시되어 있음.
- －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과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사무 처리를 위한 간사 1인을 작은도서관 운영인력 중 1인으로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도서관계, 문화계, 교육계, 시민단체 등 관계분야의 전문가와 1/2 이상을 지역주민으로 구성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작은도서관의 운영사항에 대한 결정권의 반 이상을 직접적으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이용하는 지역주민에게 위임하여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작은도서관을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됨.

■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 355호)

제15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모든 작은도서관에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1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 중 인근 학교의 학교장 1인, 주민자치위원 중 1인, 인근 공립 공공도서관의 사서직원 1인, 읍면동장이 추천한자 1인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그밖에 시민단체 등 관계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와 마을대표, 학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1/2 이상을 작은도서관이 위치하는 해당 지역주민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과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④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작은도서관의 운영인력 중 1인이 한다.

제17조(위원장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운영위원회는 매달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임시 운영위원회를 위원장이 소집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작은도서관 운영 체계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 자료의 접근, 이용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3.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자원봉사자 조직과 관리에 관한 사항
5. 작은도서관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6. 작은도서관 도서 확보 방안에 관한사항
7. 기타 작은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 전라북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3404호)

제15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모든 작은도서관에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1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도서관계, 문화계, 교육계, 시민단체 등 관계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성하며, 위원의 1/2이상을 작은도서관이 위치하는 해당 지역주민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과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④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작은도서관의 운영인력 중 1인이 한다.

제17조(위원장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운영위원회는 매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임시 운영위원회를 위원장이 소집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작은도서관 운영 체계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 자료의 접근, 이용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3.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자원봉사자 조직과 관리에 관한 사항
5. 작은도서관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6. 작은도서관 도서 확보 방안에 관한사항
7. 기타 작은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 기타 조항

- 「강원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에서는 ‘시행계획의 수립 등’, ‘예산의 지원 등’, ‘포상’에 대한 조항을 규정하였음.
- 강원도의 조례에서는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의 책무에서 언급하고 있는 예산의 지원에 대한 부분을 별도의 조항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근거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또한, 2곳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은 포상에 관련된 조항을 명시하여 작은도서관의 조성·운영·진흥에 이바지한 공로가 있는 사람 및 단체·기업 등에 포상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명시하고 있어, 작은도서관의 발전을 독려할 수 있는 조항을 규정하고 있음.

■ 강원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조례 제 3383호)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 ① 도지사는 작은도서관이 지역주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등 평생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1.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종합발전계획
 2. 해당 연도 세부 추진계획
 3.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종합발전계획 등을 수립하는 때에는 시장·군수 및 작은도서관 운영주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③ 시장·군수는 도 계획에 따라 자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예산의 지원 등)

- ① 도지사는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작은도서관 자료구입비 및 설비비
 2. 그 밖에 도지사가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 ②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포상)

도지사는 작은도서관의 조성·운영 및 그 진흥을 위하여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및 단체·기업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절차는 「강원도 포상조례」에 따른다.

1.3.2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 분석

□ 분석과정

● 1차로,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을 통해 확인

-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에 등록된 조례를 검색하기 위하여 검색어 ‘작은도서관’을 입력, 총 36개의 조례가 검색됨(2011년 4월 기준).
- 검색된 36개 중에서 훈령(규정)으로 등록된 4개와 마산시 통합으로 인해 (구)마산시 조례와 마산시 조례 폐지문, 2개를 제외한 총 30개의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 3곳(강원도,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을 제외한 27곳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확인됨.
-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을 통해 조례가 확인된 27곳의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부산광역시 중구, 광주광역시 서구·남구·북구·광산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울산광역시 북구, 경기도 하남시, 강원도 원주시, 전라북도 전주시·익산시, 전라남도 목포시·순천시·나주시·화순군·무안군·영광군·신안군, 경상북도 포항시·경주시·영양군, 경상남도 창원시·사천시·거제시·양산시·고성군임.

● 2차로, 기초지방자치단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자치법규시스템을 통해 확인

-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에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자치법규를 확인함(2011년 4월 기준).
- 기초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자치법규 사이트에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를 등록한 자치단체는 10곳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울산광역시 중구, 경기도 파주시·광명시·안양시·성남시, 강원도 춘천시, 충청남도 천안시·연기군, 경상남도 김해시가 있음.
-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경우, ‘작은도서관’의 명칭으로 제정된 조례는 없었으나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및 문고의 설립과 독서진흥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 내용을 명시하고 있음.
- 울산광역시 중구의 경우에도 ‘작은도서관’의 명칭으로 제정된 조례는 제정되어 있지 않으나, ‘마을도서관’이라는 명칭으로 제정된 ‘울산광역시중구 마을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조례 내용이 작은도서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확인됨.

● 분석대상

- 서울 강남구를 비롯해 37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가 분석됨(표 8 참조).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는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16곳,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가 16곳,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가 2곳,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가 1곳, ‘도서관 및 문고의 설립과 독서진흥에 관한 조례’가 1곳, ‘마을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1곳 등 37곳에서 찾을 수 있음.

<표 6>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

조례명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				조례수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3)	남구	북구	광산구	16
	경기도(1)	하남시			
	전라북도(1)	익산시			
	전라남도(5)	목포시	나주시	화순군	
		무안군	영광군		
	전라북도(1)	영양군			
	경상남도(5)	창원시	사천시	김해시	
거제시		고성군			
작은도서관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1)	양천구			16
	광주광역시(1)	서구			
	대전광역시(1)	유성구			
	울산광역시(1)	북구			
	경기도(4)	파주시	광명시	안양시	
		성남시			
	강원도(1)	원주시			
	충청남도(1)	연기군			
	전라북도(1)	전주시			
	전라남도(2)	순천시	신안군		
	경상북도(2)	포항시	경주시		
	경상남도(1)	양산시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	강원도(1)	춘천시			2
	충청남도(1)	천안시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1)	중구			1
마을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1)	중구			1
도서관 및 문고의 설립과 독서진흥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1)	강남구			1
	합계				37

- 특히,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는 작은도서관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어, 그 명칭은 이를 포괄할 수 있는 것으로 지칭하는 것으로 확인됨.
 - 대부분의 조례 명칭은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대해 명시하고 있어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의 제정 목적이 지방자치단체가 작은도서관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을 알 수 있음.
 - ‘마을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명칭은 울산광역시 중구에서 작은도서관에 대한 조례의 명칭으로 제정한 것으로 2009년 3월 ‘작은도서관’의 명칭이 도서관법에서 규정된 시점 이전인 2008년 6월에 울산광역시 중구에서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마을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나, 작은도서관에 대한 명칭만 상이할 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제정한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는 도서관법에서 ‘작은도서관’의 명칭이 사용되기 이전인 2000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어 ‘도서관 및 문고의 설립과 독서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문고라는 명칭으로 작은도서관에 대한 조례의 조항을 언급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조례의 명칭과 달리 독서진흥에 대한 부분을 언급함으로써 도서관 및 문고의 설치를 통한 독서진흥의 궁극적인 목적까지 조례의 명칭에서 명시하고 있음.
- 그 외 별도의 조례는 없지만 ‘도서관’ 관련 조례에 관련 조항이 일부 있는 경우
- 경기도 안성시·의정부시, 충청남도 금산군, 전라북도 군산시, 경상북도 김천시, 5곳의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 관련 조례에서 작은도서관에 대한 조항을 규정하고 있음.
 - 경기도 안성시의 경우, ‘안성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제5조에서 작은도서관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5조에서는 작은도서관 육성·지원에 관한 조항을 규정하고 있음.
 - 경기도 의정부시에서는 ‘의정부시 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서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한 조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시행 규칙 제5조와 제9조에서 자료대출과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한 규칙을 규정하고 있음.
 - 충청남도 금산군에서는 ‘금산군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와 제10조에서 작은도서관의 기능과 이용시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경상북도 김천시에서는 ‘김천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제16조에서 작은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관리에 대한 조항을 규정하였고 제17조에서는 작은도서관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도서관 관련 조례에서 작은도서관에 대한 기능 및 운영, 지원에 대한 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5곳의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을 도서관 및 시립도서관의 범주 안에서 지원·운영하려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의지로 짐작됨.

□ 분석 결과

● 조례의 구성

-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는 전반적으로 ‘목적’, ‘용어의 정의’, ‘기능’, ‘설립기준’, ‘지방자치단체(단체장)의 책무’, ‘운영인력’,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운영위원회’,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성됨.
- 조례의 목적은 37곳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고, 용어의 정의는 부산광역시 중구를 제외한 36곳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작은도서관의 기능은 34곳, 설립기준은 33곳, 지방자치단체(단체장)의 책무는 35곳, 운영인력은 29곳,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항은 31곳, 운영위원회는 31곳에서 규정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구성하고 조항으로 확인되었음.
- 위탁운영에 관한 조항을 규정한 곳은 12곳으로 대부분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규정하는 조항은 아니지만 작은도서관의 운영이 개인의 자본으로 운영·관리되거나 지방자치단체 직영으로 운영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규정된 조항으로 보임.
- 등록에 대한 조항을 규정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 파주시, 충청남도 연기군, 전라북도 익산시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운영자는 설립기준(시설 및 자료)을 갖추어서 각 기초지방자치단체(단체장)에게 제출해야한다.”라고 명시해 놓고 있으며, 더불어 충청남도 연기군과 전라북도 익산시는 등록 취소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몇 가지 세부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보조금의 중지 및 보조금의 반환 등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하여 작은도서관의 등록 및 취소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 경기도 성남시, 강원도 춘천시, 전라북도 전주시는 등록에 대한 조항과 함께 폐관에 대한 조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등록 및 등록사항변경 시에는 일정 서식을 첨부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고 명시하고, 단체장은 등록증을 교부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폐관 시에는 폐관신청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표 7> 기초지방자치단체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의 구성

기초 자치단체	목적	용어 정의	기능	설립 기준	지자체 책무	운영 인력	도서관 운영	운영위 원회	기타
서울 강남구	○	○	-	-	-	-	○	○	
서울 양천구	○	○	○	○	○	○	○	○	
부산 중구	○	-	○	-	○	-	○	-	
광주 서구	○	○	○	○	○	○	○	○	
광주 남구	○	○	○	○	○	○	○	○	
광주 북구	○	○	○	○	○	○	○	○	
광주 광산구	○	○	○	○	○	○	○	○	
대전 유성구	○	○	○	○	○	○	○	○	
울산 중구	○	○	○	○	○	○	-	○	
울산 북구	○	○	○	○	○	○	-	-	
경기 파주시	○	○	○	○	-	-	○	○	등록에 관한 조항
경기 광명시	○	○	○	○	○	○	○	○	
경기 안양시	○	○	○	○	○	○	○	○	
경기 성남시	○	○	○	○	○	-	○	-	등록·폐관 조항
경기 하남시	○	○	○	○	○	○	○	○	
강원 춘천시	○	○	○	○	○	○	○	-	등록·폐관 조항
강원 원주시	○	○	○	○	○	○	○	○	
충남 천안시	○	○	○	○	○	○	○	○	협의회 조직
충남 연기군	○	○	○	-	○	-	-	○	등록에 관한 조항
전북 전주시	○	○	○	○	○	-	-	-	등록·폐관 조항
전북 익산시	○	○	-	○	○	-	-	○	등록에 관한 조항
전남 목포시	○	○	○	○	○	○	○	-	
전남 순천시	○	○	○	○	○	○	○	○	
전남 나주시	○	○	○	○	○	○	○	○	
전남 화순군	○	○	○	○	○	○	○	○	
전남 무안군	○	○	○	○	○	○	○	○	
전남 영광군	○	○	○	○	○	○	○	○	
전남 신안군	○	○	○	-	○	-	○	○	
경북 포항시	○	○	○	○	○	○	○	○	
경북 경주시	○	○	○	-	○	○	○	○	
경북 영양군	○	○	○	○	○	○	○	○	
경남 창원시	○	○	○	○	○	○	○	○	
경남 사천시	○	○	○	○	○	○	○	○	
경남 김해시	○	○	-	○	○	○	○	○	
경남 거제시	○	○	○	○	○	○	○	○	
경남 양산시	○	○	○	○	○	○	-	○	
경남 고성군	○	○	○	○	○	○	○	○	
합계	37	36	34	33	35	29	31	31	

● 설립 기준

- 작은도서관의 설립 위치로는 첫째로 주민들이 접근하기 용이한 장소에 위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의 접근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둘째로 “공공시설 내에 도서관이 마련될 경우, 공공시설의 업무 시간 외에도 작은도서관이 개방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예외 규정으로 “공공기관 소유의 유휴시설이 있을 경우 주민접근이 다소 어렵더라도 위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구체적인 시설 기준은 <표 9>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조례에 면적을 규정 해놓은 31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33㎡(10평)이상 11곳, 49.5㎡-50㎡(15평)이상 2곳, 65-67㎡(20평)이상 7곳, 70㎡(21평)이상 1곳, 80-82㎡(24평)이상 5곳, 85㎡(25평)이상 5곳으로 나타남.
- 열람석은 6석 이상 10곳, 10석 이상 6곳, 15석 이상 12곳, 20석 이상 3곳으로 조례를 제정한 37곳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31곳에서 열람석에 대한 조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이외에도 “유아의 이용편의를 위한 유아와 동반자를 위한 열람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어린자녀를 둔 부모와 자녀를 작은도서관의 주 이용객으로 인식하고 편의 제공에 대한 항목을 명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장서수의 경우 1,000권 이상이 26곳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0권 이상을 요구하는 곳이 3곳, 3,000권 이상이 3곳으로 32곳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장서수에 대한 조항을 규정하였으며, 연간 장서의 증가율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는 곳은 8곳으로 기존장서의 10%이상의 신규자료가 추가 되어야한다고 규정한 곳이 7곳이고 경상남도 창원시는 연간 400권 이상의 신규장서를 구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광주광역시 서구·남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울산광역시 북구, 경기도 성남시, 강원도 원주시, 전라북도 전주시·익산시, 전라남도 화순군, 경상남도 거제시, 총 10곳의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상위법인 도서관법에서 정해놓은 작은도서관의 설립기준과 같은 기준으로 설립기준을 제정하였으며, 도서관법에서 정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의 설립기준은 문고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작은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기준으로써 10곳의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실제적인 기준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임.

● 기초지방자치단체(단체장)의 책무

- 기초지방자치단체(단체장)의 책무는 작은도서관 조성, 예산지원, 작은도서관에 관한 세부계획수립 및 의회보고에 대한 항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그 외에도 작은도서관 관리·감독, 작은도서관 진흥 및 장려, 공공도서관과 협력체계 수립,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 운영인력 교육 실시, 작은도서관 심사와 등록 취소에 대한 항목을 책무로 제정하고 있음.
- 작은도서관은 도서관의 한 범주로 공공재로써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무가 매우 중요함.
- 작은도서관의 구성과 예산지원에 대한 부분은 작은도서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부분임.
- 작은도서관의 구성에 대한 부분에서 “각 읍·면·동당 1개소 이상의 작은도서관 구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동시에 조성하기 힘든 경우 기존의 공공도서관에서 가장 소외된 지역에 우선하여 조성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권역별로 체계적인 작은도서관 조성의 필요성과 작은도서관의 가장 큰 역할인 주민 밀착형 도서관으로써의 역할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인식하고 이를 고려하여 조항을 제정한 것으로 판단됨.
- 예산지원은 작은도서관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이를 지방자치단체(단체장)의 책무로 규정함으로써 작은도서관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작은도서관에 관한 세부계획 및 의회보고에 대한 부분은 작은도서관 조성이나 예산지원과 달리 지방자치단체(단체장)만이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작은도서관 설립 및 확대, 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3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음.
- 몇몇 지방자치단체는 운영인력에 대한 교육을 지방자치단체(단체장)의 책무로 명시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조례에서는 운영인력에 대한 조항에서 운영인력(운영자)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시행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임의조항으로 실제 교육이 이루어지는지는 미지수임.
- 경기도 성남시의 경우, “매년 작은도서관을 심사하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여 작은도서관 등록취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만 강제조항이 아니므로 이 조항에 대한 이행 여부는 알 수 없음.

<표 8> 기초지방자치단체(단체장)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단체장)의 책무	기초지방자치단체		조례수
작은도서관 조성	서울특별시	양천구	30
	광주광역시	서구 북구 남구 광산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울산광역시	중구 북구	
	경기도	광명시 안양시 성남시 하남시	
	강원도	춘천시 원주시	
	전라북도	전주시	
	전라남도	목포시 순천시 나주시 화순군 무안군 영광군 신안군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 영양군	
	경상남도	창원시 사천시 거제시 양산시 고성군	
예산지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32
	광주광역시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울산광역시	중구 북구	
	경기도	광명시 안양시 성남시 하남시	
	강원도	춘천시 원주시	
	충청남도	연기군	
	전라북도	전주시 익산시	
	전라남도	목포시 순천시 나주시 화순군 무안군 영광군 신안군	
	경상북도	포항시 영양군	
작은도서관의 진흥 및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 및 의회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22
	광주광역시	서구 북구 남구 광산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울산광역시	중구	
	경기도	광명시 안양시 하남시	
	전라남도	목포시 순천시 나주시 화순군 무안군 영광군	
	경상북도	포항시	
	경상남도	창원시 사천시 거제시 양산시 고성군	
작은도서관 관리·감독	부산	중구	5
	경기도	광명시 성남시	
	전라북도	전주시	
	경상남도	김해시	
작은도서관 진흥 및 장려	충청남도	천안시 연기군	4
	전라북도	익산시	
	경상북도	경주시	
공공도서관과 협력체계 수립(상호대차서비스 지원)	울산광역시	북구(상호대차)	2
	경상북도	경주시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예산 및 직무교육)	울산광역시	북구	2
	충청남도	천안시	
운영인력 교육 실시	충청남도	천안시	2
	전라북도	전주시	
작은도서관 심사와 등록 취소	경기도	성남시	1

● 운영인력

- 도서관법에서는 “사서직원을 1인 이상 둘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그 조항에 대한 강제성이 모호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도 운영인력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곳도 많이 있음.
-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운영인력의 인원수를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있는 반면, “관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자원봉사자를 활용 할 수 있다”등의 불명확하게 규정한 조례도 있음.
- 운영인력의 수를 명시한 18곳의 조례에서는 운영자를 포함하여 2인 이상 10인 이하의 운영인력을 요구하고 있음.
- 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는 운영인력을 명시하고 있는 29개의 조례 중 17개로, 프로그램 및 도서 대출·반납, 도서정리 및 보수 등 작은도서관 소관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것으로 운영자의 직무가 명시되어 있음.
- 운영자의 자격은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자, 독서 및 유아교육 관련 자격증 소지한 자, 도서관 학교, 독서문화지도자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의 일정기간 수료한 자를 선발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 중 7곳의 지방자치단체만이 사서자격증 소지자를 우선 선발하고 있어 작은도서관의 도서관으로써의 정체성을 혼란시키고 운영자의 전문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부분임.
- 이에 도서관법에서 체계화된 작은도서관 운영인력 배치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각각의 환경을 고려하여 운영인력배치기준의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작은도서관 운영

- 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규정은 운영시간, 휴관, 자료대출, 입관제한, 자료의 보관 및 폐기, 위탁운영 등이 있음.
- 운영시간은 <표 9>와 같이, 주당 개관 일만을 명시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있으며, 주당 개관시간과 1일 개관시간을 모두 명시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있음.
- 운영시간을 명시한 28곳의 지방자치단체 중 19곳의 조례에서는 주5일 이상 개관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주6일 이상 개관을 명시한 곳은 8곳, 매일 개관 할 것을 명시한 곳도 1곳으로 나타났다.
- 1일 개관시간의 경우, 대부분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운영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1일 개관시간을 명시한 기초지방

자치단체 15곳 중 작은도서관의 의무 운영시간대를 명시한 조례는 3곳, 1일 10시간 이상 개관 할 것을 명시한 조례는 2곳, 1일 8시간이상 개관을 명시한 조례는 5곳, 1일 5시간 이상 개관을 명시한 조례는 3곳, 1일4시간이상 개관을 명시한 조례는 2곳으로 나타났다.

- 경상북도 영양군의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 중 1일을 포함하여 주 5일 이상 개관하여야 하며, 주중 최소 1일 이상은 야간(오후 7시 이후)에도 개관하여야 하며, 주중 40시간 이상 개관하여야한다고 상세하게 명시하고 있음.
- 휴관일에 대한 규정은 국경일과 정부 지정 공휴일은 휴관하며, 이외의 휴관일은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휴관할 수 있다고 대부분 명시하고 있음.
- 자료대출에 대한 규정은 대출증 발급자, 작은도서관회원, 지역주민에게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적지 않은 조례에서 자료 대출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지 않아 각 작은도서관 자체적으로 운영 규정을 명시하고 활용함으로써 같은 지역 내 작은도서관 사이에 관련 규정의 차이를 나타낼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대부분의 조례에서 입관 제한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도서관 내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자의 입관을 제한함으로써 타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음.
- 자료의 이관 및 폐기에 대한 조항을 규정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21곳으로 자료를 타 도서관에 이관 가능하여 자료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며, 훼손된 자료에 대해서는 폐기 또는 제적하는 등 자료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함.
- 자료의 이관 및 폐기에 대한 조항을 규정한 기초지방자치단체 21곳 중 15곳의 조례에서 자료 폐기와 제적의 범위를 제시하고 있으며,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3 이내로 하되 해당연도 장서구입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도서관 운영 환경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환경을 조성하되 운영에 대한 부분은 민간단체나 개인에게 위탁한다는 전제하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운영위탁에 대한 부분을 조례에 규정하고 있음.
- 위탁운영에 대한 조항은 위탁대상, 위탁기관의 선정, 선정기준, 위탁기관의 의무, 위탁기관의 운영예산 및 결산보고, 위탁의 철회, 기초지방자치단체(단체장)의 위탁기관 감독에 대한 조항을 상세하게 명시하고 있음.

- 위탁운영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지역주민을 위해 서비스하는 도서관의 공공성을 저해시키고 서비스의 질 저하, 운영인력의 전문성 저하와 고용의 불안정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 궁극적으로 작은도서관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음.

● 운영위원회

- 조례분석 대상 37곳 중 31곳에서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운영위원회에 대한 조항에는 운영위원회의 설치, 구성, 기능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고 있음.
-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대부분의 조례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작은도서관 직원으로 간사1인을 둘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운영위원 중 1/2 이상을 해당 지역주민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어 지역주민들과 밀착형 도서관으로써 작은도서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작은도서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음.
- 운영위원회의 기능으로는 작은도서관 운영 체계에 관한 사항, 자료의 접근 및 이용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자원봉사자 조직과 관리에 관한 사항, 작은도서관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작은도서관 도서 확보 방안에 관한사항,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표 9> 지방자치단체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 분석

지역		서울 강남구	서울 양천구	부산 중구	광주 서구	광주 남구	광주 북구	광주 광산구	대전 유성구	울산 중구
제정시기 (개정시기)		2000.12 (2010.08)	2009.05	2010.12	2009.11	2010.11	2008.07	2010.02	2011.03	2008.06
시설	면적				33m ² 이상	33m ² 이상	82m ² 이상	67m ² 이상	33m ² 이상	67m ² 이상
	열람석		15석 이상		6석 이상	6석 이상	15석 이상	15석 이상	6석 이상	15석 이상
자료	장서수		1,000권 이상		1,000권 이상	1,000권 이상	3,000권 이상	2,000권 이상	1,000권 이상	1,000권 이상
	연 증가						10% 이상			
인력			-사서자격증 소지자로 운영자 임명 -지역주민 중심의 자원 봉사단 조직		지역주민 중심의 자원봉사단 조직 및 적극 활용	지역주민 중심의 자원봉사단 조직 및 적극 활용	지역주민 중심의 자원봉사단 조직 및 적극 활용	지역주민 중심의 자원봉사단 조직 및 적극 활용	-자격요건을 갖춘 운영자 -지역주민 중심의 자원봉사단 조직	- 자원봉사자 포함 5인 이상 10인 이하
운영시간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월~토 개관	주5일 이상	매일 09~22시	주5일, 1일8시간 이상	주5일, 1일8시간 이상	-주5일 이상 -토,일 중 1일 개관	주5일 이상	-주5일 이상 -오전10~오후5 시 의무 개관	
회 원 위 의 조 치	인원수		10인내외		10인내외	10인내외	10인내외	10인내외	10인내외	10인내외
	임기		2년 / 연임 가능		2년 / 연임 가능	2년 / 연임 가능	2년 / 연임 가능	2년 / 연임 가능	2년 / 연임 가능	2년 / 연임 가능
	간사		1인		1인	1인	1인	1인	1인	1인

전국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및 운영활성화 방안 연구

지역		울산 북구	경기 파주시	경기 광명시	경기 안양시	경기 성남시	경기 하남시	강원 춘천시	강원 원주시	충남 천안시
제정시기 (개정시기)		2010.03	2008.11	2008.08	2011.01	2010.12	2009.12	2009.02	2009.7	2010.09
시설	면적	33m ² 이상	70m ² 이상	67m ² 이상	67m ² 이상	33m ² 이상	80m ² 이상	33m ² 이상	33m ² 이상	49.5m ²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20석 이상	15석 이상	15석 이상	6석 이상	10석 이상	15석 이상	6석 이상	10석 이상
자료	장서수	1,000권 이상	2,000권 이상	1,000권 이상	1,000권 이상	1,000권 이상	2,000권 이상	1,000권 이상	1,000권 이상	1,000권 이상
	연 증가		10% 이상				10% 이상			
인력		지역주민 중심의 자원봉사단 조직 및 적극 활용		자원봉사자 포함 6명 이상	자원봉사자 포함 8명 이상			자원봉사자 포함 4명 이상	운영자1인과 자 원봉사자 포함, 읍·면지역 3인 이상, 동지역 5인 이상	운영자1인과 자 원봉사자 포함, 읍·면지역 3인 이상, 동지역 5인 이상
운영시간				-주5일 이상 -토·일 중 1일 개관	-주5일 이상 -1일5시간 이상	-주5일 이상 -1일5시간 이상	토·일 중 1일 포함 주5일 이상 개관	-주5일 이상 -1일 4시간 이상	-주5일 이상 -오후1~오후5시 의무 개관	-주5일 이상 -1일4시간 이상
운영 위원 회	인원수		5인-10인	10인내	10인내	10인내	10인내외		11인내외	10인내
	임기		2년 / 연임가능	2년 / 연임가능	2년 / 연임가능	2년 / 연임가능	2년 / 연임가능		2년 / 연임가능	2년
	간사			1인	1인	1인	1인		1인	

지역		충남 연기군	전북 전주시	전북 익산시	전남 목포시	전남 순천시	전남 나주시	전남 화순군	전남 무안군	전남 영광군
제정시기 (개정시기)		2008.09	2010.02	2006.12	2008.10	2008.01	2009.04	2011.03	2009.10	2009.06
시설	면적	50m ² 이상	33m ² 이상	33m ² 이상	85m ² 이상	67m ² 이상	85m ² 이상	33m ² 이상	85m ² 이상	67m ²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6석 이상	10석 이상	15석 이상	15석 이상	6석 이상	10석 이상	10석 이상
자료	장서수		1,000권 이상	1,000권 이상	1,000권 이상	1,000권 이상	1,000권 이상	1,000권 이상	1,000권 이상	1,000권 이상
	연 증가				10% 이상					
인력					관리자1인, 유급 자원봉사자1인 이상	자원봉사자 포함 읍·면 지역 5인이 상, 동지역 8인 이상	운영자 1인, 자원봉사자 5인 이상	지역주민 중심 의 자원봉사단 조직 및 적극 활용	운영자 1인, 자원봉사자 5인 이상	자원봉사자를 포함 5인 이상 10인 이하
운영시간					주6일 이상 1일 10시간	주5일 이상 1일5시간 이상	주6일 이상	주5일 1일8시간 이상	주6일 이상	주6일 이상
운영 위원 회	인원수	11인이내		11인내외		10인이내	10인이내	10인이내	10인이내	10인이내
	임기	2년		2년		2년 / 연임가능	2년 / 연임가능	2년 / 연임가능	2년 / 연임가능	2년 / 연임가능
	간사	1인		1인		1인	1인	1인	1인	1인

전국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및 운영활성화 방안 연구

지역		전남 신안군	경북 포항시	경북 경주시	경북 영양군	경남 창원시	경남 사천시	경남 김해시	경남 거제시	경남 양산시	경남 고성군
제정시기		2009.01	2010.02	2010.10	2010.01	2010.07	2010.10	2008.06	2011.01	2009.01	2009.06
시설	면적		82m ² 이상		80m ² 이상	85m ² 이상	65m ² 이상	85m ² 이상	33m ² 이상		80m ² 이상
	열람석		20석 이상		20석 이상	15석 이상	15석 이상		6석 이상	15석 이상	10석 이상
자료	장서수		1,000권 이상		1,000권 이상	3,000권 이상	1,000권 이상	3,000권 이상	1,000권 이상	1,000권 이상	1,000권 이상
	연 증가				10% 이상	400권 이상			10% 이상		10% 이상
인력			자원봉사자를 포함 읍·면 지역5인 이상, 동지역8인 이상	운영자 1인, 자원봉사자 5인 이상	관리자 1인, 자원봉사자 1인 이상	관리자 1인, 유급자원봉사자1인 이상	관장1명, 자원봉사자 5인 이상	관장과 직원	관장 및 직원	자원봉사자 포함 읍·면 지역은 5인 이상, 동지역은 8인 이상	관리자 1인과 자원봉사자 1인 이상
운영시간			주5일 이상	주5일 이상	-토·일 중 1일 포함 주5일 이상 -주중40시간 이상	-토·일 중 1일 포함 주6일 이상 -1일 8시간 이상	주6일 이상	-토·일 중 1일 포함 주6일 이상 -1일 8시간 이상			-토·일 중 1일 포함 주5일 이상 -1일 10시간
운영위원	인원수	5인이내	10인내외	10인내외	10인내외	10인이내	10인이내	10인이내	10인이내	10~15인	10인이내
	임기	2년 / 연임가능	2년 / 연임가능	2년 / 연임가능	2년 / 연임가능	1년 / 연임가능	2년 / 연임가능	2년 / 연임가능	2년 / 연임가능	2년 / 연임가능	2년 / 연임가능
	간사	1인	1인	1인	1인	1인	1인		1인	1인	1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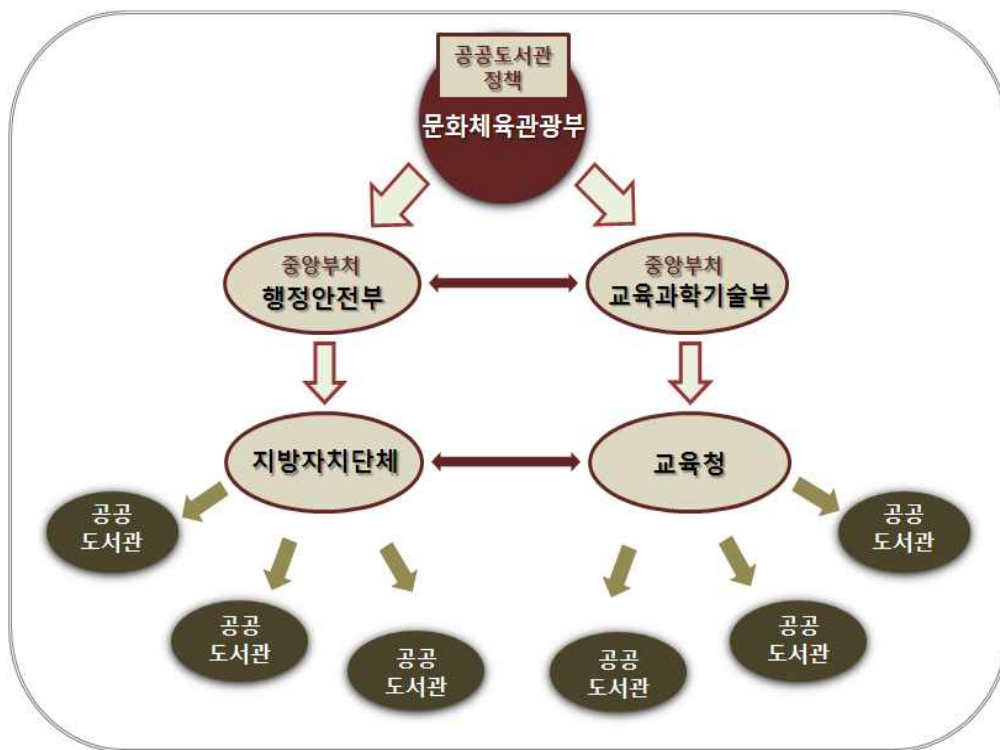
*2011년4월 기준으로 제정 및 개정된 기초지방자치단체 조례 분석

1.4 작은도서관 관련 행정체계

1.4.1 공공도서관 행정체계의 현황

□ 공공도서관 행정체계의 이원화

- 행정안전부와 교육과학기술부로 양분화된 정부 관할 주체
 - 1990년 문화부 설립되면서 문화부 주도 아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공공도서관을 설립·운영하게 되었으나, 기존 교육부 소속 공공도서관은 그대로 교육부에 남아 공공도서관은 교육부 소속과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이원화되어 있음.



[그림 2] 공공도서관의 이원화된 행정체계

- 현행 공공도서관은 복수의 중앙정부기관에 의하여 유사한 목적의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으로 전달되고, 이 두 지방단위기관을 통해 유사 대상에 유사 목적의 업무가

수행되고 있음.

- 공공도서관 관련 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도서관법에 따라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제도 및 종합계획수립업무를 진행함.

●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으로 이원화된 이행 주체

- 전체 공공도서관 중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공도서관 비율을 비교해 보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공도서관이 58.6%(356개관),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이 37.3%(227개관)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공도서관이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10>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공공도서관 행정체계 현황

광역지방자치단체	공공도서관 수			
	지자체	교육청	사립	계
서울특별시	40	22	7	69
부산광역시	11	12	4	27
대구광역시	2	12	2	16
인천광역시	8	8	0	16
광주광역시	8	5	0	13
대전광역시	14	2	0	16
울산광역시	4	4	0	8
경기도	98	10	9	117
강원도	22	22	0	44
충청북도	13	15	0	28
충청남도	26	20	0	46
전라북도	20	17	1	38
전라남도	30	20	0	50
경상북도	25	28	0	53
경상남도	21	24	0	45
제주특별자치도	14	6	1	21
전체	356	227	24	607

자료 : 윤희윤(2010), 공공도서관 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논의, 제1차 도서관정책포럼.

-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공도서관의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구광역시는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공도서관과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의 비중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서로 비슷하게 나타남.

- 교육인적자원부의 경우에는 공공도서관을 설립·운영할 근거법이 명확하지 않으며, 이러한 현실에서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의 상당수는 「평생교육법」에 근거하는 평생학습관으로 변경되어 운영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공도서관과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에 대한 근거법이 달라지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음.
- 지방공공도서관의 상호 정책협력 부재, 자료의 공동관리 및 보존 미비, 인적자원의 교류 부재, 문화프로그램의 중복적 운영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통합노력을 추진하여 왔으나 현재까지 이원적 운영체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공공도서관 행정체계 이원화의 문제점

● 행정비용의 낭비

- 행정비용은 당해 행정기능을 처리하기 위하여 요청되는 투입비용으로 행정비용의 증가와 불필요한 행정비용의 증가의 문제점이 있음.
- 행정서비스가 일반적으로 고용집약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유사업무에 대한 이원화된 행정체계는 인건비의 증가를 초래하여 투입비용이 과다해짐.
- 불필요한 행정비용 부과에 대한 측면으로 두 기관의 동일한 기능의 처리를 위한 협의·보고·감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이중적으로 발생함.

● 일관된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의 어려움

-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공도서관과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은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있어 서로 다른 근거법으로 일관된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음.
-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은 학교교육에 주안점이 있으므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도서관의 성격과 차이를 보임.
-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에 대한 예산지원에 소극적으로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의 인프라 구축의 부실을 초래함.
- 공공도서관 운영의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인력의 연수, 세미나 개최 등을 실시하는데 있어 소속기관의 차이로 동일 행정구역 내의 공공도서관 간에 활발한 참여를 저해함.

● 공공도서관 수요자의 정보기본권 및 서비스 제공 저해

- 행정체계의 이원화로 인해 도서관의 핵심역량인 장서개발과 정보서비스를 약화시킴으로써 대중의 정보기본권을 보장하는데 저해요인으로 작용함.
- 상호대차서비스 등 같은 지역 내 도서관에서 통합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이원화된 행정체계의 관리를 받는 공공도서관의 통합연계가 쉽지 않은 현실임.
- 공공도서관의 연장개관이나 야간개관에 있어 동일지역이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공도서관과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의 정책 이행에 서로 차이가 있어 도서관을 이용하는 수요자의 혼선을 초래함.
- 교차 휴관제, 각종 서비스, 문화프로그램의 운영, 세미나 개최 등에서 이원화된 행정체계 내에서 각각의 공공도서관의 교류와 협력이 어려운 실정임.

□ 공공도서관의 일원화된 행정체제로의 개선 시 발생될 문제점

- 문화관광부(2007)은 공공도서관 운영체계의 이원화를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이 이견이 없으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현실적으로 해결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시했음.
- 공공도서관의 이원화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력 및 재정의 문제를 선행적으로 해결해야함.
- 인력의 문제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직급으로 일반적으로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4급이 많으며, 3급에서 2급까지 상위직급에 폭넓게 분포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 할 경우 직급상의 차이를 어떻게 해소해야 할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함.
- 재정과 관련된 문제는 현재에도 공공도서관 지원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턱턱하지 못한 상황에서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을 이관 받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급증한 운영비를 감당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발생함.
- 다른 한가지의 문제점은 광역단위로 운영되던 교육청 소속 도서관을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할 것인지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이관 할 것인지의 문제가 제기됨.
- 이처럼 공공도서관 행정체계 이원화 문제는 원칙적으로 일원화가 바람직하나 현실적으로 그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선행연구에서 제시하는 개선안

● 공공도서관 행정체계 개편의 단계적 추진 방안

- － 문화관광부(2007)는 기존의 공공도서관 행정체계 개선대안의 근거와 장·단점을 정리하고 공공도서관 행정체계 개편의 방안으로 단계적 추진방안을 제시함.

<표 11> 기존의 공공도서관 행정체계 개선대안의 비교

	1안 지자체로 일원화	2안 현행유지 및 협력체계 구축	3안 단계적 일원화 여건구축
근거	· 지역주민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는 지자체의 의무 · 현재 도서관 설립은 지자체 중심으로 이루어짐 · 교육청 예산 부족	· 현실적 여건 미흡 · 교육청 소속의 근무조건이 우월하여 일원화는 근무조건 악화 의미	· 일원화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현실적 여건 미흡하므로 여건이 가능한 지자체부터 통합작업을 추진 및 시범적 운영
장점	· 행정체계 일원화를 통한 도서관정책 추진 효율화 및 내실화	· 일원화에 따른 혼란 방지	· 일원화 취지 실천하며, 혼란 방지
단점	· 현행제도상 제약요건으로 혼란 예산	· 기존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 해결 미흡	· 현실적 절충안 · 근본적 해결 미흡

자료 : 문화관광부(2007). 공공도서관 행정체계 일원화 방안 연구.

- － 문화관광부(2007)에서 제안하는 모델은 준비기, 성숙기, 일원화의 3단계를 거치는 단계적 추진방안으로 1단계 준비기에서는 현행 체계를 유지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상호간에 협력을 하는 단계이며, 2단계 성숙기는 단계적 일원화 및 시범 실시 단계이고 3단계 일원화는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하는 완성 단계임.
- － 준비기는 공공도서관 행정체계 일원화에 관한 합의, 협력관 제도의 신설, 협력관 업무를 감독 통제할 수 있는 지휘 감독 체계의 정립, 공공도서관 서비스에 관한 표준화된 모델 제시, 현재 운영 중인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에 대한 운영비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고정된 비율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소속 공무원들의 신분변화에 대한 준비, 통합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작업 등이 필요한 시기이며, 준비기는 2년 정도가 적당할 것이라고 제시함.
- － 성숙기 단계에는 시범사업의 실시를 통해 일원화 쟁점에 대한 총괄적인 정리의 단계로 인력의 이동과 신분변화, 직급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안, 재산권의 이전, 예산배분 및

집행의 문제 등과 관련된 구체화된 안을 통해 이를 실험하는 기간이며, 성숙기는 3년 정도가 바람직 할 것이라고 제시함.

- 일원화 단계에서는 성숙기에서의 결정사항을 바탕으로 일원화를 구현하는 시기로 예산 확보가 필요하며 행정체계 일원화 완료 후에도 시행 할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어야하는 단계라고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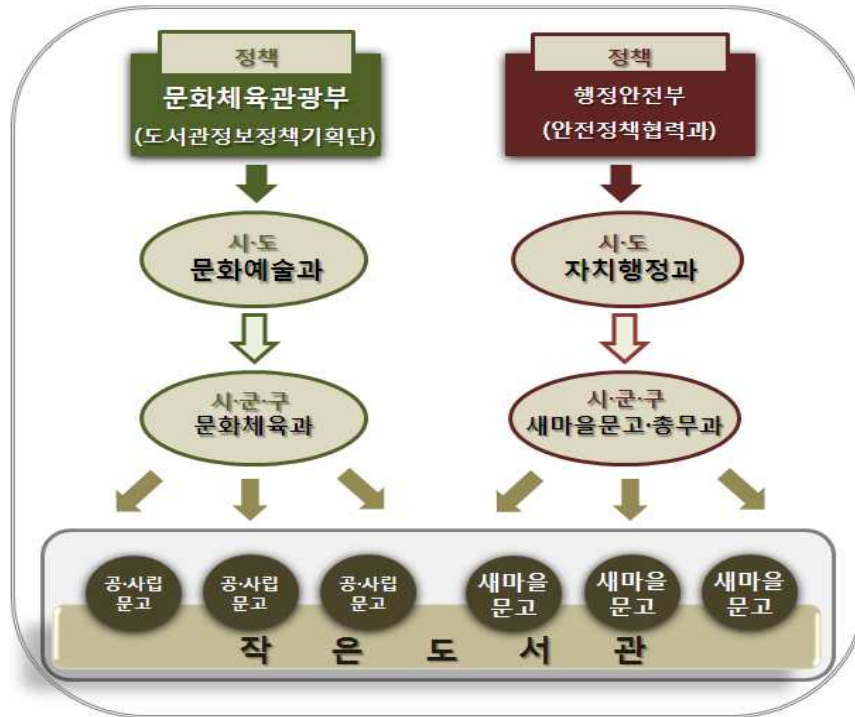
1.4.2 작은도서관 행정체계의 다원화

□ 작은도서관의 다양한 형태와 주관부서의 다원화

- 작은도서관은 공·사립 작은도서관, 학교도서관, 새마을문고, 교회문고, 가정문고 등 형태가 다양함.
- 도서관 관련사항은 대부분 도서관정책담당부서인 문화예술과에서 수행하나 일부 새마을문고는 새마을 관련업무로 자치행정과에서 수행함.
- 작은도서관은 형태가 다양한 만큼 작은도서관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서도 문화체육과, 문화관광과, 자치행정과, 교육지원과, 도서관과, 새마을문화과 등 다양함.
- 작은도서관 자체적인 운영도 중요하지만 작은도서관 운영을 지원·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작은도서관 등록과 지원을 담당하는 부서의 일원화는 시급한 문제임.

□ 작은도서관과 분리된 새마을문고 주관부서

- 새마을문고는 과거 농촌계몽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새마을운동조직과 연계·시작되어 그 행정적 관리를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고 있음.
- 새마을문고의 주관부서를 행정안전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함으로써 독서문화증진과 정보서비스 체제의 개선을 위한 일원화된 연계체제로의 정비가 필요함.
- 새마을문고는 공공도서관의 지역서비스 거점체제로서 강조되는 동일한 성질의 공공인프라로서, 선진화되는 공공도서관 서비스체제구축을 위해 새마을문고의 지원체계는 공공도서관에 편입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그림 3] 작은도서관 및 새마을문고 정책·행정 체계의 비교

1.4.3 작은도서관 관련 행정부서 분석

□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 행정부서

●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 행정부서의 형태

-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행정부서를 분류 해본 결과, 16개 시·도 모두 관청직속부서에서 작은도서관을 담당하는 것으로 파악됨.
- 행정부서의 범주는 ‘문화’, ‘교육’으로 분류하여 볼 수 있으며, ‘문화’ 범주의 행정부서에서 작은도서관을 관리하고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는 13곳, ‘교육’ 범주의 행정부서에서 작은도서관을 관리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는 3곳으로 나타났다.
- ‘문화’ 범주에 포함되는 부서는 대부분 문화예술과로 문화정책을 담당하는 하위부서에서 작은도서관을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문화’ 범주의 부서 중 도서관 관련 하위부서를 두고 있는 곳은 3곳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부서에서는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기반시설의 관리·운영을 도서관 및 작은도

서관을 담당하는 담당자가 함께 관할하고 있음.

- ‘교육’ 범주에 포함되는 부서는 교육정책과 등 다양하게 나타났으나 하위부서는 평생교육담당, 도서관정책담당으로 나타나 ‘문화’ 범주의 작은도서관 담당부서보다 도서관을 보다 집중적으로 담당하는 것으로 파악됨.
-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작은도서관을 세부적으로 관리하는 역할 보다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관내 작은도서관을 운영·관리하는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됨. 따라서 세부적으로 작은도서관 담당자를 두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팀’ 단위의 하위부서에 도서관 담당자를 두어 지역 내 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표 12> 광역지방자치단체 작은도서관 행정부서의 형태

분류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부서명		계	
관청 직속 부서	문화	서울특별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예술과	13	16
		부산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		
		인천광역시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		
		광주광역시	문화관광체육정책실	문화수도지원과		
		대전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		
		강원도	환경관광문화국	문화예술과		
		충청북도	문화여성환경국	문화예술과		
		충청남도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		
		전라북도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		
		전라남도	관광문화국	문화예술과		
		경상북도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		
		경상남도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스포츠국	문화정책과		
	교육	대구광역시	기획관리실	교육협력담당관	3	
울산광역시		기획관리실	교육혁신도시협력관			
경기도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 행정부서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 행정부서의 형태

- 230곳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강원도 철원군, 충청남도 공주시, 충청남도 청양군, 전라남도 진도군, 경상북도 상주시 등 5곳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는 작은도서관이 없어 담당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됨.(2011년 4월 기준)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행정부서를 분류해 본 결과, ‘관청 직속부서’,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로 나누어 짐.
- 관청 직속부서는 ‘실·국’, ‘과’, ‘팀·담당’으로 상·하 조직이 이루어져 있고 소속행정기관은 사업소 또는 직속기관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부행정기관은 읍면 단위 조직의 부서로 면 단위 기관에서 작은도서관을 관리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도 있음.
- ‘관청 직속부서’에서 작은도서관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는 159곳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소속행정기관’에서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는 65곳, ‘하부행정기관’에서 작은도서관을 관리하는 곳도 한군데 있는 것으로 파악됨.

<표 13> 기초지방자치단체 작은도서관 행정부서의 형태

관청 직속부서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159 곳	65 곳	1 곳

● ‘관청 직속부서’ 형태의 행정부서

- ‘관청 직속부서’는 ‘문화’, ‘교육’, ‘도서관’, ‘행정’, 4가지로 나누어 분류 할 수 있음.
- ‘문화’ 범주에 포함되는 행정부서는 문화체육과, 문화관광과, 문화공보과, 문화예술과 등이 있으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교육’ 범주에 포함되는 행정부서는 교육지원과, 평생학습과, 교육협력과 등이 있으며, 도서관법 상 도서관의 하위 범주에 속해 있는 작은도서관의 목적을 교육적인 측면으로 바라본 결과로 보임.
- ‘도서관’ 범주에 포함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는 2곳으로 ‘도서관과’, ‘평생학습도서관과’에서 작은도서관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 ‘행정’의 범주에 포함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2곳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작은도서관을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외에도 ‘문화’와 ‘교육’이 혼재되어 있는 부서와 ‘행정’과 ‘문화’, ‘행정’과 ‘교육’이 혼재되어 있는 부서에서 작은도서관을 담당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도 있음.
- 작은도서관 담당부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서는 ‘문화체육과’, ‘문화관광과’이며, 세부 담당으로 문화예술팀, 문화관광팀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들 담당부서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업무 뿐 만 아니라 관광업무나 축제, 영화, 공연장, 전통사찰 관리 등의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아 작은도서관에 대한 업무를 집중적으로 관할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가장 이상적인 작은도서관 관할 부서는 ‘도서관과’로 공공도서관 또는 시립도서관 등의 도서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도서관과’에서 작은도서관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현 상황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와 충청남도 서산시에서만 도서관과를 두고 있는 실정이며, 이 2곳의 지방자치단체 또한 하위조직으로 작은도서관을 담당하는 팀을 두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작은도서관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부서조직 중 중간조직에 도서관 업무를 담당하는 ‘도서관과’를 두고 하위조직에 ‘작은도서관팀’을 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형태의 작은도서관 관할 부서의 조직형태인 것으로 보임.

<표 14> 관청 직속부서 형태의 행정부서

분류	기초지방자치단체		계	
문화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양천구 용산구 중구 중랑구	13	107
	부산광역시	중구 동구 서구 사하구 동래구 남구 금정구 수영구 부산진구 북구 사상구	11	
	대구광역시	북구 수성구	2	
	인천광역시	중구 동구 강화군 옹진군 연수구 남동구	6	
	광주광역시	서구	1	
	대전광역시	서구 중구	2	
	울산광역시	중구	1	
	경기도	연천군	1	
	강원도	화천군 양양군 속초시 고성군 평창군 정선군 태백시 삼척시 홍천군 인제군	10	
	충청북도	청원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영동군 옥천군 보은군 충주시 단양군 증편군	10	

분류	기초지방자치단체		계	
	충청남도	금산군 논산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홍성군 보령시 계룡시 태안군	9	
	전라북도	남원시 완주군 진안군 부안군 순창군 고창군	6	
	전라남도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해남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완도군 신안군	12	
	경상북도	안동시 영천시 경산시 군위군 의성군 영양군 영덕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14	
	경상남도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합천군	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	
교육	서울특별시	강서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송파구 영등포구 은평구	10	31
	부산광역시	영도구 연제구 기장군	3	
	대구광역시	중구 동구 달서구	3	
	인천광역시	서구 남구 부평구	3	
	광주광역시	남구 광산구	2	
	울산광역시	북구	1	
	경기도	파주시 화성시 여주군 가평군	4	
	충청남도	당진군	1	
	전라남도	나주시	1	
	경상북도	영주시	1	
	경상남도	거제시 양산시	2	
	경상북도	영주시	1	
도서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1	2
	충청남도	서산시	1	
행정	서울특별시	종로구	1	2
	충청남도	연기군	1	
문화+교육	대구광역시	서구 남구	2	2
행정+문화	부산광역시	강서구	1	2
	경상북도	구미시	1	
행정+교육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1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1	
	인천광역시	계양구	1	
	울산광역시	남구 동구 울주군	3	
	강원도	횡성군 영월군 양구군	3	
	경상남도	창원시 사천시 남해군 거창군	4	

● ‘소속행정기관’ 형태의 행정부서

- ‘소속행정기관’은 사업소, 직속기관의 형태로 운영되고 이 또한 ‘도서관’, ‘교육’, ‘문화’로 나뉘며, 여기에 ‘시설’이 포함됨.
- ‘도서관’ 범주에 포함되는 행정기관은 시립·공공도서관과 도서관센터가 있으며, 시립·공립도서관에서 작은도서관을 관리하는 형태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교육’ 범주에 포함되는 행정기관은 평생교육원, 평생학습센터 등 추진단 또는 사업소의 형태로, ‘소속행정기관’의 경우 ‘문화’의 범주보다 ‘교육’의 범주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평생학습의 취지로 도서관(작은도서관)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문화’ 범주에 포함되는 행정기관은 문화센터 등의 사업소, 추진단으로 문화에 대한 부서의 업무를 사업소의 형태로 별도 운영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도 있음.
- ‘소속행정기관’ 형태의 행정부서에서도 ‘교육’과 ‘문화’가 혼재되어 있는 행정기관이 존재하며, 교육과 문화에 대한 행정업무를 추진하는 센터나 사업단의 형태로 작은도서관을 관리하고 있음.
- ‘시설’ 범주에 포함되는 행정기관은 주로 시설사업소의 형태로 존재하며, 도서관(작은도서관)에 대한 부분을 시설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관리·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작은도서관에 대한 소프트웨어적인 지원이나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임.

<표 15> 소속행정기관 형태의 행정부서

분류	기초지방자치단체		계	
도서관	광주광역시	북구	1	31
	경기도	군포시 부천시 과천시 의왕시 구리시 오산시 평택시 안성시 광주시 하남시 양주시 고양시 수원시	13	
	강원도	춘천시 원주시	2	
	충청북도	청주시 제천시	2	
	충청남도	천안시 아산시	2	
	전라북도	전주시 익산시 김제시 군산시	4	
	전라남도	강진군	1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3	
	경상남도	밀양시 김해시	2	
	제주특별자치도	사귀포시	1	
교육	대전광역시	동구 유성구 대덕구	3	19
	경기도	김포시 이천시 남양주시 양평군 의정부시 동두천시 광명시 안산시 시흥시 안양시 포천시 용인시	12	
	강원도	강릉시 동해시	2	
	전라남도	고흥군	1	
	경상남도	진주시	1	
문화	광주광역시	동구	1	7
	경기도	성남시	1	
	전라북도	정읍시 장수군	2	
	전라남도	광양시 영암군	2	
	경상북도	문경시	1	
교육 +문화	전라남도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3	3
시설	전라북도	무주군 임실군	2	5
	전라남도	장성군	1	
	경상북도	청송군	1	
	경상남도	통영시	1	

● ‘하부행정기관’ 형태의 행정부서

- ‘하부행정기관’의 형태는 읍·면 단위의 기관에서 작은도서관을 담당하여 관할하는 형태로 경상북도 청도군 1곳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형태이며, 예외적인 형태로 보임.
- 경상북도 청도군의 경우, 풍각면에 위치한 ‘풍각 작은도서관’ 1곳의 작은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어 이를 관리하는 곳이 청도군이 아닌 작은도서관이 위치하고 있는 풍각면의 주민생활지원담당부서인 것으로 파악됨.

<표 16> 하부행정기관 형태의 행정부서

분류	기초지방자치단체		계
	읍면단위	청도군	
	경상북도		1

2. 통계적 기반

2.1 작은도서관 통계조사의 내용 분석

□ 기존의 작은도서관 통계 생산 방식

●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도서관통계’

- 1955년 한국도서관통계가 단행본으로 발행되기 시작함.
- 2006년 이후 도서관통계는 폐간되고, 도서관연감에 포함되어 수록됨.
- 2006년 도서관연감에 제시되는 문고에 관한 통계항목은 이동도서관 관련 항목(차량수, 이용자수, 이용책수)과 순회문고 관련 항목(대수, 이용책수) 등의 5개 항목임.
- 이 중 시의 예산지원을 받아 행정안전부의 새마을문고중앙회에서 위탁 관리하는 이동도서관은 이용자수 및 이용책수에 대한 자료를 확보할 수가 없어서 차량 대수만 통계에 포함되고, 교육청관할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이동도서관 및 순회문고는 이동도서관수, 이용자수, 이용책수의 통계가 산정되어 형평성이 부족한 통계가 산출되어왔음(한국도서관협회, 2006).

● 국가 도서관통계시스템의 작은도서관(문고)통계

- 2008년 도서관통계시스템이 만들어짐.
- 작은도서관 통계조사를 위한 항목은 설립주체/운영주체, 장서현황, 시설 및 설비, 인력현황, 예산현황, 이용현황, 공공도서관과 연계, 공공도서관 행정기관 교육청 지원, 국가도서관 통계시스템 이외의 항목 등 7개 영역 56개 항목으로 구성됨

<표 17> 국가도서관통계의 작은도서관 통계 지표와 항목

영역	항목	소항목
도서관 기본 정보	도서관명	
	설립주체	
	운영주체	
	시설유형 및 보유형태	시설유형 보유형태
	주소	
	개관년도	
	전화번호 및 FAX	
	홈페이지주소	
	이메일주소	
	분류 및 편목 규칙	분류 체계 목록 규칙 저자 기호
소장 자료	도서관 자료 현황	도서자료(인쇄)
		비도서
		연속간행물(인쇄)
시설 및 설비	면적(㎡)	도서관 건물연면적
	좌석수	총 좌석 수
	설비	컴퓨터 수
	도서관리프로그램	도서관리프로그램보유
인적 자원	직원	정규직
		자원봉사자
		사서자격증 소지자수
		교육받은직원수
		직원교육시간
예산 및 결산	예산지출내역	인건비 자료구입비 기타운영비
	예산수입내역	행정기관 지원 자부담(운영자 자체부담)
	개관일수 및 개관시간	개관 일수 주당 평균 개관시간
	회원등록자수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구 성원수	회원등록자수 이용자(방문자)수
이용 및 이용자	대출권 수 / 열람권 수 운영프로그램	대출권 수 문화프로그램수
	공공도서관과 연계	홈페이지 공유 상호대차 공동수서/정리 분관여부
		인력
		예산
		지원장서 문화프로그램
정보 서비스	도서관리프로그램보유	도서관리프로그램

□ 작은도서관 통계 자료의 문제점

- 전국의 작은도서관의 실제 규모 파악이 어려움
 -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도서관의 일선에서 작은도서관의 등록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음
 - 전체 작은도서관의 범위나 수량 파악이 미흡함
- 자료의 오류 및 신뢰도 문제점
 - 2008년도 통계시스템 분석 결과에 의하면, 작은도서관 통계의 미응답률은 91.5%에 달함. 응답되는 항목도 기본정보를 제외하고, 총괄표에 14개항목이 산출되고 있음(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9).
 - 가장 중요한 통계항목의 하나인 장서통계도 입력데이터의 오류, 현행화의 부진 등으로 현재 총괄표에 기입되고 있지 않음.
 - 작은도서관에서 활동하는 인력이 자원봉사자 혹은 공공근로자인 경우도 많으며, 특히 공공근로자의 경우 3개월도 못되어 이직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여 도서관 통계항목 및 용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통계의 필요성을 몰라서 응답이 없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
 - 결국, 국가통계시스템의 작은도서관 통계는 문항마다 데이터 신뢰도의 문제점이 있음.

	공공	대학	전문	작은도서관 (문교)	장애인	교도소
도서관수	644개	528개	619개	3,012개	37개	46개
평균 무응답률	0.9%	58.5%	71.9%	91.5%	90.7%	68.8%
분석항목	- 도서관 서비스 - 지원기관 - 소장자료 - 시설 및 설비 - 인적자원 - 예산 - 이용 및 이용자 - 장애인 - 어린이서비스 - 전자서비스	- 소장자료 - 시설 및 설비 - 인적자원 - 예산 - 이용 및 이용자 - 전자서비스	- 소장자료 - 시설 및 설비 - 건물 연면적 - 좌석수 - 인적자원 - 예산 - 이용 및 이용자 - 대출자수 - 대출권수	- 소장자료 - 도서자료 - 시설 및 설비 - 건물 연면적 - 좌석수 - 인적자원 - 직원수 - 예산 - 이용 및 이용자 - 대출자수 - 대출권수 - 대출권수	- 소장자료 - 시설 및 설비 - 인적자원 - 직원수 - 이용 및 이용자 - 방문자수 - 이용자수	- 소장자료 - 도서자료 - 시설 및 설비 - 건물 연면적 - 인적자원 - 직원수 - 이용 및 이용자 - 대출권수

자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9). 도서관 통계자료를 이용한 의미분석 연구

[그림 4] 국가 도서관 정보시스템의 조사항목 및 조사결과

□ 작은도서관 관련 실태조사 항목 분석

● 자료

- 2006년 국립중앙도서관 작은도서관진흥팀 ‘전국문고 현황조사’, 2008년 새마을문고중앙회 ‘새마을문고 운영실태조사표’, 2011년 광주광역시(서구)의 ‘작은도서관 현지실태 확인 조사표’를 분석함

● 설립주체와 운영주체

- 기본정보인 설립주체와 운영주체에 대한 항목은 국립중앙도서관(2006), 광주광역시(2010) 등 3개 현황조사 항목에 포함되어 있음.

● 장서현황

- 장서현황 파악을 위해서 도서자료(인쇄)수, 비도서수, 연속간행물 종수 등의 항목 유무를 확인하였음.
- 도서자료(인쇄)수 항목은 4개 통계조사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비도서수는 국립중앙도서관(2006), 새마을문고중앙회(2008), 광주광역시(2010)등 3개 현황조사에서 다루고 있음.
- 연속간행물 종수는 국립중앙도서관(2006), 광주광역시(2010) 등 2개 현황조사에 포함되어 있음.

● 시설 및 설비

- 시설 및 설비 영역에서는 건물 연면적, 좌석수, 컴퓨터수, 관리프로그램사용여부, 업무용 컴퓨터수/이용자용 컴퓨터수 등의 항목을 살펴봄. 연면적, 열람석 등의 항목은 3개 현황조사에서 모두 다루고 있음.
- 관리프로그램 사용여부는 국립중앙도서관(2006), 새마을문고중앙회(2008)등 2곳에서 다루고 있으며, 사용프로그램명에 대해서는 국립중앙도서관(2006), 새마을문고중앙회(2008)등 2곳에서만 포함하고 있음.
- 컴퓨터 수에 대한 항목도 국립중앙도서관(2006), 광주광역시(2010) 등 2개 현황조사에 포함되며, 구체적으로 업무용 컴퓨터수와 이용자용 컴퓨터수를 파악할 수 있는 항목은 국립중앙도서관(2006)의 현황조사로 확인되었음.
- 즉, 기존 현황조사에서 연면적, 좌석수 등 기본시설 파악에 대한 항목은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관리프로그램이나 컴퓨터사용에 대한 항목은 제외된 경우도 있음.

● 인적자원

- 인적자원에 대한 항목으로는 도서관장의 사서자격여부, 정규직, 자원봉사자수, 사서자격증소지자수 등을 들 수 있음.
- 정규직과 자원봉사자 수에 대한 항목은 3개 현황조사에서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음. 사서자격여부에 대해서는 새마을문고 중앙회(2008)을 제외한 2개 현황조사에서 다루고 있음.
- 도서관장의 사서자격여부에 대해서는 새마을문고 중앙회(2008)와 광주광역시(2010) 등 2개 현황조사에서만 포함하고 있음.

● 예산 및 결산

- 예산현황에서는 지출내역과 수입내역으로 크게 분류한 후, 지출내역에는 인건비, 자료구입비, 프로그램운영비, 기타운영비 등의 항목과 수입내역에는 행정기관지원, 회비·이용료, 후원금, 자부담 등의 항목을 할 수 있음.
- 지출내역 중 자료구입비와 기타운영비에 대한 항목만 3개 현황조사 모두 포함하고 있음.
- 수입내역 중에는 후원금과 자부담만을 3개 현황조사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음.
- 인건비(지출내역)항목과 행정기관지원, 회비·이용료 항목은 광주광역시(2010)를 제외한 2개 현황조사에 포함되어 있었음.

● 이용 및 이용자

- 이용현황에 대한 항목으로는 개관일수, 주당개관시간, 휴관일, 회원수, 이용자수, 대출자수, 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수, 대출권수, 열람권수, 문화프로그램(독서실, 공부방/학습지도, 프로그램 수)를 꼽을 수 있음.
- 이 중 개관일수, 주당개관시간, 이용자수, 대출권수 등의 항목은 3개 현황조사에서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음.
- 도서관에 등록되어 있는 회원수는 새마을문고중앙회(2008)를 제외한 2개 현황조사에서 포함하고 있음.
-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항목을 살펴본 결과, 프로그램수를 파악하려는 항목은 새마을문고 중앙회(2008), 광주광역시(2010) 등 2개 현황조사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독서실, 공부방/학습지도 등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한 항목은 다루고 있지 않아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파악은 어려운 것으로 예상됨.

● 공공도서관과의 연계

- 공공도서관과의 연계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항목은 홈페이지 공유, 상호대차, 공동수서/정리, 분관여부 등을 꼽을 수 있음.
- 분석결과, 홈페이지 공유에 대한 항목은 3개 현황조사에서 모두 다루고 있지 않아 홈페이지의 연계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움.
- 상호대차, 공동수서/정리, 분관여부 등의 항목은 국립중앙도서관(2006) 현황조사에서 다루고 있음.

● 공공도서관/행정기관/교육청의 지원

- 공공도서관/행정기관/교육청에서 받고 있는 지원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항목으로 인력, 예산, 장서, 문화프로그램 등의 항목이 있음. 4가지 항목 모두 국립중앙도서관(2006) 현황조사에서 다루고 있음.

● 기타 항목

- 이외에, 설립신고 여부, 직원과 자원봉사자의 교육여부와 교육시간, 기타 협력기관과의 교류 등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음.

● 통계조사의 주요 항목

- 국가 도서관통계시스템의 작은도서관(문고)통계조사와 주요 실태조사 3개의 통계지표 항목을 분석한 결과, 2회 이상 사용된 항목 나타내면 다음과 같음.

■ 작은도서관 통계조사의 주요 항목

- 기본정보 : 설립주체, 운영주체
- 장서현황 : 도서자료(인쇄)수, 비도서수, 연속간행물 종수
- 시설 및 설비 : 건물 연면적, 좌석수, 컴퓨터수, 관리프로그램사용여부, 이용자용 컴퓨터수, 관리자용 컴퓨터수,
- 인적자원 : 도서관장의 사서자격여부, 정규직, 자원봉사자수, 사서자격증소지자수
- 예산 및 결산 : 인건비, 자료구입비, 기타 운영비, 행정기관지원, 회비 및 이용료, 후원금, 자부담금, 프로그램운영비
- 이용 및 이용자 : 개관일수, 주당개관시간, 회원등록자수, 이용자수, 대출권수, 열람권수, 문화프로그램수
- 공공도서관과 연계 : 상호대차, 공동수서/정리, 분관여부, 지원(인력, 예산, 장서, 문화프로그램)

<표 18> 작은도서관 관련 통계조사 항목 비교

대항목	도서관 통계시스템 항목	국립중앙 도서관 (2006)	새마을문고 중앙회 (2008)	광주 광역시 (2010)
설립주체 운영주체	설립주체	0		0
	운영주체	0		0
장서현황	도서(인쇄)	0	0	0
	비도서	0	0	0
	전자자료	0		
	연속간행물	0		0
	증가수 도서(인쇄) 비도서 전자자료 연속간행물			
시설 및 설비	연면적	0	0	0
	열람석	0	0	0
	관리프로그램사용여부	0	0	
	프로그램명	0	0	
	컴퓨터수	0		0
	업무용 컴퓨터 수/ 이용자용 컴퓨터 수	0		
인력현황	관장(운영자)자격증		0	0
	정규직	0	0	0
	시간제	0		
	자원봉사자	0	0	0
	기타	0		
	총인원	0		
	사서자격증	0		0
예산현황	지출 내역	인건비		0
		자료구입비	0	0
		프로그램운영비	0	
		기타운영비	0	0
	수입 내역	행정기관지원	0	
		회비·이용료	0	
		후원금	0	0
		자부담	0	0
이용현황	개관일수	0	0	0
	주당개관시간	0	0	0
	휴관일	0		
	회원수	0		0
	이용자수	0	0	0
	대출자수			
	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원 수			0
	대출권수	0	0	0
	열람권수	0		0
	문화 프로 그램	독서실 공부방/학습지도 프로그램 수	0	0
공공 도서관과 연계	홈페이지 공유			
	상호대차	0		
	공동수서/정리	0		
	분관여부	0		
공공도서관 행정기관 교육청 지원	인력	0		
	예산	0		
	장서	0		
	문화프로그램	0		
국가도서관 통계시스템 이외의항목	설립신고여부		0	
	목록유무			0
	운영규정/대장			0
	유사자격증	0		
	기타 협력기관	0		
	교육인원 /시간	0		

2.2 작은도서관 운영 평가 지표

□ 기존의 작은도서관 관련 운영 평가지표

● 자료

- 작은도서관 관련 운영평가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경우는 문화관광부나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제안한 4개와 서울시를 비롯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하고 있는 4개가 있음

<표 19> 기존의 작은도서관 운영 평가 지표

평가지표	연구(제정) 기관	주요 내용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2009) *	문화관광부	5개 관종 33개 영역 145개 평가지표를 제시하고 있음
2006작은도서관 조성평가(2006)	국립중앙도서관	작은도서관의 생활권 공공문화기반시설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키기 위해서 전국 58개의 도서관을 방문하여 실태를 평가하고 설문조사를 하였음.
작은도서관 분관시스템 구축방안(2006)	국립중앙도서관	작은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분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작은도서관, 공공도서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함.
생활밀착형 사립 작은도서관의 연계·활성화 방안연구(2010)	국립중앙도서관	사립 작은도서관의 현황 파악을 위해 국가 도서관통계 시스템의 작은도서관통계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실시한 정보화 실태조사를 이용하여 현황분석함.
서울특별시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대상 선정평가 기준(2010)	서울시	5개 분야 18항목을 선정하였음.
파주시 사립문고 평가기준표(2005)	파주시	문화관광부와 경기도에서 사립문고에 대한 자료구입비 지원 사업을 위한 객관적 평가기준으로 제정됨
고양시 사립 작은도서관 평가기준(2010)	고양시	우수 작은도서관을 선정하여 도서를 지원하기 위해 현황파악과 실사조사를 진행함.
순천시 작은도서관을 조성하기 위한 위치 선정기준(2010)	순천시	‘도서관의 도시’ 순천을 완성하고자 조성사업을 위한 선정기준을 7개분야 7개 항목을 조사함.

* 이 지표는 공공도서관 소그룹 운영평가를 위한 자료이지만, 작은도서관 관련 지표로 검토함

● 설립주체와 운영주체

- 설립주체를 평가기준으로 사용한 지표는 분관연구(2006)와 서울시(2011)가 있음. 운영주체를 평가항목으로 다룬 평가지표는 조성평가(2006)와 분관연구(2006)가 있음.
- 현황조사에서 대다수 다루고 있던 설립주체/운영주체에 대한 항목을 과반수가 넘는 평가지표에서 배제하고 있음.

● 장서현황

- 장서현황 중 도서수를 7개 평가지표에서 평가항목으로 삼고 있으며, 도서증가수에 대한 항목도 문화관광부(2009), 연계방안(2010), 파주시(2004), 고양시(2010) 등 4개 지표에서 다루고 있음.
- 비도서수와 연속간행물 수도 8개 평가지표 중 4개 평가지표에서 다루고 있음. 일반도서뿐 아니라, 비도서와 연행간행물도 주요 지표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시설 및 설비

- 시설과 설비에 대한 항목은 현황조사 항목과 유사한 경향을 띠고 있음. 연면적, 열람석수 등 시설에 대한 항목은 반수 이상의 평가에서 다루고 있는 반면, 설비에 대한 항목은 관리프로그램사용여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인적자원

- 인력에 대한 평가에서는 정규직, 자원봉사자, 사서자격증 소지 여부 등의 항목을 통해 평가하고 있음.

● 예산 및 결산

- 예산현황에서는 지출영역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자료구입비 항목을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음.
- 수입영역에서는 회비·이용료, 후원금, 기부금 등의 항목을 4개 이상의 평가지표에서 다루고 있음.

● 이용 및 이용자

- 개관일수는 7개 평가지표에서 포함하고 있어 이용현황에 대한 주요지표로 사용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음.
- 이용자수와 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원 수는 각각 4곳에서 다루고 있음
- 대출도서수나 문화프로그램 강좌수 역시 이용현황을 알아보기 위한 지표로 널리 사용

하고 있음.

● 공공도서관 관련 항목

- 공공도서관과의 연계 또는 지원에 대한 항목은 모두 2-3개 평가지표에서만 다루고 있음. 특히 조성평가(2006), 연계방안(2010) 등 특수목적에 띄고 있는 평가지표에만 포함되어있어 아직 공공도서관과의 협력관계는 작은도서관 현황에서 소홀히 다루어진 것으로 파악됨.

● 기타 항목

- 그밖에 홍보에 대한 지표는 5개 평가지표의 항목으로 포함되고 있음. 작은도서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운영활성화로 직결되기 때문에 주요평가지표로 사용된 것이라 사료됨.

<표 20> 기존의 작은도서관 운영 평가지표의 항목 비교

대항목	도서관통계시스템 항목	문화 관광부 (2009)	조성 평가 (2006)	분관 연구 (2006)	연계 방안 (2010)	서울시 (2011)	파주시 (2004)	고양시 (2010)	순천시 (2010)
설립주체	설립주체			0		0			
운영주체	운영주체		0	0					0
장서 현황	도서	0	0	0	0	0	0	0	
	비도서		0	0	0		0		
	연속간행물		0	0	0		0		
	온라인콘텐츠			0	0				
	증 가 수								
	도서	0			0		0	0	
	비도서				0				
	연속간행물				0				
	전자자료	0			0				
시설	연면적		0	0	0	0	0	0	0
	열람석수			0	0		0		0
전산 장비	관리프로그램사용여부			0	0	0		0	
	프로그램명								
	업무용 컴퓨터 수							0	
	이용자용 컴퓨터 수			0					
인력 현황	관장사서자격증	0					0		
	정규직	0	0	0	0	0	0	0	
	겸직							0	
	자원봉사자		0	0	0	0	0	0	0
	기타			0				0	
	총인원	0	0						
	자격증소지자	0	0	0	0	0	0	0	

대항목	도서관통계시스템 항목		문화 관광부 (2009)	조성 평가 (2006)	분관 연구 (2006)	연계 방안 (2010)	서울시 (2011)	파주시 (2004)	고양시 (2010)	순천시 (2010)
예산 현황	지 출	총지출			0	0		0		
		인건비			0	0		0		
		자료구입비	0	0	0	0		0		
		프로그램운영비			0			0		
		기타운영비			0	0		0		
	수 입	총수입			0					0
		행정기관지원		0	0					
		회비·이용료			0	0	0		0	
		후원금		0	0	0		0	0	
		자부담			0	0	0	0	0	0
이용 현황	개관 사항	개관일수	0	0	0	0	0	0	0	
		주당개관시간			0	0	0			
		휴관일			0					
	이 용 자 사 항	회원수		0		0				
		이용자수		0	0	0		0		
		대출자수		0		0				
		도서관 운영위 원회 구성원 수	0			0		0		0
	서 비 스 사 항	대출권수	0	0	0	0	0	0	0	
		열람권수			0	0		0		
		독서실			0					
		공부방/학습지도			0					
		문화프 로그램	0	0	0	0	0	0	0	
		강좌 수 참여인원								
공공 도서관과 연계	홈페이지 공유			0	0					
	상호대차		0	0		0				
	공동수서/정리									
	분관여부		0							
공공 도서관 지원	인력			0		0				
	예산			0		0				
	장서			0		0				
	문화프로그램			0		0				
국가도서관 통계시스템 이외의항목	목록구비					0			0	
	봉사대상인구		0		0					0
	자원봉사자교육		0			0				
	유사자격증소유								0	
	타기관과의 협력		0	0						
	홍보		0	0			0	0	0	
	안내판							0	0	

● 평가지표의 주요 항목

- 현재 도서관통계시스템을 기준으로 사용된 항목을 표시하였을 때, 4회 이상 사용된 항목은 다음의 16개 항목임.
- 이 중 15개 항목이 통계조사의 주요항목으로 선정된 항목과 중복되고 있음.

■ 도서관통계시스템 기준, 4회 이상 사용된 항목

- 장서현황 : 도서자료(인쇄)수, 연간증가 도서수
- 시설 및 설비 : 연면적, 좌석수
- 인적자원 : 직원수, 상근자수, 자원봉사자수, 사서자격증소지자수
- 예산 및 결산 : 자료구입비, 회비, 자부담금
- 이용 및 이용자 : 개관일수, 대출권수, 문화프로그램수, 대출자수
- 정보서비스 : 도서관리프로그램
- 이외에 통계시스템에는 없는 항목이지만 제안되는 운영위원회 구성원수, 홍보여부, 홍보사항(여부, 방법, 예산), 현판, 운영규정 항목임.

3. 작은도서관 네트워크

3.1 국내 작은도서관 운영 사례

<표 21> 작은도서관 운영 유형

	관주도형	민·관협력형	민간주도형
정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주도적으로 공공도서관 직영의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하는 형태	지역협의체 혹은 민간시민단체에 설립 및 운영을 위탁하는 형태	개인이 설립하여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운영하는 형태
특징	▶민간의 작은도서관 활동이 부진한 지역에 적합 ▶자체운영비확보가 가능한 곳을 우선 선정하여 운영하며, 필요시 실무담당자를 파견하는 방식으로 인력지원 ▶작은도서관 초기 조성단계에 적합한 모델	▶지역사회 시민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 ▶민간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지역 공공도서관서비스망 확충 ▶사업단체와 민·관파트너십 형성이 사업의 성패 좌우 ▶기존의 공사립문고를 작은도서관 네트워크로 구성 할 수 있는 이점	▶개인의 열정으로 시작하여 지역주민의 공감을 얻어 물품기부와 바자회, 후원등 주민의 성원으로 지역도서관으로 기능 ▶안정적인 재정확보가 필요 ▶지역주민들이 직접 수서목록을 선정하고 운영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 필요
장점	▶공간 확보가 용이한 공공시설에 설치함으로써 접근성이나 사업의 연속성에 유리	▶분관적 지원·협력의 서비스거점으로 개발하는데 유리 ▶지역운동가들의 참여를 통한 사회적 홍보 극대화	▶사회통합적인 순기능으로 지역사회 화합에 기여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인하여 높은 애착심
단점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에 소홀해 질수 있음 ▶작은도서관 관리운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의존비용 과중 ▶관리운영자의 역량에 따라 작은도서관 존속성 차이	▶시민단체의 사업목적에 따라 운영자금 사용처의 변질 우려 ▶작은도서관 운동의 본래 취지 변질 우려	▶공간이나 재정 확보의 어려움 ▶인력의 전문성 확보의 어려움
사례	▶순천시	▶부천시 ▶창원시	▶느티나무도서관 ▶모퉁이도서관

□ 관주도형

● 주요 내용

- 관주도형 모델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지역 내 공공도서관을 통하여 공립 작은도서관을 설립 및 운영하는 형태를 말함.
- 작은도서관의 보급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고 민간에서 작은도서관 활동이 부진한 지역에 적합한 형태임.
- 기초지방자치단체 행정지역 내 공공도서관과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을 우선으로 자체 운영비 확보가 가능한 지역에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진행함.
- 마을회관, 아파트 관리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등에 설치하고 마을부녀회(청년회), 아파트부녀회, 주민자치위원회 등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며, 실무담당자를 선발하여 파견하는 방식으로 인력을 지원함.
- 지역 주민의 참여와 관심이 높아지면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에 대한 활성화지원으로의 초점의 전향이 필요함.
- 작은도서관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서 작은도서관 초기 조성단계에 적합한 모델임.
- 공간 확보가 용이한 공공시설에 설치함으로써 접근성이나 사업의 연속적 진행에 유리함.
- 공립 작은도서관에 지원을 치중하다보면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에 소홀해 질 수 있는 단점이 있음.
- 작은도서관 관리운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의존비용이 높아 지방자치단체 및 단체장의 많은 관심이 없을 시 단기적인 지원으로 끝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 작은도서관 관리운영자의 역량에 따라 존속성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순천시 사례

- 2003년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본부와 MBC가 주축이 되어 추진했던 기적의 도서관 프로젝트의 최초 수혜 도시임.
- 기적의 도서관 개관으로 지역 전체에 퍼진 독서 열기에 부응하고 순천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작은도서관 사업이 시작됨.
- 시립도서관과의 접근성이 좋지 않은 읍·면·동 지역에 대하여, 작은도서관 자체 운영비 확보가 가능한 지역과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 중 공간과 자체운영비 부담이 가능한 곳을 작은도서관 설치 대상으로 선정함.

<표 22> 순천시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운영시스템

지원내용	세부사항
공간확보 및 관련법규	○ ‘순천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에서 작은도서관에 대한 관리 및 후원에 대한 사항을 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 ○ 부녀회, 청년회, 아파트자치위원회 등 기존 문고를 리모델링하거나 특징이 있는 공간에 작은도서관을 조성 - 낙안읍성 내에 위치한 ‘낙안읍성 작은도서관’은 2006년 5월 개관, 35평 규모의 초가집을 활용, 시비 29,976,000원의 예산으로 이동방, 청소년 어른방, 안내방 등의 공간 구성
예산지원	○ 자원봉사자 인건비와 자료구입비, 도서관리프로그램비 지원 - 매월 프로그램 운영비 10만원을 지원, 자료구입비는 일괄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나 평균 1년에 1개소당 300-500만원 수준, 자원봉사자 인건비 월 30-50만원, 기본 운영비(전기세, 냉난방비, 공과금 등)는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기관에서 자체 부담
도서관리프로그램 지원	○ 관내 학교 및 기관 단체 102개소의 자료를 통합하여 검색을 위해 2006-2009년까지 통합도서검색시스템 구축계획 ○ 2006년 6월에 통합도서관리시스템 구축 원가계산용역을 완료, 작은도서관 도서관리프로그램 설치를 위한 사업비 16,500만원의 복권기금을 확보 ※ 현재의 시립도서관 전산망인 KOLAS II를 기본으로 한 웹기반의 도서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립도서관 3개소, 작은도서관 24개소 연계 추진, 시립도서관 통합도서관리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학교도서관 70개소에 통합도서관리 프로그램 구축계획. 이후 관내 대학도서관과의 상호대차시스템을 위해 도서관리프로그램 데이터를 웹기반에서 공유하는 시스템 계획
자료지원	○ 자료구입비 지원 ○ 3개 작은도서관 대상으로 이동도서관 차량 시범운영, 시립도서관 자료 가운데 200-300권의 장서 순회, 대출 서비스 제공 ※ 순천시의 작은도서관에는 전문사서가 배치되어 있지 않아 직접적인 장서개발이 이뤄지지 않으나, 작은도서관 운영 자치회에서 도서를 구입할 때 자료구입목록의 적정성과 구입방법, 자료의 정리방법 등에 있어 시립도서관 사서의 자문과 협조
전문사서지원	○ 시에서 직접 모집공고, 독서지도사, 사서자격증 소지자 우선 공모·선정 배치 ○ 시립도서관 전문사서들은 이들에 대한 자료정리방법, 도서관운영에 관한 전반사항에 대한 실무 교육지원 ○ 작은도서관 운영자에 대한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운영상의 문제점 개선

자료 : 국립중앙도서관(2006), [작은도서관 분관시스템 구축방안]에서 재구성

- 마을회관, 아파트 관리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등에 작은도서관을 설치하고 마을부녀회(청년회), 아파트부녀회, 주민자치위원회 등이 자체적으로 운영토록 하였으며, 작은도서관의 실무를 담당할 자원봉사자를 공모하여 파견하는 형태로 운영 지원함.
- 부천시나 창원시와 같이 민간단체의 관심과 성원에 작은도서관 운동이 전개되는 형태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의지와 개입으로 작은도서관을 전개하고 운영에 있

어 지역주민들에게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한다는 점에서 타 지역과 다른 특색이 있음.

□ 민·관협력형

● 주요 내용

- 민·관협력형 모델은 지역협의체 혹은 민간시민단체에 설립 및 운영을 위탁하는 형태를 말함.
- 작은도서관에 관심이 있는 지역사회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
- 작은도서관의 도서관으로써의 역할과 지리적 접근성 및 운영상의 지역주민 참여 가능성 등의 장점을 부각하여 민간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지역의 공공도서관 서비스망을 확충할 수 있음.
- 민·관 파트너십 형성에 있어서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단체는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의 기본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작은도서관 사업의 성패에 중요한 요인이 됨.
- 지역 내 공공기관이나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사업장에서 운영하는 기존의 공사립문고를 작은도서관 네트워크로 구성 할 수 있는 특징이 있음.
- 사립 작은도서관보다 시설 및 운영 규모 면에서 공공도서관의 분관 형태로 지원 및 협력의 서비스거점으로 개발하는데 유리함.
- 지역사회의 여론주도층인 지역운동가들의 참여를 통해, 작은도서관 활동의 사회적 홍보를 극대화 할 수 있음.
- 지역사회 내 시민단체의 사업목적에 따라 운영자금의 사용처가 불투명해질 우려가 있음.
- 시민운동가들의 의견에 좌우되어 작은도서관 운동의 본래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음.

● 부천시 사례

- 부천시의 경우, 공공도서관에서 지역의 문고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초기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민간영역과 협력 관계를 맺으며 작은도서관을 활성화시킨 사례임.
- 부천시의 인구는 약 87만 명으로 권역별로 체계적인 계획 아래 작은도서관을 설립하였으며, 작은도서관은 인구 5만 명에 하나, 규모가 큰 도서관은 인구10만 명에 하나씩 설립하는 것이 목표임.

<표 23> 부천시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운영시스템

지원내용	세부사항
공간확보 및 법규	○‘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주민자치센터 내 설치) - 시장의 방침을 받아 주민자치센터 동장/주민자치센터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시설의 일부를 작은도서관 공간으로 활용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 사회복지관의 사업내용 중 공부방 및 도서관 운영 명시(종합복지관 내 설치) - 기존 복지관 내 공부방/문고 운영, 종합복지관은 주로 시에서 설립하고 법인 및 민간단체위탁운영 ○종합복지관 내 문고 중 활성화된 곳을 선정, 리모델링비/운영비 일체 지원 작은도서관 설치, 복지관을 운영중인 법인에 작은도서관 사업 위탁 - 종합복지관내 작은도서관 운영 시 복지관내 다른 시설 공동사용, 작은도서관의 공간상 제약 극복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문화센터 내 설치) - 문고나 도서관 시설에 대한 설치규정은 없으나, ‘기타 문화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 명시
예산지원	○설치비: 평균 1개소 당 약 4,000만원(시설 리모델링 공사비/최소개관장서 구입비 1,000만원, 기타 서가 및 비품류 구입비 포함) ○운영비: 2006년 기준, 연간 1개소 당 평균 3,900만원(전문사서인건비, 자료구입비, 제세공과금, 유급 자원활동가비, 자산취득비 등 운영비 일체 지원) ○기타 : 작은도서관 도서관리프로그램 서버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업그레이드비, 확장공사에 따른 리모델링비, 시설출산휴가에 따른 대체인력비, 부천시지역 작은도서관 협의회 운영비 등이 별도 지원 ※2006년도 작은도서관 11개소의 총 예산: 시립도서관 1개소의 운영비와 비슷한 수준인 64,100만원
도서관리프로그램지원	○시립도서관과 연계한 작은도서관 도서관리프로그램 개발: 관외대출 회원관리, 대출 반납서비스 처리, 상호대차서비스, 각종 통계현황 자료 추출 등 자동화 ※(주)오름정보의 ‘바로클릭’은 2004년 시립도서관 도서관리프로그램을 2,000만원의 예산으로 업그레이드하면서 작은도서관 도서관리프로그램으로 개발. 서버구입비 2,000만원, 매년 유지보수비 400만원. 2006년 1,200만원의 예산으로 업그레이드
자료지원	○2006년 기준, 연간 1,000만원의 자료구입비를 시비로 지원 ○도서관간 상호대차서비스를 실시 ○장서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도서관: 1개소당 200만원의 도비보조금 지원받아 자료구입비 추가지원
민·관 파트너쉽구축	○시립도서관/시립공공도서관 연합: ‘책읽는도시 부천만들기’를 위한 책릴레이 행사, 도서관문화한마당, 도서관친구들 등의 행사 공동 개최 ○부천시/부천시지역 작은도서관협의회: 2005년 제6회 도서관문화한마당 행사 개최. ‘책 읽는도시 부천’ 선포식을, 이를 위한 책릴레이 행사, 도서관친구들 조직 등 독서진흥 활동 공동으로 수행 ○시민단체/시립도서관: 심포지움, 지역방송 토론회 출연, 세미나,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 교환 및 협의 ○시립도서관/작은도서관 사서: 2001년부터 월 1회 정례회의. 작은도서관 운영 시정 방향 및 계획에 대한 의사소통의 장으로 활용

전문사서배치	○도서관건립 업무 및 작은도서관 사업을 시립도서관의 사서가 담당 ○작은도서관 준사서 이상의 전문사서 1명 확보 원칙: 장서개발, 창고봉사, 독서치료 등 기본적 도서관 서비스 제공 ※작은도서관 사서는 지방공무원 계약직 10호 상당 임금 지급받음. 사서보조 인력으로 유급자원활동가 활용
--------	---

자료 : 국립중앙도서관(2006), [작은도서관 분관시스템 구축방안]에서 재구성

- 권역별로 지역을 분배하고 지리적인 위치를 감안하여 2011년 현재 13개관의 작은도서관을 공공도서관과 연계시켜 위탁 운영함.
-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13개관의 작은도서관에는 상주하는 전문인력(사서)이 확보되어 있음.
- 이 13개관의 작은도서관 사서들이 주축이 되어 ‘부천시작은도서관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공공도서관과 정기적인 회의를 통하여 매년 진행되는 행사와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를 진행함.
- 공립 작은도서관은 시립도서관과 연계하여 상호대차 서비스를 구축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립도서관을 통하여 작은도서관 운영비를 지원함.
- 운영비의 지원은 인건비와 장서 구입비가 포함되며, 위탁운영을 맡고 있는 복지회관이나 단체에서 자부담으로 일부의 운영비를 충당함.
- 2012년까지 공공도서관과 연계되어 있는 작은도서관 15개관 위탁운영을 목표로 함.

● 창원시 사례

- 창원시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서관 서비스의 공급을 시민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대표적인 사례임.
- 1980년대 후반 마산과 창원 지역 진보주의자들의 요구에 의하여 민간도서관인 ‘책사랑’이 출현하여 열린 도서관을 지향하였으며, 8000여명의 회원을 확보하여 지역사회의 사랑방 역할을 수행함.
- 창원시의 경우, 시민단체인 (사)경남정보사회연구소의 주도로 마을도서관이 태동함.
- 1993년 ‘책의 해’를 기점으로 ‘책의 해 경남조직위원회’가 구성되고 지역 교수, 언론인, 시민들이 주축이 되어 ‘경남도서관 및 정보문화발전연구소(현, 경남정보사회연구소)’가 1994년 창립되면서 지역의 작은도서관 갖기 운동이 활성화됨.
- 초기에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던 작은도서관 운동은 1995년 민선시장 공약사업으로 사회복지회관을 설치하게 되면서 시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형태로 변형됨.

- 이 시기 이후 (사)경남정보사회연구소가 사회복지회관을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복지회관 내에 마을도서관을 개관하기 시작함.
- 현 단계의 창원시 작은도서관은 실질적인 운영비와 자료구입비, 인건비 등을 시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아 시민단체에서 위탁운영을 하는 형태임.

<표 24> 창원시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운영시스템

지원내용	세부사항
공간확보 및 관련법규	○ 2005년 7월 '창원시 평생학습 조례' 제정 - 주민자치센터 내 설치: 평생학습 시설 설치, 지원. 그 중 하나로 마을도서관/사회교육센터 사업 실시. 평생학습조례에 의거하여 사회교육센터 민간위탁 ※세부적인 사항은 2006년 5월 4일 제정한 '창원시 사회교육센터 운영규정'을 따름. 부천시와 마찬가지로 '창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마을문고를 그 기능의 하나로 둠 - 종합복지관 내 설치(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복지관 활성화 방안으로 1995년 8월 봉림복지회관 내 봉림마을도서관 개관. 1996년부터 8개소의 종합복지관 운영권 경남 사회정보연구소에 위탁, 여러 복지관내 마을도서관 개관되게 함. 2006년 복지관내 마을도서관 중 7개소가 사회교육센터로 명칭변경(남산복지회관/안민복지회관 마을도서관 명칭사용) ※위탁운영기관: 경남정보사회연구소 4개소, 주민자치위원회 3개소, 경남풀뿌리 환경정보 교육센터와 (사)경남여성회 각 1개소씩 2년간 위탁운영
예산지원	○ 2006년 기준, 사회교육센터 1개소 당 3,720만원, 마을도서관 2,160만원의 운영비 지원 ○ 마을도서관 운영인력: 월 90만원씩 2인의 인건비와 자료구입비, 운영비 지원 ※부족한 운영비: 유료 문화프로그램 운영, 수익금충당
도서관리 프로그램 지원	○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시립도서관, 32개 마을도서관도서를 메타서치 방식 검색, 각 마을도서관/사회교육센터 문화프로그램 및 강사 검색 가능 ○ 각 마을도서관은 '책꽃이' 도서관리프로그램으로 자료 및 관외대출회원 정보 관리. ※시립도서관과 마을도서관 간 상호대차서비스 미실시

자료 : 국립중앙도서관(2006). [작은도서관 분관시스템 구축방안]에서 재구성

□ 민간주도형

● 주요 내용

- 민간주도형 모델은 개인이 설립하여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운영되는 형태를 말함.
- 개인의 열정으로 시작하여 지역주민의 공감을 얻음으로써 물품기부와 바자회, 후원 등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운영되며, 지역 도서관으로 기능을 수행함.
-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만큼 안정적인 재정확보의 어려움이 있음.
- 지역주민들이 직접 수서목록을 선정하고 운영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
- 주민자치적인 운영방식을 통해 지역사회 화합에 기여하는 사회통합적인 순기능을 함.
- 운영인력 및 운영비 확보에 있어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작은도서관에 대한 높은 애착심을 보임.
- 개인이 주축이 되어 운영되는 형태로 공간이나 재정 확보의 어려움이 있음.
- 작은도서관의 '도서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사서 인력의 확보가 어렵고 인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의 기회가 부족한 실정임.
- 느티나무 도서관과 같이 개인도서관이 비영리법인으로 구체화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개인운영 작은도서관은 시설 및 운영규모가 영세함.

● 느티나무도서관 사례

- 용인시에 위치한 느티나무도서관은 시민단체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없이 뜻이 맞는 지역주민들이 모여 아이들이 쉽게 찾아와 책을 읽고 배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바자회나 후원금을 모아 설립한 시설임.
- 초기단계에는 지역 주민들이 직접 수서목록을 작성하고 작은도서관 운영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전문적인 도서관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화 사랑방 역할을 함.
- 사립문고로 시작된 느티나무도서관은 2003년 법인설립 허가를 받으며 문화재단으로 조직화됨.
- 2011년 4월 기준 대출회원 34,515명, 하루 평균 434권의 자료를 대출해주고 있으며, 3만권이상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음.
- 현재는 책임어주기, 동아리 등 다양한 독서문화활동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과

장애인 가정에는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모퉁이어린이도서관 사례

- 사적 재산을 들여 개인의 순수한 열정으로 사립 문고를 설립한 후 아이들에게 책을 빌려주는 등의 봉사를 진행하다 지역 어머니들에게 작은도서관을 기부한 형태임.
- 모퉁이어린이도서관은 사립으로 운영되는 작은도서관으로써 공공기관이 아닌 상가에 위치하고 있어 매월 상가 임대료가 지출되고 운영비 일체가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임의 단체에서 조달됨.
- 2004년 대기업의 사회봉사단으로부터 1,900만원의 후원금을 받아 공간 리모델링을 시행하는 등 후원금을 통해 기금을 마련함.
- 사서와 지역 어머니들로 구성된 자원봉사자를 통하여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함.

3.2 국외 작은도서관 운영 사례

- 한국과 같은 작은도서관 유형은 아니지만 모범적인 선례를 파악하기 위해 국외 작은 규모의 도서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미국 작은도서관의 운영 네트워크

- 미국의 공공도서관은 중앙도서관과 분관도서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중앙도서관은 주민의 접근성이 용이한 거점을 위주로 수십 개의 분관도서관을 구성함.
- 각 중앙도서관 및 분관도서관은 서비스 대상의 특성과 인구구성에 맞는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개발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하며, 전체적인 도서관의 서비스 모토를 중심으로 각 분관도서관에 맞도록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위한 인력, 예산 등 행정적인 부분을 중앙도서관에서 지원함.
- 국립중앙도서관(2006)에 의하면 미국의 작은도서관은 언어적으로 ‘작다’는 의미로 공공도서관 중 규모가 작은도서관을 의미하며, 인구 25,000명 미만의 지역에 봉사하는 도서관을 작은도서관으로 보고 이들은 모두 도서관(Library)이라는 명칭을 사용함.
- 작은도서관은 부족도서관, 농촌도서관, 지역도서관 등의 형태로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서비스 대상과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 이들 작은도서관은 규모와 상관없이 도서관의 장서, 대출, 참고서비스, 인터넷 서비스 등 도서관 고유의 역할을 수행하며, 카운티 공공도서관과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음.
- 이러한 배경에는 미국의 각 주가 작은도서관이 지역의 활동센터로서 중요한 임무를 맡아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장서구입, 인터넷 환경, 사서교육에 있어 중앙도서관이나 도심의 도서관과 차별을 두지 않고 지원하며, 빌 게이츠 재단 기금 200만달러 가운데 상당액을 작은도서관에 투입한 것도 작은도서관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임.
- 2008년 통계 기준 25,000명 미만 지역에 봉사하는 작은도서관의 수는 미국 공공도서관 9,221개 중 7,170개로 도서관의 약 80퍼센트를 차지하고 이 중 인구 2,500명 미만인 지역에 있는 도서관은 2,570개에 이르며, 그 형태도 학교나 지역의 접근성이 가장 좋은 곳에 위치하여 평생학습센터나 학생들의 컴퓨터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주당 서비스 시간은 2,500명 미만인 도서관의 경우 10시간에서 20시간이 가장 많으며 서비스 인구와 상황에 따라 달리 운영하고 있음(표 24 참조).

<표 25> 미국의 도서관 수 및 주당 서비스 시간: 25,000명 미만 지역

봉사인구	도서관수	주당 공공도서관 서비스 시간							
		10 이하	10-19	20-29	30-39	40-49	50-59	60-69	70이상
10,000~24,999	1,763	0.2	1.8	5.2	12.8	28.0	32.8	18.3	1.0
5,000~9,999	1,497	0.4	2.3	7.1	23.8	35.6	23.1	7.4	0.2
2,500~4,999	1,340	1.0	4.8	17.8	34.3	30.3	10.1	1.3	0.5
1,000~2,499	1,573	2.7	12.1	37.8	29.6	14.7	2.8	0.2	0
1,000이하	997	14.4	35.4	32.5	12.5	3.6	1.0	0.1	0.2

자료 : IMLS 홈페이지, 『미국 공공도서관 : 2008 회계연도』

- 미국에서는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기여정도 등을 평가하여 매년 상패와 상금을 수여하는 것으로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이는 최우수 작은도서관 서비스상(Excellent in Small and/or Rural Public library Service Award)과 베스트 작은도서관상(Best Small library in America)의 두 가지가 있음.

■ 최우수 작은도서관 서비스 상

(Excellent in Small and/or Rural Public library Service Award)

- 1991년 제정되어 공공도서관협회(PLA)와 EBSCO information services 후원으로 매년 시상
- 인구 10,000명 이하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서비스 프로그램이나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에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을 선정하여 상패와 상금 \$10,000 수여
- 최우수 작은도서관 서비스상 평가기준
 - 프로그램의 독창성
 - 프로그램 및 서비스가 지역 커뮤니티에 미친 영향
 - 서비스나 프로그램이 지역사회의 미래에 미칠 영향

최우수 작은도서관 서비스상 수상 도서관

수상년도	도 서 관 명
2010	Gilpin County Public Library, Black Hawk, Colo.
2009	John C. Fremont Library District, Florence, Colo.
2008	Thomas Memorial Library, Cape Elizabeth, Maine
2007	Kenai (Alaska) Community Library
2006	Williamsfield Public Library (Ill.)
2005	Curtis Township Library (Glennie, Mich.)
2004	Tecumseh Public Library, (Tecumseh, Okla.)
2003	Haines Borough (Alaska) Public Library

2002	Wallow County (Ore.) Library
2001	Alpine Public Library (Ariz.)
2000	Clearwater County Free Library (Idaho)
1999	Little Boston Branch of the Kitsap (Wash.) Regional Library
1998	Littleton (N.H.) Public Library
1997	Littleton (Colo.) Public Library
1996	Waialua (Hawaii) Public Library
1995	Franklin County Public Library (East Point, Fla.)
1994	Alan Bolster Ricker Memorial Library and Community House (Poland, Maine)
1993	Decorah Public Library (Decorah, Iowa)
1992	Kingman Carnegie Library (Kingman, Kan.)

자료출처 : <http://www.ala.org/ala/mgrps/divs/pla/plaawards/ebscoexcellencesmallruralaward/index.cfm>

■ 베스트 작은도서관 상 (Best Small library in America)

- 2004년 미국의 LJ(Library Journal)과 빌&멜린다 게이츠재단(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이 공동으로 주최하여 모범적인 작은도서관을 선정
- 수상 도서관 2곳에 각각 5,000달러의 상금을 수여하고 수상 도서관 대표 2명이 공공도서관협회 연례 컨퍼런스에 참석할 수 있는 일체의 비용을 제공
- 이 상은 인구 25,000명 이하의 지역에서 우수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도서관을 시상하며 LJ(Library Journal) 편집위원회 위원, 지역 사서, 재단 대표자가 선정위원이 되어 평가
- 베스트 작은도서관상 수상 기준
 - 서비스나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의 독창성
 - 컴퓨터와 인터넷 접근에 있어서 안내와 지원의 혁신성 및 컴퓨터 이용과 기술사용 결과 효과 측정 정도
 - 커뮤니티 지원 실례, 타도서관과의 협력
 - 다른 기관과 기업체와의 파트너십
 - 새로운 이용자의 도서관 이용 증가
 - 커뮤니티 센터로서의 도서관 역할

베스트 작은도서관 상 수상 도서관

수상년도	도 서 관 명
2008	Chelsea District Library, MI
2007	Grand County Public Library, Moab, UT
2006	Milanof-Schock Library, Mount Joy, PA
2005	Haines Borough Public Library, AK

자료: http://www.libraryjournal.com/lj/home/888540-264/labor_of_love_best_small.html.csp

- 미국의 주요 공공도서관과 분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운영 사례와 서비스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버클리 공공도서관

- 중앙도서관과 네 개 분관도서관, 장비 대여 도서관(Tool lending library)이 있는 중간 규모의 도서관
- 버클리공공도서관은 고등학교 연령대의 청소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지난 15년간 공공 학교지구와 함께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과 지속 서비스를 제공
- 그 중 베라 케이스 부모 강습은 지역 내 학교, 공공도서관 또는 공공기관이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해 우수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정받는 프로그램
- 이 프로그램은 공공도서관에서 베라 케이스 십대부모 프로그램(Vera Casey Teen Parenting Program)에 등록된 청소년 임신부 및 부모들을 대상으로 부모 강습을 제공하는 것으로 베라 케이스 십대부모 프로그램(Vera Casey Teen Parenting Program)은 버클리시 보건부와 버클리/알바니 YMCA 유아교육 서비스, 버클리 학군 통합지구의 협력 프로젝트로 십대 부모들에게 보육 및 기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십대 부모들이 학업을 지속하도록 돕는 프로그램
- 버클리 공공도서관의 청소년 서비스는 기관 간 협력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많은 청소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며 지역 청소년들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개인과 기관 모두를 지원

■ 뉴욕 공공도서관

- 뉴욕도서관은 인문사회과학도서관, 숄버그(Shomburg) 흑인문화연구센터, 행위예술도서관, 과학·산업·비즈니스도서관 등 4개의 연구센터와 3개 자치구(맨하탄, 브롱크스, 스테이튼 아일랜드) 안에 지역별로 설치된 85개의 분관도서관으로 구성
- 각 자치구는 분관도서관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데 맨하탄의 경우 19개 분관이 카운티 컬린(Countee Cullen)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고, 18개 분관으로 이루어진 슈워드 파크(Seward Park) 네트워크, Andrew Heiskell Braille and Talking Book library, Mid-Manhattan library가 있으며, 브롱크스에 35개, 스테이튼 아일랜드에 12개의 분관도서관이 있음
- 주요 서비스 및 프로그램으로는 커뮤니티 봉사 서비스, 50대 이상 성인 프로그램, 요양소 서비스, 이민자 서비스, 교정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
- 커뮤니티 봉사 서비스는 이민자, 귀향자(homebound population), 자활능력이 결여된 사람들,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 노인, 장애인, 노숙자와 관련된 서비스
- 청소년서비스부에서 개발한 '청소년을 위한 고전문학'은 청소년 우수 서비스로 청소년들의 독서량 감소에 대한 방책으로 개발한 프로젝트이며, 이 프로그램은 웨스트 할렘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시범 프로젝트로 조지 브루스 분관에서 실시, 학기 중에 방과 후 청소년들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이며 지역 내 학교와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호응을 얻으며 지속적으로 참여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클리브랜드 공공도서관

- 클리브랜드 공공도서관은 미국 상위 5위 도서관 중 하나
- 중앙도서관과 28개의 분관도서관, 1개의 이동도서관, 시각 및 신체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으로 구성
- 미국의 주요 도서관 시스템 중 하나로 북동부 오하이오 지역의 89개 카운티에 소재한 31개 도서관 시스템과 자원을 공유하는 CLEVNET 도서관 컨소시엄을 주도
- 클리브랜드 공공도서관에서는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특별전시회나 이벤트와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기념
- 또한, 미국 공공도서관 대부분의 도서관과 마찬가지로 이민자를 위한 프로그램,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
-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학교숙제 도움 서비스, 육아를 위한 parent resources 서비스를 제공
- 학교숙제 도움 서비스는 주제별로 웹상에서 사서에게 질문을 하면 답을 해주는 형식이며, parent resources는 아기 재우기, 장애아, 이혼, 육아, 입학 전 교육 등의 육아 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정을 위한 책자나 웹사이트를 제공하
- 분관 중 하나인 제퍼슨도서관에서는 흑인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워크숍을 통해 커뮤니티의 결속에 이바지
- 분관도서관은 서비스 대상지역의 특성과 문화를 충분히 반영하여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

□ 영국 공공도서관 분관체계

- 영국은 세계 최초로 1850년에 ‘도서관법(Public Libraries and Museums Act)’을 제정하여 근대도서관을 탄생시킨 국가임.
- 1852년에 세계 최초 무료 공공도서관이 맨체스터에 설립되어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함.
- 현재의 국가도서관은 1969년 Frederick Dainton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도서관위원회가 구성되어 보고한 보고서 ‘Dainton Report’와 1971년 국가도서관 설립을 권고하는 백서(White Paper)에 근거하여 1972년 ‘영국도서관법’이 제정되어 1973년 7월 1일자로 효력을 발휘함으로써 등장하였음.
- 영국의 공공도서관은 북아일랜드 지역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정부가 운영·관리하고 지방자치정부 내에 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다수의 분관도서관 시스템으로 운영함.
- 시(City), 광역단체인 도(County), 기초단체인 군(District) 혹은 자치구(Borough) 각 관할지역에는 1개의 중앙도서관과 여러 개의 분관 및 이동도서관이 있음.
- 분관도서관은 다시 규모가 큰 ‘지역도서관(District library)’과 이보다 작은 규모의 ‘동네도서관(Neighborhood Library)’으로 나뉨.

- 즉, 지방자치정부가 관할하는 행정구역 내 모든 공공도서관은 하나의 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각 분관도서관은 중앙도서관이 건립되고 난 후 짓는 것이 아니라 건립초기부터 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여러 개의 분관도서관을 구성함.
- 한 지역에 중앙도서관이 건립되면 중앙도서관의 관장 주도 하에 분관도서관을 건립하여 새로운 도서관은 중앙도서관과 연계하고, 직제 또한 중앙도서관의 도서관장만을 관장이라고 하고 나머지 분관도서관의 책임자는 분관책임자(Branch Library Manager)라고 함.
- 영국 공공도서관의 이러한 구조는 한 사람의 관장 책임 하에 도서관을 운영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어 많은 도서관의 서비스,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이 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완전한 분관시스템 하에 개별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다양하며, 같은 분관이라고 하더라도 지역 특성과 이용자 행태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결과적으로 모든 도서관을 운영되지 않더라도 일 년 내내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도서관 전체 운영비도 절감할 수 있음.

■ 버밍햄(Birmingham) 시의 공공도서관 운영

- 버밍햄 시의 경우 51개의 도서관이 있으며, 이들 도서관은 한 개의 중앙도서관과 50개의 분관도서관으로 구성
- 분관도서관의 이용시간을 다르게 운영

버밍햄 시의 분관도서관 이용시간

도서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Acocks Green 도서관	09:00-19:00	09:00-17:00	09:00-17:00	09:00-17:00	09:00-17:00	09:00-17:00
Aston 도서관	09:00-17:00	09:00-17:00		12:00-19:00	09:00-17:00	09:00-17:00
Balsall Heath 도서관	09:00-18:00	09:00-17:00		12:00-19:00	09:00-17:00	09:00-17:00
Bartley Green 도서관	09:00-17:00	13:00-19:00		13:00-19:00	09:00-17:00	09:00-17:00

자료: <http://www.birmingham.gov.uk> 재구성

- 분관도서관은 지역적으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며, 이웃한 분관들은 같은 요일에 동시에 휴관하지 않도록 하여 지역 이용자들의 불편함을 최소화
- 규모가 작은 분관도서관의 경우 이용률을 고려하여 휴관일을 정하며, 이용자수가 적기 때문에 인근 분관도서관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적은 운영 부담

■ 볼튼(Bolton) 자치구의 공공도서관 운영

- 볼튼(Bolton) 자치구의 경우 16개 도서관이 있으며 중앙도서관 1개와 15개 분관도서관으로 구성
- 분관도서관과 이용시간 탄력적으로 운영

볼튼자치구 분관도서관 이용시간

도서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Astley Bridge 도서관		09:00-19:30		14:00-19:30	09:00-17:30	09:00-12:30
Blackrod 도서관, 어린이센터	09:00-19:30			09:00-19:30		09:00-12:30
Brightmet 도서관	09:00-19:30			09:00-19:30		09:00-17:00
Bromley Cross 도서관, 어린이센터	14:00-17:30	14:00-19:30		09:00-19:30	14:00-17:30	09:00-12:30

자료 : <http://www.bolton.gov.uk> 재구성

- 시(County)와 자치구(Borough)의 서비스 지역 규모와 이용자 수에 따라 각 분관도서관의 이용시간과 휴관일에 차이가 있으며, 이는 서비스 지역 범위와 이용자들의 규모를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분관도서관을 운영한다는 것으로 해석

- 영국의 소규모 분관의 경우 장서는 4,000권에서 소규모로 이용자를 중심으로 구성하며 중앙도서관과 역할이 나누어져 있음.
- 중앙도서관은 자료 대출뿐만 아니라 연구, 참고, 보존도서관의 기능을 수행하며, 분관도서관은 참고자료와 최신 도서를 이용자에게 직접 봉사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중앙도서관은 시내중심가에 건립하고 분관도서관들은 접근성이 높은 주택가, 상가 혹은 쇼핑센터 등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있음.
- 각 분관도서관은 그 지역에서 열리는 바자회, 음악회, 광고 등을 알려주는 책자를 돕으로써 지역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일본 공공도서관 분관체계

- 일본 공공도서관은 현(縣), 시(市), 정(町), 촌(村)에서 각각 설립하며 현(縣)에서 설립한 도서관은 교육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시(市), 정(町), 촌(村) 단위별 도서관 설치를 장려함.
- 현(縣)도서관은 관내 타 도서관과 협력하여 종합목록을 작성하는 등 중앙도서관의 기능

을 하며, 현(縣)에서 설립한 도서관은 분관, 배본소, 이동도서관을 갖고 있음.

- 일본은 도시 지역의 경우 도보로 10분 거리의 동네 도서관이 많고 대출위주로 도서관을 운영한다는 특징이 있음.
- 일본 공공도서관은 자치구 별로 다양한 도서관 네트워크 모형을 이루고 있으며 대부분 영국과 마찬가지로 한 개의 중앙관과 여러 개의 분관을 연계하고 있음.
- 또한, 중앙관에만 관장을 두고 분관에는 분관장이 책임자가 되며 자치구의 상황에 따라 한 개에서 수십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규모로 운영하고 있음.
- 우라야스시(浦安市)의 경우 7개 분관도서관이 있고, 오사카시(大阪市)의 경우에는 23개 분관과 63개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치바시(千葉市)의 경우에는 32개 분관을 운영하는 등 자치구별로 다양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음.
- 일본의 도서관은 건물에 의해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각 도서관에서 서비스하는 기능에 따라 나뉘며, 이동도서관이나 분관도서관에서 시작하여 중앙도서관이 들어서는 사례가 대부분임.
- 이동도서관이나 분관도서관이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도서관의 접근성을 높이고 도시 전체의 도서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음.
- 가장 대표적인 예가 히노도서관으로 1965년 6월에 ‘히노시립도서관 설치 조례’가 공포되면서 같은 해 9월 21일 이동도서관 1대로 출발하여 분관을 설치한 후 중앙도서관을 설치함.
- 이동도서관이나 분관도서관을 통해 서비스 포인트를 확보한 후 중앙도서관을 설치하여 상위도서관 역할을 하면서 도서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덴마크 공공도서관 분관체계

- 덴마크는 1920년에 도서관에 관한 최초의 법이 의회를 통과하였으며, 주(State) 도서관청이 설립됨.
- 도서관법령 하에서 상호대차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은 전문적으로 운영되는 무료 공공도서관을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함.
- 덴마크는 중앙정부(문화부 소속 공공도서관지도국)와 지방정부(지방의회 소속의 문화위원회), 도서관봉사센터 및 대·중·소규모의 공공도서관 등 3조직으로 되어 있음.

- 덴마크 전국의 공공도서관은 주립도서관, 공공도서관, 분관 및 이동도서관 등 3단계로 구분됨.
- 덴마크 도서관법은 모든 자치단체에게 공공도서관 운영의 의무를 지우고 있으며, 주립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이 자체적으로 보유하지 못하는 범위까지 해당 자료 습득을 통하여 공공도서관을 위한 주요 대출센터로서 역할을 함.
- 따라서 공공도서관 중 도서관의 자료, 직원, 시설 등을 고려하여 주립도서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을 결정하며, 주립도서관은 덴마크 공공도서관 서비스체계의 중심적 거점역할을 하는 중앙도서관의 기능을 함.
- 주(State)는 전국 서비스를 책임지고 도서관간의 상호대차시스템 자금을 지원하고 공공도서관은 각 지방자치단체 혹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으로 조직되며, 모든 도서관 시스템에는 중앙도서관과 분관도서관이 있음.
- 덴마크에는 각기 다른 환경속에 다양한 규모의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각 도서관마다 전문 인력이 상주하고 있음.
- 모든 ‘작은도서관’은 주(state)가 자금을 지원하는 특수·학술 혹은 대학도서관 등의 범주에 포함되어 도서관시스템에 연결되어 있음.

3.3 작은도서관과 기업의 협력

□ 작은도서관과 기업의 협력 배경

- 작은도서관이 법제화되기 훨씬 이전부터 민간영역에서는 다양한 문고설립 운동이 전개되었으며, 또한 이러한 문고나 취약 지역에 도서를 기증하는 운동 등이 다양하게 전개되었음.
- 이러한 운동들이 개인이나 단체 등 다양한 민간영역 주체들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최근 들어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눈에 띄이는 경향은 기업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임.
- 특히, 2000년대 중반 들어서면서 작은도서관 건립 및 운영을 위한 기업과의 다각적인 협력활동이 주목됨.

□ 대기업의 작은도서관 지원 활동

● 대기업으로서 작은도서관 만들기 사업에 가장 먼저 참여한 삼성그룹

- 삼성그룹은 2006년 농산어촌 학교도서관(200명 이하 초등학교) 57개교에 대한 리모델링 및 시설 지원을 시작으로 ‘희망의 작은도서관 만들기 사업’을 전개하였는데, 2007년 민영 도서관 76개소 리모델링 및 시설 지원, 2008년 민영 작은도서관 10개소 지원 등 학교 및 민영도서관에 대한 지원을 실시한 바 있음.
- 이와 함께 트위터, 미투데이, 블로그 등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책을 기부하는 ‘책기부 캠페인’도 동시에 전개함.

● (사)책읽는사회문화재단과 함께 ‘희망가득한도서관만들기’ 사업을 추진한 LG화학

- LG화학은 연간 총 사업비 3억원을 책정하여 2007년 여수 미평 초등학교와 화양 초등학교에 희망도서관을 설립한 것을 시작으로, 2008년 나주 초등학교 ‘비단고을꿈샘터 도서관’, 서산 대진초등학교 ‘금향마루 도서관’, 청주 봉정초등학교 ‘꿈과 희망의 도서관’, 대전 와동초등학교 ‘기왓골 꿈터 도서관’을 개관함.
- 2009년부터는 사업영역을 중학교까지 확대, 2010년 12월 기준 총 8개교의 희망도서관을 건립하였음.

- 문화체육관광부, MBC와 함께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 사업에 참여한 KB국민은행
 - KB국민은행은 2008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MBC와 함께 지식정보 및 복합문화공간인 ‘작은도서관’ 조성을 후원하여 2010년 12월말 기준으로 전국에 22개의 작은도서관 조성을 지원하였음.
- SK텔레콤의 작은도서관 지원 활동
 - SK텔레콤은 ‘행복도서관 건립 운동’을 통하여 현재까지 많은 수의 작은도서관 건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
 - 또한, SK 텔레콤 11번가를 통해 책기부 캠페인을 동시에 실시하고 있음.
- 그 밖의 대기업 지원 활동
 - 이외에 STX나 한국수출입은행 등도 2008년 기부금을 통해 각각 3곳과 1곳의 작은도서관 건립을 지원하였음.
 - 롯데 장학재단은 조선일보와 함께 2009년 도서실이 없거나 노후화된 초, 중학교를 대상으로 시골학교 도서실 신설 및 리모델링 지원사업을 실시한 바 있음.

□ 기타 민간기업 및 언론사의 작은도서관 지원 활동

- NHN의 네이버문화재단을 통한 작은도서관 지원 활동
 - 대기업이 아닌 민간기업에서도 작은도서관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대표적인 기업은 NHN임.
 - NHN의 네이버문화재단은 2005년 11월부터 공공 도서관의 혜택을 받지 못한 전국 농어촌지역에 2011년 5월 현재 202개의 ‘우리학교마을도서관’을 개설하고, 도서관 1곳당 약 3000만 원씩을 들여 평균 3000여 권, 전체 62만여 권의 도서를 지원하였으며, 도서관 가구와 내부 장식도 함께 바꾸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우리학교마을도서관’ 사업은 독서환경이 열악한 농어촌, 산간벽지, 도서지역 초등학교 도서관에 읽을 수 있는 책을 제공하고 학생과 주민을 위한 책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임. 우리학교마을도서관 개관시 책 3,000여권을 지원하고 이후에도 지원사업을 펼침
 - 이외에도 도서관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책이 필요한 장소를 방문하여 이동도서관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책읽는 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선정된 좋은 책을 다

읽고 반환하면 책값의 절반은 돌려주고, 반납된 도서는 마을도서관에 전달하는 ‘북리펀드’ 제도도 운영하고 있음.

● 뉴스킨 코리아의 작은도서관 지원 활동

- 미국계 화장품 회사인 뉴스킨 엔터프라이즈의 한국법인인 뉴스킨 코리아는 2004년 ‘뉴스킨 포스 포 굿(Newskin force for good)’이라는 후원회를 조직하였으며, 최근까지 총 15억원이 넘는 기금을 조성함.
- ‘뉴스킨 포스 포 굿(Newskin force for good)’ 후원회 사업의 일환으로 행정적인 지원이 어려운 지방의 소규모 초등학교에 도서관을 새로 만들어주거나 리모델링을 해주는 사업을 ‘희망도서관 프로젝트’라는 명칭으로 시작함.
- 2008년 3월 충북 소재 초등학교에 희망도서관을 건립한 것으로 시작한 희망도서관은 2011년 3월 기준으로 전국에 총 8곳이 개관되었음.

● 언론사의 작은도서관 지원활동

- MBC는 도서관과 관련하여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낸 곳은 대표적인 언론사임. MBC는 직접 작은도서관을 설립한 것은 아니지만, 2003년 기적의도서관 프로젝트 이후 2007년 8월부터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 캠페인을 전개하여 ‘1사1작은도서관 운동’을 추진,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낸 바 있음.
- 동아일보도 NHN에서 실시하는 우리학교마을도서관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주로 신문 지면을 통한 홍보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언론사 가운데 주도적으로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을 실시한 경우는 매일신문으로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행복한 도서관’이라는 명칭으로 작은도서관 조성을 지원해왔던 매일신문은 주로 지역아동센터 내에 도서관을 개설하였고 이외에도 마을회관, 사회복지관 등에 작은도서관을 개설하기도 하였으며, 2010년 2월 대구 서구에 ‘꿈쟁이 지역아동센터’를 개관한 것을 시작으로 2011년 1월 대구 서구 종합사회복지관에 행복한 도서관 개관까지 총 18개의 ‘행복한 도서관’을 조성하였음.

□ 사회적 기업과 작은도서관

● 최근 사회적 기업의 작은도서관 참여 경향

- 최근 들어 대기업이나 NGO가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여 작은도서관을 지원하려고 하는

노력이 나타나고 있음.

- 대표적으로 SK텔레콤의 ‘(재)행복한도서관’과 ‘(사)행복한아침독서’를 들 수 있음.

● SK텔레콤의 ‘재단법인 행복한도서관’

- SK텔레콤은 2011년 4월 도서관 분야(작은도서관)를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을 목표로 ‘재단법인 행복한도서관’을 설립하였음.
- (재)행복한도서관은 SK텔레콤이 15억원을 투입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아파트도서관을 포함한 작은도서관의 전문적인 운영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재)행복한도서관은 주요 사업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계획하고 있음.

■ (재)행복한도서관의 주요 사업계획 내용

- 아파트 도서관 설립 지원
- 중앙정부, 지자체 등과 연계하여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 독서진흥 사업 지원
- 도서관증 사업
- 아파트도서관 운영교육, 공공캠페인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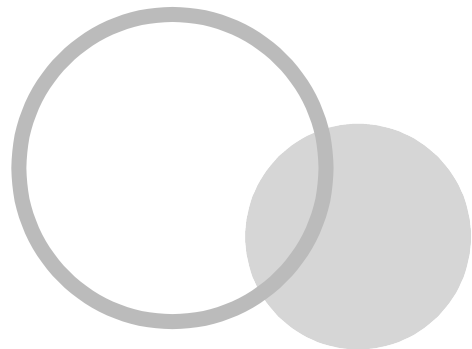
● (사)행복한아침독서

- 2005년 3월 아침독서운동을 시작으로 NGO 단체로 출범한 ‘행복한 아침독서’는 아침독서교육 및 교사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로 2007년 사단법인으로 전환하였으며, 2009년 4월부터 ‘희망의 책나눔 사업’을 실시, 2010년 5월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됨.
- 10명 이내의 직원을 두고 있는 (사)행복한아침독서는 유치원, 초중고, 공공도서관 등에 신문을 무료배포하고 출판사의 광고비로 제작비, 인건비, 발송비 등을 충당하는 형태로 수익활동을 실시하고 있음.
- 사무실 2층에 아울렛서점을 운영하여 출판사에 반품되어 들어온 책을 싸게 구입하여 50% 할인 판매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
- 주요사업은 아침독서운동 및 유치원 안에 작은도서관 만들기, 학교 교실에 학급문고 만들기 등임.
- (사)행복한아침독서는 2011년 현재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되어 있으며, (재)행복한도서관은 사회적 기업 인증을 목표로 최근 출범한 기관으로 모두 작은도서관 및 책보내기 운동 등과 관련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사회적 기업 형태를 띤 작은도서관 지원 유형은 향후 성과여부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음.



제3장 전국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 조사

1. 조사개요
2. 분석결과
3. 시 사 점



1. 조사개요

1.1. 작은도서관 통계관리와 실태조사

□ 작은도서관 통계조사 개요

● 목적

- 전국 작은도서관(문고)의 실태를 포괄하는 통계자료 산출

● 필요성

- 전국에 산재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의 실제적인 현황을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는 체계적인 실태조사 및 환경 파악 필요
- 국가 도서관정책 작은도서관 분야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통계자료 필요

● 조사방법

- 작성형태 :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www.libsta.go.kr) 활용한 보고통계(도서관 통계조사 담당자가 웹시스템에 접속하여 설문응답)
- 작성주기 : 1년
- 조사대상 선정 : 전수

● 조사범위

- 조사내용 및 항목 : 자료, 시설 및 설비, 인적자원, 예·결산, 이용, 서비스 현황 등
- 기준시점(조사기준) : 전년도 1년 운영현황
- 조사기간 : 매년 5~8월

□ 2011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개요

● 목적

- 전국 230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문고)에 대한 통계자료 산출

● 필요성

- 최근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에 탑재된 작은도서관 실태 자료(2008년 조사)의 신뢰성 확보와 지속적 조사를 위한 기반 마련이 시급함.
- 각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작은도서관(공립과 사립 모두 포함)의 정확한 자료를 전수 조사하여 지속적인 통계생산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 기존의 도서관통계를 생산하는 방식에서 효율적인 조사 방법을 발견하고,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 통계조사 담당자를 지정하여 실질적인 조사체계를 확립할 필요 있음.

● 조사방법

- 작성형태 : 230개 지방자치단체 작은도서관 통계조사 담당자에 의해 확인된 작은도서관의 운영자들이 다양한 방식(전자메일, 팩스, 전화, 온라인조사 등)으로 직접 입력하는 방식
- 조사대상 선정 : 전수
- 조사과정 : 전체 4단계의 단계별 조사 진행
 - ① 지방자치단체 등록된 작은도서관 기본정보 확인(대상: 담당공무원)
 - ② 전국 작은도서관 운영여부 및 운영자 확인(대상: 운영자)
 - ③ 전국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진행(대상: 운영자)
 - ④ 미운영 및 미확인 작은도서관에 대한 재확인 및 실태조사 진행
(대상: 담당공무원, 운영자)

● 조사범위

- 조사내용 및 항목 : 도서관 기본정보, 소장자료, 시설 및 설비, 인적자원, 예산현황, 이용 및 이용자,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연계, 정보서비스 등
- 조사대상기간 : 2010년 1월 1일 ~ 12월 31일 기준 운영현황
- 조사기간 : 2011년 1월 20일 ~ 7월 29일 (약 27주)

1.2. 2011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과정

1.2.1. 조사 1단계

- 작은도서관 정책범위에서 작은도서관의 개념을 “도서관법에서 정한 시설기준에 부합된 작은도서관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경우”로 한정함
- 이에, 조사의 1단계는 230개 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 담당자들이 확인한 작은도서관의 수를 파악하는 과정임

□ 조사개요

- 조사대상 : 전국 230개 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 담당 공무원
- 조사방법 : 전화조사를 통해 1차 접촉하여 질문내용을 이메일이나 팩스로 송부하여 회수함
- 조사시기 : 2011년 1월 20일 ~ 4월 1일(총 11주)

□ 조사내용

- 지방자치단체 내 작은도서관 담당자 확인 사항
 - 부서명, 직책, 서명, 연락처, email 등
-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유무
- 지방자치단체 내 지역 대표 공공도서관 (도서관내 작은도서관 담당자 포함)
-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 유무
 - 지원내용 : 인력/ 예산/ 지원장서/ 문화프로그램/ 기타
- 추천 가능한 작은도서관 명칭과 추천 이유
- 지방자치단체 내 파악 가능한(등록되어있는) 작은도서관 명단
 - 작은도서관 명, 담당자 또는 연락가능한 자, 설립주체(공립/사립), E-mail 주소, 연락

가능한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 개관년도 등

□ 조사결과

- 1차 조사 결과 전국 230곳 기초지방자치단체 작은도서관 담당자에 의해 확인된 작은도서관의 수는 총 4,159개 었음.
- 경기도가 970개관으로 전체의 23.3%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는 서울특별시가 666개관 (16.0%)으로 나타났으며, 울산광역시가 59개(1.4%)로 전국에서 작은도서관이 가장 적은 지역으로 나타났음.

<표 26> 조사 1단계에서 확인한 전국 작은도서관의 수

no.	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수	작은도서관수 (%)
1	서울특별시	25	666 (16.0)
2	부산광역시	16	145 (3.5)
3	대구광역시	8	115 (2.8)
4	인천광역시	10	150 (3.6)
5	광주광역시	5	190 (4.6)
6	대전광역시	5	205 (4.9)
7	울산광역시	5	59 (1.4)
8	경기도	31	970 (23.3)
9	강원도	18	145 (3.5)
10	충청북도	12	185 (4.5)
11	충청남도	16	196 (4.7)
12	전라북도	14	223 (5.4)
13	전라남도	22	226 (5.4)
14	경상북도	23	184 (4.4)
15	경상남도	18	329 (7.9)
16	제주도	2	171 (4.1)
합계		230	4,159 (100.0)

1.2.2. 조사 2단계

- 1단계에서 확인된 작은도서관(총 4,159개)의 목록에 기초하여 작은도서관의 운영여부, 운영자 확인, 통계자료 조사 진행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는 단계임.
- 2단계는 전국의 작은도서관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본조사격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단계임.

□ 조사개요

- 조사대상 : 전국 4,159개 작은도서관 운영자 또는 작은도서관 관련자(자원봉사자 포함)
- 조사방법 : 전화조사를 통한 전수조사
- 조사시기 : 2011년 3월 14일 ~ 4월 22일(총 6주)

□ 조사내용

- 도서관법에서 정한 작은도서관 시설 기준에 부합하는가?
 - 작은도서관 면적, 열람석, 도서관 자료 기준
- 1단계에서 확인된 기본자료의 정확성 확인
 - 등록된 전화번호의 정확성 유무, 등록된 운영자 확인
- 작은도서관의 운영 여부
- 통계 조사 접근 가능 방법
 - 통계조사 협조 가능성, 설문조사 방법(이메일, 우편, 전화, 온라인조사 등)

□ 진행절차

- 통화가능 여부 확인
 -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작성한 목록에 기초하여 각 작은도서관에 통화를 시도하여 통

화가능 여부와 통화불가능 사항(미수신, 연락 불가능한 번호)을 확인함.

- 미수신은 요일과 시간대(오전/오후)을 달리하여 최소 3회 연락을 취해, 통화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함.

● 운영여부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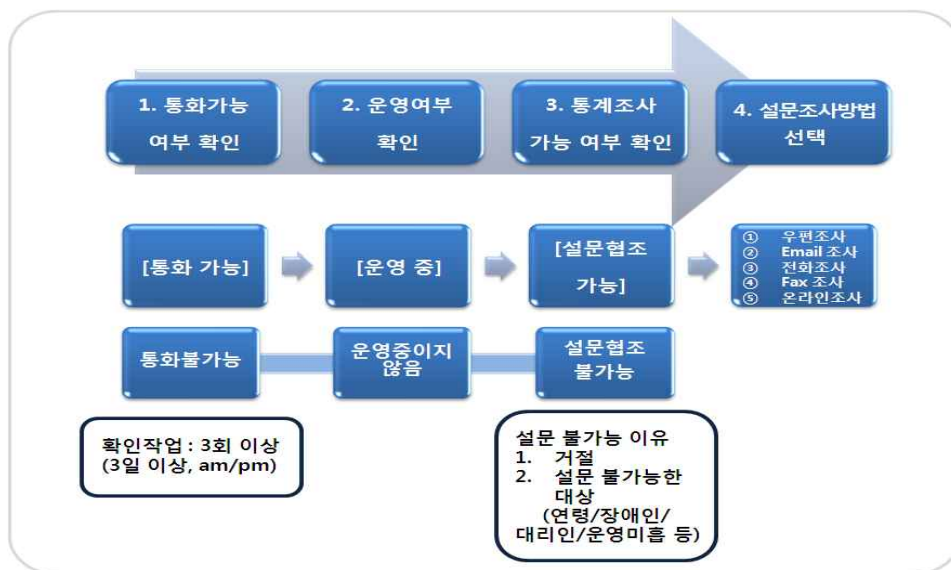
- 통화가 가능한 작은도서관 운영자를 대상으로 2010년의 작은도서관 운영여부를 확인함.

● 통계조사 가능 여부 확인

- 작은도서관 운영자를 대상으로 통계조사 협조 가능 여부를 확인함.
- 작은도서관 운영자 중에서 통계조사에 대한 응답을 거절하거나 설문 작성이 어려운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의 협조를 통해 별도로 전수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설문조사방법 선택

- 실태조사 설문 응답이 가능한 작은도서관 운영자의 경우, 우편조사, email 조사, 전화 조사, Fax조사, 온라인조사 등의 설문응답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그림 5] 전국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2단계 과정

□ 조사결과

- 1단계에서 확인된 4,159개 작은도서관 중에서 운영자와 통화 가능한 작은도서관은 2,977곳(71.5%)였으며, 그 중 운영 중인 곳은 2,938곳(98.6%)으로 확인됨.
- 운영 중인 2,938개(98.6%) 가운데, 설문가능한 작은도서관은 2,533개(86.4%)였으며, 이는 전체 작은도서관 4,159개 가운데 약 61%에 해당됨.
- 설문 불가능한 곳과 운영되지 않는 곳, 그리고 통화불가능한 곳을 포함하여 실태조사 진행이 불가능한 곳은 총 1,626개(전체 약 39%)이며, 이러한 작은도서관에 대해 지방자치 단체의 협조를 구하여 추가 조사하는 방식을 취함.

1.2.3. 조사 3단계

- 3단계는 전국 작은도서관 실태조사의 본 조사에 해당함.
- 작은도서관 통계조사의 지표를 단순화하고 항목 조정함
 - 기존의 도서관 통계 항목이 전문사서가 아닌 경우 파악할 수 없는 내용이 다수 있으며, 문항이 복잡하고 문항의 수가 많아서 작은도서관 운영자가 작성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기에 문화체육관광부 통계담당 관계자 및 공동연구자의 회의를 거쳐서 통계항목의 문항을 수정하여 진행함.
 - 또한 실제 작은도서관 실태 파악 및 활성화 방안 마련에 도움이 되는 문항을 추가하여 작은도서관 실태조사에 적합한 문항으로 새로이 구성하였음.
- 2단계에서 확인한 설문 진행 가능 작은도서관의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설문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함.

□ 조사 개요

- 조사대상 : 2단계에서 설문접수로 확인된 작은도서관 2,533곳의 운영자
- 조사방법 : 동일한 조사지에 대해 우편조사, 이메일조사, 전화조사, 팩스조사, 온라인조사 등을 병행하고, 도서관운영자가 이를 선택하도록 함
 - 우편조사, 이메일조사, 팩스조사는 설문지를 이메일이나 팩스로 송부하고 회수함
 - 전화조사는 원하는 경우 전화상으로 모든 조사내용을 질문하고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
 - 온라인조사는 조사를 위한 별도의 사이트(<http://210.180.51.160/lib/>)를 개설하여 운영자들이 항목별로 입력하도록 함
- 조사시기 : 2011년 4월 13일 ~ 7월 29일 (약 16주)

□ 조사 내용

- 기존의 도서관 통계항목을 바탕으로 현재 개별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 중인 작은도서관 대상 통계조사를 참조하여 새로운 문항을 구성하였음.
-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 파악을 위한 실질적인 정보와 조사대상자의 응답 가능성 등의 기준을 통해 전문가 회의를 통해 항목과 내용 결정함

<표 27> 전국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내용(조사 3단계)

1. 도서관 기본 정보	작은도서관 명칭	
	개관한 연도	
	소속 지자체(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카페	
	작은도서관 특성	지역 공공도서관의 분관 여부
		공립과 사립 여부 및 유형
		특수목적 작은도서관의 유형
	응답자(운영자관련사항)	응답자이름
연락처		
E-mail		
직책 (대표자/운영자/자원봉사자)		
운영자의 작은도서관 운영기간		
작은도서관 운영시간	운영자의 관리 및 운영시간	
	운영 월/ 요일/ 시간(평일-주말)	
2. 소장자료	현재총도서현황	도서관총장서
		현재총도서자료
		현재총연속간행물자료
	2010년 증가 현황	2010년 총 증가장서
		2010년 증가 연속간행물자료
3. 시설 및 설비	전용면적	
	열람석	
	인터넷 가능한 컴퓨터의 수	관리자용
		이용자용
4. 인적자원	인력 수	직원/ 자원봉사자(인원)
	사서자격증 유무	직원/ 자원봉사자(인원)
	작은도서관 운영관련 교육 경험 유무	직원/ 자원봉사자(인원_시간)
5. 예산현황	수입원	행정기관 지원
		회원 회비 및 이용료
		후원금
		자부담(운영자 자체부담)
		기타
	예산지출내역	도서구입비
		인건비
		운 영 비
		총예산지출내역
6. 이용 및 이용자	도서대출	외부대출가능 여부
		대출도서관리 방법
		상호정보협력망 구축 여부
		연간대출 권수
	이용자 관련내용	이용자수(1일 평균/ 연간 총)
	등록된 총 이용자 수	
7.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연계	상호대차서비스 유무	
	순회사서 유무	
	지자체 및 공공도서관 지원 유무	지원내용(인력/예산/지원장서/문화프로그램/기타)
	독서-문화프로그램 실시 여부	프로그램수/실시횟수/참가자수
8. 정보서비스	도서관 관리 프로그램 유무	

□ 진행절차

● 실태조사를 위한 질문지 전달

- 2단계에서 통화가능하고 운영 중이며 설문 가능한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진행.
- 조사방법은 작은도서관 운영자가 선택한 방법(우편조사, email 조사, 전화조사, Fax조사, 온라인조사 등)으로 진행.

● 수신사항 확인

- 작은도서관 운영자에게 질문지 수신 여부를 확인하고 설문내용 및 회신방법 안내.

● 질문지 회수

- 우편, email, 전화조사, Fax 등으로 회수된 질문지는 다시 온라인을 통해서 등록하여 최종 등록 여부를 확인.



[그림 6] 전국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3단계 과정

1.2.4. 조사 4단계

- 3단계 본조사에서 누락된 작은도서관에 대한 보완조사
- 전수조사를 위해 2단계에서 파악된 실태조사 불가능한 1,626곳과 3단계에서 조사 누락된 작은도서관의 목록을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에게 발송하여 확인하고, 추가조사를 실시함
 - 2단계에서 실태조사 진행이 불가능한 곳이라 함은 설문불가능한 곳과 운영 중이지 않은 곳, 그리고 통화불가능한 곳으로 파악된 작은도서관임.
 - 2단계부터 3단계 종료 과정에서 수시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와 협조하여 진행됨.

□ 조사 개요

- 조사대상 : 2단계에서 조사 진행이 불가능한 작은도서관과 3단계에서 조사 누락된 작은도서관의 운영자 및 지방자치단체의 담당공무원
- 조사방법 :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가 작은도서관의 운영현황을 직접 방문하거나 운영자를 확인하여 실태조사를 진행함.
- 조사시기 : 2011년 4월 13일 ~ 7월 29일 (총 16주)

□ 조사 내용

- 전국 작은도서관 실태조사의 전수조사를 위한 보완조사로써, 본 조사인 3단계 조사내용과 동일함.

2. 분석결과

2.1 전국 작은도서관 실태 파악

□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

- 2011 전국작은도서관 실태조사 1단계에서 파악(230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록)된 2010년 운영된 전국 작은도서관의 수는 총 4,159개임.
- 2단계(1단계 내용을 바탕으로 도서관 운영자와 연락을 통해 실제 운영 상황 파악)에서 실제 운영중인 도서관 수는 총 2,938개로 확인됨.
- 3단계는 2,938개 중 실제 설문응답이 가능한 2,533개 작은도서관의 운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4단계는 2단계에서 조사 진행이 불가능한 작은도서관과 3단계에서 조사 누락된 작은도서관의 운영자 및 지방자치단체의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2010년 운영되고 있는 작은도서관의 수를 최종 확인한 결과, 총 3,349개임을 확인함
 - 1단계의 등록된 4,159개 리스트를 근거로, 공무원의 등록추가로 추가된 도서관(152개) 수를 더하고, 폐관이나 장기휴관 등으로 운영이 중단된 도서관, 2011년 개관하였으나 설문에 응답한 도서관, 중복입력 조사된 도서관 그리고 설문조사에 응했으나 작은도서관의 법적 기준에 부합되지 못한 도서관 등에 해당하는 962개를 모두 제외하여 2010년 현재 「도서관법」 기준에 부합하는 총 3,349개 작은도서관이 운영되었음을 확인함
-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이 확인한 작은도서관의 수 전체 3,349개 운영현황에 대한 설문 회수율은 100%임

<표 28> 전국 작은도서관 실태 : 광역지방자치단체 운영 현황

(단위 : 개, %)

광역 지방자치 단체	1단계에서 등록된 도서관 수 (지자체 공무원 등록)	추가로 확인된 도서관수 (지자체 공무원 등록)	설문조사에서 제외된 수*	운영현황 확인 작은도서관 수	지자체별 설문 회수율 (운영자 응답률)
1.서울특별시	666	16	132	550	100.0
2.부산광역시	145	7	43	109	100.0
3.대구광역시	115	2	10	107	100.0
4.인천광역시	150	2	36	116	100.0
5.광주광역시	190	4	42	152	100.0
6.대전광역시	205	5	27	183	100.0
7.울산광역시	59	3	9	53	100.0
8.경기도	970	44	206	808	100.0
9.강원도	145	3	23	125	100.0
10.충청북도	185	5	74	116	100.0
11.충청남도	196	14	53	157	100.0
12.전라북도	223	2	34	191	100.0
13.전라남도	226	4	68	162	100.0
14.경상북도	184	10	37	157	100.0
15.경상남도	329	30	83	276	100.0
16.제주도	171	1	85	87	100.0
합계	4,159	152	962	3,349	100.0

*설문조사에서 제외된 수: 2010년 현재 폐관 및 운영중단/2011년 개관 작은도서관/작은도서관 법적 기준미달/도서관명 중복응답 포함

□ 공립·사립 작은도서관 분포현황

● 전체 분석

- 분석에 활용된 전국 작은도서관(N=3,349) 중에서 공립 작은도서관은 669개로 전체의 약 20%, 사립 작은도서관은 2,680개로 전체 작은도서관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지방자치단체별 분석

-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에 공립 작은도서관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광역시로 해당 지역 내 전체 작은도서관의 35.8%가 공립 작은도서관인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사립 작은도서관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청북도로 해당 지역 내 전체 작은도서관의 93.1%가 사립 작은도서관인 것으로 조사됨.

<표 29> 전국 작은도서관 실태 : 공립·사립 작은도서관 분포 현황

no.	지자체명	공립		사립		전체	
		빈도	%	빈도	%	빈도	%
1	서울특별시	167	30.4	383	69.6	550	100.0
2	부산광역시	20	18.3	89	81.7	109	100.0
3	대구광역시	18	16.8	89	83.2	107	100.0
4	인천광역시	24	20.7	92	79.3	116	100.0
5	광주광역시	15	9.9	137	90.1	152	100.0
6	대전광역시	23	12.6	160	87.4	183	100.0
7	울산광역시	19	35.8	34	64.2	53	100.0
8	경기도	137	17.0	671	83.0	808	100.0
9	강원도	18	14.4	107	85.6	125	100.0
10	충청북도	8	6.9	108	93.1	116	100.0
11	충청남도	27	17.2	130	82.8	157	100.0
12	전라북도	47	24.6	144	75.4	191	100.0
13	전라남도	45	27.8	117	72.2	162	100.0
14	경상북도	38	24.2	119	75.8	157	100.0
15	경상남도	56	20.3	220	79.7	276	100.0
16	제주도	7	8.0	80	92.0	87	100.0
합계		669	20.0	2,680	80.0	3,349	100.0

2.2 작은도서관 기초 통계

2.2.1 기본 정보

□ 작은도서관 특성

● 분관여부

- 분석에 활용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N=3,349) 중 분관인 도서관은 297개(8.9%), 분관이 아닌 도서관은 3,052개(91.1%)임

● 공립·사립 유형

- 공립 작은도서관은 전체의 20%인 669개, 사립 작은도서관은 80%인 2,680개로 조사되었음.

● 설립주체

- 개인 및 단체가 설립한 작은도서관이 25.6%인 857개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종교시설 문고(18.6%), 아파트 작은도서관(16.6%), 새마을 문고(15.9%), 지자체 직영 작은도서관(14.4%), 민간위탁 도서관(5.6%), 법인이 설립한 작은도서관(3.4%)의 순으로 나타남.

● 특수목적

- 일반인 이용자 이외에 특수한 대상자를 목적으로 하는 작은도서관은 26.9%임
- 대다수의 도서관(73.1%)은 일반인 이용자들을 위한 도서관으로 파악됨
- 특수목적 도서관 중에서는 청소년 대상 도서관이 전체의 9.7%인 325개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표 30> 전국 작은도서관 실태 : 작은도서관 특성

특성			빈도	%
분관여부	분관		297	8.9
	분관 아님		3,052	91.1
공·사립 유형	공립		669	20.0
	사립		2,680	80.0
설립주체	공립	지자체 직영	482	14.4
		민간위탁	187	5.6
	사립	개인 및 단체가 설립한 작은도서관	857	25.6
		새마을 문고	531	15.9
		종교시설	624	18.6
		법인이 설립한 작은도서관	113	3.4
		아파트 작은도서관	555	16.6
특수목적	다문화		47	1.4
	청소년		325	9.7
	장애인		8	0.2
	종교인		93	2.8
	기타		428	12.8
	해당사항 없음		2,448	73.1
합계			3,349	100.0

□ 운영시간

● 운영개월 수 및 운영요일 수

- 분석에 활용된 전국 작은도서관(N=3,349)의 연중 운영개월 수를 살펴보면 93.7%인 3,138개의 도서관이 12개월 내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운영요일로는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에 문을 여는 도서관이 각각 46.4%, 26.0%인데 반해 평일 운영률은 월요일을 제외하고 8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작은 도서관이 주말보다는 평일에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다른 평일에 비해 월요일에 문을 여는 도서관 비율이 낮은 것은 공립 작은도서관의 상당수가 월요일에 휴관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됨.

<표 31> 전국 작은도서관 실태 : 운영개월 및 운영요일

운영개월 및 운영요일		빈도	%
운영개월	유동적 운영	44	1.3
	2개월	3	0.1
	3개월	2	0.1
	4개월	10	0.3
	5개월	9	0.3
	6개월	11	0.3
	7개월	8	0.2
	8개월	8	0.2
	9개월	13	0.4
	10개월	19	0.6
	11개월	84	2.5
	12개월(매월)	3,138	93.7
	합계	3,349	100.0
운영요일 (복수응답)	월	2,588	77.3
	화	2,846	85.0
	수	2,928	87.4
	목	2,834	84.6
	금	2,907	86.8
	토	1,549	46.4
	일	871	26.0

● 운영일 수

- 분석에 활용된 전국 작은도서관(N=3,349)의 일주일 중 운영일 수를 살펴보면 공립과 사립 작은도서관 모두 5일 간 운영하는 도서관 수가 가장 많음
- 이는 앞서 운영요일에 관한 분석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말을 제외한 평일에 운영되는 도서관이 대부분이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됨.
- 한편 사립 작은도서관의 경우 약 10%인 270개의 작은도서관이 3일 이하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32> 전국 작은도서관 실태 : 일주일 중 운영일 수

운영일수 (일주일)	공립		사립		합계	
	빈도	%	빈도	%	빈도	%
1일	3	0.4	79	2.9	82	2.4
2일	3	0.4	99	3.7	102	3.0
3일	4	0.6	92	3.4	96	2.9
4일	5	0.7	74	2.8	79	2.4
5일	319	47.7	1,042	38.9	1,361	40.6
6일	257	38.4	774	28.9	1,031	30.8
7일	78	11.7	520	19.4	598	17.9
합계	669	100.0	2,680	100.0	3,349	100.0

● 일일 운영시간

- 작은도서관의 평일 하루 운영시간에 대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공립과 사립 모두 1일 8시간 이상 12시간 미만 동안 운영을 하는 경우가 전체의 49.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 도서관 유형에 따른 평균 운영시간은 공립이 8.5시간, 사립이 6.6시간이며, 평균 이상의 시간을 운영하는 도서관은 공립 작은도서관이 544개, 사립은 1,443개이며, 평균미만의 시간을 운영하는 곳은 공립 작은도서관 179개, 사립 1,045개임.
- 한편 주말 하루 운영시간은 8시간 미만인 도서관이 공립과 사립 모두 가장 많아서, 결측값을 제외한 전체 작은도서관의 약 56%인 1,016개의 도서관이 주말에는 8시간 미만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도서관 유형에 따른 주말 평균 운영시간은 공립이 4.5시간, 사립이 4.1시간이었으며, 평균 이상의 시간을 운영하는 도서관은 공립 작은도서관이 330개, 사립은 1,006개, 평균미만의 시간을 운영하는 곳은 공립 작은도서관 336개, 사립은 1,374개로 집계됨.

<표 33> 전국 작은도서관 실태 : 운영시간

(N=3,349)

운영시간 (평일과 주말)		공립		사립		합계	
		빈도	%	빈도	%	빈도	%
평일	4시간 미만	24	0.8	384	12.2	408	12.9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	98	3.1	936	29.7	1034	32.8
	8시간 이상 12시간 미만	505	16.0	1,045	33.1	1,550	49.1
	12시간 이상	39	1.2	123	3.9	162	5.1
	합계*	666	21.1	2,488	78.9	3,154	100.0
주말	4시간 미만	32	1.8	237	13.0	269	14.7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	118	6.5	629	34.5	747	40.9
	8시간 이상 12시간 미만	223	12.2	472	25.9	695	38.1
	12시간 이상	25	1.4	89	4.9	114	6.2
	합계*	398	21.8	1,427	78.2	1,825	100.0

* 결측값 제외

□ 운영기간

● 작은도서관 운영기간 현황

- 분석에 활용된 전국 작은도서관(N=3,349) 중 35.6%인 1,191곳이 개관 2년 이상에서 5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남.
- 공립 작은도서관과 사립 작은도서관 모두 2년 이상에서 5년 미만인 도서관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10년 이상의 운영기간을 보인 도서관은 공립 작은도서관이 전체의 24.5%로 19.9%인 사립 작은도서관에 비해 유형별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표 34> 전국 작은도서관 실태 : 운영기간

운영기간	공립		사립		합계	
	빈도	%	빈도	%	빈도	%
1년 이하	96	14.3	303	11.3	399	11.9
2년 이상 5년 미만	255	38.1	936	34.9	1,191	35.6
5년 이상 10년 미만	139	20.8	856	31.9	995	29.7
10년 이상	164	24.5	533	19.9	697	20.8
유효값 합계	654	97.8	2,628	98.1	3,282	98.0
결측값	15		52		67	
합계	669		2,680		3,349	

2.2.2 소장자료

□ 현재 총도서 현황

● 전체 분석

- 분석에 활용된 전국 작은도서관(N=3,349)의 평균 보유 장서수는 약 5,600여 권인 것으로 조사됨.
- 1,000권 이상 3,000권 미만의 자료를 보유한 작은도서관이 차지하는 비율이 26.7%이고, 10,000권 이상의 자료를 보유한 작은도서관이 11.5% 등임을 감안하면 자료 수 평균에 대한 편차가 큼을 알 수 있음.

● 공립·사립 유형별 분석

- 도서관 유형별로는 공립 작은도서관의 경우 평균 8,360여 권, 사립 작은도서관의 경우 평균 4,890여 권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공립 작은도서관은 5,000권 이상에서 10,000권 미만의 도서보유 도서관 비율이 38%로 가장 높고, 사립 작은도서관은 1,000권 이상에서 3,000권 미만의 도서보유 도서관 비율이 30.4%로 가장 높아 공립과 사립 간 평균 보유 자료 수에 상당한 차이를 보임.

● 지방자치단체별 분석

- 16개 광역자치단체별로는 서울이 평균 7,142권의 도서를 보유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가장 높은 평균값을 나타냈으며, 충청북도가 평균 3,516권의 도서를 보유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가장 낮은 평균값을 보임.
- 대부분의 지역은 1,000권 이상에서 3,000권 미만의 자료를 보유한 작은도서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서울 지역은 도서 5,000권 이상 10,000권 미만의 자료를 보유한 작은도서관 비율이 가장 높음

<표 35> 전국 작은도서관 실태 : 현재 총도서 현황

(N=3,349)

항목		1000권 이상 3000권 미만		3000권 이상 5000권 미만		5000권 이상 10000권 미만		10000권이상		합계 *		평균 자료 수(권)
자료 수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평균값
		894	26.7	707	21.1	858	25.6	384	11.5	2,843	84.9	5,643
공·시·립 유형	공립	78	11.7	112	16.7	254	38.0	176	26.3	669	100	8,360
	시립	816	30.4	595	22.2	604	22.5	208	7.8	2,223	82.9	4,892
광역·지방 자치 단체	서울	77	3.5	92	4.1	119	5.4	67	3.0	355	16.0	7,142
	부산	36	1.6	13	0.6	18	0.8	10	0.4	77	3.6	5,595
	대구	29	1.3	21	0.9	25	1.1	5	0.2	80	3.6	5,436
	인천	22	1.0	23	1.0	23	1.0	7	0.3	75	3.4	5,760
	광주	37	1.7	20	0.9	13	0.6	3	0.1	73	3.3	3,947
	대전	34	1.5	29	1.3	33	1.5	5	0.2	101	4.5	4,463
	울산	6	0.3	9	0.4	9	0.4	0	0.0	24	1.1	4,709
	경기	211	9.5	153	6.9	165	7.4	61	2.7	590	26.5	6,239
	강원	45	2.0	28	1.3	15	0.7	6	0.3	94	4.2	3,950
	충북	46	2.1	30	1.3	13	0.6	2	0.1	91	4.1	3,516
	충남	44	2.0	24	1.1	9	0.4	7	0.3	84	3.8	5,449
	전북	38	1.7	29	1.3	26	1.2	10	0.4	103	4.6	5,706
	전남	45	2.0	16	0.7	29	1.3	2	0.1	92	4.1	4,174
	경북	38	1.7	32	1.4	32	1.4	5	0.2	107	4.8	4,850
	경남	78	3.5	52	2.3	63	2.8	12	0.5	205	9.2	5,622
	제주	30	1.3	24	1.1	12	0.5	6	0.3	72	3.2	4,016

* 결측값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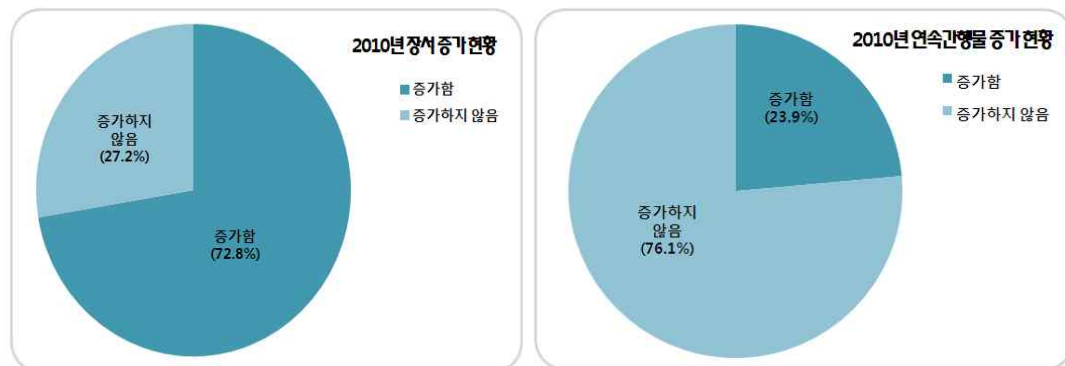
□ 2010년 도서 증가 현황

● 1년 간(2010년) 총 증가장서

- 작은도서관 기준을 충족시키는 도서관(N=3,349) 중에서 지난 1년 간 보유 장서의 증가를 보고한 작은도서관은 전국적으로 2,439개(72.8%)였음.
- 보고된 총 증가권수는 약 1,924,672권이었으며, 도서증가를 보고한 2,439개 도서관의 평균증가 장서 수는 약 789권인 것으로 나타남.

● 1년 간(2010년) 증가 연속간행물 자료

- 작은도서관 기준을 충족시키는 도서관(N=3,349) 중에서 지난 1년 간 연속간행물 종수 증가를 보고한 작은도서관은 전국적으로 801개(23.9%)였음.
- 보고된 연속간행물의 수는 총 7,983종(중복포함)이었으며, 증가 종수의 평균은 약 4종인 것으로 나타남.



[그림 7] 전국 작은도서관 실태 : 2010년 도서 증가 현황

2.2.3 시설 및 설비

□ 전용면적

● 전체 분석

- 결측치(N=4)를 제외하고 분석에 활용된 전국 작은도서관(N=3,345)의 평균 면적은 약 181.6㎡(약 55평)인 것으로 조사됨.
- 그러나 33㎡ 이상 99㎡ 미만의 작은도서관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60%이며, 165㎡ 이상 작은도서관의 비율도 약 17%나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용면적 평균에 대한 편차가 큼을 알 수 있음.

<표 36> 전국 작은도서관 실태 : 전용면적

(N=3,349)

항목		33㎡ 이상 99㎡ 미만		99㎡ 이상 165㎡ 미만		165㎡ 이상		전체*		평균 면적(㎡)
건물 면적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평균값
		1,997	59.6	783	23.4	565	16.9	3,345	99.9	181.6
공·사립 유형	공립	279	8.3	177	5.3	213	6.4	669	20.0	330.2
	사립	1,718	51.4	606	18.1	352	10.5	2,676	80.0	144.5
광역 지방 자치 단체	서울	377	11.3	103	3.1	70	2.1	550	16.4	282.3
	부산	65	1.9	29	0.9	15	0.4	109	3.3	103.0
	대구	56	1.7	32	1.0	19	0.6	107	3.2	197.1
	인천	75	2.2	23	0.7	17	0.5	115	3.4	103.1
	광주	98	2.9	37	1.1	16	0.5	151	4.5	91.4
	대전	124	3.7	39	1.2	20	0.6	183	5.5	97.2
	울산	36	1.1	8	0.2	8	0.2	52	1.6	211.4
	경기	479	14.3	195	5.8	133	4.0	807	24.1	231.4
	강원	71	2.1	28	0.8	26	0.8	116	3.5	152.6
	충북	62	1.9	28	0.8	26	0.8	116	3.5	151.6
	충남	86	2.6	42	1.3	29	0.9	157	4.7	107.8
	전북	103	3.1	45	1.3	43	1.3	191	5.7	140.3
	전남	92	2.8	36	1.1	34	1.0	162	4.8	160.4
	경북	82	2.5	43	1.3	32	1.0	157	4.7	160.7
	경남	151	4.5	70	2.1	55	1.6	276	8.3	122.2
	제주	40	1.2	25	0.7	22	0.7	87	2.6	156.4

* 결측값 제외
 ** 1평 = 3.3㎡

● 공립·사립 유형별 분석

- 도서관 유형별 평균면적은 공립 작은도서관의 경우 평균 330.2㎡, 사립 작은도서관이 평균 144.5㎡였음
- 공립 작은도서관과 사립 작은도서관 모두 33㎡ 이상 99㎡ 미만 면적의 도서관이 각각 279개, 1,718개로 가장 많았음.

● 지방자치단체별 분석

- 16개 광역자치단체별로는 서울 지역 작은도서관의 평균면적이 282.3㎡로 가장 넓었으며, 광주와 대전 지역이 각각 91.4㎡, 97.2㎡로 낮은 평균값을 보임.

□ 열람석

● 전체 분석

- 분석에 활용된 전국 작은도서관(N=3,349)의 평균 열람석 수는 27.8석인 것으로 조사됨.
- 12석 이상 24석 미만, 24석 이상 48석 미만의 열람석을 갖춘 작은도서관이 각각 1,205개, 1,104개로 전체 작은도서관의 69%에 달함.

● 공립·사립 유형별 분석

- 도서관 유형별 평균 열람석 수는 공립 작은도서관의 경우 약 26.3석, 사립 작은도서관이 약 27.7석으로 유형별로는 열람석 수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지방자치단체별 분석

- 16개 광역자치단체별로는 강원 지역 작은도서관의 평균 열람석 수가 32.5석으로 가장 많았으며, 울산이 21석으로 가장 낮은 평균값을 보임.
- 지역별 분석에서는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경기, 충북, 충남, 경남 지역의 작은도서관은 평균 12석 이상에서 24석 미만의 열람석을 보유한 도서관 수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지역은 24석 이상 48석 미만의 열람석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37> 전국 작은도서관 실태 : 열람석

항목		6석 이상 12석 미만		12석 이상 24석 미만		24석 이상 48석 미만		48석 이상		합계		평균 열람석수 (석)
열람석 수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평균값
		550	16.4	1,205	36.0	1,104	33.0	490	14.6	3,349	100.0	27.8
공 시립 유형	공립	110	3.3	230	6.9	223	6.7	106	3.2	669	20.0	26.3
	사립	440	13.1	975	29.1	881	26.3	384	11.5	2,680	80.0	27.7
광역 지방 자치 단체	서울	137	24.9	214	38.9	138	25.1	61	11.1	550	100.0	23.9
	부산	14	12.8	37	33.9	36	33.0	22	20.2	109	100.0	31.6
	대구	14	13.1	36	33.6	36	33.6	21	19.6	107	100.0	30.3
	인천	13	11.2	42	36.2	35	30.2	26	22.4	116	100.0	31.9
	광주	22	14.5	62	40.8	53	34.9	15	9.9	152	100.0	25.9
	대전	25	13.7	64	35.0	75	41.0	19	10.4	183	100.0	26.2
	울산	16	30.2	17	32.1	17	32.1	3	5.7	53	100.0	21.0
	경기	114	14.1	302	37.4	268	33.2	124	15.3	808	100.0	28.6
	강원	19	15.2	35	28.0	46	36.8	25	20.0	125	100.0	32.5
	충북	18	15.5	42	36.2	37	31.9	19	16.4	116	100.0	29.7
	충남	28	17.8	63	40.1	48	30.6	18	11.5	157	100.0	25.8
	전북	40	20.9	60	31.4	64	33.5	27	14.1	191	100.0	27.4
	전남	30	18.5	50	30.9	54	33.3	28	17.3	162	100.0	28.5
	경북	17	10.8	50	31.8	63	40.1	27	17.2	157	100.0	30.9
	경남	31	11.2	107	38.8	101	36.6	37	13.4	276	100.0	27.7
	제주	12	13.8	24	27.6	33	37.9	18	20.7	87	100.0	3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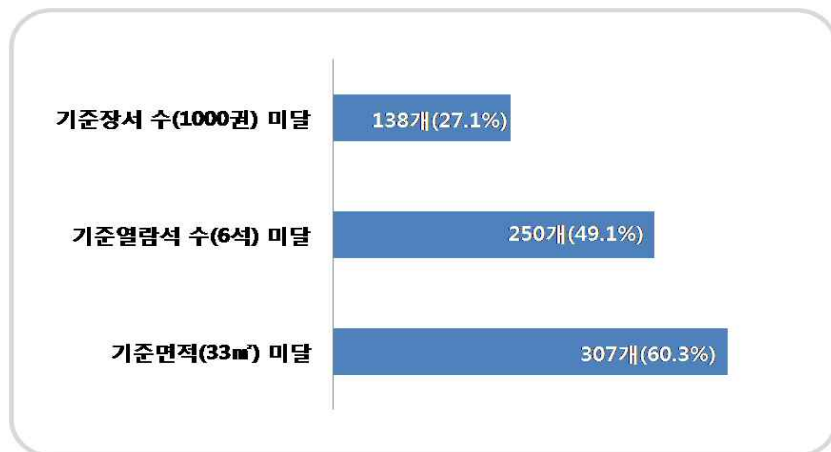
□ 작은도서관 설립기준 충족 여부

● 전체 분석

- 분석에 활용된 전국 작은도서관 3,349개는 조사 3단계와 4단계를 통해 설문응답을 마친 전국의 작은도서관 3,922개 중에 2011년 개관된 작은도서관 64곳과 작은도서관 설립기준인 면적 33㎡이상, 열람석 수 6석 이상, 자료 수 1,000권 이상 등 3가지 중 기준 중 1개 기준 이상 미달되는 509곳을 제외한 숫자임.
- 응답된 설문지 가운데 509개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은 작은도서관의 법적 설립기준에 못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
- 작은도서관 설립기준에 미달된 도서관들 중에서 각 설립기준별로 살펴보면, 면적기준이 미달인 곳이 307곳으로 전체 기준미달 도서관수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열람석 수 미달 250곳, 장서 수 미달 138곳으로 조사되었음,

<표 38> 전국 작은도서관 실태 : 설립기준 충족 여부

항목	빈도	%
2011년 개관 작은도서관수	64	1.6
기준 미달	509	13.0
기준 충족	3,349	85.4
합계	3,922	100



[그림 8] 전국 작은도서관 실태 : 기준별 미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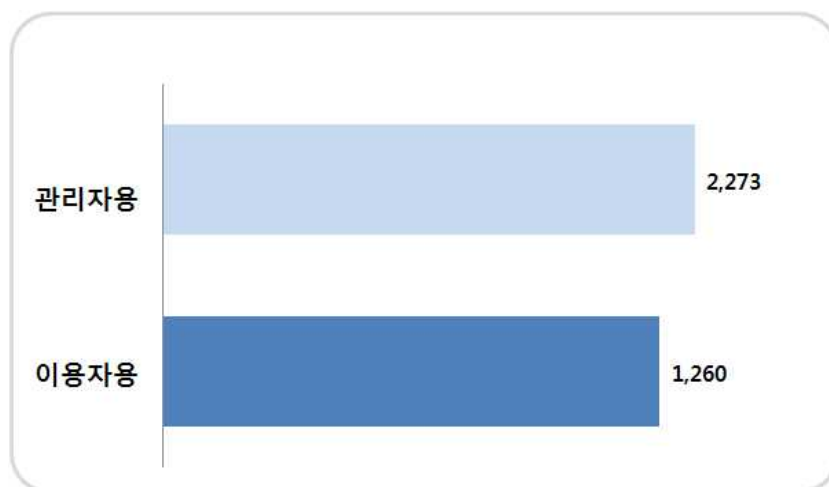
□ 인터넷 가능한 컴퓨터의 수

● 전체 분석

- 작은도서관 기준을 충족시키는 도서관(N=3,349)을 대상으로 인터넷 가능 컴퓨터 보유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인터넷 이용이 가능한 컴퓨터를 보유한 도서관은 전국적으로 2,946개(약 88%)인 것으로 나타났다.
- 그 중에서 관리자용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는 작은도서관은 총 2,273개로 집계되었으며 관리자용 컴퓨터 수는 총 3,305대로, 작은도서관 1개당 평균 약 1.5대의 관리자용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이용자용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는 작은도서관은 총 1,260개이며 이용자용 컴퓨터 수는 총 3,496대로, 작은도서관 1개당 평균 약 2.8대의 이용자용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됨.

<표 39> 전국 작은도서관 실태 : 인터넷 가능 컴퓨터 보유

항목	빈도	%
있음	2,946	88.0
없음	403	12.0
합계	3,349	100.0



[그림 9] 전국 작은도서관 실태 : 사용대상별 컴퓨터 보유 현황

2.2.4 인적자원

□ 인력 수(직원/자원봉사자)

● 전체 분석

- 작은도서관 기준을 충족시키는 도서관(N=3,349) 중에서 직원이 있는 도서관은 1,874개(56.0%), 자원봉사자가 있는 도서관은 2,180개(65.1%)로 확인됨.
- 도서관 내 직원이 있는 것으로 응답한 1,874개 도서관에서 일하는 직원 수의 총합은 3,097명으로, 작은도서관 당 약 1.7명의 직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도서관 내 자원봉사자가 있는 것으로 응답한 2,180개 도서관에서 일하는 자원봉사자 수의 총합은 20,771명으로, 작은도서관 당 약 9.5명의 자원봉사자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전국 작은도서관 중에서 직원과 자원봉사자를 포함하여 2명이 근무하는 곳은 339개, 3명이 근무하는 곳은 232개, 4명 이상인 도서관은 1,148개로 나타났다. 그러나 직원과 자원봉사자가 한명도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도서관도 1,359개나 됨.

<표 40> 전국 작은도서관 실태 : 인력 수

(N=3,349)

항목		빈도	%
직원	없음(확인 불가 포함)	1,475	44.0
	1인	1,243	37.2
	2인이상	631	18.8
	합계	3,349	100.0
자원 봉사자	없음 (확인 불가 포함)	1,169	34.9
	1인	454	13.6
	2인	322	9.6
	3인이상	1,404	41.9
	합계	3,349	100.0
직원+자원봉사자	없음 (확인 불가 포함)	1,359	40.6
	1인	271	8.1
	2인	339	10.1
	3인	232	6.9
	4인이상	1,148	34.3
	합계	3,349	100.0

□ 사서자격증 유무(직원/자원봉사자)

● 전체 분석

- 작은도서관 기준을 충족시키는 도서관(N=3,349) 중에서 사서자격을 보유한 직원이 있는 도서관은 319개, 사서자격을 보유한 자원봉사자가 있는 도서관은 272개로 각각 9.5%와 8.1%의 비율을 보임.
- 분석을 통해 나타난 전국 작은도서관 내 사서자격 보유 현황에 따르면 작은도서관 당 약 0.1명의 직원이 사서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사서자격을 보유한 자원봉사자의 경우에도 전체 작은도서관 기준 도서관 당 약 0.1명의 자원봉사자가 사서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전국 작은도서관 중에서 직원과 자원봉사자를 포함하여 사서자격을 가진 사람이 2명인 곳은 51개, 3명인 곳도 20개, 4명 이상인 곳은 46개로 확인됨. 한편 직원과 자원봉사자 중에 사서자격을 가진 사람이 한명도 없거나 확인이 안된 도서관은 무려 3,050개로 전체 작은도서관의 약 9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1> 전국 작은도서관 실태 : 사서자격증 유무

(N=3,349)

항목		빈도	%
직원	없음(확인 불가 포함)	3,030	90.5
	1인	261	7.8
	2인 이상	58	1.7
	합계	3,349	100.0
자원 봉사자	없음 (확인 불가 포함)	3,077	91.9
	1인	145	4.3
	2인	55	1.6
	3인 이상	72	2.2
	합계	3,349	100.0
직원+자원봉사자	없음 (확인 불가 포함)	3,050	91.1
	1인	182	5.4
	2인	51	1.5
	3인	20	0.6
	4인 이상	46	1.4
	합계	3,349	100.0

□ 작은도서관 운영관련 교육 경험(직원/자원봉사자)

● 전체 분석

- 작은도서관 기준을 충족시키는 도서관(N=3,349) 중에서 직원이 운영 관련 교육 경험 이 있는 경우 447개 도서관, 자원봉사자가 운영 관련 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 395개 도서관으로, 각각 전체 작은도서관의 13.3%와 11.8%의 비율을 차지함.
- 전국 작은도서관 내 운영관련 교육 경험 현황을 살펴보면 직원들의 경우 총 6,112시간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집계되어 일인당 평균 13.7시간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조사됨.
- 자원봉사자의 경우는 총 6,092시간의 사서관련 교육을 받은 것으로 집계되어, 일인당 평균 15.4시간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조사됨.

<표 42> 전국 작은도서관 실태 : 교육 경험 유무

항목	있음		없음 (확인불가능한 도서관포함)		합계	
	빈도	%	빈도	%	빈도	%
직원	447	13.3	2,902	86.7	3,349	100.0
자원 봉사자	395	11.8	2,954	88.2	3,349	100.0

2.2.5 예산 현황

□ 수입원 및 예산지출내역

● 전체 분석

- 분석에 활용된 작은도서관(N=3,349) 중 1,425개의 도서관이 행정기관의 지원을 받는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1,262개의 도서관이 자부담으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고 응답함.
- 전체 도서관의 44.5%인 1,490개가 연간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해 100만원 미만의 예산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3> 전국 작은도서관 실태 : 수입원 및 예산지출내역

(N=3,349)

항목		공립		사립		합계	
		빈도	%	빈도	%	빈도	%
수입원 (복수 응답)*	행정기관지원	549	82.1	876	32.7	1,425	42.6
	회원회비 및 이용료	31	4.6	362	13.5	393	11.7
	후원금	44	6.6	491	18.3	535	16.0
	자부담	95	14.2	1,167	43.5	1,262	37.7
	기타	35	5.2	405	15.1	440	13.1
총지출 내역	100만원 미만	202	30.2	1,288	48.1	1,490	44.5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82	12.3	652	24.3	734	21.9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73	10.9	356	13.3	429	12.8
	1000만원 이상	312	46.6	384	14.3	696	20.8
	합계	669	100.0	2,680	100.0	3,349	100.0

*항목별 결측값 제외

● 공립·사립 유형별 분석

- 공립 작은도서관의 경우, 행정기관의 지원을 받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82.1%), 그밖에 자부담(14.2%), 후원금(6.6%)으로 나타남. 사립 작은도서관의 경우, 자부담으로 운영하는 곳이 가장 많았으며(43.5%), 그 다음으로 행정기관지원(32.7%), 후원금(18.3%)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힘.
- 연간 지출금액에서는 공립 작은도서관의 46.6%가 1,000만원 이상, 사립의 경우에는 48.1%가 100만원 미만이라고 조사되어 공립과 사립 간 도서관 운영에 소비되는 금액에 상당한 차이를 보임.

2.2.6 이용 및 이용자

□ 도서대출

● 외부대출 가능 여부

- 작은도서관 기준을 충족시키는 도서관(N=3,349)의 73.3%는 외부로의 도서대출이 가능하다고 응답하였음.
- 공립은 87.4%인 585개, 사립은 69.7%인 1,869개의 도서관이 각각 외부 도서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표 44> 전국 작은도서관 실태: 외부대출 가능 여부

항목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합계		시스템결측값		합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외부대출 가능여부		2,454	73.3	473	14.1	2,927	87.4	422	12.6	3,349	100.0
공·사립 유형	공립	585	87.4	39	5.8	624	93.3	45	6.7	669	100.0
	사립	1,869	69.7	434	16.2	2,303	85.9	377	14.1	2,680	100.0

● 대출도서 관리방법

- 대출도서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전용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작은도서관이 전체의 42.2%인 1,414개로 가장 많음.
- 유형별로는 공립 작은도서관의 75.6%, 사립 작은도서관의 33.9%가 전용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출도서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표 45> 전국 작은도서관 실태 : 대출도서 관리방법

항목		장부에 수기입력		전용프로그램 사용		기타		합계		시스템결측값		합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대출도서 관리방식		779	23.3	1,414	42.2	240	7.2	2,433	72.6	916	27.3	3,349	100.0
공·사립 유형	공립	51	7.6	506	75.6	25	3.7	582	87.0	87	13.0	669	100.0
	사립	728	27.2	908	33.9	215	8.0	1,851	69.1	829	30.9	2,680	100.0

● 상호정보협력망 구축여부

- 전체 작은도서관(N=3,349) 가운데 협력망이 구축되어 있다고 응답한 작은도서관은 9.8%(328개)이며, 협력망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한 작은도서관은 31.9%(1,068개)임
- 설문지 상에 ‘상호정보협력망’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¹⁾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지 않은 사례가 58.3%(1,953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운영자들의 용어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또는 한번도 접해보지 못해 본 결과로 해석됨. 특히 사립 작은도서관의 결측치가 약 6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상호정보협력망 구축이 실제로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음
- 작은도서관 유형별로는 공립 작은도서관의 33%인 221개 도서관이 상호정보협력망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사립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설문의 해당 항목을 누락한 도서관이 많아 전체 사립 작은도서관의 4%만 협력망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표 46> 전국 작은도서관 실태 : 상호정보협력망 구축여부

항목		상호정보 협력망구축		구축하지 않았다		합계		시스템 결측값		합계	
상호정보협력망 구축여부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328	9.8	1,068	31.9	1,396	41.7	1,953	58.3	3,349	100.0
공·사립 유형	공립	221	33.0	279	41.7	500	74.7	169	25.3	669	100.0
	사립	107	4.0	789	29.4	896	33.4	1,784	66.6	2,680	100.0

1) 상호정보협력망 구축 :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 간 상호정보협력망 구축은 정보시스템(전용프로그램) 연계를 통한 공동 대출/반납, 상호대차서비스 등이 정보시스템(전용프로그램)으로 이뤄지는 것을 말함

□ 이용자 관련

● 연간 도서대출 권수

- 작은도서관 기준을 충족시키는 도서관(N=3,349)의 2010년 기준 작은도서관의 연간 도서대출 권수는 공립 작은도서관 약 125,000권, 사립 작은도서관 약 103,000권으로 조사됨.

● 이용자 수

- 2010년 기준으로 주중 1일 평균 이용자 수는 공립 작은도서관 약 55명, 사립 작은도서관 약 28명이며, 주말 1일 평균 이용자 수는 공립 작은도서관 약 50명, 사립 작은도서관 약 34명으로 공립의 경우 주말의 이용자보다 주중의 이용자 수가 더 많으며, 사립의 경우 주중보다 주말의 이용자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2010년을 기준으로 하여 연간 이용자 총수로 응답한 경우, 공립 작은도서관은 평균 579,989명, 사립 작은도서관은 평균 20,309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남.
- 작은도서관에 등록된 전체 이용자 수의 합계는 공립의 경우 총 923,910명이며, 사립의 경우 2,035,659명임.

<표 47> 전국 작은도서관 실태 : 이용자 관련

항목	연간 대출권수 (권)		1일 이용자 수(명)				연 이용자 총수 (명)		등록된 총 이용자 수(명)	
			주중		주말					
	공립	사립	공립	사립	공립	사립	공립	사립	공립	사립
평균	125,345	103,140	55	28	50	34	579,989	20,309	923,910	2,035,659

*2010년 기준 집계치

2.2.7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연계

□ 상호대차 서비스 유무

- 상호대차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은 기준을 충족시키는 전체 작은도서관(N=3,349)의 9.5%인 319개임.
- 작은도서관 유형별로는 공립 작은도서관의 26.0%, 사립 작은도서관의 5.4%가 상호대차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표 48> 전국 작은도서관 실태 : 상호대차 서비스 유무

항목		이용		이용하지 않음		합계		시스템 결측값	
상호대차서비스 이용유무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319	9.5	2,647	79.0	2,966	88.6	383	11.4
공·사립 유형	공립	174	26.0	457	68.3	631	94.3	38	5.7
	사립	145	5.4	2,190	81.7	2,335	87.1	345	12.9

□ 순회사서 유무

- 작은도서관 기준을 충족시키는 도서관(N=3,349) 중에서 순회사서를 이용하고 있는 곳은 9.5%인 319개임.
- 도서관 유형별로는 공립 작은도서관의 20.9%인 140개, 사립 작은도서관의 6.7%인 179개가 순회사서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표 49> 전국 작은도서관 실태 : 순회사서 유무

항목		이용		이용하지 않음		합계		시스템 결측값	
이용유무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319	9.5	2,635	78.7	2,954	88.2	395	11.8
공·사립 유형	공립	140	20.9	487	72.8	627	93.7	42	6.3
	사립	179	6.7	2,148	80.1	2,327	86.8	353	13.2

□ 지자체 및 공공도서관의 지원 유무

- 지자체 및 공공도서관의 지원을 받는 작은도서관은 기준을 충족시키는 도서관(N=3,349) 중 50.0%인 1,674개로 조사됨.
- 도서관 유형별로는 공립 작은도서관의 73.8%, 사립 작은도서관의 44.0%가 공공지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됨.

<표 50> 전국 작은도서관 실태 : 지자체 및 공공도서관 지원 유무

항목		지원받음		지원받지 않음		합계		시스템 결측값	
지원여부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1,674	50.0	1,280	38.2	2,954	88.2	395	11.8
공·사립 유형	공립	494	73.8	135	20.2	629	94.0	40	6.0
	사립	1,180	44.0	1,145	42.7	2,325	86.7	355	13.2

□ 지자체 및 공공도서관의 지원 내용

- 지자체 및 공공도서관의 지원을 받는 작은도서관 1,687개 가운데 인력지원을 받는 곳은 전체의 13.7%인 458개, 예산지원을 받는 곳은 34.3%인 1,152개, 장서지원을 받는 곳은 21.6%인 724개, 독서나 문화프로그램 지원을 받는 곳은 10.5%인 350개, 기타 지원을 받는 곳은 6.1%인 205개로 조사됨.
- 기타 지원 내용으로는 도서관 내부 리모델링 지원, 컴퓨터나 프로젝터 같은 기기 지원, TV 등의 영상교육설비 지원, 장식장, 책꽂이, 책상 외 가구 지원과 필기구 지원, 도서관 외부 간판수리 지원 등이 있다고 응답함.
- 공립 작은도서관의 경우 인력과 예산, 장서 지원에 있어 전체 공립 작은도서관의 34%가 넘는 곳이 지원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에, 사립 작은도서관의 경우는 예산지원을 받는 곳이 전체의 28.6%인 것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지원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표 51> 전국 작은도서관 실태 : 지자체 및 공공도서관 지원 내용

항목		인력지원		예산지원		장서지원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		기타	
지원여부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458	13.7	1,152	34.3	724	21.6	350	10.5	205	6.1
공·사립 유형	공립	232	34.7	385	57.5	232	34.7	135	20.2	65	9.7
	사립	226	8.4	767	28.6	492	18.4	215	8.0	140	5.2

□ 독서문화 프로그램 실시 여부

- 작은도서관 기준을 충족시키는 도서관(N=3,349)의 51.5%가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공립 작은도서관은 51.9%, 사립 작은도서관은 51.5%가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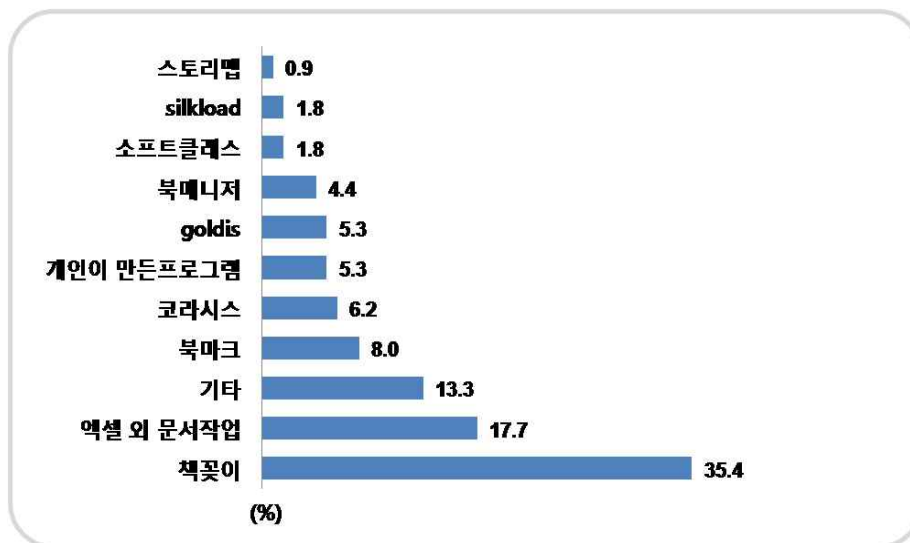
<표 52> 전국 작은도서관 실태 : 독서문화 프로그램 실시 여부

항목		실시		실시하지 않음		합계		시스템 결측값	
실시여부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1,726	51.5	1,549	46.3	3,275	97.8	74	2.2
공·사립 유형	공립	347	51.9	317	47.4	664	99.3	5	0.7
	사립	1,379	51.5	1,232	46.0	2,611	97.4	69	2.6

2.2.8 정보서비스

□ 도서관 관리 프로그램 유무

- 작은도서관의 대표적인 관리 프로그램 종류에는 책꽂이, 북마크, 코라시스 등이 있으며, 현재 사용 중인 프로그램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책꽂이로, 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도서관 중 약 35%가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한편 엑셀이나 워드 등 문서작업만으로 도서관을 관리하고 있는 경우도 도서관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응답한 도서관의 17.7%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보임.



[그림 10] 전국 작은도서관 실태 : 도서관 관리 프로그램 현황

3. 시사점

□ 작은도서관 운영자, 행정부서의 역할 인식 부족

● 작은도서관 운영자의 통계 입력에 대한 필요성 인식 부족

- 실태조사 1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입력한 전국 작은도서관의 수와 실제 운영자가 직접 설문에 응답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된 작은도서관의 수가 각각 4,159개와 2,533로 2배 가까운 차이를 보임.
- 상당수의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이 작은도서관의 현황 파악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통계 입력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조사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그 이유로는 통계를 입력한다고 해도 도서관 운영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 못한 현실을 꼽음.

● 지자체 담당자의 작은도서관 통계 입력 관리 및 안내의 역할 인식 부족

- 조사 1단계에서 확인된 전국 작은도서관 4,159개 중, 2011년 개관되었으나 설문에 응답한 64개를 포함하여 폐관이나 장기휴관 등으로 실제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도서관 및 도서관명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해 목록에 중복되어 표기된 도서관이 962개에 달했으며, 152개는 1차 조사에서 누락되는 등 실제 작은도서관 운영 상황에 대한 지자체별 현황 파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음.
- 이는 작은도서관을 전담하는 지자체별 담당자가 부족하여 상황에 맞는 업무처리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됨.

□ 작은도서관 통계 지표의 문제

● 작은도서관의 운영인력의 특성상 통계시스템 입력의 어려움

- 전국의 3,349개 작은도서관 중에서 상주 직원이 있는 도서관은 56%에 불과하며, 전체 작은도서관의 직원 수를 평균값으로 파악할 경우 도서관 1개당 약 1.7명의 직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작은도서관 직원 중에서 실질적으로 전반적인 도서관 운영 능력을 갖춘 사서자격의 전

문인력 현황만을 따지고 보면, 전국의 작은도서관에 평균 0.1명 정도의 사서자격을 갖춘 직원이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음.

- 한편 직원이나 자원봉사자가 전무하거나 파악조차 되지 않는 도서관도 1,359여 곳에 이르는 현실을 감안하면, 작은도서관의 정확한 현황 파악과 관리를 위한 통계 시스템을 갖춘다고 해도 실질적인 정보입력이 가능한 담당인력이 매우 부족한 현실을 문제로 지적할 수 있음.

● 국가 도서관 통계시스템 입력데이터의 낮은 신뢰도

- 체계적인 통계시스템 구축 및 정보관리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담당인력 확보가 시급함.
- 현실에서 벗어나지 않는 실질적인 정보 입력 및 관리를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도서관 운영자들에 대한 일방적 자료요청만으로는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구축이 사실상 어려움.

□ 작은도서관 통계시스템 입력관리의 문제

● 작은도서관 등록 시스템 부재

- 조사 1단계에서 파악된 작은도서관의 수(4,159개)와 실제 본 분석에 활용된 작은도서관의 수(3,349개)에 차이가 있는 것은, 실제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등록 체계가 없기 때문임.
- 따라서 작은도서관 운영자들과 일일이 연락을 취해 도서관 운영 상태를 확인하지 않는 한, 휴관이나 폐관 같은 운영 중 변동 상황을 파악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음.

● 작은도서관 운영현황 관리 시스템의 부재

- 작은도서관의 운영 현황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사립 작은도서관의 10% 정도는 일주일 중 운영일이 3일이 채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상당수 작은도서관이 운영되는 평일의 평균 운영시간을 분석했을 때, 공립 작은도서관의 평일 평균 운영시간이 8.5시간, 사립이 6.6시간이었으며, 그 중 평균에 미달되는 수준의 운영시간을 보이는 곳이 공립은 179개, 사립은 1,045개로 조사됨.
- 이처럼 평균 운영일 수와 운영시간에 모자란 작은도서관들의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작은도서관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지원이나 패널티를 적용하는 등, 실질적

관리·감독이 가능한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

□ 작은도서관과 공공도서관 간 연계성 미흡

● 작은도서관과 공공도서관 간 연계방향의 다각화 및 활성화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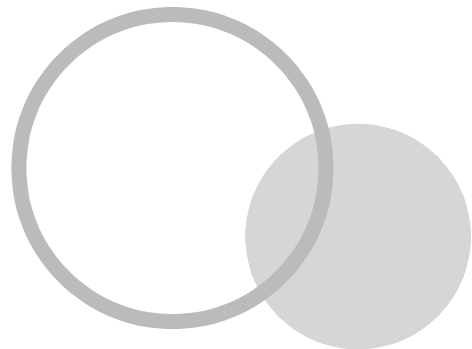
- 작은도서관이 지자체 이하 공공도서관과 연계하여 도서관 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상호대차 서비스, 순회사서 서비스 외 인력지원과 예산지원, 장서지원, 프로그램 지원 등이 있음.
- 상호대차 서비스에 대해서는 전체 작은도서관의 9.5%, 순회사서는 9.5%, 순회사서를 포함한 인턴 파견 같은 인력지원은 13.7%, 예산지원은 34.3%, 장서지원은 21.6%, 각종 프로그램 지원은 10.5%의 작은도서관이 지자체와 공공도서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이처럼 예산이나 장서 지원 같은 물질적 지원에 비해 인력지원이나 프로그램 지원 등의 수준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 향후 작은도서관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한 정보 입력이나 이용자 만족을 위해서는 개별 도서관이 전문인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인적 지원 및 독서나 문화 관련 프로그램 지원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제4장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수요조사

1. 조사개요

2. 분석결과

3. 시 사 점



1. 조사개요

□ 조사목적

- 본 조사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내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현황과 주민들의 만족도 및 수요를 파악함.
- － 국토해양부에서 실시한 ‘공동주택단지 내 거주자의 주민공동시설 이용현황 및 요구 조사’와 비교하여 공동시설로서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조사로 의의가 있음

□ 조사대상

- 본 조사의 공간적 범위는 작은도서관 설치의무대상인 2006년 이후 준공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로 한정함
 - － 2006년 1월 6일 개정되고 1월 9일 시행된 ‘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55조 5항에 따르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 작은도서관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음
 - － 2006년은 중앙부처의 주요정책과제로 작은도서관 설립 및 활성화를 책정하고, 구체적으로는 ‘작은도서관진흥팀’을 신설하여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본격적인 정책수립 및 추진에 나서기 시작한 시점과 일치함
- 2006년 이후 준공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940곳 중에서 권역별/세대규모별 기본 할당 후 모집단 비례배분하여 160단지 선정
 - － 5대 권역 : 서울/인천, 경기도, 충청권, 경상권, 전라/강원/제주 등
 - － 세대크기 : 300~500세대, 500~1000세대, 1000세대이상
- 조사대상은 공동주택단지 내 주민과 작은도서관 운영자(관리자)임
 - － 선정된 160개 공동주택 단지 내 주민과 작은도서관 운영자(관리자)를 대상으로 조화된 질문지를 가지고 방문면접조사(Face to Face Interview) 실시함
 - － 공동주택단지 1곳 당 일반주민 4인과 주민대표 1인을 포함하여 총 5인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 진행. 즉 공동주택단지 내 주민 800명을 대상으로 95% 신뢰수준에서 $\pm 3.5\%$ 오차

범위에서 조사를 실시함

-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의 운영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별도로 작은도서관 운영자 또는 관리자 160명을 대상으로 95% 신뢰수준에 $\pm 7.1\%$ 오차범위에서 조사가 실시됨

<표 53>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수요조사의 표본 배분 : 권역 및 세대별

권역	300~500세대미만			500~1000세대미만			1000세대이상			합계		
	기본	비례	소계	기본	비례	소계	기본	비례	소계	기본	비례	합계
서울/인천 (서울+인천)	5	4	9	5	4	9	5	2	7	5	10	15
경기도	5	11	16	5	13	18	5	2	7	5	26	31
충청권 (대전+충북+충남)	5	4	9	5	8	13	5	1	6	5	13	18
경상권 (부산+대구+울산+ 경남+경북)	5	8	13	5	11	16	5	3	8	5	22	27
전라/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 강원+제주)	5	7	12	5	6	11	5	1	6	5	14	19
소계 (단지수)	25	34	59	25	42	67	25	9	34	75	85	1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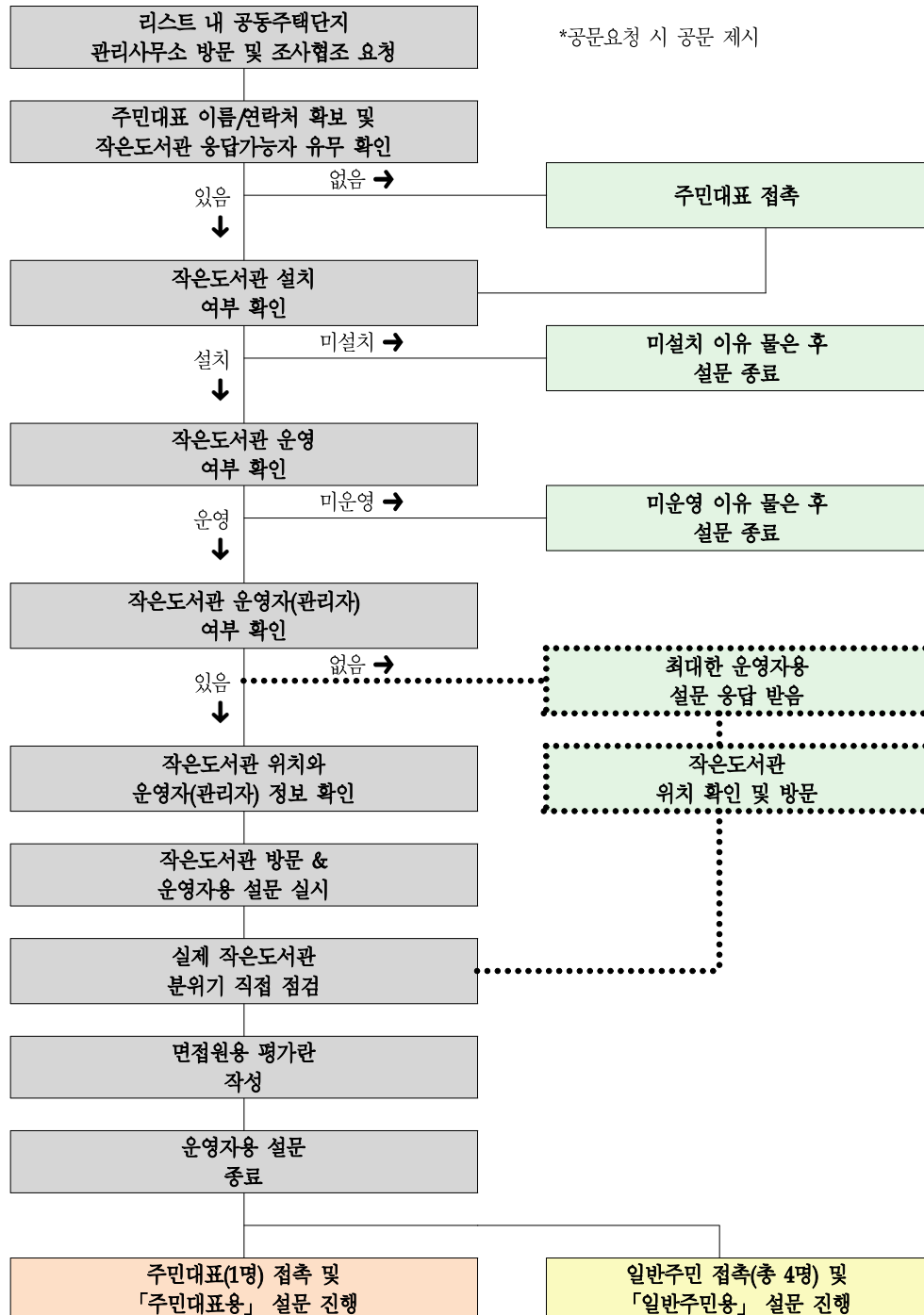
□ 조사방법

● 방문면접조사(Face to Face Interview)

- 선정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160곳을 면접원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대상자(주민 800명)에게 설문내용을 설명하고 그 응답을 기입하는 현장조사로 진행함.
- 면접원은 구조화된 설문지에 대한 연구대상자들의 응답을 기입하는 것과 함께,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을 방문함으로써 확인 가능한 내용을 정성적(Qualitative)으로 기술하여, 정량적인(Quantitative) 연구내용을 보완함.

● 조사 진행절차

－ 구체적인 조사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음.



[그림 11]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수요조사 진행절차

□ 조사기간

- 2011년 4월 26일 ~ 2011년 5월 18일 (23일간)

<표 54>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개요

구 분	내 용	
조사대상	2006년 이후 준공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운영자(혹은 관리자), 주민대표 및 일반주민	
표본추출틀	2006년 이후 준공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리스트	
표본크기	작은도서관 운영자(관리자)	공동주택단지 내 주민
	160명	공동주택단지별 5명씩 총 800명 - 주민대표 1명씩 총 160명 - 일반주민 4명씩 총 640명
표본배분	권역별/세대규모별 기본 할당 후 모집단 비례배분	
조사방법	방문면접조사(Face to Face Interview)	
자료수집방법	구조화된 질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	
조사기간	2011년 4월 26일 ~ 5월 18일(23일간)	

□ 조사 내용

- 본 조사의 내용은 크게 작은도서관 운영자용과 주민용으로 나누어짐.
 - 작은도서관 운영자용 설문은 주요 조사내용은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정보,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현황, 작은도서관 시설현황, 작은도서관의 세부 운영 현황 등으로 구성되며, 면접원이 현장방문을 통해 작은도서관 활성화 정도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항목도 포함됨
 - 작은도서관 주민용 설문은 주민대표용과 일반주민용으로 구분됨. 이는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의 활성화 정도나 운영상의 어려움에 대한 질문은 일반 주민 모두가 응답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주민대표가 대표로 응답하도록 함. 이러한 질문 이외의 응답자 정보, 공동주택단지 내 설치된 공공시설 이용 현황, 작은도서관 이용현황 등의 질문내용은 동일하게 구성됨

<표 55>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운영자 설문 조사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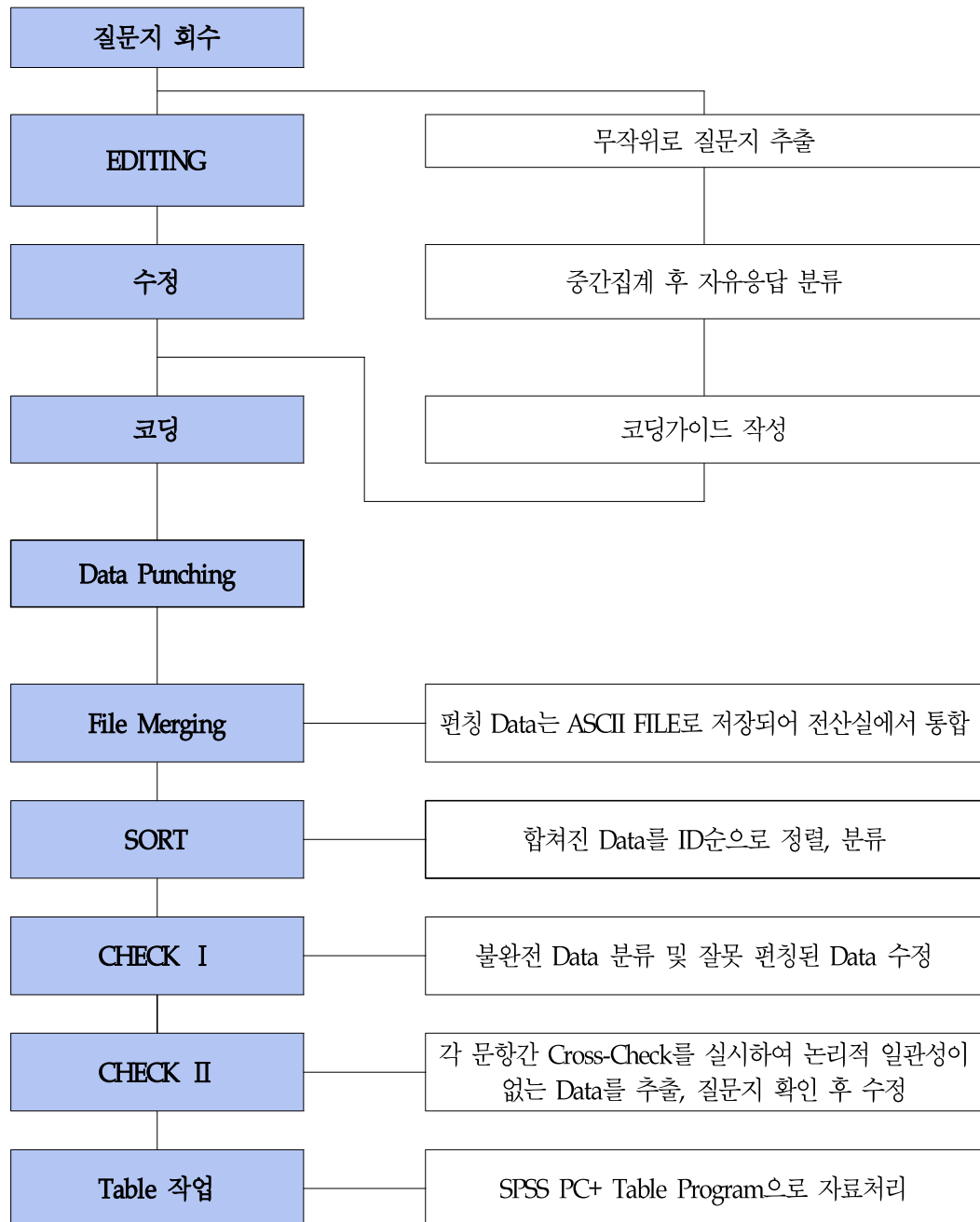
구 분	내 용
공동주택단지 정보	- 조사대상 아파트명 - 소재지(시도, 시군구, 읍면동, 상세주소) - 세대수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현황	- 작은도서관 설치 여부 및 미설치 이유 - 작은도서관 용도변경 시 현 사용 용도 및 그 이유 - 작은도서관 운영 여부 및 미운영 이유 - 작은도서관 운영자(관리자) 여부 및 사서자격증 유무, 주 소속
작은도서관 시설 현황	- 개관년도 - 지자체 등록 여부 및 미등록 이유 - 전용면적, 열람석, 도서관 자료 - 시설 관련 조례(도서관 법 시행령 3조) 부합 여부
작은도서관 세부 운영 현황	- 작은도서관 운영 월/요일/시간 - 보유 장서 구성 및 권수 (도서자료/연속간행물) - 인터넷 이용 가능 컴퓨터 보유 현황(관리자용/이용자용) - 종사자 현황(직원/자원봉사자) ; 종사자 수, 사서자격증이 있는 종사자수, - 사서 관련 교육 이수 종사자 수 및 이수 시간 - 2010년 수입원 및 예산 지출 현황 - 외부 도서대출 현황 ; 도서대출 가능 여부, 대출도서 관리 방식, 지역 공공도서관과 연계 (상호정보협력망 구축) 여부, 연간 도서대출 권수 - 작은도서관 이용자 수 ; 주중/주말 1일 평균 이용자 수, 연간 이용자 수, 회원등록자 수 - 상호대차서비스(협약맺은 타 도서관에서 도서대출) 제공 여부 - 순회사서 서비스(공공도서관에서 사서 파견) 활용 여부 - 지자체나 공공도서관으로부터의 지원 여부 및 내용 ; 인력, 예산, 지원장서, 문화프로그램 등 - 독서 · 문화프로그램 실시 여부 ; 프로그램 수, 실시횟수, 참가자 수 - 작은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개선 사항
작은도서관 활성화 정도에 대한 평가 (면접원 현장 평가)	- 작은도서관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 평가 - 주민들의 작은도서관 이용 및 호응도에 대한 평가

<표 56>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주민 설문 조사내용

구 분		내 용
공동주택단지 내 설치된 공공시설 이용 현황		- 공동주택단지 내 설치된 공공시설 이용 경험 여부 및 만족도 - 지난 1년 간(2010년) 가장 많이 이용한 공공시설 -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공공시설
작은도서관 이용 현황	비이용자	- 작은도서관 이용 경험 없는 경우 그 이유 - 향후 작은도서관 이용에 대한 욕구 ; 향후 이용 의향 여부, 이용 희망 요일/시간대, 이용 목적 -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필요도 및 그 이유
	이용자	- 작은도서관 이용 목적 - 작은도서관 이용 현황 ; 방문 빈도, 이용하는 시간 및 시간대 - 작은도서관 운영 및 환경 관련 만족도 ; 개관/폐관 시간(이용가능 시간), 장서구성(장서자료의 질, 최신성), 장서량, 열람좌석 수 및 공간의 크기, 도서관 안내/홍보, 도서관 내 문화프로그램, 운영자의 전문성 등 - 작은도서관 이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항목 -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필요도 및 그 이유 - 작은도서관 이용 시 불편사항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개선사항
주민대표 응답문항 (주민대표만 응답)		- 공동주택단지 내 설치되어 있는 공공시설 현황 ; 가장 활성화된 공공시설, 가장 활성화가 필요한 공공시설 - 작은도서관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여부 및 그 이유 - 작은도서관 운영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
응답자 정보		- 조사대상 아파트명 - 소재지(시도, 시군구, 읍면동, 상세주소) - 입주시기 - 성별, 연령, 직업, 학력, 결혼여부, 가족원 수, 18세 미만 자녀 유무, 월 평균 가구소득

□ 자료 처리 방법

- 수집된 자료(Raw Data)는 Editing, Coding, Punching 과정을 거쳐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프로그램으로 전산처리함.



[그림 12]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수요조사 자료처리방법

□ 자료 분석 방법

- 본 조사의 분석은 설문 유형별로 이루어지되, 주민대표용과 일반주민용은 ‘주민용’으로 합쳐서 분석을 하기로 함.
- 설문 유형별 각각의 개별문항에 대해서는 ‘전체 분석’과 ‘특성별 분석’을 실시하였음.
 - － 전체 분석 : 설문 문항별 전체 응답 base로 분석하였음.
 - － 특성별 분석 : 설문 문항별로 응답자 특성에 따라 교차분석하는 형태임.
 - － 단, 설문 문항에 따라 의미 있는 응답자 특성 중심으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응답자 특성별로 사례수가 적은 경우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 설문문항 중 5점 척도로 측정된 문항의 경우 평균값 산출 시 역점수화(reverse)하여 산출하였음.

<표 57>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수요조사 자료분석 방법 : 설문 유형별 응답자 특성 구성

구 분	설문유형	
	작은도서관 운영자용	주민용(주민대표용+일반주민용)
공동주택단지 특성	권역 지역크기 세대수	권역 지역크기 세대수
주민 특성	-	성별 연령 입주년도 직업 학력 결혼여부 18세미만 아동 유무 월평균 가계 소득
작은도서관 특성	운영자 주 소속 지자체 등록 여부 시설 관련 조례 부합 여부 활성화 정도(현장평가)	작은도서관 설치 여부 작은도서관 운영 여부 운영자 유무 운영자 사서자격증 유무 운영자 주 소속 지자체 등록 여부 시설 관련 조례 부합 여부 활성화 정도(주민대표 평가)* 활성화 정도(현장 평가)

* ‘주민용’에서 ‘작은도서관 특성’의 경우 작은도서관 운영자용 데이터와 주민용 데이터를 머지하여, 작은도서관 운영자용 응답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단지별 주민용 데이터에 뿌린 결과를 토대로 분석함(단, ‘활성화 정도(주민대표 평가)’의 경우 주민대표만 응답한 문항으로 이 역시 주민대표 응답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단지별 주민용 데이터에 뿌린 결과를 토대로 분석함).

2.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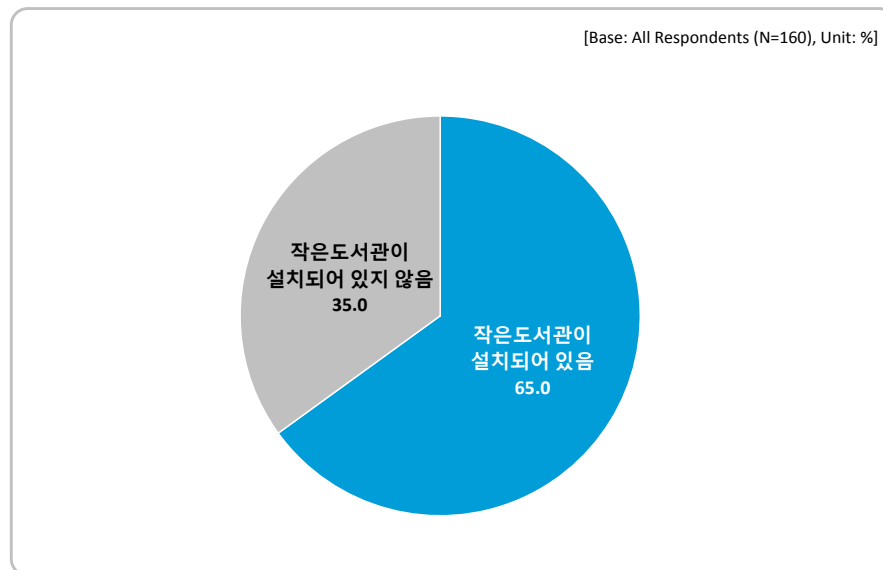
2.1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운영자 대상 설문조사 분석

2.1.1 작은도서관 설치 현황

□ 작은도서관 설치 여부

● 전체 분석

- 2006년 이후 준공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작은도서관의 설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작은도서관이 설치된 곳은 65.0%로 나타났다.



[그림 13]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설치 여부

● 특성별 분석

- 공동주택단지가 경기와 대전/충청 권역이고, 농어촌 지역인 경우 작은도서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난 반면, 광주/강원/전라/제주 권역, 중소도시, 300~500세대 미만인 경우 작은도서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곳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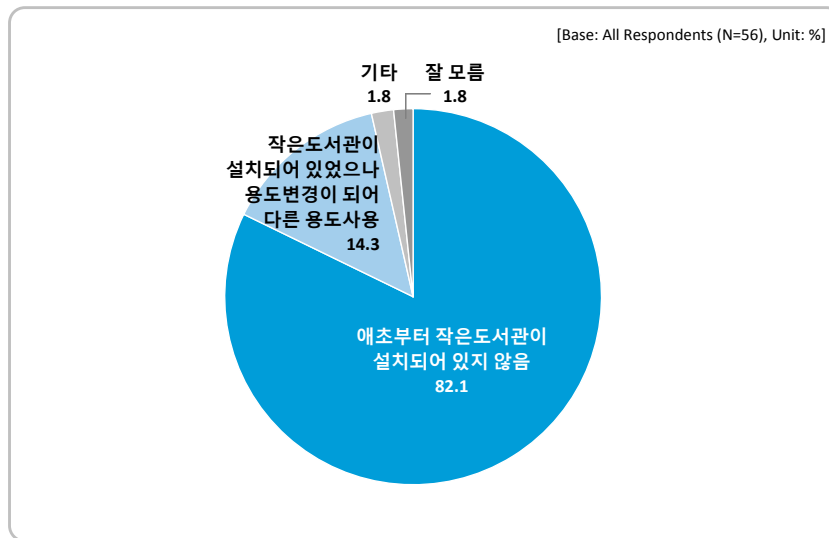
<표 58>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설치 여부

(단위 : 명, %)

		사례수	작은도서관이 설치되어 있음	작은도서관이 설치되어있지 않음
전체		160	65.0	35.0
권역	서울/인천	26	61.5	38.5
	경기	41	75.6	24.4
	대전/충청	27	74.1	25.9
	부산/대구/울산/경상	37	67.6	32.4
	광주/강원/전라/제주	29	41.4	58.6
지역크기	대도시	59	62.7	37.3
	중소도시	68	57.4	42.6
	농어촌	33	84.8	15.2
세대수	300-500세대 미만	59	37.3	62.7
	500-1000세대 미만	66	83.3	16.7
	1,000세대 이상	35	77.1	22.9

□ 작은도서관 미설치 이유 및 용도 변경 현황

- 작은도서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곳(N=56)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해 물어본 결과, 대부분(82.1%)이 ‘애초부터 작은도서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음’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작은도서관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용도변경이 되어 현재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응답도 14.3%로 나타났다.
- 아울러, 작은도서관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곳(N=8)을 대상으로 현재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 그냥 방치되어 있거나, 헬스장으로 사용되거나, 주민소회의실 또는 운영위원회 회의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그렇게 된 이유는 ‘시설 미비’, ‘자료(도서)의 부족’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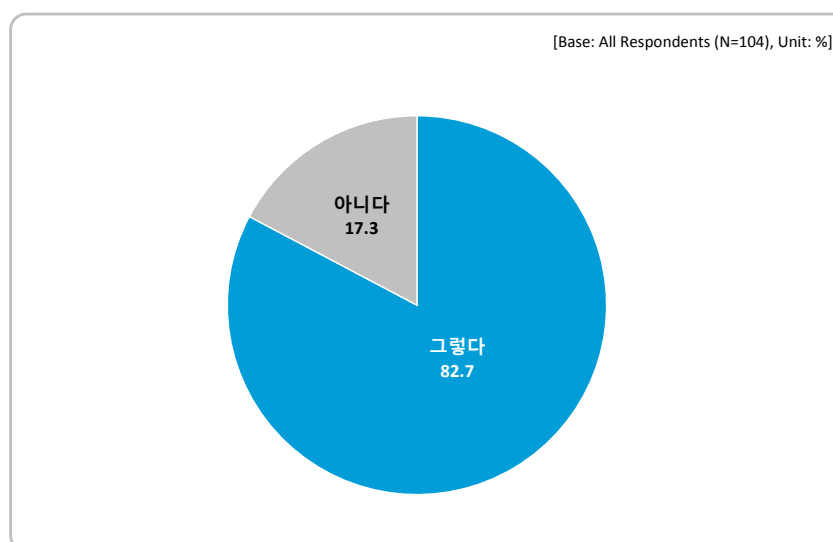


[그림 14]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미설치 이유

2.1.2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

□ 현재 작은도서관 운영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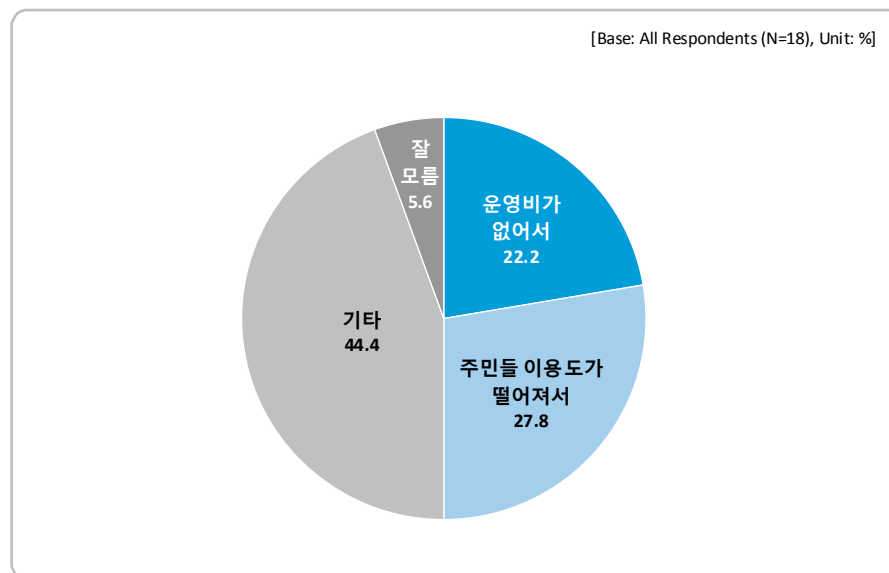
- 작은도서관이 설치되어 있는 곳(N=104) 중에서 현재 작은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는 비율은 82.7%로 나타났다.



[그림 15]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운영여부

□ 현재 작은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지 않는 이유

- 현재 작은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지 않는 곳(N=18)을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해 물어본 결과, ‘주민들 이용도가 떨어져서’라는 응답이 27.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운영비가 없어서’라는 응답이 22.2%로 그 뒤를 이었음.
- ‘기타’ 이유로는 도서량 부족, 관리가 힘들어서(관리 운영자 부재), 자원봉사자가 없어서, 준비 중(운영방법 미결정, 시설물 설치, 도서량 확보 등), 협소해서 이전 계획 중이라는 등의 의견들이 제시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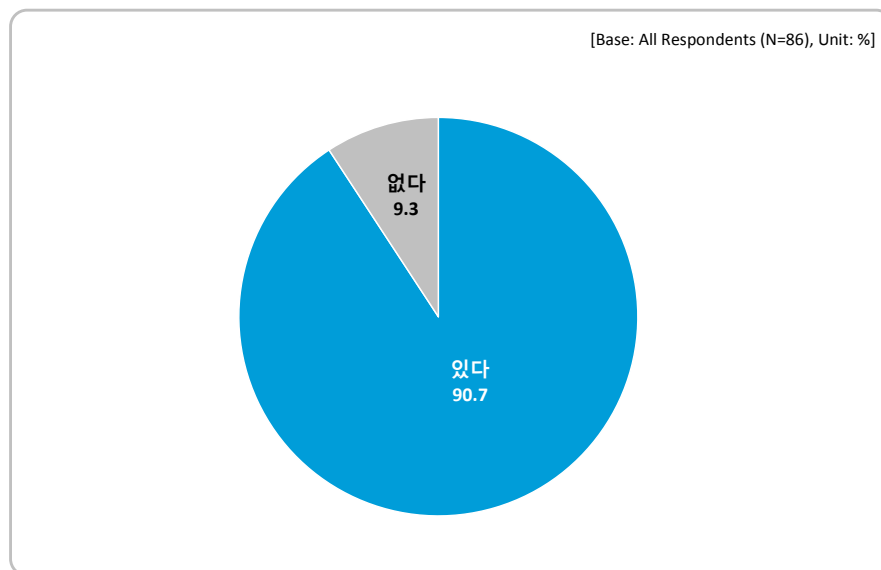


[그림 16]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의 미운영 이유

2.1.3 작은도서관 운영자 현황

□ 작은도서관 운영자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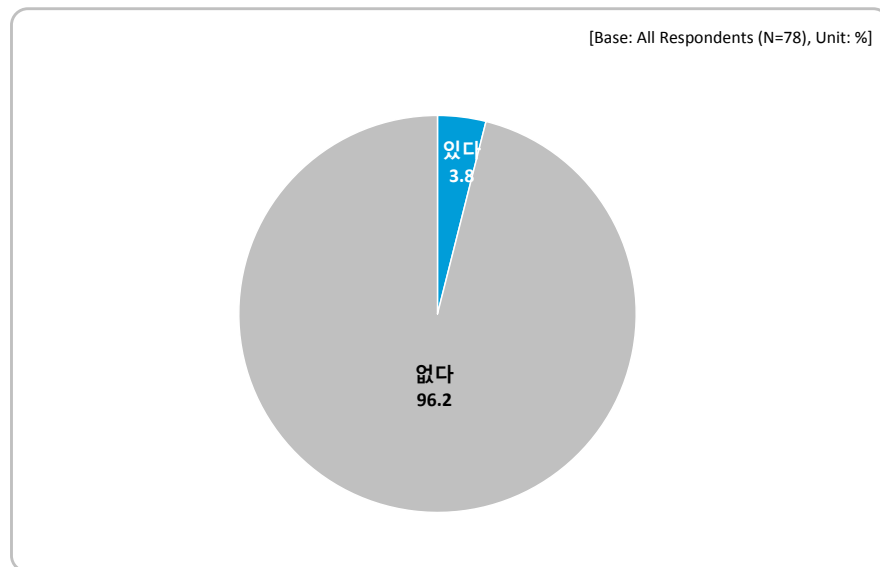
- 현재 작은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는 곳(N=86) 중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물어본 결과, 10곳 중 9곳(90.7%)은 운영(관리)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7]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운영자 여부

□ 작은도서관 운영자 사서자격증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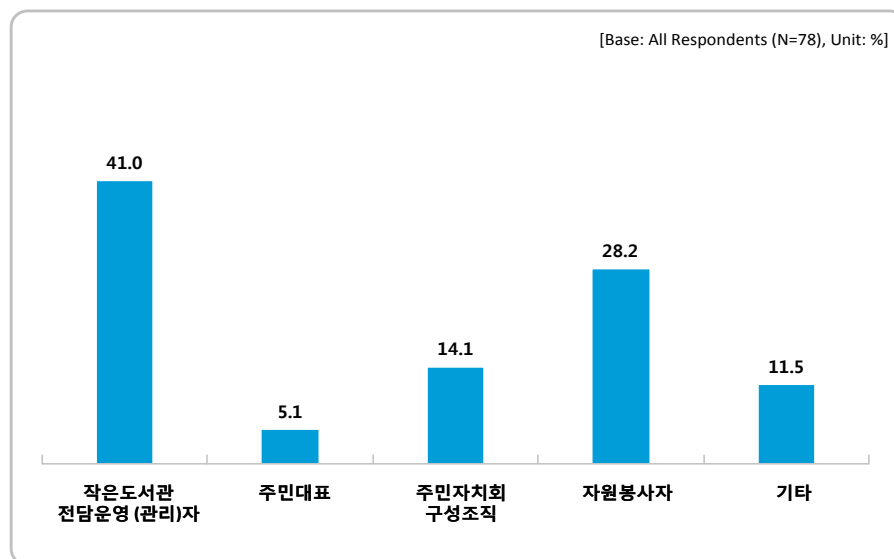
- 현재 작은도서관에서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곳(N=78)을 대상으로, 운영자가 사서자격증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물어본 결과, 거의 대부분(96.2%)이 사서자격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8]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운영자 사서자격증 유무

□ 작은도서관 운영자의 주 소속

- 현재 작은도서관에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곳(N=78)을 대상으로, 운영자가 소속되어 있는 곳에 대해 알아본 결과, ‘작은도서관 전담운영(관리)자’인 경우가 41.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은 ‘자원봉사자’가 28.2%, ‘주민자치회 구성조직’이 14.1% 순으로 나타났다.
- ‘기타’에는 부녀회, 운영위원장, 공공근로, 관리사무소 등이 제시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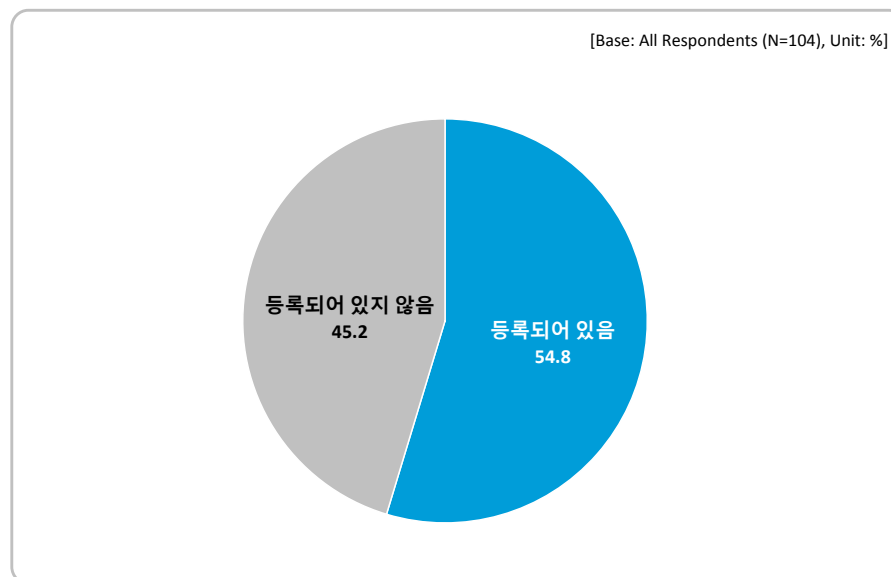


[그림 19]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운영자의 주 소속

2.1.4 작은도서관 시설 현황

□ 지자체 등록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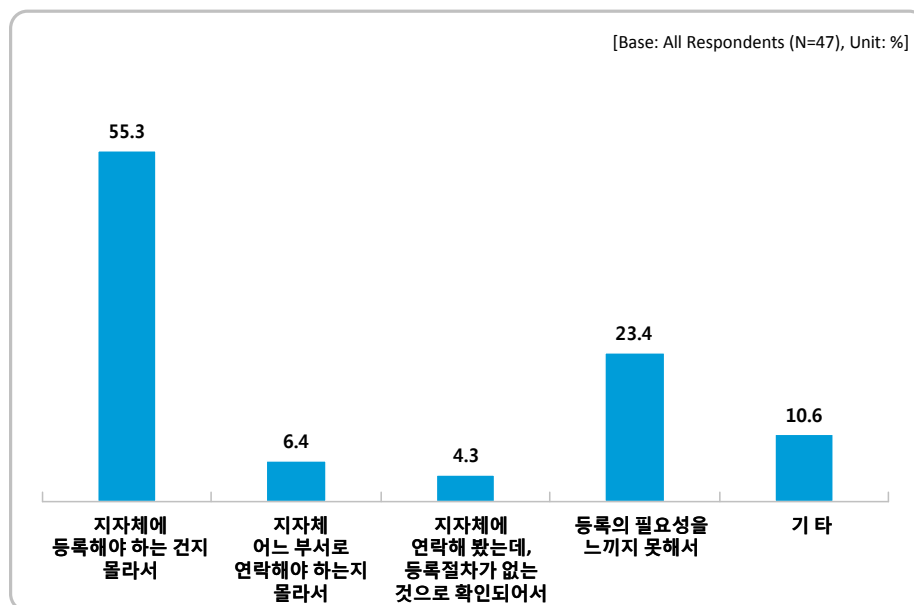
- 작은도서관이 설치되어 있는 곳(N=104)을 대상으로 지자체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본 결과, 절반 이상인 54.8% 정도가 지자체에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0]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의 지자체 등록 여부

□ 지자체 미등록 이유

- 지자체에 등록되어 있지 않는 작은도서관(N=47)을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본 결과, 절반 이상(55.3%)이 ‘지자체에 등록해야 하는 건지 몰라서’라고 응답하였고, ‘등록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가 23.4%로 그 뒤를 이었음.
- ‘기타’로는 현재 등록대기중이거나, 지원이 미흡하기 때문에 등록하지 않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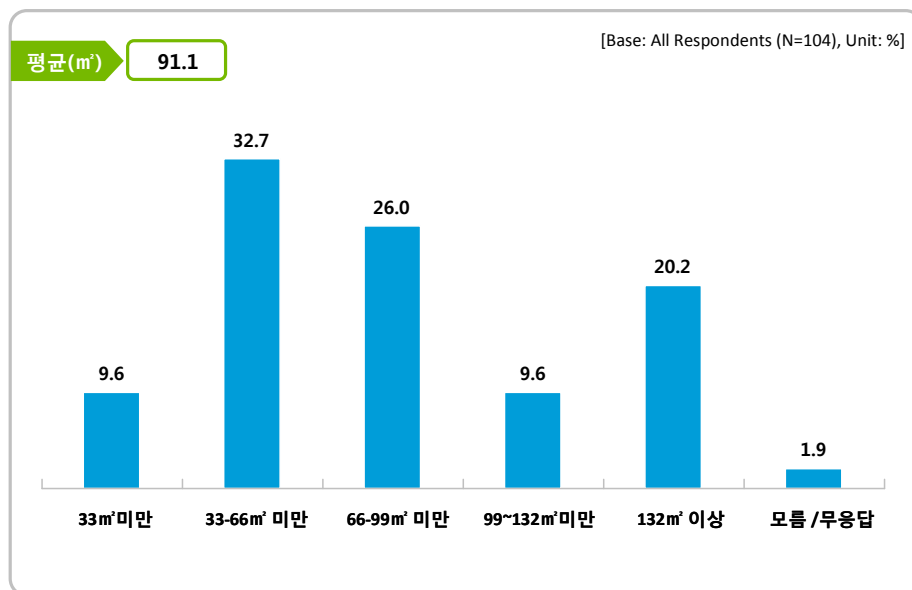


[그림 21]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의 지자체 미등록 이유

□ 작은도서관 전용 면적 현황

● 전체 분석

- 작은도서관이 설치되어 있는 곳(N=104)을 대상으로 전용면적에 대해 알아본 결과, ‘33-66㎡’인 곳이 32.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66-99㎡’인 곳이 26.0%, ‘132㎡ 이상’인 곳이 20.2% 순으로, 평균적으로 보면 91.1㎡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시설 관련 조례(도서관 법 시행령 3조) 기준(면적 33㎡ 이상)에 부합하지 않는 곳도 9.6%로 나타났다.



[그림 22]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전용 면적 현황

● 특성별 분석

- 전용면적 평균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작은도서관이 대도시에 위치한 경우, 세대수가 많을수록, 전담 운영(관리)자가 있는 경우, 지자체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전용면적이 상대적으로 더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9>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전용 면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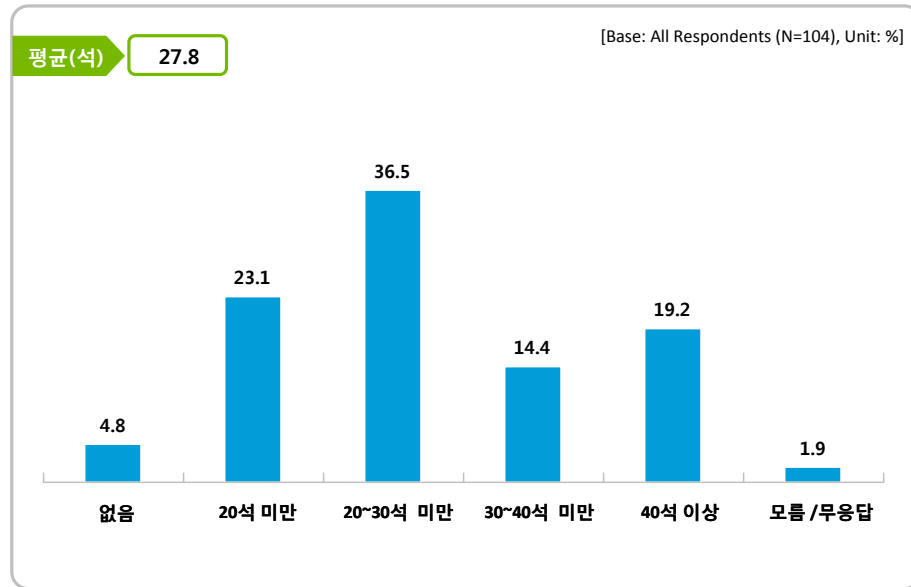
(단위 : 명, %)

		사례수	33㎡ 미만	33-66㎡ 미만	66-99㎡ 미만	99~132㎡ 미만	132㎡ 이상	모름 / 무응답	평균 (㎡)
전체		104	9.6	32.7	26.0	9.6	20.2	1.9	91.1
지역 크기	대도시	37	10.8	37.8	24.3	5.4	18.9	2.7	98.6
	중소도시	39	12.8	33.3	17.9	7.7	25.6	2.6	86.7
	농어촌	28	3.6	25.0	39.3	17.9	14.3	0.0	87.4
세대수	300-500세대 미만	22	4.5	36.4	40.9	9.1	9.1	0.0	77.7
	500-1000세대 미만	55	12.7	38.2	20.0	10.9	16.4	1.8	78.8
	1,000세대 이상	27	7.4	18.5	25.9	7.4	37.0	3.7	127.9
운영자 주 소속	전담 운영(관리)자	32	0.0	34.4	25.0	9.4	31.3	0.0	122.8
	비전담자 (주민자치회 소속, 봉사자 등)	46	6.5	34.8	32.6	10.9	15.2	0.0	84.0
지자체 등록 여부	등록	57	7.0	26.3	24.6	12.3	29.8	0.0	113.3
	미등록	47	12.8	40.4	27.7	6.4	8.5	4.3	62.9

□ 작은도서관 열람석 현황

● 전체 분석

- 작은도서관이 설치되어 있는 곳(N=104)을 대상으로 열람석 수에 대해 알아본 결과, ‘20-30석 미만’이 36.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20석 미만’이 23.1%, ‘40석 이상’이 19.2% 순으로, 평균적으로 보면 27.8석으로 나타났다.
- 한편, 주민들을 위한 열람석이 전혀 없는 경우도 4.8% 정도로 나타났다.



[그림 23]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열람석 현황

● 특성별 분석

- 열람석 수 평균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작은도서관이 농어촌 지역에 있는 경우, 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 대규모 공동주택단지이고 지자체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열람석 수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0>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열람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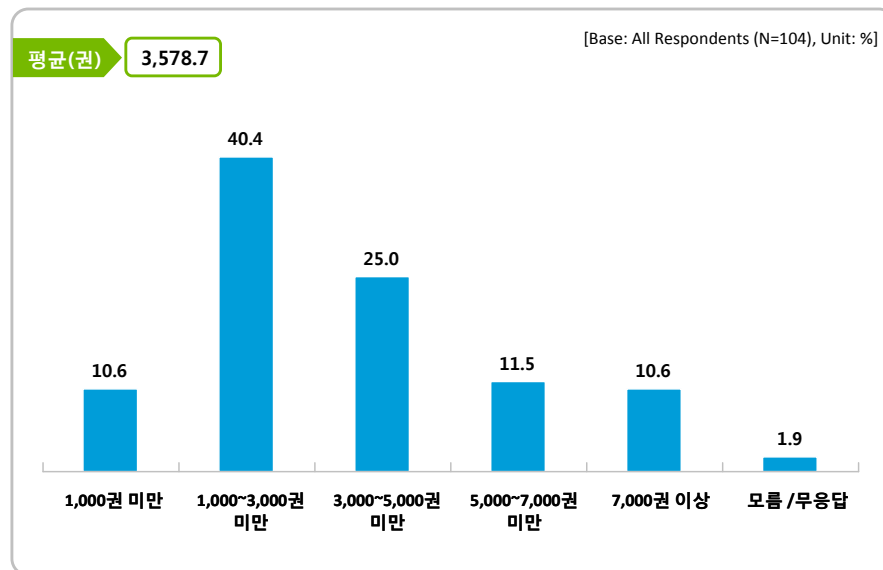
(단위 : 명, %)

		사례수	없음	20석 미만	20~30석 미만	30~40석 미만	40석 이상	모름/무응답	평균(석)
전체		104	4.8	23.1	36.5	14.4	19.2	1.9	27.8
지역 크기	대도시	37	0.0	24.3	45.9	10.8	16.2	2.7	25.3
	중소도시	39	10.3	25.6	28.2	10.3	23.1	2.6	28.1
	농어촌	28	3.6	17.9	35.7	25.0	17.9	0.0	30.4
세대수	300-500세대 미만	22	4.5	40.9	18.2	18.2	18.2	0.0	25.5
	500-1000세대 미만	55	5.5	12.7	50.9	10.9	18.2	1.8	25.7
	1,000세대 이상	27	3.7	29.6	22.2	18.5	22.2	3.7	34.0
지자체 등록 여부	등록	57	0.0	14.0	47.4	19.3	19.3	0.0	30.2
	미등록	47	10.6	34.0	23.4	8.5	19.1	4.3	24.7

□ 작은도서관 자료보유 현황

● 전체 분석

- 작은도서관이 설치되어 있는 곳(N=104)을 대상으로 도서관 자료 수에 대해 알아본 결과, '1,000~3,000권 미만'이라는 응답이 40.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3,000~5,000권 미만'이 25.0%, '5,000~7,000권 미만'이 11.5% 순으로, 평균적으로 보면 약 3,579권 정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시설 관련 조례(도서관 법 시행령 3조) 기준(1,000권 미만)에 부합하지 않는 곳은 10.6%로 나타났다.



[그림 24]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자료보유 현황

● 특성별 분석

- 도서관 자료 수 평균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작은도서관이 중소도시 지역에 있는 경우, 세대수가 많을수록, 운영자가 비전담자(주민자치회 소속, 봉사자 등)인 경우, 지자체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도서관 자료 수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1>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자료보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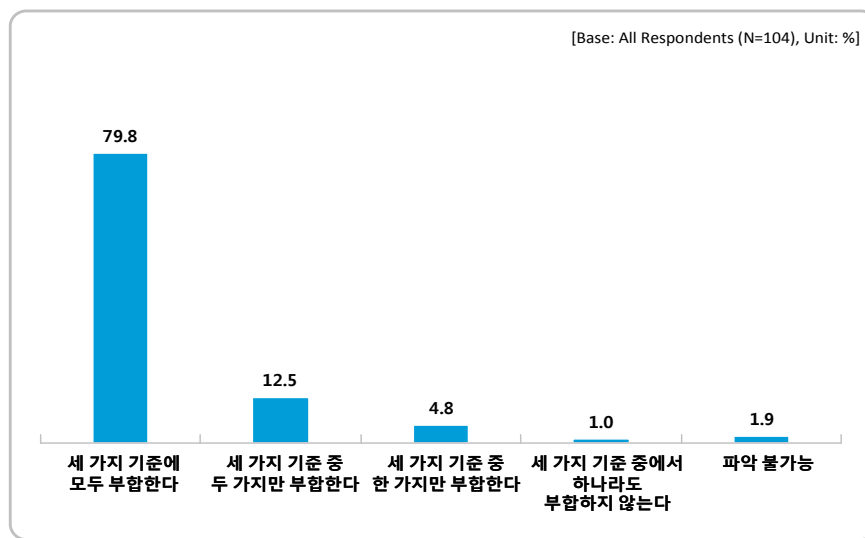
(단위 : 명, %)

		사례수	1,000 권미만	1,000 ~3,000 권미만	3,000 ~5,000 권미만	5,000 ~7,000 권미만	7,000 권이상	모름 / 무응답	평균 (권)
전체		104	10.6	40.4	25.0	11.5	10.6	1.9	3,578.7
지역 크기	대도시	37	13.5	35.1	29.7	8.1	10.8	2.7	3,392.1
	중소도시	39	7.7	41.0	25.6	7.7	15.4	2.6	4,087.6
	농어촌	28	10.7	46.4	17.9	21.4	3.6	0.0	3,128.0
세대수	300-500세대 미만	22	13.6	59.1	22.7	0.0	4.5	0.0	2,351.0
	500-1000세대 미만	55	9.1	38.2	25.5	18.2	7.3	1.8	3,824.9
	1,000세대 이상	27	11.1	29.6	25.9	7.4	22.2	3.7	4,106.3
운영자 주 소속	전담 운영(관리)자	32	3.1	43.8	28.1	12.5	12.5	0.0	3,727.6
	비전담자 (주민자치회 소속, 봉사자 등)	46	2.2	34.8	34.8	17.4	10.9	0.0	4,371.2
지자체 등록 여부	등록	57	3.5	33.3	35.1	15.8	12.3	0.0	4,015.9
	미등록	47	19.1	48.9	12.8	6.4	8.5	4.3	3,025.0

□ 시설 관련 조례 부합 여부

● 전체 분석

- 작은도서관이 설치되어 있는 곳(N=104) 중 대다수(79.8%)가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대한 조례」에서 지정하고 있는 최소 면적, 열람석, 도서관 자료 수, 이 ‘세 가지 기준에 모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5]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시설 관련 조례 부합 여부

● 특성별 분석

- 작은도서관이 지자체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미등록된 곳보다 시설 관련 조례의 ‘세 가지 기준에 부합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62>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시설관련 조례 부합 여부

(단위 : 명, %)

		사례수	세 가지 기준에 모두 부합한다	세 가지 기준 중 두 가지만 부합한다	세 가지 기준 중 한 가지만 부합한다	세 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부합하지 않는다	파악 불가능
전체		104	79.8	12.5	4.8	1.0	1.9
지자체 등록 여부	등록	57	91.2	7.0	1.8	0.0	0.0
	미등록	47	66.0	19.1	8.5	2.1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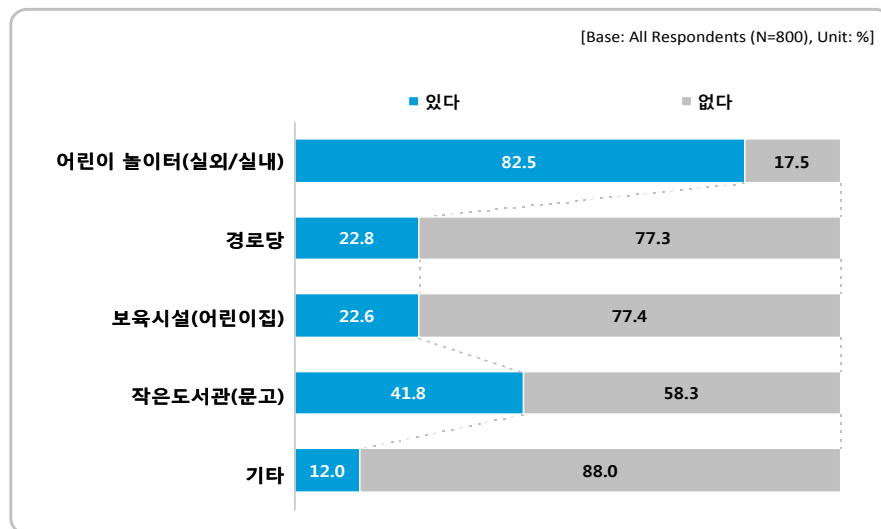
2.2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주민 대상 설문조사 분석

2.2.1 공동주택단지 내 설치된 공공시설 이용 현황

□ 공동주택단지 내 공공시설 이용 경험

● 전체 분석

-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 내 설치된 공공시설 중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시설에 대해 물어본 결과, '어린이 놀이터(실외/실내)'의 경우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82.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은 '작은도서관(문고)'이 41.8%, '경로당'이 22.8% 순으로 나타났음. 이용해 본 '기타' 공공시설로는 체육시설(헬스장, 골프연습장, 탁구장, 수영장, 배드민턴장 등), 자모 휴게실, 독서실, 사우나 등으로 나타났음.



[그림 26] 공동주택단지 내 공공시설 이용 경험

● 특성별 분석

- 공동주택단지가 대전/충청, 농어촌, 500-1,000세대 미만인 경우, 주민들이 여자, 30대~40대, 전업주부, 기혼자, 자녀가 있는 경우, 월평균 가계소득이 500만원 미만에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작은도서관에 운영자가 있고, 지자체에 등록된 경우, 시설 관련 조례 기준에 부합할수록, 활성화 정도가 높을수록 작은도서관 이용 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표 63> 공동주택단지 내 공공시설 이용 경험 : 작은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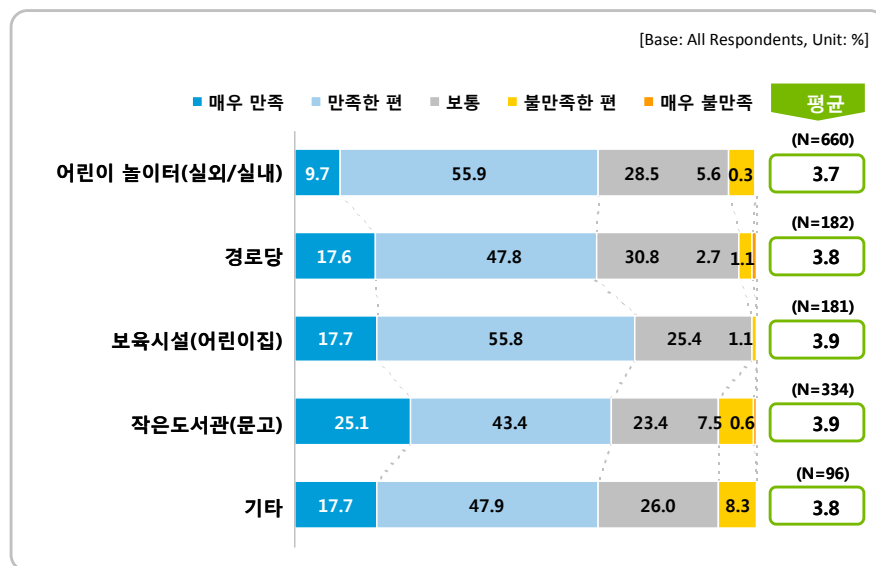
(단위 : 명, %)

			사례수	있다	없다
전체			800	41.8	58.3
공동 주택 단지 특성	권역	서울/인천	130	38.5	61.5
		경기	205	45.4	54.6
		대전/충청	135	54.8	45.2
		부산/대구/울산/경상	185	42.7	57.3
		광주/강원/전라/제주	145	26.2	73.8
	지역크기	대도시	295	40.3	59.7
		중소도시	340	35.6	64.4
		농어촌	165	57.0	43.0
	세대수	300~500세대 미만	295	22.0	78.0
		500~1000세대 미만	330	56.4	43.6
		1,000세대 이상	175	47.4	52.6
주민 특성	성별	남자	170	25.3	74.7
		여자	630	46.2	53.8
	연령	20~29세	54	16.7	83.3
		30~39세	307	47.6	52.4
		40~49세	271	48.0	52.0
		50세 이상	168	29.2	70.8
	직업	자영업자	69	26.1	73.9
		블루/화이트칼라	138	32.6	67.4
		전업주부	515	50.1	49.9
		학생/무직	58	6.9	93.1
		기타	20	45.0	55.0
	결혼여부	기혼	757	43.2	56.8
		미혼	43	16.3	83.7
	18세미만 아동유무	있음	570	48.4	51.6
		없음	230	25.2	74.8
	월평균 가계 소득	300만원 미만	190	32.6	67.4
		300~400만원 미만	235	41.3	58.7
		400~500만원 미만	187	49.2	50.8
		500만원 이상	187	44.4	55.6
		모름/무응답	1	0.0	100.0
작은 도서 관 특성	운영자 유무	있음	390	77.9	22.1
		없음	40	60.0	40.0
	지자체 등록 여부	등록	285	74.4	25.6
		미등록	235	51.9	48.1
	시설관련 조례 부합여부	세가지 기준 충족	415	71.3	28.7
		두가지 기준 충족	65	52.3	47.7
		한가지 기준 충족	25	8.0	92.0
		세가지 기준 미충족	5	0.0	100.0
		파악 불가	10	20.0	80.0
	활성화 정도 (주민대표 평가)	활성화	235	78.3	21.7
		보통	130	70.8	29.2
		비활성화	155	37.4	62.6
	활성화 정도 (현장 평가)	활성화	255	79.6	20.4
		보통	85	77.6	22.4
		비활성화	90	65.6	34.4

□ 공동주택단지 내 공공시설 이용 만족도

● 전체 분석

-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 내 설치된 공공시설 중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시설의 이용 만족도에 대해 물어본 결과, 전반적으로 모든 시설에서 이용자 절반 이상이 ‘만족(매우+만족한 편)’하는 가운데, ‘보육시설(어린이집)’과 ‘작은도서관(문고)’의 이용 만족도가 5점 만점에 3.9점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특히 ‘작은도서관(문고)’의 경우 이용자 4명 중 1명(25.1%)은 ‘매우 만족’하는 것으로 응답하여, 다른 공공시설 이용자들에 비해 ‘매우 만족’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27] 공동주택단지 내 공공시설 이용 만족도

● 특성별 분석

- 작은도서관을 중심으로 이용 만족도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공동주택단지 세대수가 많을수록, 주민들이 30대 이상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작은도서관에 운영자가 있고, 지자체에 등록된 경우, 활성화 정도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한편, 공동주택단지가 광주/강원/전라/제주 권역, 농어촌 지역에 있는 경우, 주민들의

입주년도가 2010년인 경우 작은도서관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64> 공동주택단지 내 공공시설 이용 만족도 : 작은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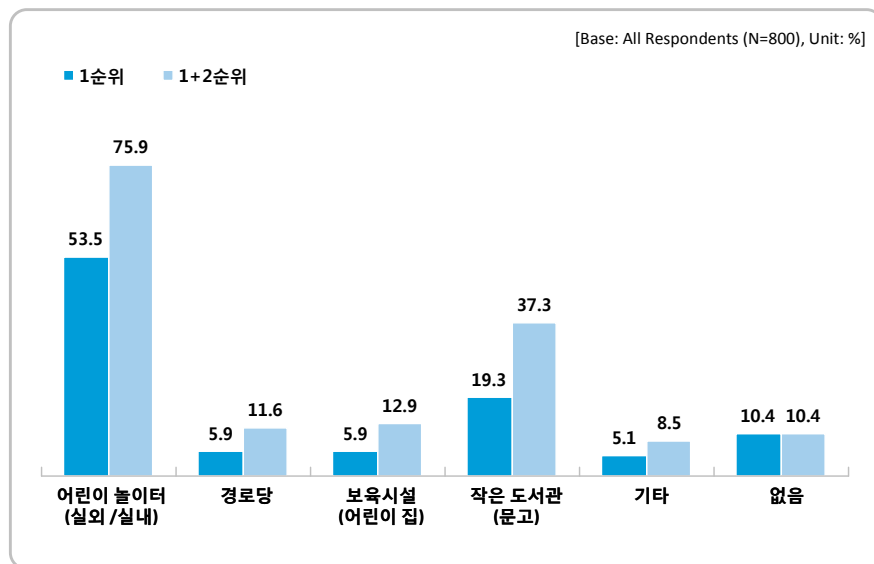
(단위 : 명, %)

			사례 수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한 편	①+② 만족	③ 보통	④ 불 만족 한 편	⑤ 매우 불 만족	④+⑤ 불 만족	평균
전체			334	25.1	43.4	68.6	23.4	7.5	0.6	8.1	3.9
공 동 주 택 단 지 특 성	권역	서울/인천	50	28.0	46.0	74.0	20.0	6.0	0.0	6.0	4.0
		경기	93	24.7	41.9	66.7	23.7	8.6	1.1	9.7	3.8
		대전/충청	74	35.1	41.9	77.0	20.3	2.7	0.0	2.7	4.1
		부산/대구/울산/경상	79	20.3	45.6	65.8	25.3	7.6	1.3	8.9	3.8
		광주/강원/전라/제주	38	13.2	42.1	55.3	28.9	15.8	0.0	15.8	3.5
	지역크기	대도시	119	26.9	48.7	75.6	18.5	5.9	0.0	5.9	4.0
		중소도시	121	23.1	47.9	71.1	21.5	5.8	1.7	7.4	3.9
		농어촌	94	25.5	30.9	56.4	31.9	11.7	0.0	11.7	3.7
	세대수	300-500세대 미만	65	23.1	38.5	61.5	29.2	7.7	1.5	9.2	3.7
		500-1000세대 미만	186	26.3	38.7	65.1	24.7	9.7	0.5	10.2	3.8
		1,000세대 이상	83	24.1	57.8	81.9	15.7	2.4	0.0	2.4	4.0
주 민 특 성	연령	20~29세	9	22.2	22.2	44.4	44.4	11.1	0.0	11.1	3.6
		30~39세	146	25.3	40.4	65.8	22.6	11.0	0.7	11.6	3.8
		40~49세	130	26.2	45.4	71.5	23.8	4.6	0.0	4.6	3.9
		50세 이상	49	22.4	51.0	73.5	20.4	4.1	2.0	6.1	3.9
	입주년도	2006	82	22.0	47.6	69.5	20.7	9.8	0.0	9.8	3.8
		2007	73	24.7	43.8	68.5	21.9	8.2	1.4	9.6	3.8
		2008	65	32.3	41.5	73.8	18.5	7.7	0.0	7.7	4.0
		2009	74	24.3	44.6	68.9	25.7	4.1	1.4	5.4	3.9
		2010	40	22.5	35.0	57.5	35.0	7.5	0.0	7.5	3.7
작 은 도 서 관 특 성	운영자 유무	있음	304	27.0	45.1	72.0	21.7	5.9	0.3	6.3	3.9
		없음	24	8.3	20.8	29.2	41.7	25.0	4.2	29.2	3.0
	지자체 등록 여부	등록	212	27.8	45.3	73.1	19.3	7.5	0.0	7.5	3.9
		미등록	122	20.5	40.2	60.7	30.3	7.4	1.6	9.0	3.7
	활성화 정도 (주민대표 평가)	활성화	184	28.3	51.1	79.3	17.4	3.3	0.0	3.3	4.0
		보통	92	23.9	39.1	63.0	29.3	7.6	0.0	7.6	3.8
		비활성화	58	17.2	25.9	43.1	32.8	20.7	3.4	24.1	3.3
	활성화 정도 (현장 평가)	활성화	203	31.0	47.8	78.8	18.2	3.0	0.0	3.0	4.1
		보통	66	16.7	42.4	59.1	30.3	9.1	1.5	10.6	3.6
		비활성화	59	16.9	28.8	45.8	32.2	20.3	1.7	22.0	3.4

□ 지난 1년간(2010년) 가장 많이 이용한 공공시설

● 전체 분석

-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 내 설치된 공공시설 중 지난 1년간(2010년) 가장 많이 이용한 공공시설 1순위로 ‘어린이 놀이터(실외/실내)’(53.5%)를 가장 많이 꼽았고, 그 다음은 ‘작은도서관(문고)’이 19.3%로 그 뒤를 이었으며, 1+2순위 결과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였음.



[그림 28] 공동주택단지 내 가장 많이 이용한 공공시설(2010년)

● 특성별 분석

- 지난 1년간(2010년) 가장 많이 이용한 공공시설 1순위에서 ‘어린이 놀이터(실외/실내)’ 다음으로 많이 꼽힌 ‘작은도서관(문고)’의 경우, 공동주택단지가 대전/충청 권역, 농어촌, 500-1,000세대 미만인 곳에서, 주민들이 여자, 20대에서 40대로 갈수록, 전업주부, 기혼자,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경우, 작은도서관에 운영자가 있고 지자체에 등록되어 있으며 활성화 정도가 높을수록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표 65> 공동주택단지 내 가장 많이 이용한 공공시설(1순위, 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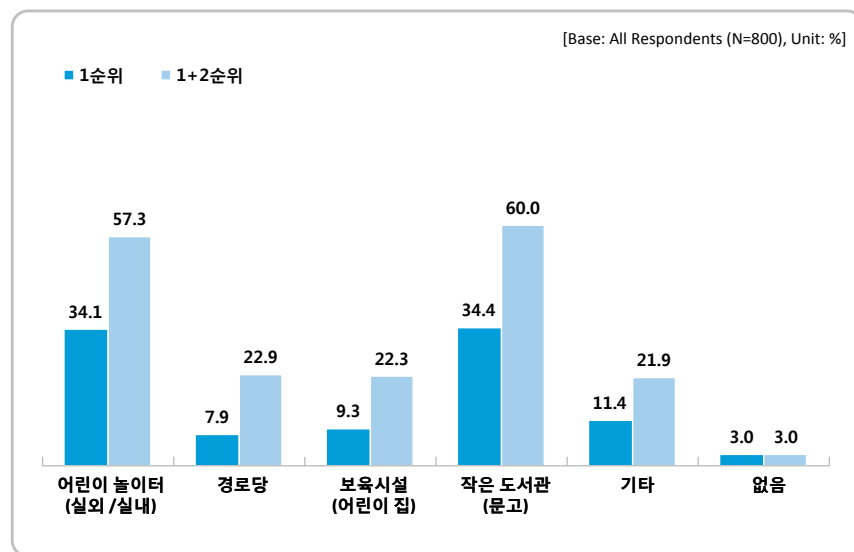
(단위 : 명, %)

			사례 수	어린이 놀이터 (실외/실내)	경로당	보육시설 (0원0집)	작은 도서관 (문고)	기타	없음
전체			800	53.5	5.9	5.9	19.3	5.1	10.4
공동 주택 단지 특성	권역	서울/인천	130	43.8	6.9	12.3	19.2	2.3	15.4
		경기	205	45.4	2.9	7.3	22.4	12.2	9.8
		대전/충청	135	59.3	3.7	0.7	28.1	2.2	5.9
		부산/대구/울산/경상	185	51.4	4.9	5.9	19.5	3.2	15.1
		광주/강원/전라/제주	145	71.0	12.4	2.8	6.2	2.8	4.8
	지역크기	대도시	295	54.2	5.4	7.1	19.0	2.4	11.9
		중소도시	340	55.6	7.6	4.1	17.1	5.6	10.0
		농어촌	165	47.9	3.0	7.3	24.2	9.1	8.5
	세대수	300-500세대 미만	295	58.0	7.8	4.4	12.5	2.7	14.6
		500-1000세대 미만	330	51.5	5.8	6.4	25.2	6.1	5.2
		1,000세대 이상	175	49.7	2.9	7.4	19.4	7.4	13.1
주민 특성	성별	남자	170	50.6	11.8	4.1	7.6	7.6	18.2
		여자	630	54.3	4.3	6.3	22.4	4.4	8.3
	연령	20~29세	54	50.0	1.9	3.7	5.6	11.1	27.8
		30~39세	307	60.9	1.3	10.7	17.9	2.9	6.2
		40~49세	271	54.6	4.1	3.3	26.6	4.8	6.6
		50세 이상	168	39.3	18.5	1.8	14.3	7.7	18.5
	직업	자영업자	69	59.4	7.2	4.3	5.8	4.3	18.8
		블루/화이트칼라	138	56.5	5.1	5.8	13.0	5.8	13.8
		전업주부	515	54.4	4.3	6.4	24.3	4.3	6.4
		학생/무직	58	31.0	22.4	3.4	5.2	12.1	25.9
		기타	20	55.0	0.0	5.0	20.0	5.0	15.0
	결혼여부	기혼	757	54.2	6.1	6.1	19.8	4.8	9.1
		미혼	43	41.9	2.3	2.3	9.3	11.6	32.6
	18세미만 아동유무	있음	570	57.5	2.5	7.9	22.5	4.0	5.6
		없음	230	43.5	14.3	0.9	11.3	7.8	22.2
작은 도서관 특성	운영자 유무	있음	390	44.6	3.1	5.6	38.2	4.6	3.8
		없음	40	75.0	5.0	0.0	10.0	7.5	2.5
	지자체 등록 여부	등록	285	46.7	3.5	6.7	35.8	2.8	4.6
		미등록	235	48.1	4.3	3.0	22.1	10.2	12.3
	활성화정도 (주민대표 평가)	활성화	235	44.3	1.3	6.4	41.7	3.0	3.4
		보통	130	48.5	6.2	5.4	31.5	3.1	5.4
		비활성화	155	51.0	5.8	2.6	9.7	13.5	17.4
	활성화정도 (현장평가)	활성화	255	42.7	1.2	5.9	43.9	2.7	3.5
		보통	85	49.4	8.2	5.9	30.6	2.4	3.5
		비활성화	90	58.9	4.4	2.2	16.7	13.3	4.4

□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공공시설

● 전체 분석

- 공공주택단지 내 설치 가능한 공공시설 중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공공시설 1순위로, ‘작은도서관(문고)’(34.4%)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1+2순위에 대한 응답 결과도 유사한 경향을 보였음.



[그림 29] 공동주택단지 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공공시설

● 특성별 분석

- 공동주택단지 내 설치 가능한 공공시설 중 가장 필요하다고 꼽힌 ‘작은도서관(문고)’의 경우, 공동주택단지가 서울/인천 권역에서, 주민들이 여자, 30~40대, 학력이 높을수록,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경우, 월평균 가계소득이 500만원 미만에서 소득이 높을수록, 작은도서관이 운영되고 있고 활성화 정도가 높을수록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66> 공동주택단지 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공공시설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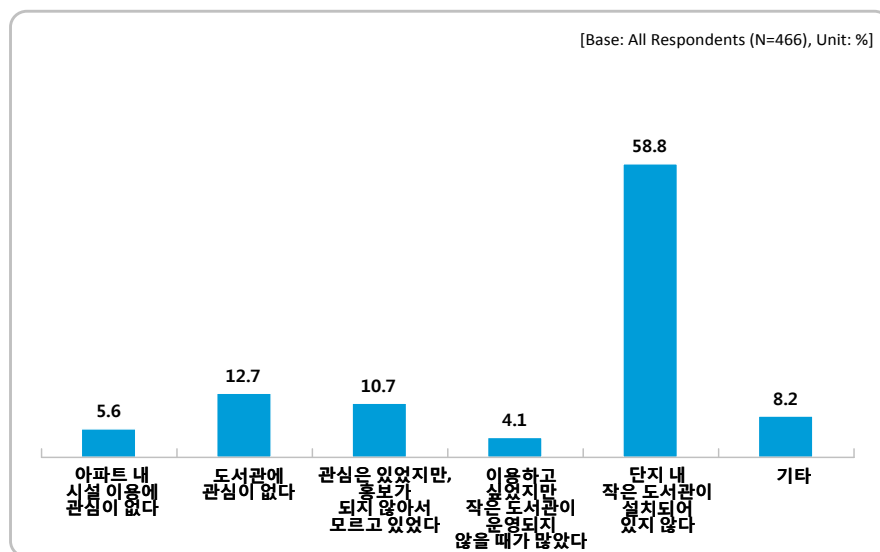
			사례수	어린이 놀이터 (실외 /실내)	경로당	보육시설 (0~5세)	작은 도서관 (문고)	기타	없음
전체			800	34.1	7.9	9.3	34.4	11.4	3.0
공동 주택 단지 특성	권역	서울/인천	130	19.2	1.5	10.0	40.0	21.5	7.7
		경기	205	26.8	5.9	18.5	34.6	11.7	2.4
		대전/충청	135	45.2	6.7	3.7	34.1	9.6	0.7
		부산/대구/울산/경상	185	35.1	8.1	5.4	36.2	10.8	4.3
		광주/강원/전라/제주	145	46.2	17.2	5.5	26.9	4.1	0.0
주민 특성	성별	남자	170	28.2	14.7	12.4	28.8	11.2	4.7
		여자	630	35.7	6.0	8.4	35.9	11.4	2.5
	연령	20~29세	54	37.0	3.7	20.4	27.8	9.3	1.9
		30~39세	307	37.1	2.9	9.8	38.8	8.5	2.9
		40~49세	271	34.7	7.7	5.5	36.5	14.8	0.7
		50세 이상	168	26.8	18.5	10.7	25.0	11.9	7.1
	입주년도	2006년	215	35.8	8.4	7.9	32.1	10.7	5.1
		2007년	166	27.1	9.0	9.0	38.6	12.7	3.6
		2008년	151	36.4	9.3	7.3	34.4	12.6	0.0
		2009년	165	36.4	5.5	9.1	40.0	6.7	2.4
		2010년	103	35.0	6.8	15.5	23.3	16.5	2.9
	학력	중졸 이하	22	27.3	18.2	9.1	18.2	18.2	9.1
		고졸	289	33.9	12.1	10.0	30.8	9.3	3.8
		대재/대졸	463	35.2	4.8	8.4	37.1	12.1	2.4
		대학원 재학 이상	26	23.1	7.7	15.4	38.5	15.4	0.0
	18세미만 이동유무	있음	570	35.1	4.7	9.1	37.2	11.4	2.5
		없음	230	31.7	15.7	9.6	27.4	11.3	4.3
	월평균 가계 소득	300만원 미만	190	34.2	12.6	9.5	26.3	11.1	6.3
		300~400만원 미만	235	40.9	6.8	8.1	33.2	9.8	1.3
		400~500만원 미만	187	30.5	7.0	7.5	40.1	12.3	2.7
		500만원 이상	187	29.4	5.3	12.3	38.0	12.8	2.1
		모름/무응답	1	0.0	0.0	0.0	100.0	0.0	0.0
작은 도서관 특성	작은도서관 운영여부	운영	430	35.3	5.3	7.7	34.7	14.2	2.8
		미운영	90	32.2	7.8	13.3	24.4	14.4	7.8
	활성화 정도 (주민대표 평가)	활성화	235	31.5	6.0	8.5	36.6	14.9	2.6
		보통	130	30.0	7.7	10.8	34.6	13.1	3.8
		비활성화	155	43.9	3.9	7.1	25.8	14.2	5.2

2.2.2 작은도서관 이용에 대한 욕구-비경험자

□ 작은도서관 이용 경험이 없는 이유

● 전체 분석

- 작은도서관을 이용해 본 경험이 없는 주민들(N=466)을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해 물어본 결과, 아파트 내 시설 이용이나 도서관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라기보다 주로 ‘**단지 내 작은도서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58.8%) 이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기타’ 이유로는 이용할 시간이 없어서, 아이들이 없어서(자녀가 커서), 이용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도서관 장서량 및 관리 등이 열악, 도서 종류의 편중(아이용 도서가 없어서, 어린이용 도서만 있어서, 젊은 층 위주의 책만 있어서 등), 공공도서관이 가까워서, 아이들이 주로 이용하여 시끄러워서 등이 제시되었음.



[그림 30]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이용 경험이 없는 이유

● 특성별 분석

- 작은도서관 이용 경험이 없는 이유로 가장 많이 꼽은 ‘단지 내 작은도서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라는 응답은, 공동주택단지가 광주/강원/전라/제주 권역, 중소도시, 300-500세대 미만인 경우에, 주민들의 입주년도가 오래될수록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 한편, 공동주택단지가 농어촌, 500-1,000세대 미만인 경우, 주민들 연령이 높을수록, 월평균 가계 소득이 낮을수록 ‘도서관에 관심이 없다’라는 응답이, 주민들 연령이 20대, 미혼인 경우 ‘아파트 내 시설 이용에 관심이 없다’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67>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이용 경험이 없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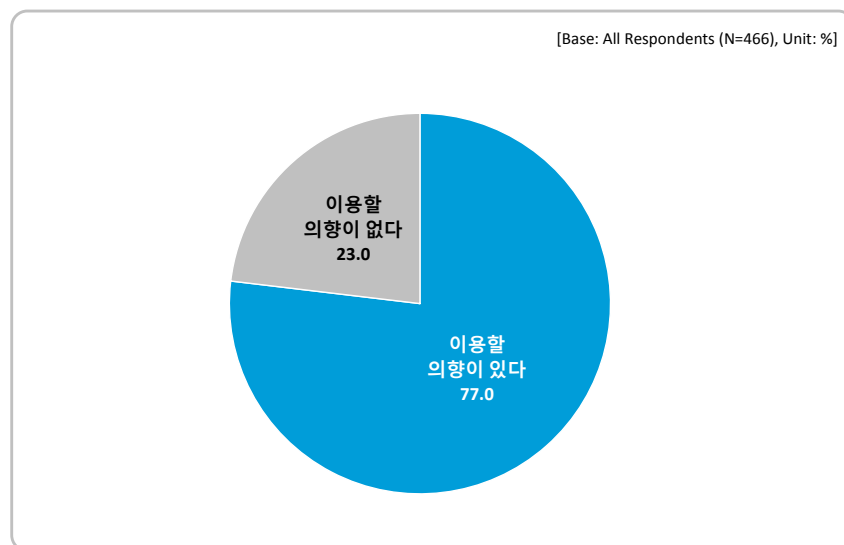
(단위 : 명, %)

			사례수	아파트 내 시설 이용에 관심이 없다	도서관에 관심이 없다	관심은 있었지만, 홍보가 되지 않아서 모르고 있었다	이용하고 싶었지만 작은 도서관이 운영되지 않을 때가 많았다	단지 내 작은 도서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기타
전체			466	5.6	12.7	10.7	4.1	58.8	8.2
공동주택 단지 특 성	권역	서울/인천	80	2.5	8.8	12.5	6.3	61.3	8.8
		경기	112	5.4	8.9	16.1	5.4	52.7	11.6
		대전/충청	61	11.5	16.4	13.1	3.3	39.3	16.4
		부산/대구/울산/경상	106	4.7	16.0	10.4	4.7	56.6	7.5
		광주/강원/전라/제주	107	5.6	14.0	2.8	0.9	76.6	0.0
	지역크 기	대도시	176	4.0	11.4	11.9	4.5	59.1	9.1
		중소도시	219	6.8	10.5	7.3	2.7	66.7	5.9
		농어촌	71	5.6	22.5	18.3	7.0	33.8	12.7
	세대수	300-500세대 미만	230	6.1	9.1	7.0	2.6	72.2	3.0
		500-1000세대 미만	144	5.6	19.4	14.6	5.6	40.3	14.6
		1,000세대 이상	92	4.3	10.9	14.1	5.4	54.3	10.9
주민 특 성	연령	20~29세	45	15.6	4.4	11.1	2.2	60.0	6.7
		30~39세	161	2.5	7.5	15.5	3.1	62.7	8.7
		40~49세	141	7.8	15.6	9.2	5.7	53.9	7.8
		50세 이상	119	3.4	19.3	5.9	4.2	58.8	8.4
	입주년 도	2006년	133	5.3	11.3	8.3	3.8	65.4	6.0
		2007년	93	5.4	8.6	11.8	2.2	59.1	12.9
		2008년	86	4.7	19.8	10.5	4.7	57.0	3.5
		2009년	91	6.6	11.0	12.1	5.5	56.0	8.8
		2010년	63	6.3	14.3	12.7	4.8	50.8	11.1
	결혼여 부	기혼	430	4.0	13.0	10.7	4.4	59.8	8.1
		미혼	36	25.0	8.3	11.1	0.0	47.2	8.3
	월평균 가계 소득	300만원 미만	128	3.1	18.8	7.0	3.1	60.2	7.8
		300~400만원 미만	138	4.3	13.0	11.6	4.3	58.0	8.7
		400~500만원 미만	95	6.3	10.5	9.5	3.2	65.3	5.3
		500만원 이상	104	9.6	6.7	15.4	5.8	51.9	10.6
		모름/무응답	1	0.0	0.0	0.0	0.0	100.0	0.0

□ 향후 작은도서관 이용 의향

● 전체 분석

- 작은도서관을 이용해 본 경험이 없는 주민들(N=466)을 대상으로, 향후 작은도서관 이용 의향에 대해 물어본 결과, 응답자 4명 중 3명 이상(77.0%)이 향후 이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 향후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이용 의향

● 특성별 분석

- 공동주택단지가 경기 권역, 세대수가 많을수록, 주민들이 여자, 30대, 전업주부, 기혼자,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향후** 작은도서관을 이용할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반면, 공동주택단지가 대전/충청과 광주/강원/전라/제주 권역인 경우, 세대수가 적을수록, 주민들이 남자, 미혼, 18세 미만 자녀가 없는 경우 향후 작은도서관을 이용할 의향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68> 향후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이용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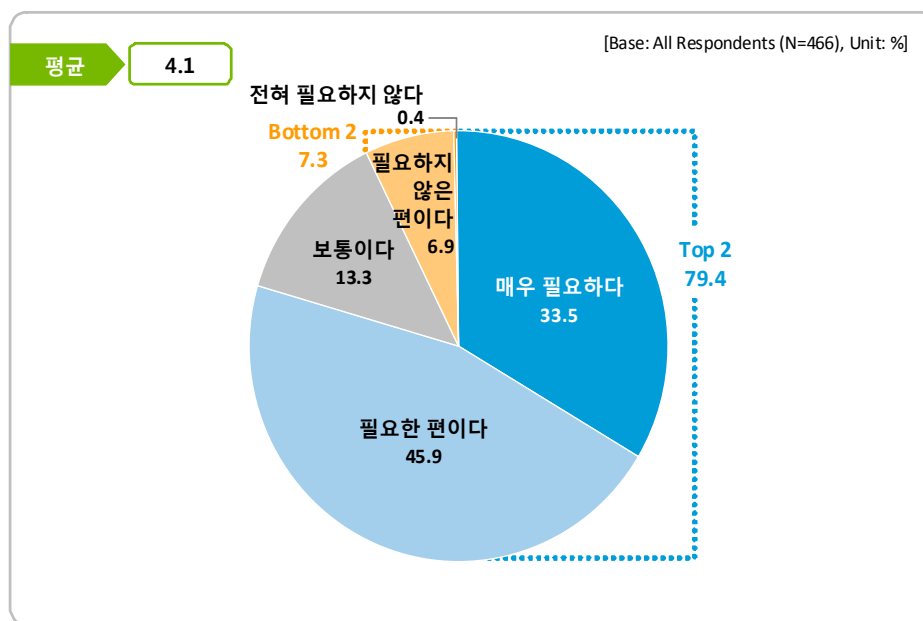
(단위 : 명, %)

			사례수	이용할 의향이 있다	이용할 의향이 없다
전체			466	77.0	23.0
공동주택 단지 특성	권역	서울/인천	80	80.0	20.0
		경기	112	89.3	10.7
		대전/충청	61	63.9	36.1
		부산/대구/울산/경상	106	83.0	17.0
		광주/강원/전라/제주	107	63.6	36.4
	세대수	300-500세대 미만	230	73.9	26.1
		500-1000세대 미만	144	77.1	22.9
		1,000세대 이상	92	84.8	15.2
주민 특성	성별	남자	127	67.7	32.3
		여자	339	80.5	19.5
	연령	20~29세	45	71.1	28.9
		30~39세	161	88.2	11.8
		40~49세	141	73.0	27.0
		50세 이상	119	68.9	31.1
	직업	자영업자	51	68.6	31.4
		블루/화이트칼라	93	76.3	23.7
		전업주부	257	82.5	17.5
		학생/무직	54	63.0	37.0
		기타	11	63.6	36.4
	결혼여부	기혼	430	78.6	21.4
		미혼	36	58.3	41.7
	18세미만 아동유무	있음	294	82.3	17.7
		없음	172	68.0	32.0

□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필요도

● 전체 분석

- 작은도서관을 이용해 본 경험이 없는 주민들(N=466)을 대상으로, 작은도서관이 공동주택단지 내에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물어본 결과, 5명 중 4명(79.4%)은 ‘필요(매우+필요한 편)’하다고 응답하였음(5점 만점에 평균 4.1점).



[그림 32]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필요도

● 특성별 분석

- 주민들이 기혼,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월평균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작은도서관이 ‘필요(매우+필요한 편)’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공동주택단지가 놓여준 지역, 1,000세대 이상인 경우, 주민들이 여자, 30대인 경우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한편, 공동주택단지가 광주/강원/전라/제주 권역인 경우 다른 권역에 비해 필요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음.

<표 69>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필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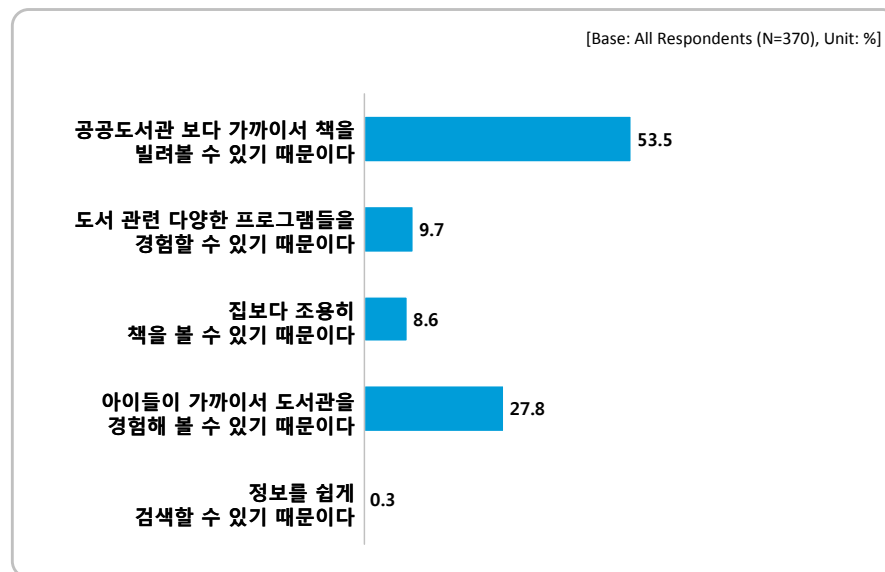
(단위 : 명, %)

			사례 수	① 매우 필요 함	② 필요 한 편	①+② 필요	③ 보통	④ 필요 하지 않은 편	⑤ 전혀 필요 하지 않음	④+⑤ 불필 요	평균
전체			466	33.5	45.9	79.4	13.3	6.9	0.4	7.3	4.1
공동 주택 단지 특 성	권역	서울/인천	80	36.3	45.0	81.3	11.3	6.3	1.3	7.5	4.1
		경기	112	40.2	44.6	84.8	13.4	1.8	0.0	1.8	4.2
		대전/충청	61	37.7	42.6	80.3	8.2	9.8	1.6	11.5	4.0
		부산/대구/울산/경상	106	29.2	52.8	82.1	11.3	6.6	0.0	6.6	4.0
		광주/강원/전라/제주	107	26.2	43.0	69.2	19.6	11.2	0.0	11.2	3.8
	지역 크기	대도시	176	31.3	47.7	79.0	11.4	8.5	1.1	9.7	4.0
		중소도시	219	31.5	47.0	78.5	14.6	6.8	0.0	6.8	4.0
		농어촌	71	45.1	38.0	83.1	14.1	2.8	0.0	2.8	4.3
	세대수	300~500세대 미만	230	29.1	47.8	77.0	13.0	9.1	0.9	10.0	4.0
		500~1000세대 미만	144	31.9	47.9	79.9	14.6	5.6	0.0	5.6	4.1
		1,000세대 이상	92	46.7	38.0	84.8	12.0	3.3	0.0	3.3	4.3
주 민 특 성	성별	남자	127	26.0	52.0	78.0	13.4	7.9	0.8	8.7	3.9
		여자	339	36.3	43.7	79.9	13.3	6.5	0.3	6.8	4.1
	연령	20~29세	45	35.6	40.0	75.6	20.0	2.2	2.2	4.4	4.0
		30~39세	161	47.8	37.9	85.7	9.9	4.3	0.0	4.3	4.3
		40~49세	141	27.0	50.4	77.3	12.1	9.9	0.7	10.6	3.9
		50세 이상	119	21.0	53.8	74.8	16.8	8.4	0.0	8.4	3.9
	결혼 여부	기혼	430	34.0	46.3	80.2	12.6	7.0	0.2	7.2	4.1
		미혼	36	27.8	41.7	69.4	22.2	5.6	2.8	8.3	3.9
	18세미만 아동유무	있음	294	39.8	43.9	83.7	10.5	5.8	0.0	5.8	4.2
		없음	172	22.7	49.4	72.1	18.0	8.7	1.2	9.9	3.8
	월평균 가계 소득	300만원 미만	128	29.7	46.1	75.8	15.6	8.6	0.0	8.6	4.0
		300~400만원 미만	138	37.7	39.9	77.5	13.8	8.0	0.7	8.7	4.1
		400~500만원 미만	95	32.6	47.4	80.0	12.6	6.3	1.1	7.4	4.0
		500만원 이상	104	32.7	52.9	85.6	10.6	3.8	0.0	3.8	4.1
		모름/무응답	1	100.0	0.0	100.0	0.0	0.0	0.0	0.0	5.0

□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이 필요한 이유

● 전체 분석

- 작은도서관을 이용해 본 경험이 없는 주민들 중 작은도서관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들(N=370)을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해 물어본 결과, ‘공공도서관 보다 가까워서 책을 빌려볼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응답이 53.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아이들이 가까워서 도서관을 경험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응답이 27.8%로 그 뒤를 이었음.



[그림 33]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이 필요한 이유

● 특성별 분석

-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공동주택단지가 광주/강원/전라/제주 권역인 경우 ‘도서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주민들이 여자,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아이들이 가까워서 도서관을 경험해 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70>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이 필요한 이유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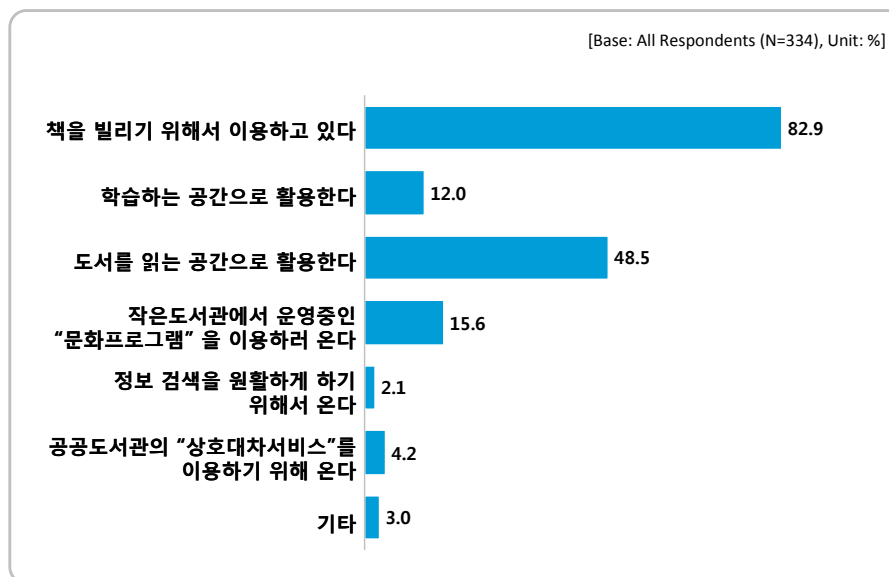
			사례수	공공도서관 보다 가까워서 책을 빌려볼 수 있기 때문이다	도서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 들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집보다 조용히 책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가까워서 도서관을 경험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체			370	53.5	9.7	8.6	27.8	0.3
공동 주택 단지 특성	권역	서울/인천	65	60.0	4.6	4.6	29.2	1.5
		경기	95	50.5	2.1	12.6	34.7	0.0
		대전/충청	49	51.0	4.1	8.2	36.7	0.0
		부산/대구/울산/경상	87	54.0	9.2	3.4	33.3	0.0
		광주/강원/전라/제주	74	52.7	28.4	13.5	5.4	0.0
주민 특성	성별	남자	99	59.6	8.1	12.1	19.2	1.0
		여자	271	51.3	10.3	7.4	31.0	0.0
	18세미만 이동유무	있음	246	52.8	8.1	7.3	31.3	0.4
		없음	124	54.8	12.9	11.3	21.0	0.0

2.2.3 작은도서관 이용 현황 - 경험자

□ 작은도서관 이용 목적

● 전체 분석

- 작은도서관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주민들(N=334)을 대상으로, 작은도서관을 이용하는 목적에 대해 물어본 결과, ‘책을 빌리기 위해서 이용하고 있다’라는 응답이 82.9%로 도서 대출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도서를 읽는 공간으로 활용한다’가 48.5%, ‘작은도서관에서 운영중인 문화 프로그램을 이용하러 온다’가 15.6% 순으로 나타났음.
- ‘기타’ 사유로는 친목도모, 영화 상영 등이 제시되었음.



[그림 34]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이용 목적(복수응답)

● 특성별 분석

- 작은도서관을 이용하는 목적 중 ‘도서를 읽는 공간으로 활용한다’의 경우 주민들이 여자, 30대 이상에서 연령이 낮을수록,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작은도서관의 활성화 정도가 높을수록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한편, 주민들이 여자, 주민대표의 작은도서관 활성화 정도에 대한 평가가 높을수록 ‘작은도서관에서 운영중인 “문화프로그램”을 이용하러 온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71>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이용 목적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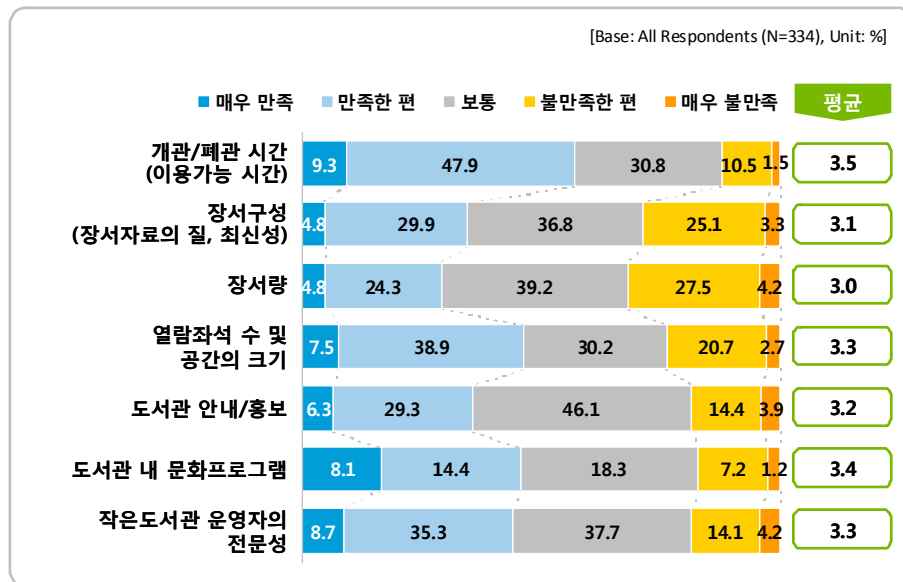
			사례수	책을 빌리기 위해서 이용	학습하는 공간으로 활용	도서를 읽는 공간으로 활용	문화프로그램 이용	정보 검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상호대차서비스 이용	기타
전체			334	82.9	12.0	48.5	15.6	2.1	4.2	3.0
주민 특성	성별	남자	43	81.4	11.6	30.2	4.7	2.3	2.3	0.0
		여자	291	83.2	12.0	51.2	17.2	2.1	4.5	3.4
	연령	20~29세	9	77.8	22.2	33.3	22.2	0.0	0.0	0.0
		30~39세	146	82.9	10.3	52.1	15.1	1.4	4.1	1.4
		40~49세	130	83.1	13.1	49.2	16.9	1.5	3.8	2.3
		50세 이상	49	83.7	12.2	38.8	12.2	6.1	6.1	10.2
	18세미만 아동유무	있음	276	83.0	12.0	50.7	17.0	2.2	3.6	2.2
		없음	58	82.8	12.1	37.9	8.6	1.7	6.9	6.9
작은도서관 특성	활성화 정도 (주민대표 평가)	활성화	184	84.2	10.9	53.3	17.9	2.2	4.3	2.7
		보통	92	87.0	13.0	45.7	15.2	3.3	5.4	1.1
		비활성화	58	72.4	13.8	37.9	8.6	0.0	1.7	6.9
	활성화 정도 (현장 평가)	활성화	203	83.7	12.3	57.6	19.7	3.0	5.9	1.5
		보통	66	89.4	6.1	33.3	6.1	1.5	0.0	4.5
		비활성화	59	76.3	18.6	30.5	13.6	0.0	3.4	6.8

□ 작은도서관 운영 및 환경 관련 만족도

● 전체 분석

- 작은도서관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주민들(N=334)을 대상으로, 작은도서관 운영 및 환경과 관련된 여러 항목에 대해 각각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 ‘개관/폐관 시간(이용가능 시간)’에 대한 만족도가 5점 만점에 평균 3.5점으로 다른 항목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이에 반해, ‘장서량’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3.0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그 다음은 ‘장서구성(장서자료의 질, 최신성)’에 대한 만족도가 3.1점, ‘도서관 안내/홍보’에 대한 만족도가 3.2점 순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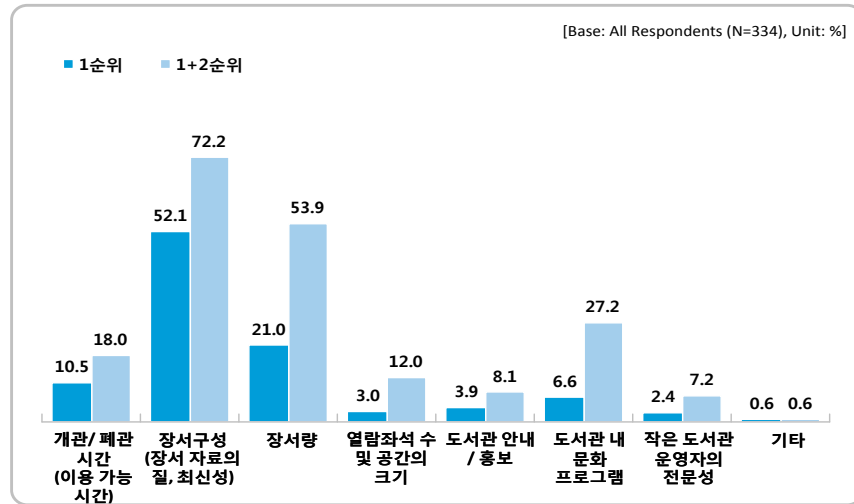


[그림 35]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운영 및 환경 관련 만족도

□ 작은도서관 이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항목

● 전체 분석

- 작은도서관 이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항목 1순위로, ‘장서구성(장서자료의 질, 최신성)’(52.1%)을 가장 많이 꼽았고, 그 다음은 ‘장서량’(21.0%), ‘개관/폐관 시간(이용 가능 시간)’(10.5%) 순으로 나타났음.
- 작은도서관 이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항목 1+2순위 응답결과에서도 ‘장서구성(장서자료의 질, 최신성)’에 대한 응답률이 72.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그 다음은 ‘장서량’(53.9%), ‘도서관 내 문화프로그램’(27.2%) 순으로 약간 다른 경향을 보였음.
- ‘기타’ 의견으로는 도서 외부 대출, 주민들의 호응도 등이 제시되었음.



[그림 36]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이용시 가장 중요한 항목

● 특성별 분석

- 작은도서관 이용에 있어 중요한 항목 1순위로 가장 많이 꼽힌 ‘장서구성(장서 자료의 질, 최신성)’의 경우 주민들이 여자, 30대 이상에서 연령이 낮을수록,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주민대표가 평가한 작은도서관 활성화 정도가 낮을수록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한편, 주민대표가 평가한 작은도서관 활성화 정도가 높을수록 ‘장서량’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72>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이용시 가장 중요한 항목(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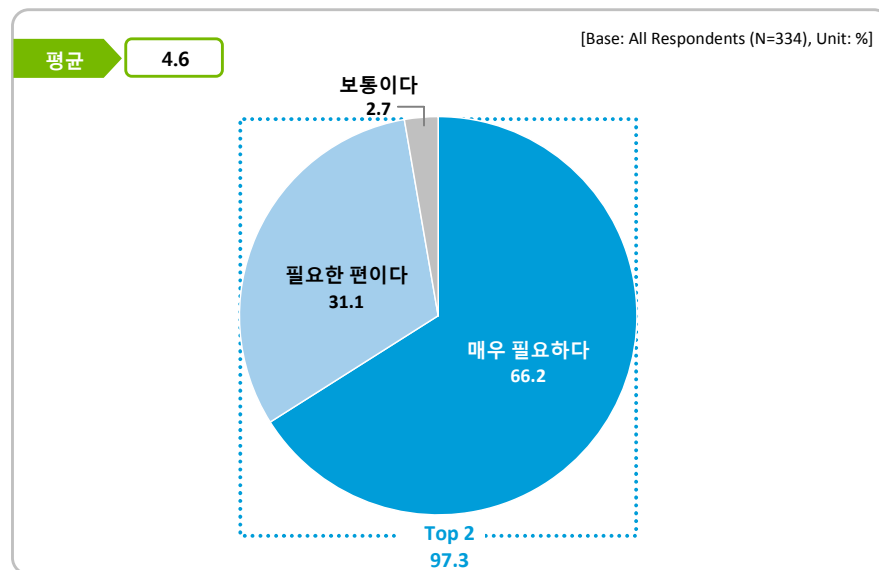
(단위 : 명, %)

			사례수	개관 / 폐관 시간 (이용 가능 시간)	장서 구성 (장서 자료의 질, 최신성)	장서량	열람좌석 수 및 공간의 크기	도서관 안내 / 홍보	도서관 내 문화 프로그램	작은 도서관 운영자의 전문성	기타
전체			334	10.5	52.1	21.0	3.0	3.9	6.6	2.4	0.6
주민 특성	성별	남자	43	14.0	41.9	25.6	0.0	7.0	11.6	0.0	0.0
		여자	291	10.0	53.6	20.3	3.4	3.4	5.8	2.7	0.7
	연령	20~29세	9	22.2	55.6	0.0	0.0	0.0	11.1	11.1	0.0
		30~39세	146	9.6	56.8	19.9	2.7	3.4	5.5	1.4	0.7
		40~49세	130	11.5	51.5	23.1	2.3	3.8	5.4	2.3	0.0
		50세이상	49	8.2	38.8	22.4	6.1	6.1	12.2	4.1	2.0
	18세미만 아동유무	있음	276	10.9	54.3	20.7	2.5	3.3	5.8	2.2	0.4
		없음	58	8.6	41.4	22.4	5.2	6.9	10.3	3.4	1.7
작은 도서관 특성	활성화 정도 (주민대표 평가)	활성화	184	11.4	46.2	23.4	3.3	4.3	7.1	3.8	0.5
		보통	92	13.0	57.6	18.5	1.1	2.2	5.4	1.1	1.1
		비활성화	58	3.4	62.1	17.2	5.2	5.2	6.9	0.0	0.0

□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필요도

● 전체 분석

- 작은도서관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주민들(N=334)을 대상으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작은도서관이 필요한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 거의 대부분(97.3%)이 ‘필요(매우+필요한 편)’하다고 응답하여, 작은도서관에 대한 필요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5점 만점에 평균 4.6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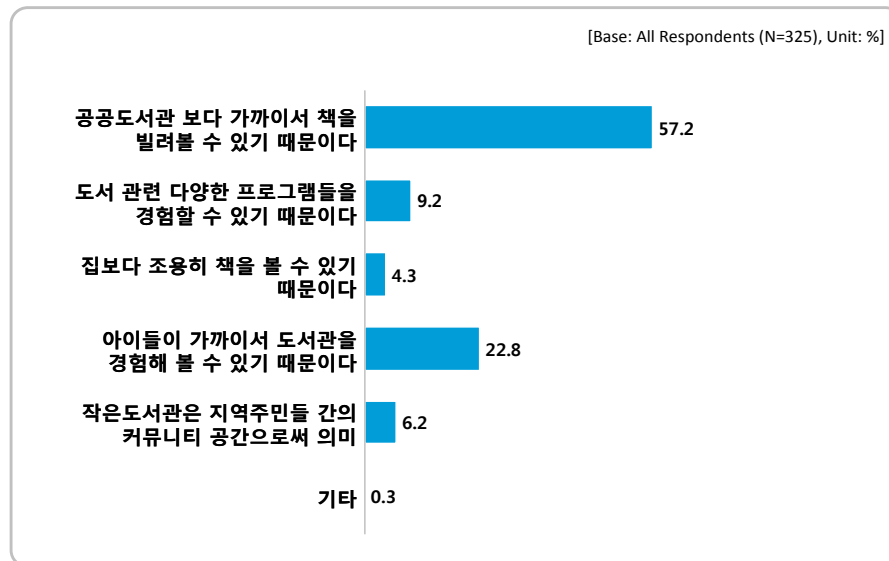


[그림 37]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필요도

□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이 필요한 이유

● 전체 분석

- 작은도서관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주민들 중 공동주택단지 내에 작은도서관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들(N=325)을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해 물어본 결과, ‘공공도서관보다 가까워서 책을 빌려볼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응답이 57.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아이들이 가까워서 도서관을 경험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응답이 22.8%로 그 뒤를 이었음.



[그림 38]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이 필요한 이유

3. 시사점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필요성 확인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서 300~500세대 미만의 경우 작은도서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곳이 62.7%나 되어 500~1,000세대 미만(16.7% 미설치), 1,000세대 이상(22.9% 미설치) 공동주택단지 보다 매우 높은 비율임
- 그러나, 300~500세대 미만 공동주택단지 내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이 어린이 놀이터(58%) 다음으로 작은도서관(12.5%)이 높으며, 이러한 작은도서관을 이용할 때 만족하는 경우가 61.5% 해당됨
- 또한 300~500세대 미만 공동주택단지 내 주민 가운데 작은도서관의 이용 경험이 없는 경우에 그 이유가 단지내 작은도서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72.2%)인 경우가 가장 많음
- 이용경험이 없는 이들의 70% 이상은 향후 작은도서관을 이용할 의향(73.9%)이 있으며, 절대적으로 작은도서관이 필요하다(77%)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공동주택단지 내 공공시설 중 지난 1년간(2010년) 어린이놀이터 다음으로 ‘작은도서관’이 높은 이용률 나타냄

- 지난 1년간(2010년) 가장 많이 이용한 공공시설(1+2순위)로 가장 많이 응답된 ‘어린이 놀이터’(75.9%) 다음으로 ‘작은도서관’(37.3%)이 꼽혔으며, ‘경로당’(11.6%)이나 ‘보육 시설’(12.9%) 보다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음.

□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 욕구

- 공동주택단지 내 설치 가능한 공공시설 중 가장 필요한 시설로 ‘작은도서관’을 꼽았음.
- 작은도서관 이용 경험자 중 97.3%, 비경험자 중 79.4%가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이 ‘필요(매우 필요+필요한 편)’하다고 응답함.
- 작은도서관 이용 비경험자 중 77.0%가 향후 작은도서관을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함.

□ 작은도서관 이용 경험자들의 높은 만족도

- 작은도서관 이용 경험이 있는 주민들 중 68.5%가 ‘만족(매우 만족+만족한 편)’한다고 응답함.

□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필요

- 공동주택단지 내 설치되어 있는 공공시설 중 가장 활성화가 필요한 시설로 ‘작은도서관’을 꼽았음.
- 작은도서관의 활성화 정도에 대한 평가에서 주민대표 중 45.2%, 현장 평가자(면접원) 중 59.3%가 ‘활성화(매우 활성화+활성화되어 있는 편)’되어 있다고 응답, 작은도서관 중 절반 정도는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 못함을 알 수 있음.

□ 작은도서관 이용 만족도를 높이고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보완책 필요

● 작은도서관 내 양질의 신규도서 및 다양한 장르의 장서 구비

- 작은도서관 운영 및 환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항목 중 ‘장서량’에 대한 주민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작은도서관 이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장서구성(장서자료의 질, 최신성)’을 가장 많이 꼽았음.
- 한편, 작은도서관 운영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으로 ‘도서량의 부족’을 가장 많이 꼽았고, 작은도서관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도서 양/질 개선 및 다양화’가, 작은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신규도서와 다양한 장르의 장서 구비’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이 제시되었음.
- 따라서 작은도서관에 양질의 신규도서 및 다양한 장르의 장서가 구비될 수 있도록 운영 예산 확충 등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도서 대출’ 및 ‘상호대차서비스(협약 맺은 타 도서관에서 도서 대여)’ 활성화 및 환경 조성 필요

- 작은도서관 이용 경험자들은 주로 ‘책을 빌리기 위해’ 작은도서관을 이용하고 있고, 이용 경험자 뿐만 아니라 비경험자 모두 작은도서관이 필요한 이유로 ‘공공도서관보다 가

까이서 도서 대출 가능'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나, '도서 대출'에 대한 욕구가 높음을 알 수 있음.

- 그러나 현재 작은도서관 4곳 중 1곳(27.8%)은 외부 도서대출 조차 가능하지 않고, 더군다나 현재 '장서량'이나 '장서구성(장서자료의 질, 최신성)'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에서, 작은도서관을 통해 타 도서관에서 도서 대여가 가능한 '상호대차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은 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아울러 기본적으로 도서 정보 검색을 위해 인터넷 이용이 가능한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곳도 22.1%로 나타났으며, 전용프로그램을 통해 대출도서를 관리하고 있는 작은도서관 중 '상호정보협력망'을 활용하고 있는 곳은 17.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따라서, 주민들이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을 통해 희망하는 도서를 손쉽게 빌려볼 수 있도록 '도서 대출' 기능 강화 및 '상호대차서비스' 제공과, 인터넷 이용이 가능한 컴퓨터 구비 및 '상호정보협력망' 구축 등의 환경 조성이 필요함.

● 작은도서관 운영의 전문성 제고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작은도서관 10곳 중 1곳(9.3%)은 운영자 없이 운영되고 있고, 운영자가 있더라도 '전담 운영자'인 경우는 41.0%에 불과하고 절반 이상은 자원봉사자이거나 주민자치회 구성 조직에 속해 있거나 주민대표 등 전담 운영자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 운영자 중 사서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곳은 3.8%에 불과하였으며, 지난 한해(2010년) 10곳 중 8곳은 사서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공공도서관에서 파견된 사서가 도서관리 프로그램, 도서구입 및 정리, 독서프로그램 운영 지원, 업무담당자 및 이용자 교육 등을 실시해 주는 '순회사서서비스'를 활용하는 곳도 10곳 중 1곳(1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있어 전문성이 다소 미흡함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가 보다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서자격증을 지닌 '전담 운영자'를 두거나, 운영자들이 사서관련 교육을 일정 시간 이수하도록 하거나, 공공도서관과의 연계를 통해 '순회사서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필요함.

● 독서·문화 프로그램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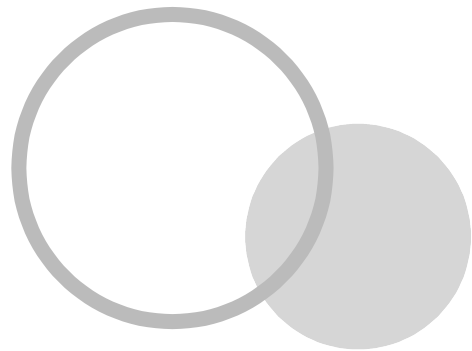
- 작은도서관에서 진행되는 각종 독서·문화 프로그램은 주민들의 관심과 호응도를 높일

수 있는 매개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해(2010년)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한 곳은 44.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결과에서 작은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독서·문화 프로그램 활성화’에 대한 의견도 많이 제시된 만큼, 다양하고 주민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독서·문화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제5장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1. 기본방향
2. 활성화 방안
3. 주요 정책과제



1. 기본 방향



[그림 39]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기본 방향

□ 목표

●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 기존의 작은도서관 정책이 작은도서관 조성과 확대에 중점을 두어, 읍면동 단위로 작은도서관의 수를 증가시키는데 목표를 두었음
- 그러나 조사결과 2010년 현재 전국단위 3,349개 작은도서관이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음이 파악된바, 조성된 작은도서관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정착시키고 활성화시키는 방안에 중점을 두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됨

● 정책목표

- 작은도서관 정책의 목표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작은도서관이 지역사회의 대표적인 생활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임
- 실용성, 균형성, 통합성은 작은도서관을 활성화시켜 주민밀착형 생활문화공간으로 만드고자 하는 핵심 키워드로 주민밀착형 생활문화공간 조성의 기초가 됨.

□ 기본 원칙

● 실용성

- 실용성은 주민들의 작은도서관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 요구되는 개념임.
- 작은도서관은 230개 지방자치단체별로 분포되어 있으나 현행 법적 조항에서도 운영여부만 다루고 있을 뿐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나 주민의 이용편의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음.
- 주민의 이용편의를 위한 실질적인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균형성

- 균형성은 전국 각 지역 작은도서관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균형적인 발전을 나타냄.
- 한국에서 도시화로 인한 지역별 격차는 이제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정보, 문화, 여가 등의 분야에서도 대두되고 있음.
- 정보의 획득 및 이용이 취약한 지역에서 작은도서관을 통해 도서관서비스를 제공받을 기회를 갖게 됨.
- 지역에 따른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전국 작은도서관의 균형적인 발전은 국민들이 정보획득의 기회를 누려 지역별 정보격차를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임.

● 통합성

- 통합성은 작은도서관을 통한 사회적 통합을 의미함.
- 작은도서관은 거리상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이점이 있음. 거리상의 이점을 이용하여 도서관으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마을 단위의 지역 공동체 문화 형성의 장이 될 수 있음.
- 작은도서관의 개방성은 정보획득에 있어서 불평등을 최소화시킴으로써 계층 간의 차

- 이, 세대차이 등 갈등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됨.
- 지역결속력 강화를 통해 건전한 지역문화를 육성하며 사회적 통합의 역할을 수행하게 됨.

□ 정책 방향

● 제도적 기반 정비

- 관련 법조항을 정비하여 작은도서관의 질적 수준 향상
- 지방자치단체의 실효성있는 조례 제언
- 단일화된 행정기구로의 개편

● 통계적 기반 구축

- 활용도가 높으며 단순화된 통계지표 개선
- 운영실태 파악과 통계조사를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보완

● 행정기관 역할 체계화

- 중앙정부의 역할체계화
-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체계화

● 연계망 구축

- 작은도서관 콘소시엄 구성
-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협력망 구축

● 사회적 기업의 참여

-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기업 활용방안 모색
- 사회적 기업의 참여방식 연구
- 사회적 기업 활동에 대한 지원 강화

● 협의회의 구성

- 지역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활성화
- 시민단체의 참여활동

2. 활성화 방안

2.1 제도적 기반 정비

2.1.1 관련 법조항 정비

□ 정책범위 내 작은도서관의 개념 규정

● 등록 기준 1: 지방자치단체 등록 도서관

- 정책 범위내 작은도서관이라 함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공립 및 사립 작은도서관”을 기준으로 함
- 2011 전국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과정에서, 230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 담당자들이 관내 등록된 공립 및 사립 작은도서관의 수나 등록된 작은도서관의 운영여부 및 활성화 정도에 대한 이해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됨
- 각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관내 작은도서관의 등록 절차에 대해 엄격히 관리하고, 등록요청시 현장 실사를 통해 작은도서관의 요건에 합당한 기준인가를 판단하여 등록시켜야 함.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나 기준 등에 대한 내용이 지방자치단체별(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 등에 포함되어야 함

● 등록 기준 2: 등록 및 등록취소를 통한 관리

- 특히 작은도서관의 등록 및 등록 취소에 대한 규정 및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관리나 통계자료 파악에 어려움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관련 법제도와 통계관리시스템 보완이 필요함.
- 현행 도서관법 31조 ‘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과 폐관’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도서관의 설립자가 폐관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때 절차만 있고, 지자체가 관리를 위해 등록취소를 할 수 있는 규정이나 절차는 언급되지 않음.

■ 도서관법 제 4장 2 공공도서관

제31조(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① 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설·도서관자료 및 사서직원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군·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구청장은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9.3.25>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의 설립자가 당해 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에는 시·군·구청장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 각 지방자치단체는 새로 등록하는 작은도서관의 주요정보에 대해 등록 및 등록취소시 입력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정보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며, 이는 현재 운영중인 도서관통계 시스템과 연동할 수 있어야 함
- 즉, 년중 새로 등록한 작은도서관에 대한 정보나 등록취소를 요청한 작은도서관의 목록을 수시로 입력하고, 매년 3~4월에 조사하는 ‘작은도서관 통계조사’시 관내 등록된 작은도서관의 운영여부와 운영활성화 정도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함
- 박물관 및 미술관의 경우, 등록 및 설립 계획 승인 절차와 함께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을 법적으로 제시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작은도서관 역시 등록 및 등록취소뿐 아니라 운영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지침이 필요함.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장 (지도·감독)

제26조(시정 요구와 정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그 시설과 관리·운영에 관하여 이 법이나 설립 목적을 위반하면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3.5>

② 제1항에 따른 시정 요구를 받은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관(停館)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3.5>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정 요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시설과 관리·운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3.5>

제27조(등록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등록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3.5>

- 1.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2.제16조제2항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 3.제16조제3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여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4.제21조를 위반하여 제26조제1항에 따른 시정 요구를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5.제26조제3항에 따른 정관명령을 받고도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정관을 하지 아니한 경우
 - 6.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설립 목적을 위반하여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를 취득·알선·중개·관리한 경우
- ②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 그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대표자는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09.3.5>
- ③제1항에 따라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등록이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취소된 등록 사항을 다시 등록할 수 없다.

제28조(보고)

- ①제16조에 따라 등록한 국립 박물관과 미술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립 박물관과 미술관 또는 관할 등록 박물관과 미술관의 관리·운영, 관람료와 이용료, 지도·감독 현황 등의 운영 현황을 다음 해 1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3.5>
- ②시·도지사는 제16조에 따른 박물관·미술관의 등록이나 제22조제2항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등록 취소의 처분을 하면 그 처분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 법적 기준 1: 시설 및 자료 기준 상향 조정

- 현행 도서관법은 공공도서관의 시설(인구 2만일 때 면적 264㎡(약 80평), 열람석 60석 이상) 및 자료(장서 3,000권 이상, 연간증가 300권 이상) 기준 보다 낮은 기준으로 면적 33㎡(약 10평)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그리고 장서 1,000권 이상의 기준만 제시됨.
- 실태조사에서 회수된 3,922개 작은도서관 중 2011년 개관한 도서관 64개를 제외하고 현행 도서관법상 시설 및 자료기준에 모두 부합하는 도서관 수는 3,349개이며, 세 가지 기준 중 하나의 기준이라도 미달된 도서관은 509개였음.
- ‘2011 전국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결과, 현재 작은도서관의 평균 면적은 181.6㎡(약 55평), 평균 열람석은 약 28석, 평균 보유 장서수는 약 5,643권, 연간 장서 증가수 789권으로 나타남.
- 그러나 실태조사 평균시설기준에 해당하는 도서관수는 198개이며 비해당 도서관수는 3,251개로 확인됨. 이는 일부 시설 및 규모가 큰 도서관들로 인해 평균값이 높게 나타난 까닭으로, 작은도서관들 간의 시설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파악됨.
- 실태조사 결과, 시설 기준 중간값은 면적 80㎡, 열람석 20석, 장서수 3,500권으로 이

에 해당되는 도서관수는 1,019개, 비해당 도서관수는 2,230개로 평균값으로 계산한 시설기준수치와 비교해도 현실적으로 적합한 기준으로 판단됨.

- 따라서 도서관법 시행령의 작은도서관 설치기준에 대한 시설기준과 자료기준을 현행 도서관법 기준과 실태조사 중간값 기준을 절충하여 향후 법적 기준을 제시함. 자료기준은 공공도서관과 같은 기준으로 장서 3,000권 이상, 연간 증가 300권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며, 시설과 열람석 기준은 면적 66㎡(약 20평), 열람석 15석 이상으로 공공도서관 기준의 25%로 제한할 것을 제안함.

<표 73> 시설기준에 따른 해당 도서관 수

시설 및 자료기준	해당 도서관 수		비해당 도서관 수		합계	
	빈도	%	빈도	%	빈도	%
현행도서관법	3,349	86.8	509	13.2	3,858 *	100.0
실태조사 평균	198	3.9	3,251	97.1	3,349 **	100.0
실태조사 중간값	1,019	30.4	2,230	69.6	3,349 **	100.0
제안한 기준안	1,387	41.4	1,962	58.6	3,349 **	100.0

* 실태조사에 응답한 총 도서관수인 3,922개 중 2011년 개관 도서관 64개를 제외한 작은도서관 3,858개 기준

** 현행도서관법의 시설기준에 부합되고 2010년 운영되고 있는 작은도서관 합계 3,349개 기준

● 법적 기준 2: 운영시간 및 운영일수 제정

- 현행 도서관법에서는 작은도서관의 개념규정을 위해 운영시간 및 일수에 대하여 다루고 있지 않음.
- 2011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의 공립 작은도서관(75.8%)은 평일 기준 8시간 이상 12시간미만 운영되고 있으나, 사립 작은도서관 중 운영시간이 8시간 미만인 곳이 절반이 넘는 것(53%)으로 나타남. 그리고 작은도서관의 주간 평균 운영일수는 대부분(89.3%) 5일 이상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아직도 요일별이나 주중과 주말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작은도서관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같은 사립 작은도서관의 소극적인 운영은 주민이용도가 낮은 '전시형 작은도서관'의 확산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운영시간 및 운영일수에 대한 법적 기준을 규정하여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도모하여야 함.

- 문화기반시설 가운데 도서관과 함께 가장 대표적인 시설로 박물관 및 미술관은 운영시간과 운영일수에 대한 규정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있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연간 90일 이상 개방하되, 1일 개방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법적 기준 3: 인력기준 보완

- 현행 도서관법에서는 공공도서관의 사서직원의 기준은 명확한데 반해, 작은도서관의 경우에는 ‘공립 작은도서관에는 사서직원을 1인 이상 둘 수 있다’ 등 구체적인 기준과 강제조항이 없음
- 2011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결과, 사서직원을 둔 작은도서관은 공립 21.7%, 사립 6.6%이며, 대부분 자원봉사자들로만 운영(30.3%)되고 있는 실정임.
- 작은도서관의 설립목적과 운영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인력기준에 대한 엄격한 기준과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현실적으로 순회사서제도의 보완과 자원봉사자 등 작은도서관 담당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실행 등을 제안함
- “작은도서관은 사서직원 1인 이상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순회사서나 일정시간 법이 정하는 시간 내 교육에 참여한 운영자로 대신할 수 있다” 등의 내용을 제안함

<표 74> 작은도서관의 인력기준 보완 방안

	현재	제안
순회사서제도	- 2010년 77명/344개소/10억 지원 - 2011년 50명/200개소/7억	- 2012년 230개 시군구 최소 1인씩 배치/ 230명/ 30억 - 2013년~2015년 작은도서관 4개소 순회사서 1인 배치 / 850여명/ 100억 - 2016년~2017년 작은도서관 2개소 순회사서 1인 배치 / 1700여명/ 200억
작은도서관 담당자 대상 교육프로그램	- 없음	- 작은도서관의 직원 및 운영자 1인당 년 2회 이상 교육참가

□ 작은도서관 관련 규정(도서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안

● ‘도서관의 시설과 도서관 자료’

법에 따라 작은도서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자료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시설 : 면적 66㎡(약 20평), 열람석 15석 이상
2. 자료 : 장서 3,000권 이상, 연간 증가 300권 이상

● ‘인력’

작은도서관의 인력은 다음과 같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1. 사서직원 1인 이상
2. 순회사서 1인 이상. 단 이때 순회사서는 시군구 최소 1인씩 배치 기준이나 작은도서관 2~4개소 1인 배치 기준에 적합해야 함
3. 기타 작은도서관에 상시 근무하는 직원이나 운영자 1인 이상. 단. 작은도서관 운영 관련 전문교육에 연간 2회 이상 반드시 참여한 자에 한함.

● ‘운영시간’

법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은 주간 5일 이상 개방하되, 1일 개방시간은 8시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관리 및 지도’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작은도서관이 그 시설과 관리·운영에 관하여 이 법이나 설립 목적을 위반하면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시정 요구를 받은 작은도서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등록된 작은도서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등록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여 도서관서비스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고도 작은도서관의 운영을 정상화하지 못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작은도서관의 설립 목적을 위반한 경우

2.1.2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 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 개선방안

●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조례 제정 의무화 추진

-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작은도서관의 설립·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례를 제정한다는 사실이 곧 작은도서관의 운영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의 첫걸음임
- 현재 조례가 제정된 광역 지방자치단체(3곳)와 기초 지방자치단체(37곳)의 조례항목이 상이하며, 조례항목이 작은도서관을 설립·운영의 근거가 되기에 부실한 경우가 많음

● 조례의 공통항목 포함

- 작은도서관의 관련 조례의 항목은 목적, 용어의 정의를 포함하는 총칙과 작은도서관 기능, 설비조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 운영인력을 명시하는 작은도서관 설치에 관한 항목의 포괄적인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의 항목부터 운영시간, 휴관일, 자료대출 등의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까지 포함 하여 작은도서관의 전반적인 설립·운영 등에 대해서는 최소한으로 명시해야 함.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하는 조례는 최소한 총칙(목적, 용어의 정의), 작은도서관 설치(작은도서관 기능, 설비에 대한 조건, 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 운영인력), 작은도서관운영(등록 및 취소, 운영시간, 회원 및 자료대출, 안전,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단체장의 책무, 지역협의회 운영, 지원), 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 위원장의 직무, 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운영 및 위탁, 위탁계약관련 사항, 위탁의 철회, 수탁자의 의무)은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

● 조례제정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운영 활성화 촉구

- 현재 조례가 제정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조례에서 명시한 기준과 운영방법이 실행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임.
- 조례제정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상벌체계가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작은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식정보의 습득 및 이용격차를 해소하고, 평생교육의 장으로써 OOO(도·시·군·구)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한 도서관의 설치·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라 함은 접근성이 용이한 생활 친화적 문화기반 시설로 「도서관법」 제4조의 조건을 충족하는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을 말한다. 이때 작은도서관은 OOO(도·시·군·구) 관내에 설치 및 운영되는 공립 및 사립 작은도서관 모두를 포함하며, 반드시 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
2. "운영자"라 함은 도서관 운영자로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자료"라 함은 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 및 공중에 이용을 제공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 자료, 전자 자료 및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 자료 등 지식정보 자원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모든 매체를 말한다.

제3조(작은도서관의 기능) 작은도서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분석·보존·제공·열람·대출
2. 지역 문화진흥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사 및 교육
4. 지역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등

제4조(설비에 대한 조건)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도서관 운영자는 설치 당시 3,000권 이상의 장서(시청각자료 또는 전자자료 등을 제외한 순수 도서자료)를 구비하여야 하며, 어린이와 동반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계층을 고려하여 장서를 맞추어야 한다.
2. 매년 10% 이상의 신규자료를 구입·비치하여야 한다.
3. 15석 이상의 열람석을 구비하되, 유아들이 불편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유아와 동반자를 위한

열람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4. 도서관의 최소 연면적은 66㎡(약 20평, 전용면적)이상의 규모로 하여야 한다.
5. 도서관은 생활공간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소유 등의 유휴시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

1. 운영자는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분석·보존·제공·열람·대출 및 프로그램 운영 등 도서관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하며, 매년 세부 운영계획서를 수립하여 이를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2. 운영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는 것으로 한다.
 - ① 사서자격증(우선 선발)
 - ② 독서 및 유아교육 관련 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학습지도사, 유아교육, 동화 구연 관련 자격증 등)
 - ③ 도서관 학교, 독서문화지도자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의 일정기간 수료

제6조(운영인력)

1. 도서관은 다음과 같은 인력을 반드시 1인 이상 확보해야 한다.
 - ① 사서직원
 - ② 순회사서
 - ③ 기타 작은도서관에 상시 근무하는 직원이나 운영자 1인 이상
2.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는) 도서관이 지역공동체 문화조성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 중심의 자원봉사단을 조직할 수 있다.
3. 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 수행 능력향상을 위하여 모든 인력은 연 2회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7조(등록 및 취소)

1. 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도서관법」 제4조의 설치기준 등 요건을 갖추고, OO(도·시·군·구)에 등록하여야 한다.
2.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는) 작은도서관의 등록신청을 받은 후 현장 방문을 통해 「도서관법」 제4조의 설치기준 등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심의하여야 하며, 모든 요건에 맞는 경우 일정한 등록절차를 따른다.
3.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는) 그 시설과 관리·운영에 관하여 설립 목적을 위반하면 시정할 것

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시정 요구를 받은 작은도서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4.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는) 등록된 작은도서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①.숙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②등록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여 도서관서비스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③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고도 작은도서관의 운영을 정상화하지 못한 경우
- ④그 밖에 작은도서관의 설립 목적을 위반한 경우

제8조(운영시간)

1. 작은도서관은 주간 5일 이상 개방하되, 1일 개방시간은 8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 ①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지역적·계절적 특성 등을 반영하여 운영시간을 조정하는 경우
 - ②설 및 추석 연휴, 국경일과 정부지정 공휴일, 운영위원회에서 임시 휴관일로 정한 날 등 자지단체 실정에 맞게 규정하는 경우
 - ③‘매주 O요일’ 등 휴관일을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
2. 운영자는 지역의 공동시설 내에 있는 도서관의 경우 공동시설의 업무외의 시간에도 개방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지역주민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도서관 개관일 확대 및 개관시간을 연장할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제9조(회원 및 자료대출)

1. 독서인구의 저변확대 및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2. 회원으로 가입한 자에 대하여는 회원증을 발급하고, 도서자료의 대출 등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3. 대출기간은 대출일로부터 7일로 하며, 1회 3권 이내로 한다. 다만, 연속간행물인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0조(안전) 운영자는 도서관 내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관 제한이나 퇴장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도서관내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관 자료를 다른 도서관에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유를 명기한 목록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12조(단체장의 책무) 단체장의 책무는 도서관법과 자치단체 실정을 반영하여 중장기비전이 반영되도록 한다.

1.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는) 주민들이 자유롭게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 동 당1개소 이상의 도서관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군·구)립 도서관이 소재한 동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O항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는) 매년 도서관의 설치·확대·보수 및 운영과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는)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 자료의 공동이용 등 관내 도서관 문화발전을 위하여 상호협력체계가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는) 지역내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한 정보교류 및 활성화를 위해 지역협의회를 두고, 중장기비전 발전 계획 수립과 실행을 위해 협조를 구한다.

제13조(지역협의회 운영)

1. 협의회 구성은 지역내 작은도서관 운영자, 시민단체, 도서관계·독서문화계·교육계 등 관계분야의 전문가, 지역주민을 포함한다. 협의회 회장과 부위원장은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며, OOO(도·시·군·구)의 작은도서관 업무 담당자는 간사로 참여한다.
2.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3. 협의회 모임은 매년 모임의 시기와 주기를 정하되, 정기적으로 모임을 개최해야 한다.
4.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하거나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①지자체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 ②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 ③작은도서관 등록 및 등록취소, 폐관에 대한 사항
 - ④작은도서관 조례 제정 및 개정
 - ⑤기타 작은도서관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등

제14조(지원) 자치단체는 도서관 발전 및 운영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해야 한다.

1.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는) 도서관이 당초 설치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원활히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서관 설치·운영 및 국민독서진흥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적 기업

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2. 지원대상·내용 및 규모 등에 대하여는 매년 도서관 설치·운영 세부계획에 반영하되, 본 조례에서 정한 기본요건 충족과 의무이행 및 도서관 관련법 등의 준수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15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

1. 작은도서관은 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도서관계 등 관계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나, 도서관이 위치하는 해당 지역 내 주민으로 구성한다.
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전출, 사망 등 사고가 있을 때에는 보궐위촉토록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5.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도서관 운영인력 중에서 정한다.
6.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7. 운영위원회는 매달 1회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임시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임시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8.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행한다.
 - ①도서관 운영 예산 및 신간도서 확보
 - ②도서관 운영체계 구축 및 개선
 - ③도서관 자료의 접근 및 이용격차의 해소
 - ④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
 - ⑤자원봉사자 조직과 관리
 - ⑥기타 도서관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등

제16조(운영 및 위탁)

1.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는)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다.
2.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도서관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00조의 규정에 의거 도서관 건립·운영을 목적사업으로 하거나, 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사업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도서관을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서관을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경우 「00(도·시·군·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는 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과 국민독서문화 진흥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적 기업(법인)에 대하여 위탁에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제17조(위탁계약관련 사항)

1.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심사위원회의 평가와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다.

제18조(위탁의 철회)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가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2. 수탁자가 협약조건을 위반할 때
3. 도서관 설립 취지에 현저히 위반되는 활동을 한 때
4. 기타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9조(수탁자의 의무)

1. 수탁자는 도서관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장비·예산 등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도·시·군·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 구조나 사용목적에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5.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 할 때에는 상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6. 수탁자는 시설 및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보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0000.0.0. 조례 제0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1.3 행정기구의 정비

□ 작은도서관 행정체계의 효율적 운영 방안

- 지방자치단체의 수준에서 작은도서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행정체계 개선 안으로는 담당부서의 단일화를 추진하는 안과 행정기구의 개편을 통한 담당자간의 연계 안, 그리고 도서관정책 업무 수행 조직내 작은도서관 업무 담당자의 지정 안 등이 제안됨

● 작은도서관 담당부서의 단일화 추진 안

- 작은도서관을 포함한 도서관 담당 부서는 대부분 문화·체육·관광 관련 부서이며, 교육 또는 행정 관련 부서에서 작은도서관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음.
- 작은도서관을 담당하는 직원의 업무가 작은도서관 또는 도서관 업무만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 예술, 공연 등의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업무의 과다로 작은도서관에 대한 관리가 소홀함.
- 일부 지역 행정체계에서는 공공도서관의 담당부서와 작은도서관의 담당부서가 다른 곳도 많이 있으며, 이는 공공도서관과의 연계에 어려움을 유발하는 요인이 됨.
- 이와 같은 한계가 작은도서관 관리 및 파악의 어려움으로 직결된다는 것은 본 연구의 실태조사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남. 작은도서관의 운영여부나 작은도서관의 시스템 관리 등을 문의하였을 때 지방자치단체 작은도서관 담당자들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었음. 다양한 분야를 담당하고 있어 작은도서관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전달하는데 일정 시간이 소요되기도 함.
-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작은도서관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담당부서를 일원화하여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관리가 이루어져야함.

● 행정기구 개편을 통한 작은도서관 담당자간의 업무 연계 안

- 지역에 따라 공립·사립 여부별로 작은도서관 담당자가 따로 배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음. 이 경우, 업무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으며, 각자 담당하는 작은도서관 이외에는 현황파악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임.
- 실태조사 과정에서 공립·사립 작은도서관 담당자가 각각 배치되어 있는 경우 담당 작은도서관이 제대로 분리되어 있지 않아 담당도서관을 혼돈,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음.

- 또한 업무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표면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아 담당자와 직접 접촉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음.
- 동일지역 내에서 작은도서관들간의 교류 단절 및 수준격차가 커질 우려가 있음.
- 따라서 공립·사립 작은도서관을 각각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들간의 업무 연계가 요구됨.
- 주 1회 정기적인 만남을 갖고 운영현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작은도서관 관리망을 구축하도록 해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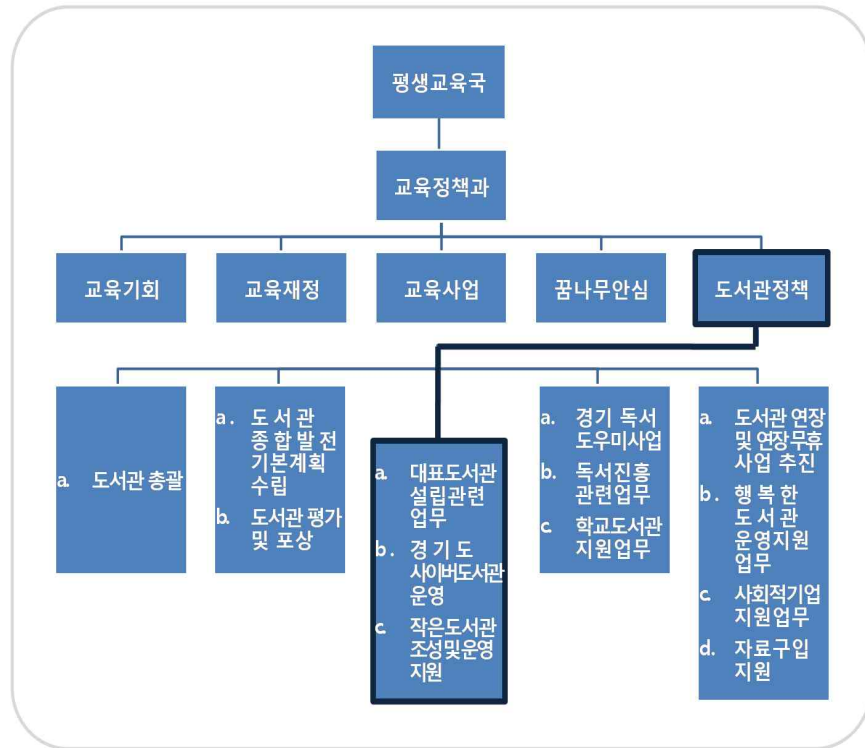
● 도서관정책 업무 수행 조직내의 작은도서관 업무 담당 지정 안

- 작은도서관을 담당하는 직원이 문화·체육·관광 관련 부서에 소속되어 있어 관광, 예술, 공연 등의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가 빈번함.
- 도서관으로서 접근이 배제된 채 문화기반시설의 일환으로만 다루어져 도서관 정책과의 괴리가 유발됨. 이러한 접근은 현재 작은도서관이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이 미약하다는 점의 원인으로 작용됨.
- 또한 공공도서관의 담당부서와 작은도서관의 담당부서가 전면 분리되어 공공도서관과의 연계에도 어려움이 있음.
- 도서관정책 업무수행 조직 내에 작은도서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배치하여 작은도서관이 도서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공공도서관과 연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함.

□ 관련 사례

● 경기도

-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청 평생교육국 내 교육정책과에서 도서관정책을 담당하고 있음. 교육정책과 부서 내 총 25명의 직원 중 도서관정책팀은 5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도서관 정책팀 구성원 5명은 도서관에 대한 업무를 명확하게 세분화하고 있음.
- 도서관 정책팀장의 총괄아래 대표도서관 설립 관련 업무, 경기도사이버도서관 운영,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지원(병영도서관 포함), 도서관 종합 발전 기본계획 수립, 도서관 평가 및 포상, 경기 독서도우미 사업, 독서진흥 관련업무, 학교도서관 지원 업무, 도서관 통계 및 현황관리, 도서관 연장연중 무휴 사업 추진, 행복한도서관 운영 지원업무 등을 각각 담당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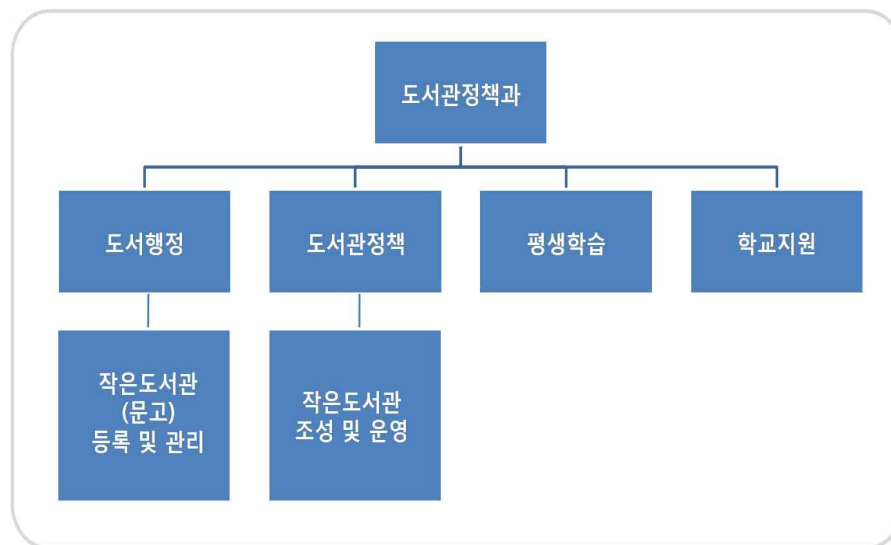


[그림 40] 경기도 작은도서관 담당 행정체계

● 경상남도 김해시

- 김해시는 평생학습도시로서 도서행정, 도서관정책, 평생학습, 학교지원 담당을 두고 평생교육, 교육환경개선 및 글로벌 인재육성, 교양강좌, 도서관 인프라 구축 및 독서진행시책 등 도서관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경상남도 김해시는 ‘책 읽는 도시, 김해’를 만들기 위한 정책사업으로 도서관 인프라 확충의 일환인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을 특화사업으로 추진하였음.
- 이를 위해 기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일정 기준을 제시한 후 기준에 부합하는 작은도서관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새로 신축되는 공공건물에는 세부기준을 제정하여 주민 편의 시설로서 작은도서관을 설치토록 장려하고 있음. 작은도서관에는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음.
- 김해시는 2007년부터 도서관 및 독서진흥 관련 시민단체인 ‘(재)책 읽는 사회문화재단’과 함께 ‘책 읽는 도시 김해’사업을 적극 추진해왔으며, 시 전체가 도서관과 독서진흥시책을 강화해 왔음.

- 도서관 관련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행정체계도 조직적으로 구성되어 있음. 김해시의 도서관정책과는 도서행정, 도서관정책, 평생학습, 학교지원 등 4가지 분야로 분류됨. 이 중 작은도서관(문고)등록 및 관리를 하는 담당자가 도서행정부서에 있으며, 작은 도서관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서관정책부서에 소속된 2명의 직원이 담당하고 있음.



[그림 41] 경상남도 김해시 작은도서관 행정체계

2.2 통계적 기반 구축

2.2.1 통계지표 개선

□ 기본방향

● 최소성

- 작은도서관의 기본적인 통계자료만 얻을 수 있도록 항목수를 최소화함

● 단순성

- 작은도서관 통계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질문형식을 단순화하고 응답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함

● 실용성

- 국가 도서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항목을 선정함.

□ 새로운 통계지표의 항목선정 과정

● 기존 조사 및 평가지표와 중복도 확인

- 작은도서관 통계지표를 개선하기 위하여 현황조사 3종과 평가지표 8종을 분석하였음.
- 현황조사는 '실제의 형편을 살펴보는 일'로서 통계의 의미, 즉 '많은 현상을 종합적으로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일정한 체제에 의하여 숫자로 표현해 놓은 것'과 유사한 기능임.
- 3개의 현황조사에서 조사된 항목은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의 작은도서관 통계조사 항목과 95% 이상의 중복도를 보임.

● 현황조사 결과 2차 항목선정에 반영

- 국가도서관통계의 항목을 기본 틀로 하고, 현황조사에서 75% 이상의 최빈도를 기준으로 항목 선정이 실용적임.
- 현황조사 결과 비도서항목의 결과가 너무 미미하고, 반면 연간도서증가수, 연속간행물 증가수가 결과가 있으며, 도서관의 발전에 기여하므로 항목으로 추가

<표 75> 새로운 통계지표의 항목 선정 과정

구분		1차 선정	2차 선정	3차 선정
기준		- 현황조사 75% 공통항목 - 평가지표 62.5% 공통항목	- 실태조사 결과반영 - 정책적 추가항목	조례에 포함된 항목 추가
영역	1. 기본정보	- 설립주체 - 운영주체 - 분관여부		
	2. 소장자료	- <u>장서(인쇄)수</u> - 연속간행물수 - 비도서	- '비도서항목' 제외 - '연간도서증가수' 추가 - '연간연속간행물증가수' 추가	
	3. 시설 및 설비	- <u>건물연면적</u> - 열람석수 - 컴퓨터수 - 도서관관리프로그램 사용여부		
	4. 인력자원	- <u>직원수</u> - <u>자원봉사자수</u> - <u>사서자격증소지자</u>	- 교육받은직원수 - 직원교육시간	
	5. 예산 및 결산	- <u>도서구입비</u> - 기타운영비 - 인건비 - 자부담금 - 행정기관지원비 - 후원금 - 회비및이용료		
	6. 이용 및 이용자	- 개관일수 - 주당개관시간 - 이용자수(방문자수) - <u>대출권수</u> - 회원등록수 - <u>문화프로그램수</u>		
	7.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연계		- 홈페이지 공유 - 상호대차 - 순회사서 - 인력지원, - 예산지원, - 장서지원, - 문화프로그램지원	
	8. 운영위원회			- 운영 여부 - 인원수 - 임기 - 연간 회의수
항목수		현황조사 23개 항목 평가지표 8개항목 (밀줄)	11개항목추가 1개항목 제외	4개항목

● 정책적 활용을 위해 필요한 항목 추가

- 통계의 기능 중에 정책적 발전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포함하는 항목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기능은 평가항목이 주로 담당하고 있지만 통계도 이러한 기능의 일부를 담당함.
- 예를 들어 도서관의 인적자원을 지원하는 면에서 자원봉사자수, 교육인원(직원과 자원봉사자포함), 교육시간을 추가하는 것이 적합함.
- 또한, 현재 추진중인 정책사업(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과의 연계항목)에 대한 항목은 현재를 유지하도록 제안함. 이는 공공도서관과 연계(홈페이지 공유, 상호대차, 순회서비스), 공공도서관 지원(인력, 예산, 장서, 문화프로그램)의 총 7개 항목임.

● 실태조사 이후 새롭게 추가

- 위의 7개 영역 33개 항목을 근거로 '2011 작은도서관 실태조사'가 실시됨
- 조사과정 및 연구진행과정에서 작은도서관의 운영위원회 여부를 확인하는 문제가 지적됨. 특히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부분에서 운영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중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 운영위원회의 운영 여부, 인원수, 임기, 연간 회의수 등의 4개 항목을 추가할 것을 제안함

● 기본정보 항목은 통계 항목에서 제외

- 기본 정보는 초기 입력자료로서 변화가 없는 사항이므로 운영주체, 분관현황 등은 통계에서는 제외하고, 기본정보사항으로 이동함.

□ 통계지표 개선안

● 기본정보 영역 제외 7개 영역 37개 항목으로 제안(기본정보 포함 8개 영역 40개 항목)

● 도서관 기본정보

- 기존 현황조사와 평가기준에서는 설립주체(공립/사립), 운영주체(지자체운영/민간위탁/사립), 분관여부 항목이 작은도서관의 특징을 구분하는 기본항목으로 포함됨.
- 공립 작은도서관에 해당하는 경우 지자체 직영으로 운영되는지,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는지 보기로 제시함. 사립 작은도서관에 해당하는 경우 역시 개인 및 단체가 설립한 작은도서관, 새마을문고, 종교시설문고, 법인이 설립한 작은도서관, 아파트 작은도서관 등 세분화된 유형을 보기로 제시하여 구체적인 특징을 파악하도록 함.

● 소장자료

- 장서현황 파악을 위해서 기존 실태조사에서는 도서자료(인쇄)수와 비도서수 그리고 연속간행물 종수 등 각각에 대한 수치를 다루었음.
- 그러나 비도서의 수치는 작은도서관이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제외시킴.
- 작은도서관의 장서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현재 총 보유 장서의 수와 연속간행물의 수를 입력할 수 있는 항목을 포함시킴.
- 이외에 해당년도 1년간 증가한 장서와 연속간행물의 수에 관한 항목을 포함시킴. 이는 작은도서관의 운영활성화를 장서현황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지표가 될 것임.

● 시설 및 설비

- 기존 현황조사에서 연면적, 열람석수 등 기본시설 파악에 대한 항목은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구체적인 작은도서관 관리프로그램이나 컴퓨터사용에 대한 항목은 배제된 경우가 있었음.
- 그러나 관리프로그램이나 컴퓨터사용여부는 작은도서관의 질적수준을 결정지어 이용자의 편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 사용여부 및 수치를 기재하는 항목을 추가함.
- 연면적, 열람석수 등 기본시설파악에 있어서 작은도서관의 법적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해당하는 지 다시 한 번 확인함

● 인적자원

- 인적자원 항목은 직원 수, 자원봉사자 수, 사서자격증 소지자 수, 교육받은 직원 수, 교육시간을 제시함.
- 기존 현황조사에서는 직원 수와 자원봉사자 수에 대한 항목을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사서자격여부에 대해서는 일부조사에만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작은도서관이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서자격여부를 묻는 항목은 필수적이라 판단됨.
- 또한 작은도서관 운영관련(사서)교육을 받은 종사자수와 시간을 기재하는 항목을 추가함. 이는 작은도서관 종사자의 교육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하는 활성화방안의 일환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임.

● 예산 및 결산

- 기존 조사 항목에서는 지출내역 중 도서구입비와 기타운영비에 대한 항목, 수입내역

중 후원금과 자부담 항목만을 공통적으로 다루었음.

- 수입내역에 행정기관 지원, 회원회비 및 이용료 등의 항목을 추가하고 중복체크를 허용하여 수입내역을 보다 상세히 파악하도록 함.
- 지출내역 역시 인건비 항목을 추가하고 각각의 금액을 기재하도록 하여 지출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함.

● 이용 및 이용자

- 이용현황에 대한 항목 중 개관일수, 주당개관시간, 이용자수, 대출권수 등의 항목은 기존 현황조사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음. 이에 평일/주말 운영시간을 기재하는 항목을 추가하여 일단개관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함.
- 일부 현황조사에 포함되어 있던 도서관에 등록되어 있는 회원 수도 이용현황을 파악하는 유용한 자료가 될 것임. 이와 함께 연간 도서대출 권수와 이용자 수(주중 1일 평균 이용자 수/ 주말 1일 평균 이용자 수/ 연간 총 이용자 수)등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은도서관 이용현황을 파악할 수 있음.

●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연계

-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과의 연계 및 지원에 대한 항목은 기존 현황조사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음.
- 그러나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공공도서관과의 연계 및 지원은 현재 시급한 과제이며 이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정책적 방안 모색의 근거자료가 될 것임.
- 공공도서관과의 연계 관련 항목은 홈페이지 공유, 상호대차서비스, 순회사서 등을 포함함
- 공공도서관의 지원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인력, 예산, 장서, 문화프로그램 등의 항목을 포함시켰음.
- 문화프로그램은 일부 현황조사에서만 수치를 묻는 항목으로 다뤄지고 있고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한 항목은 다루고 있지 않아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내용파악은 이루어지지 않음. 이를 검토한 결과 프로그램의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기보다는 프로그램수를 묻는 항목을 추가하여 문화프로그램의 다양성을 확인하기로 함.

● 운영위원회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포함되고 있으며, 작은도서관의 운영인력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부분으로 파악됨
- 31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운영위원회에 대해 다루고 있지만 작은도서관 실태

조사를 통해 운영위원회의 실태를 파악한 자료는 전무함.

- 작은도서관의 운영사항을 심의하는 운영위원회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지표로 조례에서 제시하고 있는 운영위원회의 운영 여부, 인원수, 임기, 연간 회의수 등의 4개 항목을 추가할 것을 제안함
- 운영위원회 항목은 별도로 추후 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 운영 평가에서 포함할 수도 있음.

■ 작은도서관 통계지표 및 항목 개선안

1. 기본사항 : 설립주체, 운영주체, 분관여부
2. 소장자료 : 장서(인쇄)수, 연속간행물수, 연간 장서증가수, 연간 연속간행물증가수
3. 시설 및 설비 : 건물 연면적, 열람석수, 컴퓨터수, 도서관관리시스템 사용여부
4. 인력자원 : 직원수, 자원봉사자수, 사서자격증 소지자, 교육받은 직원수, 직원교육시간
5. 예산 및 결산 : 도서구입비, 기타운영비, 후원금, 자부담금, 인건비, 행정기관지원비, 회비 및 이용료
6. 이용 및 이용자 : 개관일수, 일/주당 개관시간, 이용자수(방문자수), 대출권수, 회원등록수, 문화프로그램수
7.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연계 : 홈페이지 공유, 상호대차, 순회사서, 인력지원, 예산지원, 장서지원, 문화프로그램지원
8. 운영위원회 : 운영위원회 운영 여부, 인원수, 임기, 연간 회의수

2.2.2 통계 관리시스템 보완

□ 통합관리시스템의 요구

● 통계조사의 어려움

- 작은도서관 등록 및 운영현황 관리 담당자의 부재로 전국 작은도서관의 범위나 수량 파악이 어려움.
- 작은도서관의 운영자와 지자체 담당자 소통부족으로 인해 관계의 정립 및 업무의 분담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
- 작은도서관 담당자의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작은도서관명의 교체 등으로 이중등록, 폐관처리 등의 오류를 일으킴.

● 통합관리시스템의 제안

- 작은도서관의 신규등록 현황을 수시로 확인 가능하게 하고, 전국 작은도서관의 운영현황을 실질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작은도서관 운영자와 지자체 담당자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통합관리시스템이 요구됨.

□ 통합관리시스템의 재정비

● 작은도서관 등록 절차 관리

- 현재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 담당자들이 관내 작은도서관의 등록과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재정비함
- 이를 위해 중앙정부는 작은도서관 담당자 교육이나 컨설팅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등록과 등록취소, 폐관에 대한 시스템 관리방법을 고지함
- 등록, 등록취소, 폐관 등에 대한 시스템 관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현재 운영중인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과 연동하여 작은도서관 통계조사의 기초자료로 활용함

●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상의 작은도서관 통계조사 항목 조정

- 작은도서관 통계조사를 위해 작은도서관의 조사 항목(앞서 제안한 8개 영역 37개 항목)을 별도로 구성하여 조사함
- 특히 작은도서관 통계조사의 응답률을 높이고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현재에도

시행주인 온라인조사를 지속할 것을 제안함. 즉 조사항목에 대해 단순 입력 가능하고 해당여부에 따라 조사항목을 자동으로 연계할 수 있는 온라인조사가 용이할 것으로 판단됨

- 2011 작은도서관 실태조사에서는 온라인조사 방법이 가장 선호되고 접근이 용이한 것으로 파악됨

〔 지자체 및 공공도서관의 지원 및 연계사항 〕

Q37. 귀 작은도서관은 이용자가 요구하는 자료가 없을 경우, 협약을 맺은 타 도서관에서 빌려주는 '상호대차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Q38. 귀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에서 파견된 사서가 도서관리프로그램, 도서구입 및 정리, 독서프로그램 운영 지원, 업무담당자 및 이용자 교육 등을 실시해 주는 '순회서비스'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Q39. 귀 작은도서관은 지난 한 해(2010년) 지자체나 공공도서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Q41. 귀 작은도서관에서는 지난 한 해(2010년) 동안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실시한 적이 있었습니까?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Q43. 작은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유롭게 귀하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Q39. 귀 작은도서관은 지난 한 해(2010년) 지자체나 공공도서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Q40. (지원을 받은 적이 있다면) 지난 한 해(2010년) 지원받은 내용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1) 인 력	명	2) 예 산	원
3) 지원장서	권	4) 독서·문화프로그램	건
5) 기타(구체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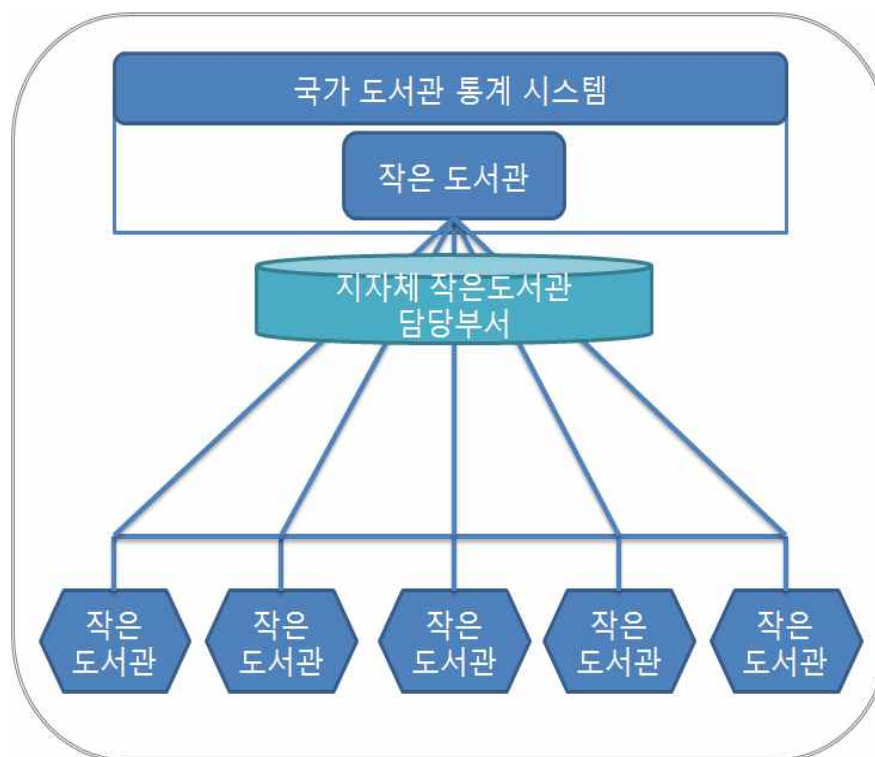
[그림 42] 2011 작은도서관 실태조사의 온라인조사 방식 사례

● 작은도서관 통계조사 담당자 지정 및 사전교육

- 매년 3~4월 조사되는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상의 작은도서관 통계조사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담당자를 지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이나 컨설팅을 반드시 진행할 것을 권고함
- 각 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 담당자가 통계조사의 담당자가 되며, 각 지자체별로 공공도서관이나 관련 업무자(특히 작은도서관 담당자가 복수일 경우)간의 협의를 구함

● 작은도서관 통계조사 실시

- 중앙정부는 도서관통계시스템의 작은도서관 통계조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작은도서관의 코드번호를 구분하여 각 통계조사 담당자에게 코드번호를 부여하고, 코드번호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 통계조사 시점에서 이전 통계조사에서 파악된 작은도서관과 신규 등록한 작은도서관의 리스트를 기초로 전수조사로 보고통계가 실시됨



[그림 43] 작은도서관 통계조사 과정 제안

2.2.3 기타 통계조사 효율화 방안

□ 공공도서관 통계조사와 조사시기 통일

- 통계조사 효율성 및 응집도 제고를 위해 공공도서관 통계조사와 동시진행
 - － 지자체 담당자 : 작은도서관 통계조사 진행(항목 간소)
 - － 공공도서관별 담당자 : 공공도서관 통계조사 진행(항목 방대)
 - ※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www.libsta.go.kr) 활용

□ 통계조사 미참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패널티 부여

- 중앙정부 주관 도서관 관련 지원사업에 불이익 조치
 - －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 도서관·문학관 문학작가 파견 사업,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우수도서 보급 등
- 지자체 합동평가(6-2.지자체 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표)와 연계
 - － 작은도서관 통계조사 미참여(미완료) 지자체에 대한 조치

2.3 행정기관 역할의 체계화

2.3.1 중앙정부의 역할

□ 중앙정부와 작은도서관 연계의 현 상황

● 도서관법에서 규정하는 작은도서관 기준의 미흡

- 도서관법에서 명시하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기준이 작은도서관이 도서관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음.
- 도서관법 제31조에서 사립 공공도서관에 대한 등록 및 폐관에 대한 규정을 정해 놓고 있지만 작은도서관에서는 이 규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등록과 폐관에 제재가 되지 않아 작은도서관에 대한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 도서관법 제31조 (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제31조(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①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설·도서관자료 및 사서직원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군·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구청장은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3.25>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신설 2009.3.25>

③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의 설립자가 당해 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에는 시·군·구청장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09.3.25>

● 작은도서관 통계의 낮은 신뢰도

- 작은도서관에 대한 정확한 수에 대한 파악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작은도서관에 관한 입력데이터의 오류와 현행화의 부진 등으로 문항마다의 데이터 신뢰도의 문제가 제기됨.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하는 전국 작은도서관 통계조사에 대하여 사립 작은도서관과 새마을문고중앙회에 소속되어 있는 새마을 문고 등의 통계조사 참여율 저조로 전국 작은도서관에 대한 통계 산출의 어려움이 있음.
- 작은도서관 운영자의 빈번한 교체와 전문 인력의 부재로 통계조사의 문항에 대한 이해 부족에 따른 응답률 저하와 응답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됨.

● 중앙정부의 작은도서관에 대한 재정 지원 현황

- 2004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역주민의 지식정보 접근성 보장 및 지역 공동체 문화 형성에 기여하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조성 지원을 하기 시작하였고, 2009년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작은도서관이 공공도서관 범주에 포함되면서 작은도서관 조성 및 지원 사업이 더욱 활기를 띠.
- 전체 도서관 부문에 대한 재정의 일부분을 작은도서관의 예산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각 각의 작은도서관에서 지원받는 예산은 미비하게 느껴짐.
- 지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작은도서관 평가 시스템의 부재로 인하여 지원에 대한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 작은도서관 운영자의 중앙정부에 대한 불신

- 대부분의 사립 작은도서관의 경우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통계조사나 실태 조사 등 정부의 잦은 개입으로 작은도서관 운영자의 중앙정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실정임.

□ 작은도서관의 체계적인 정립을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

● 법 개정 및 법률 집행의 역할

- 국회와 정부의 법률제출로 개정 할 수 있는 도서관법에 대하여 정부는 작은도서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범위를 파악하고 실제적인 현황에 맞게 법을 개정하고 도서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규정에 대하여 집행하는 역할을 수행함.

● 도서관 통계 시스템의 관리 및 평가시스템 구축의 역할

- 도서관 통계 시스템에 대하여 작은도서관에 맞는 통계시스템으로의 개정과 기존의 작은도서관에 대한 통계 시스템 입력의 어려움과 한계점을 파악하여 개정안을 제시하고 현황에 맞는 작은도서관 통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주기적인 통계조사 결과를 개제하는 역할을 수행함.
- 도서관 통계를 바탕으로 작은도서관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부의 지원에 대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역할을 담당함.

● 작은도서관에 대한 재정 및 전문 인력 지원의 역할

- 중앙정부 차원에서 작은도서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주기적인 지원과 관리의 역할을 수행함.
- 재정적 지원에서 나아가 작은도서관의 운영을 담당할 전문 인력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여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순회사서사업에 대한 평가와 개선을 통해 작은도서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문 인력 배치 방법을 모색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함.

□ 중앙정부와 작은도서관 연계 방안

● 도서관 법의 개정

- 도서관 법에서 작은도서관은 제2조 4항 가목의 공공도서관 정의에서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 자료기준에 미달하는 작은도서관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작은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수행하여야함을 명시하고 있음.
- 그러나 작은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 자료기준은 공공도서관의 범주 안에서 도서관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부족함이 있으며 그에 대한 법적 조정이 필요함.

● 도서관 통계시스템의 개정 및 관리 체계의 보완

- 기존의 도서관통계에 포함되어 조사되었던 작은도서관의 통계 시스템의 입력 방법에 대한 문제점의 개선안 마련.
-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작은도서관의 특성상 운영진의 대부분이 전문인력이 아님을 감안하여 현 통계지표를 개선함으로써 작은도서관의 통계조사의 참여도를 높이고 독려함.
- 중앙정부에서는 작은도서관 통계조사의 지표를 개선하여 참여도를 높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 담당부서에서 작은도서관의 운영자들에게 통계시스템 입력 방법에 대한 안내를 진행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침을 내리도록 함.

● 평가 시스템 구축 및 우수 작은도서관에 대한 표창

- 통계조사를 토대로 중앙정부에서는 전국 작은도서관에 대한 운영상황을 파악하고 통계조사의 문항을 토대로 작은도서관 평가 문항을 선택하여 별도의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도록함.
- 정기적으로 평가 결과를 점수화 하여 전국의 작은도서관을 등급화하고 세분화된 등급에서 우수하게 운영되고 있는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표창을 하도록 함.

- 미국의 경우, 최우수 작은도서관 서비스상(Excellent in Small and/or Rural Public library Service Award)과 베스트 작은도서관상(Best Small library in America)을 작은도서관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여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실정에 맞는 평가 방법과 표창 방법을 고려하여 가칭 ‘우수 작은도서관상’을 제정하여 작은도서관의 운영진을 독려 할 수 있도록 함.

● 작은도서관에 대한 재정 지원

- 도서관법에서는 작은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의 기준에 미달하는 도서관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작은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의 범주 안에서 보고 있음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임.
- 이러한 도서관법에 따르면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포함되고 이는 도서관법 제29조와 제32조에서 공립과 사립 공공도서관의 지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조항 또한 작은도서관에 적용 가능하다는 것이 됨.
- 특히 사립 공공도서관의 지원에 대한 조항(제32조 제2항, 2011년 4월5일 개정)을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립 공공도서관이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민간의 참여를 수월하도록 함으로써 도서관 발전 동력을 강화하였음.
- 그러므로 이러한 도서관법 조항은 작은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의 범주 안에서 지원이 이루어져야하는 근거가 되며, 중앙정부에서는 통계조사를 통하여 파악된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공공도서관 지원의 범위 내에서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함.

■ 도서관법에서 명시하는 공·사립 공공도서관의 지원 규정 [일부개정 2011.4.5 법률 제10558

호 시행일 2011.7.6]

제29조(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의 설립·운영 및 도서관자료수집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등 공립 공공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②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그 운영비를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09.3.25>

③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06.12.20, 2009.3.25>

제32조(사립 공공도서관의 지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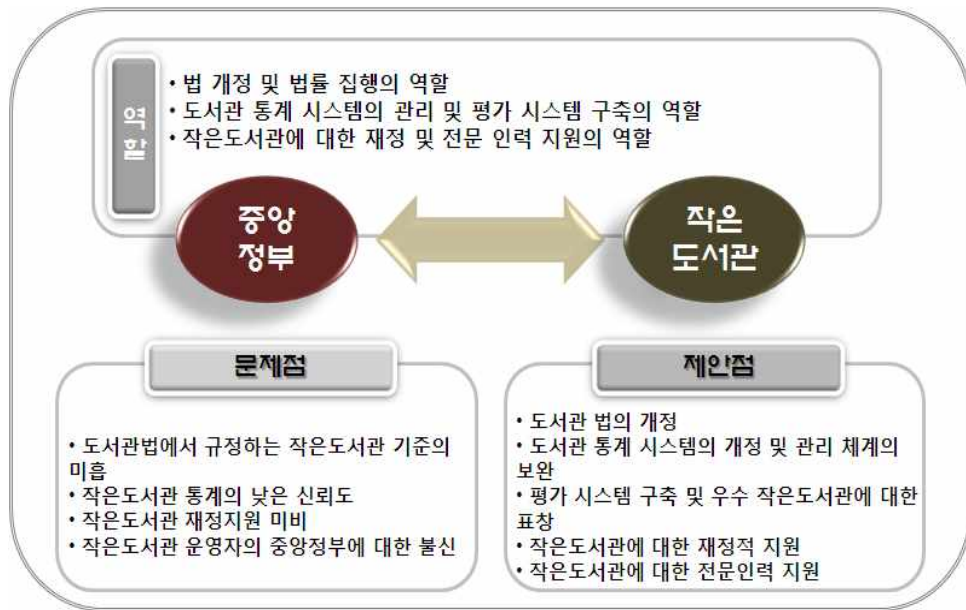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09.3.25>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립 공공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신설 2011.4.5>

●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한 순회사서 지원

- 순회사서가 담당하는 작은도서관의 수를 1개관 또는 2개관으로 한정하여 애착을 가지고 사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함.
- 역할에 대한 명확한 명시가 없기 때문에 순회사서의 업무가 작은도서관 운영자의 자리 지킴이 또는 위탁공공도서관의 부족한 직원 대신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므로 정확한 역할 분담에 대한 지침을 쥐어야 하며,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 순회사서의 직무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통해 역할과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함.
- 순회사서의 역할은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이 사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작은도서관이 자발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담당하여야 하므로 순회사서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파견을 나가기 전 순회사서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 또한 필요함.
- 순회사서에게 실시하는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파견을 나가기 전에는 순회사서로써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2달에 한번 씩은 재교육을 실시하여 지원 업무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특정 사안에 대한 처리 방법 또는 실무지식에 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이를 통하여 순회사서들 사이의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장을 마련 해 주도록 함.

- 2010년에 진행된 8개월 단위의 순회사서 지원 사업에서 1년 단위의 재계약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하며 궁극적으로 일시적인 사업의 형태가 아닌 공공도서관에 소속되는 순회사서 업무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는 계획하고 지원하여야 함.



[그림 44] 중앙정부와 작은도서관의 연계(안)

2.3.2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지방자치단체와 작은도서관 연계의 현 상황

- 작은도서관 담당부서의 다원화와 담당직원의 업무인식 부족
 - 작은도서관을 포함한 도서관을 담당하는 부서는 대부분 문화·체육·관광 관련 부서이며, 교육 또는 행정 관련 부서에서 작은도서관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음.
 - 공공도서관의 담당부서와 작은도서관의 담당부서가 다른 곳도 많이 있으며, 이는 공공도서관과의 연계에 어려움을 유발하는 요인이 됨.
 - 작은도서관을 담당하는 직원의 업무가 작은도서관 또는 도서관 업무만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 예술, 공연 등의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업무의 과다로 작은도서관에 대한 관리가 소홀함.
 - 여러 가지의 업무 중의 하나로 작은도서관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자신의 업무로 생각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 또한, 작은도서관이 자신의 업무 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관행대로 작은도서관에 대한 업무의 중요도나 업무의 필요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지방자치단체 내 작은도서관의 실태파악 미흡

- 작은도서관 담당부서와 담당자의 역할 수행 미흡으로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의 실태조차 파악이 되어 있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도 많이 있음.
- 설립된 작은도서관에 대한 등록 및 폐관에 대한 의무규정이 없어 실제로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을 파악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음.
- 자율적으로 설립되어 운영되어지는 사립 작은도서관의 경우 실태파악이 더욱 어려우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사항 없이 작은도서관의 실태를 파악하고 운영을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음.

□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작은도서관의 설립·운영에 대한 관리의 역할

- 도서관은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는 기관으로 작은도서관 또한 법적으로 도서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립으로 설립·운영되어지는 작은도서관의 경우라도 그 존재의 유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파악하고 있어야함.
- 작은도서관의 관리에 대한 근거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하는 조례로 규정하여 그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음.

● 중앙정부와 작은도서관 연결의 역할

-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큰 역할은 중앙정부와 작은도서관을 연결하는 통로의 역할임.
- 작은도서관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작은도서관에서 필요로 하는 점을 파악하여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또는 평가에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작은도서관을 참여할 수 있게끔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함.

●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한 안내 및 교육 지원의 역할

- 작은도서관 등록 및 폐관 절차, 통계 시스템 입력 절차,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한 지원 사항 안내 등의 작은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의 역할을 담당함.

- 작은도서관 운영자에 대한 사서업무 교육, 통계시스템 입력에 대한 교육, 도서·문화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개최하는 역할을 담당함.
- 지방자치단체는 개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그 세부적인 교육을 담당하는 곳은 공공도서관으로 함.

● 재정 지원의 역할

-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이를 근거로 지역에 적합한 지원 방법과 안정적인 재정지원 방법을 제시하고 지역 내 작은도서관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함.
- 공공도서관 운영비에 작은도서관 운영비를 포함하여 재정을 편성하고 평가 방법을 통한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작은도서관 재정 지원의 역할을 담당함.

□ 지방자치단체와 작은도서관 연계 방안

● 작은도서관에 관한 운영 지원의 근거가 되는 조례 제정

-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작은도서관의 설립·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 작은도서관의 관련 조례의 항목은 목적, 용어의 정의를 포함하는 총칙과 작은도서관 기능, 공간 및 위치, 설립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 운영인력을 명시하는 작은도서관 설치에 관한 항목의 포괄적인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의 항목부터 운영시간, 휴관일, 자료대출 등의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까지 포함 하여 작은도서관의 전반적인 설립·운영에 대하여 명시함.
- 조례가 제정된 40곳의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중에도 조례의 항목이 작은도서관을 설립·운영하는데 근거가 되기에 부실한 조례가 있음.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하는 조례는 최소한 총칙(목적, 용어의 정의), 작은도서관 설치(작은도서관 기능, 공간 및 위치, 설립 기준 등, 책무, 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 운영인력), 작은도서관운영(등록 및 폐관, 운영시간, 휴관, 회원제, 자료대출, 입관의 제한,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의 설치, 구성, 위원장의 직무, 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함.
- 작은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예시는 [부록00]에 첨부하도록 함.

● 작은도서관 운영기준에 대한 명확한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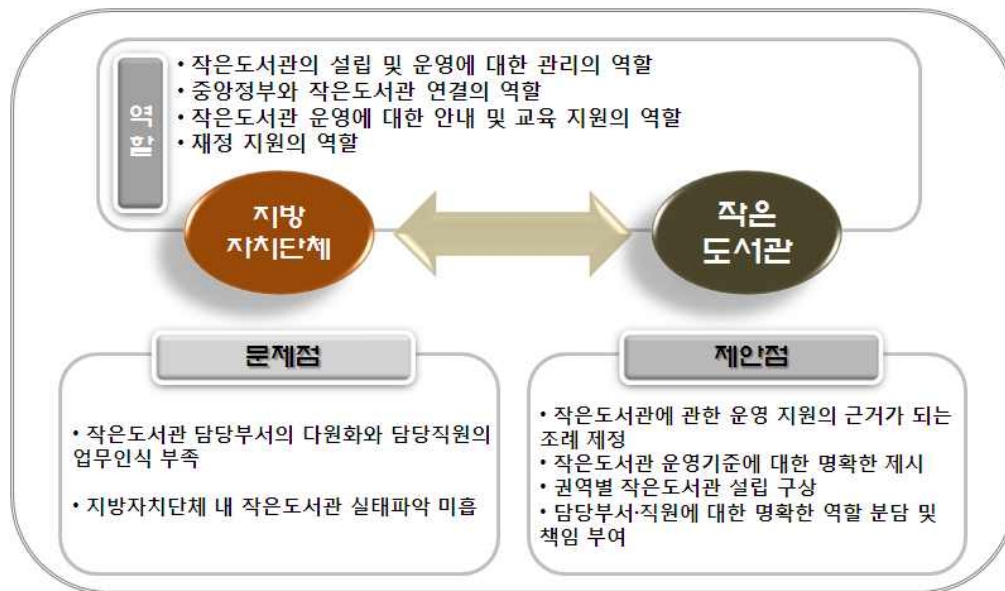
- 공립으로 운영되는 작은도서관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를 받고 운영보고를 하기 때문에 작은도서관 운영의 일관성과 기준을 뚜렷이 가지고 있지만 사립으로 개인이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의 경우, 운영에 대한 기준이 모호함.
- 일관성 없는 작은도서관 운영 기준에 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운영시간, 휴관일을 명확히 제시하여 작은도서관의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줌.
- 기본적인 개관일은 주5일 이상 주40시간이상으로 명시하고 근거리에 있는 작은도서관 간에는 휴관일이 겹치지 않게 조율함.
- 지역 내 작은도서관의 정확한 수를 파악하고 근거리에 있는 작은도서관 2~3곳의 운영시간을 조율하여 휴관일에 차이를 두고 작은도서관 이용자들이 많은 시간대인 오후와 저녁 시간에 주로 운영 되어 질 수 있도록 권고함.

●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권역별 작은도서관 설립 구상

- 새롭게 설립되는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위치 및 인구 분포를 고려한 계획적인 작은도서관 설립을 추진함.
- 작은도서관의 운영은 민간에 맡기더라도 작은도서관의 설립 위치에 대한 구상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하여 작은도서관 간의 거리 조율과 근거리에 공공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이 들어서서 인적·물적 자원의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함.
- 부천의 경우 인구 5만명당 1곳의 작은도서관 설립을 목표로 지역 내 작은도서관의 설립을 구상하고 있으며 그 위치 또한 중복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율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인구의 분포는 각기 다르므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지역에 맞는 작은도서관의 수와 위치를 구상하여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담당 부서·직원에 대한 명확한 역할 분담 및 책임 부여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담당 부서의 명확한 규정이 필요함.
- 작은도서관을 담당하는 부서는 도서관을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부서에서 맡아서 수행하여야하며 공공도서관의 범주 안에서 작은도서관이 관리 되어져야함.
- 작은도서관 담당자의 업무를 정확히 명시하고 작은도서관의 정확한 수와 운영여부 파악을 기본으로 함.
- 잦은 담당자 이동에도 명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작은도서관의 명칭, 위치, 연락처, 운영주최 등 운영현황을 포함하여 업무 지침 매뉴얼을 만들도록 함.



[그림 45] 지방자치단체와 작은도서관 연계(안)

2.4 작은도서관 연계망 구축

2.4.1 작은도서관 컨소시엄 구성

□ ‘작은도서관 컨소시엄’ 구성 방법

●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지역·문화적 특성 반영

- 지역의 성별, 결혼 및 이혼 여부, 연령, 학력수준, 직업, 소득수준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운영방법(이용 시간, 프로그램, 장서구성)이 다양함.
- 작은도서관은 생활밀착형의 성격이 강하며 공공도서관 보다 이용자의 규모가 적고 이용자와 운영자간, 이용자간의 친밀도가 높기 때문에 도서관 운영에 있어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음.
- 따라서, 이러한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지역·문화적 특성을 바탕으로 작은도서관 이용자를 분석하여 유형화함으로써 이용자 특성과 생활양식이 유사한 작은도서관을 묶어 ‘작은도서관 컨소시엄’을 구성함.

● 우량 작은도서관을 중심으로 구성

- 일정한 지역 범위 내에 있는 작은도서관 중 도서관 운영이 우수한 도서관을 중심으로 몇 개의 도서관을 범주화하여 묶어 컨소시엄을 구성함.

□ ‘작은도서관 컨소시엄’ 구성 효과

● 컨소시엄에 포함된 작은도서관간의 공감대와 유대감 형성을 통한 교류 및 협력 활성화

- 이용자의 특성이 유사한 작은도서관은 도서관 운영방법(도서관 이용시간, 프로그램, 장서구성)도 유사하며 처해있는 문제점이나 한계도 비슷한 상황임.
- 따라서, 유사한 작은도서관을 묶어줌으로써 ‘작은도서관 컨소시엄’에 포함된 도서관간의 공감대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으며, ‘작은도서관 컨소시엄’을 하나의 단위로 지역의 공공도서관에서 지원함으로써 작은도서관간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 함.

● 지역의 공공도서관 지원 자원의 공동화 및 자립적인 공공도서관 분관화

- 현재 작은도서관의 운영형태와 운영능력은 자료구입비나 인건비 등을 지자체에서 지원 받거나 지자체의 지원 없이 NGO나 단체 등의 지원 여부에 따라 장서구성이나 제공하는 서비스의 편차가 큼.
- 작은도서관이 순차적으로 각 도서관의 취약부분을 보충하고 보완해 나감으로써 컨소시엄내 작은도서관간의 운영능력 및 서비스 품질 편차를 줄여 자립도를 높임.
- 지역의 공공도서관에서 ‘작은도서관 컨소시엄’ 단위로 지원한 자원은 특정 작은도서관의 자원이 아니라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작은도서관이 공동의 자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장서나 시설을 공유할 수 있음.
- 장기적으로 지역의 공공도서관이 ‘작은도서관 컨소시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보완함으로써 향후 작은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의 분관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음.

□ ‘작은도서관 컨소시엄’의 한계

●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지역·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유형화의 한계

- 지역의 특성과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 작은도서관을 유형화하기 위해서는 유사한 지역에 복수의 작은도서관이 존재한다는 전제 하에 가능함.
-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유사하나, 지역적 문화차이로 인한 이용자 간 이질감으로 컨소시엄 구성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수 있음.

● 작은도서관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에 의존

- 작은도서관의 형태, 주관부서 등이 각 지자체 마다 다를 뿐 아니라 지역 특성과 문화가 유사하여 운영방법이 동일한 작은도서관이라 할지라도 공동체 의식을 느낄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음.
- 컨소시엄의 구성은 순수하게 작은도서관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전문 인력이나 예산이 없는 대부분의 작은도서관에서 컨소시엄 구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한 실정임.
- 상대적으로 우량한 작은도서관이 그렇지 못한 작은도서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때에 이해관계에 따른 거부감과 인력과 예산이 없는 도서관을 우량 작은도서관이 지원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음.

□ ‘작은도서관 컨소시엄’의 한계 보완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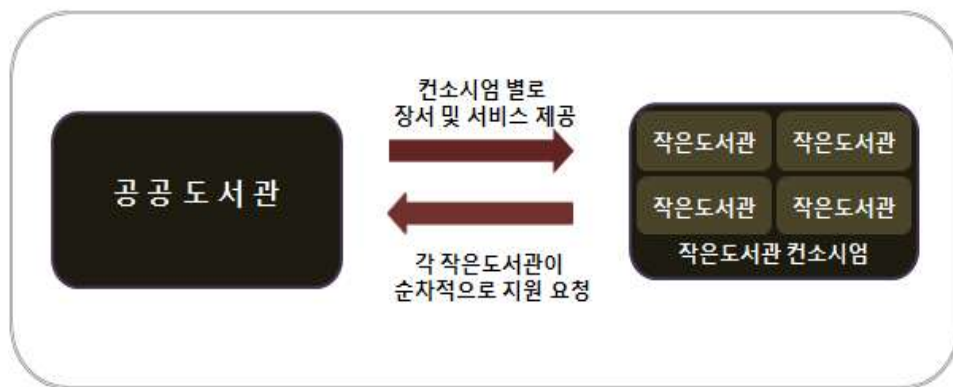
- 작은도서관이 하나의 공동체라는 의식 전환으로 지역적·문화적 차이 극복
 - 작은도서관은 생활밀착형으로 공공도서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이용자들에게 좀 더 효과적으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 역할을 함.
 - 따라서, ‘작은도서관 컨소시엄’과 도서관간 서비스는 결국 지역주민과 전 국민에게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작은도서관과 작은도서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컨소시엄과 컨소시엄간은 하나의 공동체라는 의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지역적 문화적 특성의 다양성을 공유하여 함께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다양한 형태와 운영방식의 작은도서관을 하나로 인식하여 작은도서관간의 교류와 공유,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여 이질감으로 인한 거부감을 없애도록 함.
- ‘작은도서관 컨소시엄’ 구성시 공공도서관의 적극적인 지원
 - ‘작은도서관 컨소시엄’ 구성에 주력할 인력이 부족한 경우, 공공도서관이 적극적으로 컨설팅하여 컨소시엄 구성을 지원함.
 - 작은도서관의 유형과 운영방식 등의 다양성으로 인한 이해관계 갈등시 공공도서관이 개입하여 중재하도록 함.

2.4.2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컨소시엄 협력

□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컨소시엄’ 협력 모델

● 공공도서관의 ‘작은도서관 컨소시엄’별 지원

- 작은도서관 설립주체(공립, 사립)에 구분 없이 이용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지역·문화적 특성이 유사한 몇 개의 작은도서관을 묶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지역 공공도서관이 ‘작은도서관 컨소시엄’별로 인력, 예산, 장서, 서비스를 지원하는 모델임.
- 지역 공공도서관이 특정 작은도서관에 인력 및 예산 등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개의 작은도서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에 지원함으로써 지원 가능한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원 혜택을 극대화함.
- 지역 공공도서관이 컨소시엄 단위로 장서 및 서비스를 지원하여 자생력이 강한 작은도서관은 더욱 활성화하고 그렇지 못한 작은도서관은 보완함으로써 도서관 서비스품질의 편차를 줄이고 자연폐관을 방지함.
- ‘작은도서관 컨소시엄’에 속한 작은도서관은 각 도서관이 부족한 부분을 순차적으로 컨소시엄을 통해서 공공도서관에게 요청하고 그 혜택은 컨소시엄에 속한 작은도서관의 공동자원으로 활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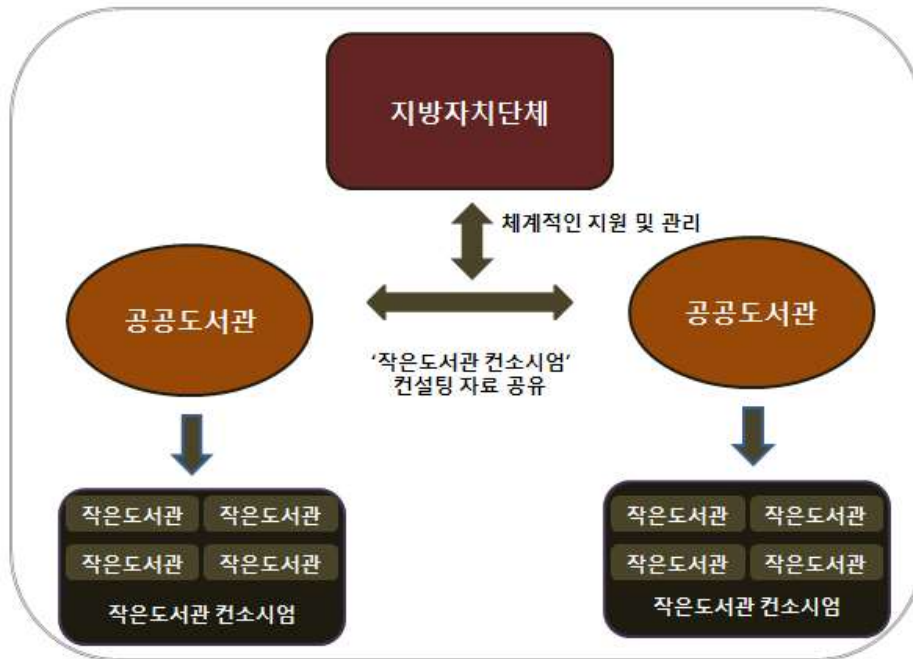


[그림 46]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컨소시엄’ 협력 모델 제안

● ‘작은도서관 컨소시엄’ 단위 컨설팅

- 공공도서관이 작은도서관을 컨설팅하고 자문기관의 역할을 함으로써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자체의 지원을 구체화함.

- 지역의 공공도서관이 작은도서관에 대한 컨설팅 정보를 공유하고 네트워크화하여 작은도서관 현황과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자체의 행정차이로 인한 오류를 줄이고 작은도서관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음.



[그림 47] 공공도서관의 ‘작은도서관 컨소시엄’ 컨설팅 지원 안

- 지역의 공공도서관이 작은도서관의 모(母) 도서관이 됨과 동시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방안을 교육함으로써 작은도서관의 자립도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작은도서관을 컨소시엄 단위로 묶어서 자문함으로써 컨소시엄 내에 있는 작은도서관 간의 교류 및 협력방안을 제시하고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유도함.

□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컨소시엄’ 협력 방안

■ 장서

● 도서관리시스템 공유로 상호대차 서비스 제공

- 공공도서관의 도서관리시스템을 작은도서관이 공유함으로써 이용자의 요구에 맞는 장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색하고, 상호대차 서비스를 제공하여 풍부하고 다양한 자료를 제공함.

- 공공도서관이 컨소시엄 별로 지원을 하고 관리시스템을 공동으로 활용함으로써 이용자 정보를 공유할 수 있으므로 도서 훼손이나 분실 등 관리상 문제점을 보완함.
- 또한, 도서관리시스템을 공유함으로써 ‘작은도서관 컨소시엄’간의 장서정보 공유가 가능하고, 상호대차 예약제도 등을 활용하여 대출을 충실히 함으로써 자료요구에 적합한 응대를 할 수 있도록 함.
-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도서 정보 및 서비스 내용은 공동홈페이지 혹은 각 도서관의 고유 홈페이지와 연계된 연결망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컨소시엄’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SNS 등을 활용한 정보제공을 활성화하여 시공간의 제약 없이 원하는 자료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함.

● 공공도서관의 데이터베이스 제공 및 상호 교환

- 작은도서관은 현실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공공도서관이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작은도서관에 제공함으로써 작은도서관의 서비스 확대를 유도함.

■ 교육 및 자문

● 컨소시엄별 운영인력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 및 관련 정보 제공

- 작은도서관의 운영인력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작은도서관 컨소시엄’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작은도서관의 운영 자립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함.
- 운영에 관련한 법적 제도, 행정, 예산, 회계, 수서 및 폐기 등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업무 표준화 매뉴얼 등을 제시함으로써 간접적인 컨설팅을 실시하여 공공도서관에서 전문인력을 직접적으로 지원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완함.

● 공공도서관의 작은도서관 담당자가 지원 현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자문

- ‘작은도서관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작은도서관의 지원 현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각 도서관의 문제점과 보완 사항을 점검하여 차기 지원 내역과 계획에 기초자료로 활용함.
-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컨소시엄’간의 협력은 작은도서관의 지극히 자발적인 협력을 기본으로 하므로 관리 감독을 지양하고, 지원 내역과 지원 방향이 작은도서관 현장에 부합하는지 점검하고 작은도서관에 대한 자문을 기본으로 함.
- 공공도서관에서 지원한 자원의 활용 방법에 대한 강제성이 없으므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는 작은도서관간의 균형 지원을 유도하는 방안으로 함.

■ 도서관 프로그램

● 도서관 프로그램 공유

- 공공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작은도서관 컨소시엄’과 공유하여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함.
- 공공도서관은 작은도서관 이용자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에 반영하고, 작은도서관의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 방향을 제시함.

● 공공도서관의 인력, 시설을 활용하여 ‘작은도서관 컨소시엄’ 단위 요청 프로그램 지원

- 예산과 인력 등의 한계로 작은도서관에서 프로그램 운영이 곤란한 경우 ‘작은도서관 컨소시엄’에서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공공도서관에 요청하고 이를 지원함.
- 공공도서관의 시설, 인력을 충분히 활용하여 제공함으로써 작은도서관의 시설, 인력, 예산의 한계를 극복할 뿐 아니라, 공공도서관의 시설, 인력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음.

□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컨소시엄’ 지원 방안

● 공공도서관의 ‘작은도서관 컨소시엄’ 지원 내역 공개를 통한 투명화

- 지역의 공공도서관이 컨소시엄별 인력 및 예산 지원 내역을 공공도서관의 홈페이지와 각 작은도서관의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지원의 투명성을 제고함.
- 또한, 공공도서관의 지원 내역을 작은도서관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에게 공지함으로써 이용을 활성화하고, 다른 컨소시엄에 속한 작은도서관의 지원 정보도 알 수 있어 작은도서관의 실질적인 운영에 촉매제 역할을 함.

● 공공도서관의 ‘작은도서관 컨소시엄’ 지원 감사를 통해 컨소시엄에 속한 작은도서관의 균형있는 지원을 유도

- 공공도서관의 작은도서관 지원에 대한 감사를 통해 ‘작은도서관 컨소시엄’에 속한 작은도서관이 균형있는 혜택을 받았는지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점검하여 향후 지원 범위와 내용에 반영함.
- 이를 통해 컨소시엄에 속한 작은도서관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줄이고, 지역주민이 원하는 실질적인 서비스를 하도록 함.

2.4.3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연계망 구축

□ 부천시 사례

● 부천시 작은도서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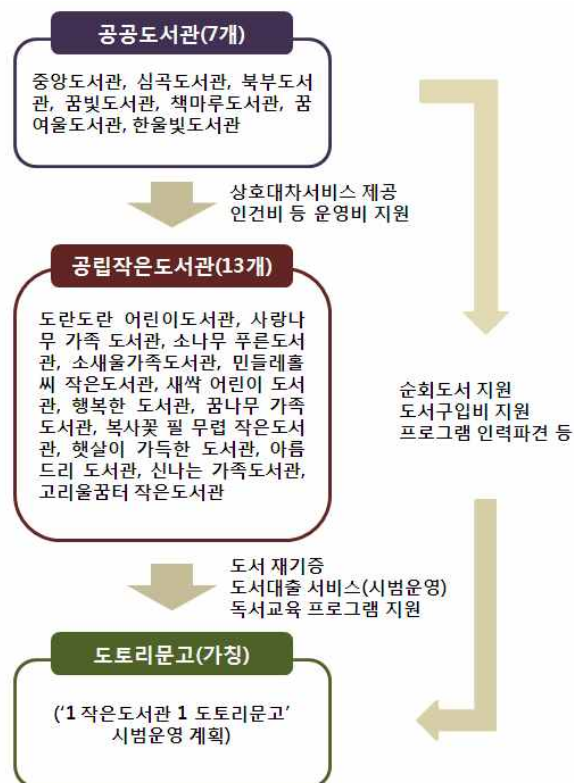
- 부천시는 13개의 공립 작은도서관과 33개의 사립 작은도서관이 설치됨

<표 76> 부천시 작은도서관 현황

위치(개수)	작 은 도 서 관(46개)	
	공립 작은도서관(13개)	사립 작은도서관(33개)
고강동(4)	고리울꿈터작은도서관, 도란도란어린이도서관	부천비전도서관, 경서이웃사랑문고
괴안동(3)	꿈나무작은도서관	꾸러기도서관, 해오름문고
대장동(1)		웅달샘문고
도당동(2)		천성문고, 길벗도서관
삼정동(1)	아름드리도서관	
상동(6)	민들레흙씨도서관	미소지움새마을문고, 삼성래미안새마을문고, 써미트빌도서관, 우림문고, 소망문고
소사본동(4)	소새울가족도서관	새빛문고, 염광문고, 파랑새작은도서관
송내동(1)		푸르지오2차작은도서관
심곡동(5)	햇살이가득한도서관, 복사꽃필무렵도서관	누리작은도서관, 부광어린이문고, 신광마을문고
약대동(2)	신나는가족도서관	새마을문고부천시지부
여월동(2)		여월휴먼시아새마을문고, 꿈향기도서관
역곡동(1)		주신비전문고
오정동(4)	새싹어린이도서관, 행복한도서관	오정어린이집문고, 오정휴먼시아3단지어린이문고
원미동(5)		본향비전작은도서관, 민들레문고, 가족도서관보물단지, 하늘이슬문고, 복된교회작은도서관
원종동(1)		좋은터문고
작동(1)		꿈사랑마을문고
중동(3)	소나무푸른도서관, 사랑나무가족도서관	예그필

● 부천시 협력 모델의 특징

- 현재 부천시는 7개 시립도서관과 13개 작은도서관에서 상호대차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여 협력하고 있음. 이때 13개 작은도서관은 공립 작은도서관으로 33개 사립 작은도서관은 연계망 구축에서 제외되어 있음.
- 또한, 시에서 도서관 1관 당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 전액과 상호대차를 지원하고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후에 운영하는 형태로 작은도서관 지원시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를 지원함. 직접적인 인력 지원은 제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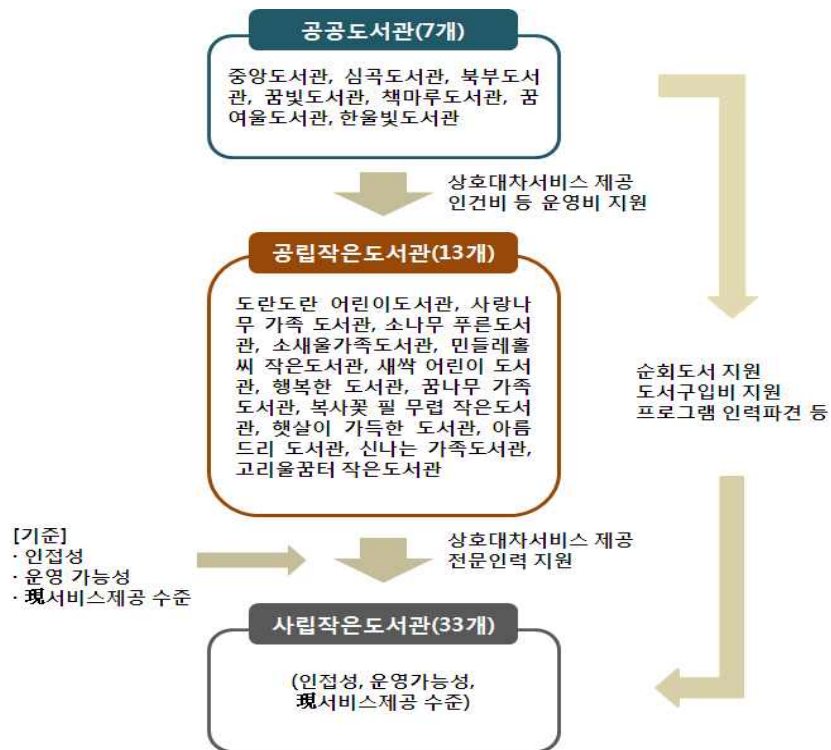


[그림 48] 부천시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협력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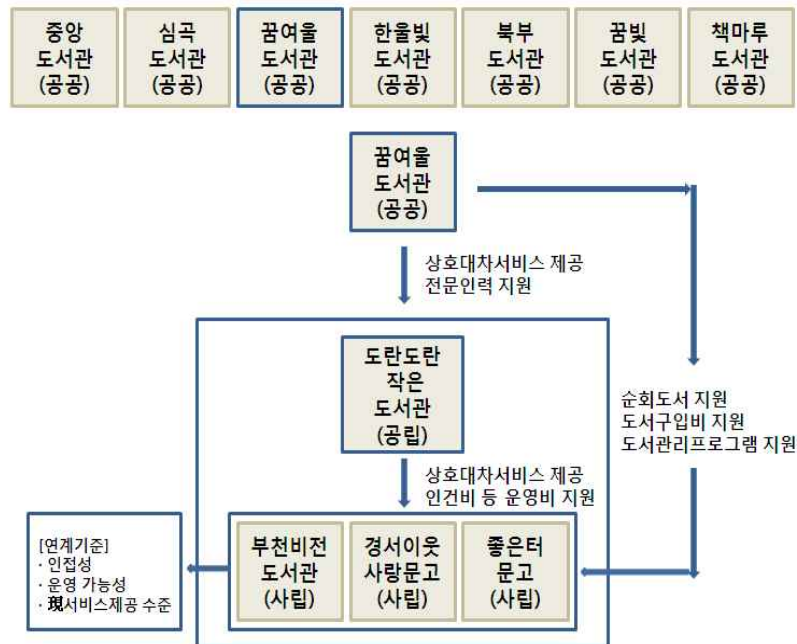
- 밀착형 도서관의 확대 운영을 목표로 2011년 현재 작은도서관의 분관 형태의 도서관(가칭 ‘도토리문고’)을 설치하고 공립 작은도서관에서 기증받은 도서를 재기증하는 ‘도서 재기증 사업’과 독서교육 프로그램지원, 도서대출서비스(현재 고리울꿈터 작은도서관에서 시범운영 중)를 연계사업으로 계획 중에 있으나, 추진 예정인 작은도서관 분관형태인 ‘도토리문고’(가칭)도 역시 공립 작은도서관의 형태임.

● 개선모델 제안

- 현재 부천시의 경우 협력모델에서 사립 작은도서관(33개)은 고려되지 않음.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이 적극적인 연계망이 부족하여 주민밀착형 도서관으로서의 작은도서관의 기능을 활성화하는데 한계가 있음.
- 따라서, 기존의 사립 작은도서관의 시설, 장서, 인력 등을 활용하여 공공도서관-공립 작은도서관-사립 작은도서관 등 세 가지 차원의 도서관을 연계하고, 상호대차서비스와 도서관프로그램을 공유함으로써 생활밀착형 도서관의 확대운영을 도모할 수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우선 기존 사립 작은도서관의 서비스품질 기준을 확정하고 그 기준에 맞추어 서비스품질을 균일화하는 작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
- 현재 공립 작은도서관의 수 보다 사립 작은도서관의 수가 전반적으로 월등히 많은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세 종류의 도서관이 서로 연계되어 상승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한 개의 공립 작은도서관과 다수의 사립 작은도서관을 연계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이로써, 공립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과 사립 작은도서관의 매개역할을 하여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간의 협력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 함.
- 한 개의 공립 작은도서관과 다수의 사립 작은도서관을 연계하는 기준으로는 인접성, 운영가능성, 현재 서비스 제공 수준 등을 고려해야 함.
- 인접성을 고려할 때에는 공립 작은도서관 인근의 다수의 사립 작은도서관을 연계하는 방안이 있으며, 현재 순회사서 1명 당 4개의 작은도서관을 담당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공립 작은도서관 한 개당 최고 4개의 작은도서관을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현재 공립 작은도서관이나 사립 작은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품질 수준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통합된 도서관관리프로그램을 보급하여 상호대차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써 장서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립 작은도서관에서 전문인력을 지원하거나 사립 작은도서관의 인력 재교육을 담당하여 전문성을 갖추도록 지원함.



[그림 49] 부천시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협력 개선 모델 제안



[그림 50] 부천시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협력 개선 모델 적용 사례

□ 순천시 사례

● 순천시 작은도서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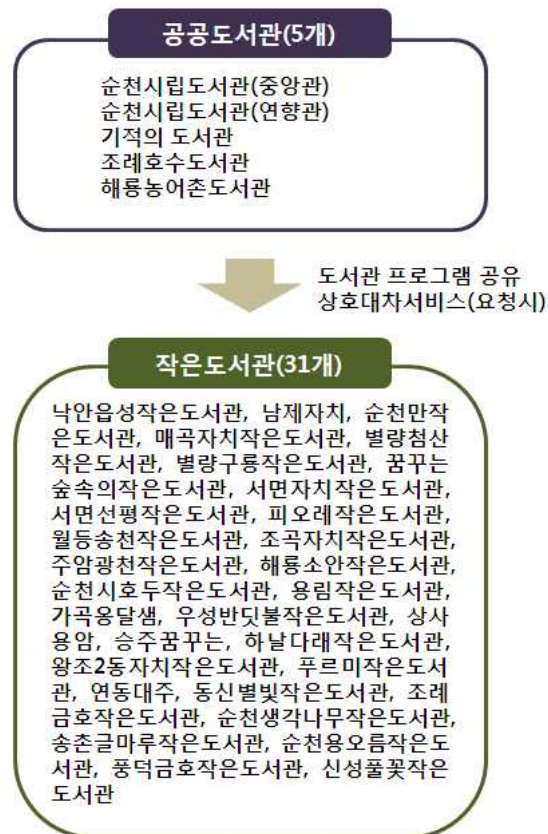
- 2011년 현재 순천시는 연향동(연향관)과 동외동(중앙관)에 각각 시립도서관을 두고, 해룡면(기적의도서관), 조례동(조례호수도서관), 해룡면(해룡농어촌도서관)의 다섯 개 공공도서관을 두고 있음.
- 작은도서관은 가곡동(1), 낙안면(1), 남정동(1), 대대동(1), 덕월동(1), 매곡동(1), 별량면(2), 상사면(1), 생목동(1), 서면(2), 승주읍(1), 연향동(2), 용당동(1), 월등면(1), 조곡동(1), 조례동(7), 주암면(2), 풍덕동(1), 해룡면(3), 황전면(1)에 31개가 설치되어 있음.

<표 77> 순천시 작은도서관 현황

위치(개수)	작 은 도 서 관(31개)	
	공립 작은도서관(16개)	시립 작은도서관(15개)
가곡동(1)		가곡옹달샘
낙안면(1)	낙안읍성작은도서관	
남정동(1)	남제자치	
대대동(1)	순천만작은도서관	
덕월동(1)		우성반딧불작은도서관
매곡동(1)	매곡자치작은도서관	
별량면(2)	별량침산작은도서관, 별량구룡작은도서관	
상사면(1)		상사용암
생목동(1)	꿈꾸는숲속의작은도서관	
서면(2)	서면자치작은도서관, 서면선평작은도서관	
승주읍(1)		승주꿈꾸는
연향동(2)	피오레작은도서관	하날다래작은도서관
용당동(1)		푸르미작은도서관
월등면(1)	월등순천작은도서관	
조곡동(1)	조곡자치작은도서관	
조례동(6)		왕조2동자치작은도서관, 연동대주, 동 신별빛작은도서관, 조례금호작은도서 관, 순천생각나무작은도서관, 송촌글마 루작은도서관,
주암면(2)	주암광천작은도서관	순천용오름작은도서관
풍덕동(1)		풍덕금호작은도서관
해룡면(3)	해룡소작은도서관, 순천시호두작은도서관	신성풀꽃작은도서관
황전면(1)	용림작은도서관	

● 순천시 협력 모델의 특징

- 공립 작은도서관과 사립 작은도서관을 구별하지 않고 공공도서관과 도서관 관리프로그램을 공유함으로써 통합검색이 가능하도록 하여 네트워크로 협력하며, 각 작은도서관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공공도서관에서 작은도서관에 상호대차를 지원할 때에도 이용자들이 원할 경우에 한해 실시하고 있으며, 공공도서관에서 100권씩 대여하고 반납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대대적인 프로그램이라기 보다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실시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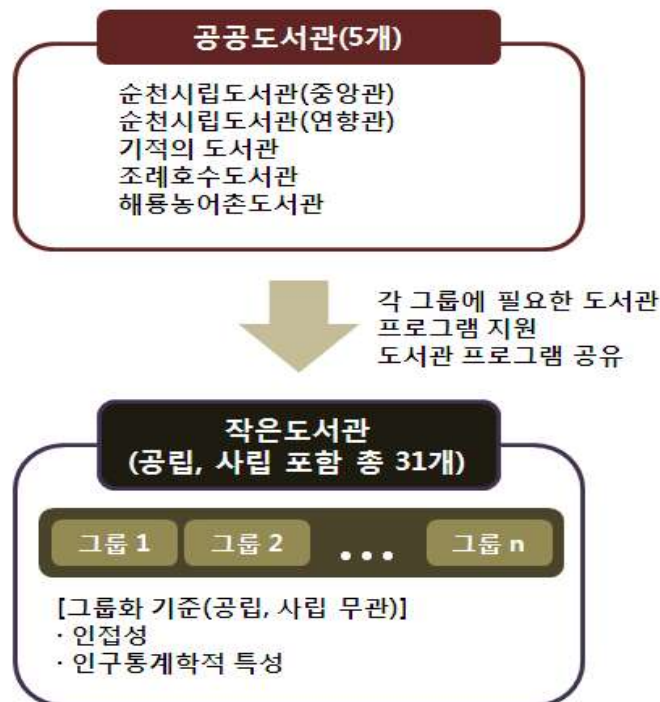
[그림 51] 순천시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협력 특징

- 이 모델의 경우에는 비용이나 인력 등 물리적인 지원에 대한 부담감이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용자의 이용행태에 전적으로 의존하며 도서관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공동체 활동 보다는 자료 또는 장서이용에 국한되는 한계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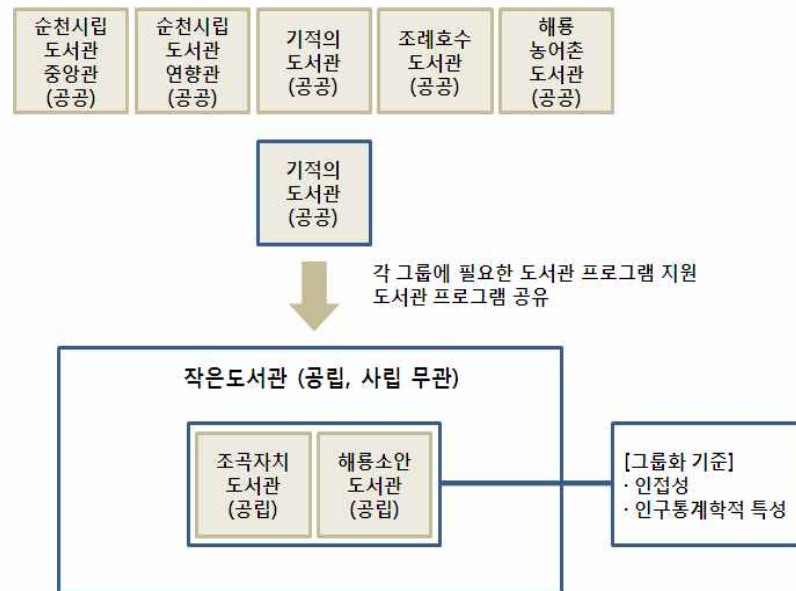
- 자생력이 부족한 대부분의 작은도서관을 공공도서관과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어려움.

● 개선모델 제안

- 순천시의 경우처럼 공립 작은도서관과 사립 작은도서관의 비율이 비슷하고 위치상으로 공립 작은도서관이 공공도서관과 사립 작은도서관 사이의 매개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할 경우, 인접성과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공립 작은도서관과 사립 작은도서관을 구분하지 않고 그룹화하여 각 그룹마다 필요로 하는 도서관 프로그램을 공공도서관이 시설, 인력, 장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이 제안됨
- 예를 들어,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의 경우 그룹화한 그 지역의 작은도서관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문화 프로그램 등을 인접 공공도서관이 지원하여 작은도서관의 시설, 인력, 예산 등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음.



[그림 52] 순천시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협력 개선 모델 제안



[그림 53] 순천시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협력 개선 모델 적용 사례

□ 김해시 사례

● 김해시 작은도서관 현황

- 2011년 현재 김해시는 김해시(3개), 진영읍(1개)에 4개의 시립도서관이 설치되어있고, 진영읍(3개), 장유면(9개), 주촌면(1개), 진례면(1개), 한림면(1개), 상동면(1개), 대동면(1개), 동상동(1개), 회현동(1개), 내외동(9개), 북부동(7개), 칠산서부동(1개), 활천동(1개), 삼방동(1개), 불암동(1개) 총 39개의 작은도서관이 설치되어 있으며, 북부동에 있는 청소년 문화의집은 현재 미등록 상태로 운영되나 통합도서관시스템에는 포함되어 있음.
- 현재 통합도서관 시스템에 포함되어 운영되는 작은도서관은 총 33개이며, 총 39개 작은도서관 중 북부동(1) 청소년문화의집은 미등록이며, 진영읍(1)에 있는 본산독서문화원, 내외동(3)에 있는 행복한작은도서관, 김해내동작은도서관, 김해홈플러스작은도서관, 북부동(1)에 있는 늘푸른도서관, 삼방동(1) 늘사랑주민도서관 등 6개 도서관은 추가등록되어 현재 통합도서관시스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김해시는 작은도서관을 공동주택, 마을회관 등에 설치되어 있는 도서관으로 규모 85㎡ 이상, 3,000권 이상의 도서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북부동에 있는 청소년문화의집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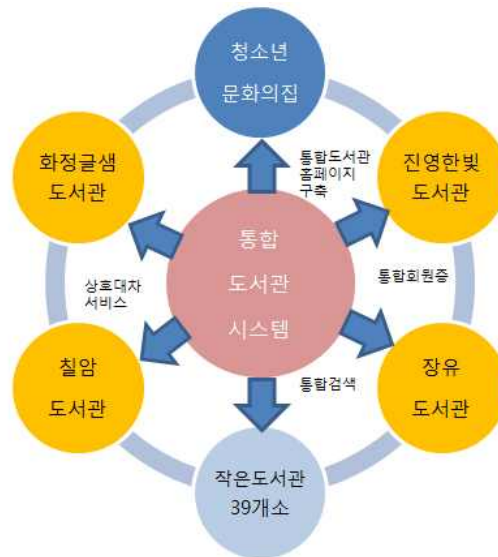
경우는 작은도서관 등록기준인 85㎡에 미달되어 등록은 되어있지 않지만 작은도서관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통합도서관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음.

<표 78> 김해시 작은도서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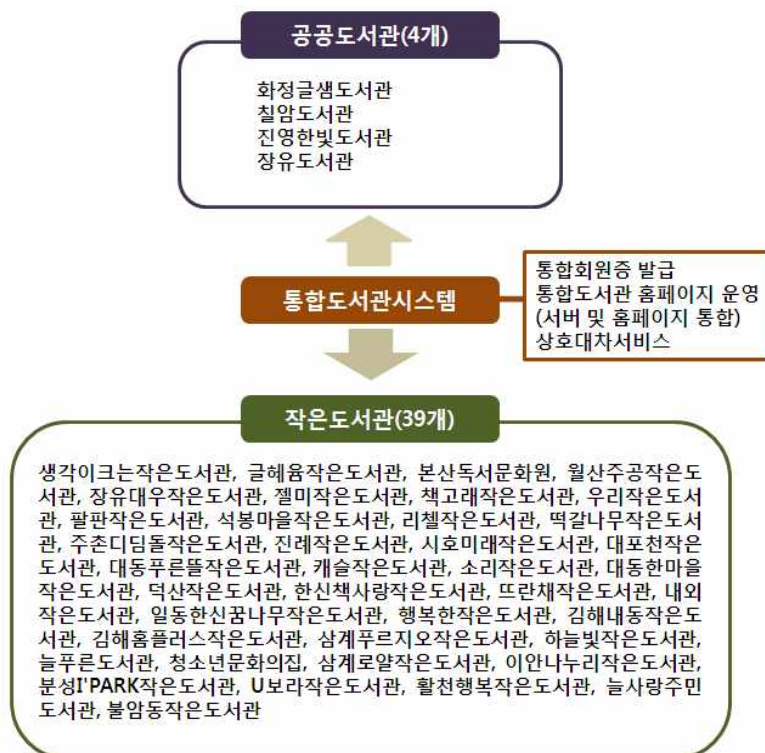
위치(개수)	작 은 도 서 관(39개)	
	공립 작은도서관(14개)	사립 작은도서관(25개)
진영읍(2)+1	생각이크는작은도서관, 글해움작은도서관	본산독서문화원
장유면(9)	장유대우작은도서관, 리첼작은도서관, 떡갈나무작은도서관	월산주공작은도서관, 젤미작은도서관, 책 고래작은도서관, 우리작은도서관, 팔판작 은도서관, 석봉마을작은도서관,
주촌면(1)		주촌디딤돌작은도서관
진례면(1)		진례작은도서관
한림면(1)	시호미래작은도서관	
상동면(1)		대포천작은도서관
대동면(1)		대동푸른뜰작은도서관
동상동(1)	캐슬작은도서관	
회현동(1)	소리작은도서관	
내외동(6)+3	덕산작은도서관, 한신책사랑작은도서관, 내외작은도서관	대동한마음작은도서관, 뜨란채작은도서관, 일동한신꿈나무작은도서관 행복한작은도서관, 김해내동작은도서관, 김해홈플러스작은도서관
북부동(6)+1	삼계푸르지오작은도서관, 이안나누리 작은도서관	하늘빛작은도서관, 삼계로알작은도서관, 분성'PARK작은도서관, 늘푸른도서관 청소년문화의집(미등록)
칠산서부동(1)		u보라작은도서관
활천동(1)		활천행복작은도서관
삼방동(1)		늘사랑주민도서관
불암동(1)	불암동작은도서관	

* 기울임체로 되어있는 도서관과 뒤의 숫자는 추가등록되어 도서관통합시스템에 포함되지 않은 도서관임

- 2008년부터 통합도서관시스템을 구축하여 2011년 현재 시립도서관 4개, 작은도서관 39개, 청소년문화의집 1개 도서관간의 연계망을 형성하고 있음.



[그림 54] 김해시 통합도서관시스템 구축과 제공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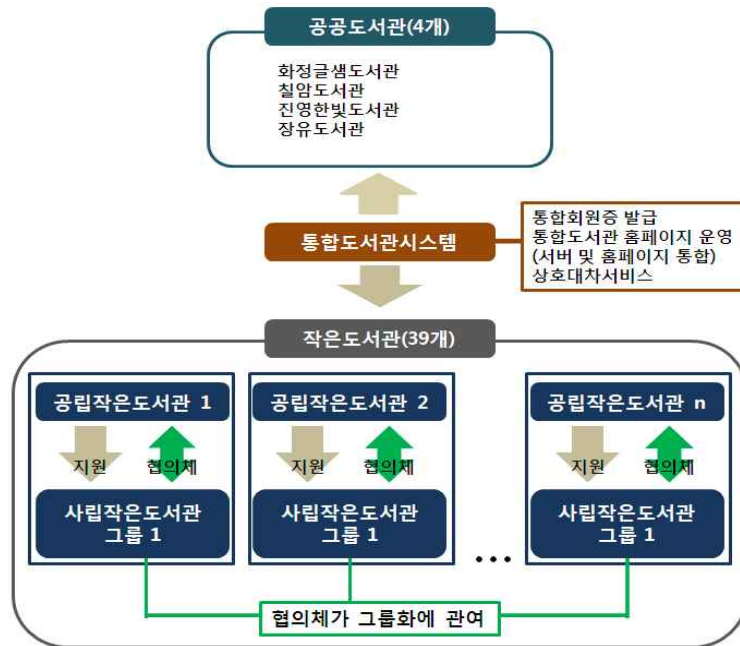
[그림 55] 김해시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협력 특징

● 김해시 모델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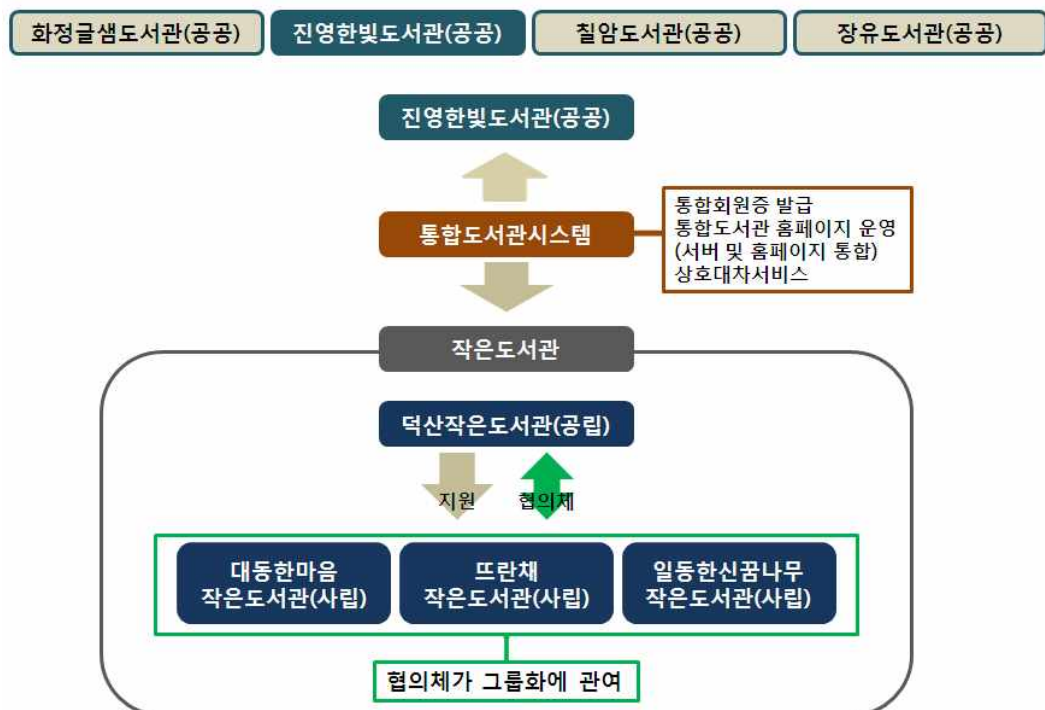
- 순천시와 마찬가지로 작은도서관을 공립과 사립으로 구분하지 않고, 공공도서관과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김해시의 경우는 관(官)이 주도한다는 것이 차이점임.
- 관(官)이 주도한 통합도서관시스템으로 통합회원증을 발급하여 시 산하 도서관 전체 이용이 가능하고, 통합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서검색 및 도서목록 통합검색이 가능하며, 상호대차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음.
- 통합회원증만 있으면 김해시 내의 모든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어 one-stop 서비스가 가능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모델임.

● 개선모델 제안

- 순천시와 마찬가지로 이용자의 이용행태에 전적으로 의존하며 도서관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공동체 활동 보다는 자료 또는 장서이용에 국한되는 한계가 있어 작은도서관을 공공도서관과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어려움.
- 김해시처럼 사립 작은도서관이 공립 작은도서관보다 그 수가 많은 경우, 부천시와 마찬가지로 인접성, 운영가능성, 現서비스제공 수준을 기준으로 사립 작은도서관을 그룹화하여 공립 작은도서관의 분관 형태로 공립 작은도서관과 연계함.
- 작은도서관을 그룹화할 때 지자체장, 공공도서관 담당직원, ‘작은도서관 그룹’에 포함된 작은도서관 관장으로 지역협의회를 구성하여 그들 사이의 협력과 조정이 가능하도록 함.
- 운영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도서관 관리자가 명확하지 않은 사립 작은도서관의 경우, 공공도서관 담당직원이 직접 관리하거나 공공도서관에서 팀장급 인력을 파견하도록 함.
- 공공도서관이 각 ‘작은도서관 그룹’별로 인력, 예산, 장서, 서비스를 지원할 때에 그와 관련한 컨설팅을 주도하여 협의하도록 함.
- ‘작은도서관 그룹’에 속한 각 작은도서관이 공공도서관에 지원을 요청할 때에 지역협의회가 조정자 역할을 하여 균형 있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 ‘작은도서관 그룹’별로 공공도서관이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경우 장서나 시설 등을 공동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협의회가 중재자 및 조정자 역할을 함.



[그림 56] 김해시 공립 작은도서관과 사립 작은도서관 협력 개선 모델 제안



[그림 57] 김해시 공립 작은도서관과 사립 작은도서관 협력 개선 모델 적용 사례

2.5 사회적 기업의 참여

2.5.1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기업의 활용 방안

□ 활용방안

- 설립 지원 이외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공지원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사회적 기업을 연계함으로써 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련한 영역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음
- 작은도서관 운영에 투입될 수 있는 공공재원 규모에 한계가 있는 만큼, 사회적 목적 실현과 영리활동을 결합하는 사회적 기업의 참여를 통하여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지원(또는 협력)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음
- 사회적 기업의 참여를 통해 작은도서관서비스의 사회적 가치를 비영리 영역뿐만 아니라 영리영역을 통해 크게 확산할 수 있음

□ 사회적 기업의 참여영역

- 작은도서관 건립에 대한 컨설팅
 - 작은도서관 ‘건립’과 관련한 컨설팅 및 개관준비에 필요한 시설, 설비 등 조달 부분. 도서관건립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2008년 조사에서는 공공도서관 건립시 전문적인 컨설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95%를 상회하였음(김세훈, 2008).
 -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과 오랜 건립기간이 필요한 공공도서관의 경우에도 건립과 관련된 컨설팅 수요가 이렇게 높은 현실에서, 작은도서관 건립은 실제 매우 ‘비전문적’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음. 곧, 시설, 가구 구입이나 인테리어, 공간배치, 장서 구입, 프로그램 구상, 인력 운용 등 초기 건립단계에서 세부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들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이후의 작은도서관 운영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음.
 - 따라서 사회적 기업으로 하여금 작은도서관 건립시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컨설팅하고 연계시키는 역할을 담당케 할 수 있음
- 작은도서관의 운영 프로그램 개발과 서비스 지원

- 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장서개발, 교육, 홍보 등과 관련된 부분. 대다수의 작은도서관은 전문적인 운영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가 많으며, 확보한 경우에도 수가 적어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임.
- 아직까지 공공도서관과 직간접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적 기업은 운영프로그램 개발, 장서개발, 연수 및 교육, 공동홍보, 정보 교류 등 운영활성화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을 수행할 수 있음.
- 또한 기존에 실시되고 있는 장애인 대상 택배서비스 등 사회적 기업이 수행할 수 있는 수익 활동 영역을 개발함으로써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과 사회적 기업 운영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음

●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 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련한 지원 사업 부분. 작은도서관에 대한 설립 지원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운영은 자체 역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 현실임. 이러한 환경에서 작은도서관이 자체 역량으로 운영되기에는 아직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음.
- 특히 공공도서관을 통한 직, 간접적 연계 운영체계가 확고히 구축되어 있지 못한 상태에서 작은도서관 운영을 도와줄 수 있는 외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 현재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순회사서 제도 등은 작은도서관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러한 공공지원 사업에 대해 도서관전문 사회적 기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면 작은도서관 운영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줄 수 있음

□ 사회적 기업의 사업영역

● 작은도서관 설치 지원

- 작은도서관 건립 관련 컨설팅 제공. 도서 및 시설 납품 등

● 운영지원

- 장서구입, 작은도서관 운영방안 교육, 자료 분류,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 기타 서비스 지원

-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의 독서진흥 활동(순회 사서 사업 등)
- 작은도서관 및 학교도서관 등 운영인력 교육
- 기타 공공캠페인 등

2.5.2 사회적 기업의 참여방식

□ 대기업이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설립한 사회적 기업 활용 방안

- 사회적 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온 대기업 차원에서 사회적 기업을 설립케 하여 작은도서관 운영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대기업이 설립한 사회적 기업은 기존의 기업업무영역과 연계하여 수익을 창출하면서 작은도서관을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음.
 - 이러한 예로 최근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된 ‘행복한도서관재단’을 들 수 있음
 - SK텔레콤은 오픈 마켓인 ‘11번가’를 운영하고 있으며, SK텔레콤이 설립한 ‘행복한도서관 재단’은 이 오픈 마켓을 활용하여 도서관 건립 또는 장서 구입 등과 관련한 다양한 수익사업을 구상하고 있음
- 또한 기업의 규모가 크므로 전국적인 서비스가 가능한 사회적 기업으로의 도약이 가능함.
 -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이나 민간단체가 설립하는 도서관 관련 사회적 기업은 수익창출 영역이 매우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비해, 이처럼 대기업이 설립하는 사회적 기업은 기존의 서비스 영역과의 연계를 통하여 수익 창출 영역이 다방면으로 모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음
- 대기업이 참여하는 사회적 기업은 활동의 범위를 작은도서관뿐만 아니라 공공도서관까지 확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음.
 - 곧 작은도서관을 지원하는 목적을 가진 사회적 기업이라 하더라도 작은도서관에 대한 서비스를 지향하되, 공공도서관까지 확대하여 수익사업 모델을 마련할 수 있음
 - 예컨대, 현재 공공도서관 도서구입의 경우 공개입찰제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틀에는 민간비영리단체에서 출발한 사회적기업이 참여하기 어려운 경향이 있으나 대기업이 설립한 사회적기업은 기존 사업영역과의 연계를 통하여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큼.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을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재투입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
- 이외에 대기업에서 설립한 사회적기업은 현재 대부분 외주로 진행되고 있는 Marc DB 사업 등을 직접 수행할 수도 있음.

- 사회적 기업이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도서관 도서 구입시 요구되는 도서정보 DB구축 사업을 외주 용역업체로 지정받아 수행할 수 있으며 도서관비 용역사업도 수행할 수 있음

□ 중소기업 등이 설립한 사회적 기업 활용 방안

- 한 개의 대기업이 한 개의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는 방안이외에 여러 개의 중소기업이 한 개의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
 - 작은도서관에 대한 기업의 지원 실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동안 적지 않은 기업에서 꾸준히 작은도서관과 관련한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왔음.
- 다양한 기업에 의한 작은도서관 건립사업들이 한편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면서 다른 한편으로 취약점을 보인 것은 사업 및 운영의 지속성에 있음.
 - 일정 기간 동안 건립(및 운영)을 지원하다가 이후에는 지원을 그침으로서 작은도서관 운영의 안정적 기반을 제공하는 데에는 한계를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2-3곳 이상의 기업들이 한 개의 사회적 기업 설립을 지원하고, 작은도서관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기업과 지속적으로 연계하여 작은도서관 운영을 지원한다면 작은도서관에 대한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측면뿐만 아니라, 설립된 사회적 기업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음
 - 예를 들어, 가구 회사, 인테리어 회사, 도서 회사 등이 연계하여 한 개의 사회적 기업을 설립한다면, 설립된 사회적 기업은 작은도서관과 관련하여 위 회사들과 사업상 지속적인 연계를 가지면서 설립 및 운영관련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
- 이러한 사회적 기업은 도서관 건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목적 달성뿐만 아니라 판매 및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질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 민간단체가 설립한 사회적 기업 활용 방안

- 민간단체가 설립한 사회적 기업은 초기 단계에서는 규모가 크기 어려운 만큼, 대기업 등

이 설립한 사회적 기업과 달리 개별 작은도서관 서비스 질 제고와 관련된 측면에 더욱 관심을 기울일 수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음

- 민간단체가 설립한 사회적 기업은 대기업 등이 설립한 사회적기업과 달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영역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어려움을 가짐. 따라서 작은도서관과 관련한 공공시장을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임
- 민간단체의 경우, 도서관, 독서, 출판 등의 영역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러한 영역에서 수익 모델을 구축하여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음
 - － 사회적기업인 ‘행복한아침독서’는 모든 유치원과 초, 중, 고등학교에 독서관련 잡지를 제작, 배포하고 있으며, 여기에 실리는 광고를 통하여 수익모델을 구축한 바 있음. 또한 반쯤도서를 50%에 할인 판매하는 매장을 운영함으로써 수익원의 다양화를 꾀하고 있음. 이처럼 민간단체의 경우, 도서관, 독서, 출판 등의 영역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러한 영역에서 수익모델을 구축하여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음
- 작은도서관 서비스 관련 사회적 기업은 대기업이 설립할 수 있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으므로, 실제로 전국에 걸쳐 운영되고 있는 작은도서관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민간단체가 설립한 사회적 기업의 역할이 중요함
- 민간단체가 설립한 사회적 기업은 작은도서관 설립 및 운영과 관련된 안정적인 서비스를 지역차원에서 제공해줄 수 있다는 차원에서 장점을 가짐

2.5.3 사회적 기업 활동에 대한 지원

- 기업이 설립한 사회적 기업이든 민간단체가 설립한 사회적 기업이든, 아직까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식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지 못한 상황에서 이들의 운영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임. 따라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필요함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되면 관련법에 따라 지원되는 사항들이 있으나 이것이 사회적 기업 운영의 본원적 토대가 될 수는 없음. 따라서 자체 수익모델이 안정적으로 구축되기까지는 이를 지원하는 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음
- 사회적 기업에 대한 공공지원은 간접적인 영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 사회적 기업을 활용하는 것은 시장을 대상으로 한 영업활동으로 자체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공공적 재원에만 의존하지 않고도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임.
 - 다만, 사회적 기업도 시장경쟁체계 안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다른 업체보다 더욱 저렴하게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과 수준이 우수한 것일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기준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초창기에는 사회적 기업 지원 내용에 포함될 수 있음
 -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은 홍보 지원, 특정 사업 지원, 네트워크 지원 등을 검토할 수 있음

□ 홍보 지원

- 작은도서관과 연계된 사회적 기업 활동을 측면 지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러한 사회적 기업의 활동에 대한 인지도 및 신뢰도를 높여주는 홍보가 필요함.
- 사회적 기업은 작은도서관 건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위에서 제시된 다양한 사업 영역들을 진행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 인지도가 높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 작은도서관 또는 공공도서관과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임
 - 예를 들어, 도서구입이나 Marc DB 구축사업의 경우 외부 대행사 등을 통해 실시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미 건립되어 운영중인 공공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의 경우, 기존에 거래하고 있는 업체들이 존재하는 관계로 사회적 기업이 새로운 거래(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쉽지 않음

- 경기도의 경우 관내 도서관에 사회적기업의 재화,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안내 공문을 하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사회적 기업을 통해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한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를 지원해주는 노력이 필요함

□ 공공사업 지원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작은도서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순회사서 사업이나 공공도서관 개방시간 연장을 위한 인력 지원 등은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임
- 이 가운데 순회사서 사업은 작은도서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장서관리 기술지원: 자료 선정 및 수집·정리, 열람·대출서비스 등 운영지원
 - 독서·문화프로그램 기획·운영 지도
 - 운영자 및 자원봉사자 대상 도서관 업무에 대한 기초 및 실무교육 실시
 -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연계협력추진: 공공도서관 자료 및 프로그램 공유 및 작은도서관 정보화사업 지원 및 협력망 구축 등
- 순회사서 사업은 사서를 두기 어려운 작은도서관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적 기업으로 하여금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음. 이를 위해 순회사서 사업 등과 같이 작은도서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의 위탁 사업자로 활용하는 방안과 사회적 기업이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을 위해 만든 프로그램을 구매 또는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음

□ 자원(資源) 풀 및 네트워크 지원

-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사회적 기업이 질과 수준을 확보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기 위해서는 건립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사회적 기업이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자원 풀을 구축해 주는 것도 필요한 지원사항임

- 예를 들어, 작은도서관 건립 또는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필요한 전문기술 부분은 공간 구성, 조명, 인테리어, 가구, 장서, 도색 등 다양함.
 - 현재 작은도서관 건립과 관련한 부분은 전문성 없이 추진되고 있는데 비해, 향후 사회적 기업을 통해 이러한 부분에 전문적인 서비스가 기울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이 이러한 곳을 담당하는 업체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함
- 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련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광범위한 인력, 자원 풀을 제공해 주는 것도 동일한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사항이 됨
- 도서관 건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이러한 업체들의 풀을 전국적으로 구축하여 사회적 기업이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과 수준을 확보해주는 것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주요한 지원방안이 될 수 있음
- 도서관 서비스를 매개로 하는 사회적 기업간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함.
- 현재 도서관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사회적 기업(예비 사회적기업 포함)은 2곳에 불과하므로 이 기업의 네트워크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도서관을 매개로 재화나 서비스가 연계될 수 있는 사회적 기업간 네트워크를 구축해줄 수 있음.
 - 그 이유는 사회적 기업이 도서관 서비스에 결합하는 초기 단계인 현 시점에서는 작은도서관과 사회적 기업이 어떻게 연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모색이 필요하기 때문임
- 도움 받아야 할 작은도서관이 전국적으로 매우 많은 상황에서 현재의 사회적 기업간 협력은, 레드 오션(red ocean)을 사이에 둔 기업간 경쟁이라는 측면보다는 블루 오션(blue ocean)을 향한 상생을 위한 협력이라는 차원에서 공공영역이나 사회적 기업 모두에서 매우 필요한 사안임.

2.6 지역협의회의 구성

2.6.1 지역협의회의 구성

□ 지역협의회의 구성

- 지역 단위별로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한 정보 교류,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지자체 담당자를 주축으로 작은도서관 운영자 그리고 해당지역 주민 등을 이루어진 협의회의 구성체계가 필요함.
- 지역협의회 구성은 지역내 작은도서관 운영자, 시민단체, 도서관계·독서문화계·교육계 등 관계분야의 전문가, 지역주민을 포함함.
 - － 협의회 회장과 부위원장은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며, 000(도·시·군·구)의 작은도서관 업무 담당자는 간사로 참여함.
 - －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함. 이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논의하기 위해서 최소한 5년 기간동안 유지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회 모임을 개최하여 자문과 지원을 받는데, 연초에 협의회 모임의 시기와 주기를 정하고 그에 따르게 함.
 - － 각 지자체별로 협의회의 모임주기와 시기가 다를 수 있으므로 매년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침

□ 지역협의회의 역할

- 협의회의 역할은 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자문하거나 지원하는 역할 수행.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음
 - － 지자체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 －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 － 작은도서관 등록 및 등록취소, 폐관에 대한 사항
 - － 작은도서관 조례 제정 및 개정

－ 기타 작은도서관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등

□ 활성화 사례 : 경기도 부천시

- 경기도 부천시는 현재 작은도서관 협의회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음
- 부천지역 작은도서관 협의회는 2001년 설립된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 작은도서관만들기 네트워크분과’에서 진행되었던 ‘동네마다 작은도서관 만들기’ 사업의 성과를 계승하고, 이후 민,관 네트워크로 진행되는 이 사업의 민간 역량의 한 축을 담당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확대된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2004년 2월 발족함.
- 각 공립문고의 관장 및 시의원, 평생학습센터, 부천문화재단, 시민단체 등이 운영위원회의 참여하여 지역의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관심과 지원을 모으고 있음.
- 부천지역 작은도서관 협의회는 부천시립도서관과 함께 부천시의 ‘동네마다 작은도서관 만들기’사업을 진행함.
- 부천지역 작은도서관 협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민간역량은 사서와 자원봉사자 공동교육 및 공동행사 개최, 매월 갖는 공립문고 사서회의를 중심으로 한 일상적인 네트워크 사업 등 지역의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내용을 만들어가는 일을 진행하고 있음.
- 부천시 도서관과 공동 주관하여 제10회 도서관문화한마당 행사, 한 도시 한 책읽기, 도서관 시민학교 운영 등 지역마다 ‘도서관친구들’이 결성, 참여하며 다양한 도서관 사업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음.



[그림 58] 부천시 작은도서관 협의회 시행사업

2.6.2. 시민단체의 참여

□ 지역협회의 참여를 통한 지원 방안

● 지자체와 지역주민을 잇는 가교 역할

- 시민단체는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전문가 그룹으로 활동할 수 있음
- 시민단체 주도로 작은도서관에 대한 도서 및 인력지원(책나눔 및 자원봉사자 지원 등) 캠페인을 주도할 수 있으며, 도서관구입부터 운영체계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 나눔을 함께 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협의회 구성에 시민단체를 적극 참여시킴으로써 작은도서관의 전문적 운영 지원의 방향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활성화 사례

● (사) 작은도서관 만드는 사람들

- (사) 작은도서관 만드는 사람들은 1987년부터 책이 없어 책을 읽지 못하는 산간벽지, 농어촌, 섬마을 지역 어린이와 주민들을 위해 작은도서관을 마련하는 일을 시작으로 20년이 넘게 운영되고 있는 독서운동 단체임.
- “좋은 책 한권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나아가 세상을 바꾼다!”라는 슬로건 하에 누구나가 좋은 책 읽기를 통해 좋은 삶을 살고 나아가 좋은 세상 만들기를 소망하는 마을마다 도서관이 없는 곳이 없는 그날까지 작은도서관 만들기에 전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음.
- 강남구민을 대상으로 마을도서관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강남구립도서관을 2002년부터 현재까지 위탁운영하며 다양한 독서문화활동을 진행하고 있음.

2.7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운영 현실화

□ 지역협의회의 구성 제안

●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의 운영자의 문제의 지원방안으로 제안

- 수요조사 결과, 공동주택단지 내 설치 가능한 공공시설 중 가장 필요한 시설로 ‘작은도서관’을 꼽았으며, 작은도서관 이용 경험과 관계없이 설치필요성에 대해 매우 높게 공감하고 있었음.
- 그러나 현재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중 절반정도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음.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작은도서관 10곳 중 1곳은 운영자 없이 운영되고 있고, 운영자가 있더라도 절반 이상은 자원봉사자이거나 주민자치회 구성 조직에 속해 있거나 주민대표 등 전담 운영자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음.
-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민단체, 사회적 기업 등을 포함하는 지역협의회가 직접 개입하여, 부녀회나 지역단체로 운영권이 넘어갈 때 체계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함.

● 사회적 기업의 연계도 가능

- 지역협의회 구성을 통해 사회적 기업이 작은도서관 운영을 지원하도록 연계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경기도는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2011년 SK텔레콤과 함께 사회적 기업을 목표로 ‘재단법인 행복한도서관’을 설립하여 운영지원하고 있음. 이러한 지자체와 사회적 기업이 협력하여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의 전문적인 운영지원을 가능하게 함

□ 운영위원회 구성 의무화

-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을 설립할 경우, 지역대표, 운영자 등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 선출할 수 있음.
- 주민들의 자치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해당 지역내 주민과 관계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운영회의를 개최하도록 의무화함

- 운영위원회는 신간도서의 확보, 도서관 운영체계 구축, 순회사서·자원봉사자 관리 등 운영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과 제의가 가능함

□ 향후 지원방안

-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은 설립 배경이나 지역 환경이 다른 작은도서관과 상이하므로, 공동주택단지의 특성과 환경에 맞는 운영 활성화 모델이 제안될 필요가 있음
- 법적인 보호하에 설립된 작은도서관이 현실적인 운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인력지원, 도서지원, 연계망 구축 등의 다양한 지원모델이 요구되며, 이와 관련된 운영 매뉴얼, 위탁운영 절차 구상 등의 구체적인 연구작업이나 사업이 지속될 필요가 있음

3. 주요 정책과제

<표 79>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

주요 정책과제	주요내용	추진주체	예산
1. 도서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 시설, 자료기준 조정 - 인력, 운영시간, 관리 및 지도(등록 및 등록 취소 근거) 마련	문화체육관광부	비예산
2.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개정	- 조례제정 의무화 추진 - 지자체 평가지표(도서관 영역)에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제정 여부와 조례준수 여부 내용 포함	문화체육관광부	비예산
	- 조례 제정 및 작은도서관 운영 현실화	각 지자체	비예산
3. 행정기구 정비	- 작은도서관 담당자 교육 및 컨설팅 개최(정기적)	문화체육관광부	교육 및 컨설팅 예산 소요
	- 지역협의회 구성	각 지자체	운영예산 일부
	- 지자체의 작은도서관 업무 담당 대표자 지정	각 지자체	비예산
4. 다양한 지원방식을 통한 활성화	- 장서지원	문화체육관광부/지자체	작은도서관당 연간 300권 구입 예산
	- 순회사서지원	문화체육관광부	30억(2012년) → 100억 (~2015년) → 200억(~2017년)
	- 운영인력 대상 교육 프로그램 지행	중앙도서관/지자체 대표도서관/공공도서관	각 작은도서관의 인력 1인의 연간 2회 이상 교육 참가
	- 문화프로그램 지원	공공도서관	연계모델 구축을 통해 지원

주요 정책과제	주요내용	추진주체	예산
5. 통계조사 개선	- 새로운 통계지표 항목 선정을 통한 개선안 마련	문화체육관광부	비예산
	- 통계 관리시스템 구축 (등록시스템-통계조사 시스템 연동, 접근성 제고를 위한 조사방법 채택)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통계정보시스템 구축 예산
6. 평가시스템 구축	- 지자체별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평가지표 마련을 통한 평가시스템 구축(도서관 평가와 연동)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 평가와 연동
	- 각 지자체별로 지역내 작은도서관의 운영활성화 평가를 위한 평가지표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지원방식이나 규모 결정	각 지자체	각 지자체의 별도 예산
7. 운영모델 및 매뉴얼 개발	- 컨소시엄 협력 모델 및 도서관 연계 모델의 우수 사례 발굴 및 홍보	문화체육관광부	사례집 발간 및 홍보관련 예산
	- 작은도서관 운영관련 전문 교육 모듈 개발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모듈 개발 및 자료집 배포 예산
	- 설립주체(대기업, 중소기업, 민간단체) 별 사회적 기업 정착 모델 제안	문화체육관광부, 각 지자체	별도 연구예산
	-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운영 현실화를 위한 운영 매뉴얼 개발	문화체육관광부, 각 지자체	별도 연구 예산

참고문헌

단행본·연구보고서·자료집

- 국립중앙도서관, 『2006 작은도서관 조성평가』, 2007
- 국립중앙도서관,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디자인 매뉴얼』, 2007
- 국립중앙도서관, 『작은도서관 운영매뉴얼』, 2008
- 국립중앙도서관, 『작은도서관 운영사례: 느티나무어린이도서관』, 2006
- 국립중앙도서관·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작은도서관·공공도서관 협력시스템 구축방안 국제세미나』, 2006
-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 협력망 운영실태 조사에 관한 연구』, 2008
- 국립중앙도서관, 『작은도서관 선진형 모형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 2007
- 국립중앙도서관, 『작은도서관 실태 조사자료집』, 2005
- 국립중앙도서관, 『작은도서관 분관시스템 구축방안』, 2006
- 국립중앙도서관, 『2007 도서관협력망 운영실태 자료집-공공도서관』, 2007
- 국립중앙도서관, 『작은도서관(문고포함)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2006
-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주요국 도서관법-덴마크 도서관법-』, 도서관연구소 웹진 vol.20, 2008
- 금창호, 권오철, 「지방행정의 유사중복기능」, 『한국지방행정연구원총서』, 2008
- 김세훈, 『도서관 건립 및 운영컨설팅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8
- 김용분, 『마을, 작은도서관 그리고 정책』, 한국학술정보, 2010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제2차 도서관정책 포럼』, 2011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사서자격제도 개선에 관한 논의」, 『제1차 도서관정책 포럼』, 2010
-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도서관 행정체계 일원화 방안 연구』, 2007
- 문화체육관광부, 『2011년 전국 도서관 통계조사-공공도서관, 어린이도서관 통계 항목』, 2011
-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11
- 문화체육관광부, 『2011년 도서관 및 독서정책 대국민 업무보고』, 2011
- 문화체육관광부, 『“2010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실무교육 자료집』, 2010
-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도서관 설립전략 컨설팅 시범사업 운영』, 2009
- 문화체육관광부,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사업 결과보고서』, 2010
- 문화체육관광부, 『2010 문화나눔, 문화 일꾼과의 만남』, 2010
- 문화체육관광부, 『‘우리 함께 가요’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이 함께 하는 워크숍』, 2010
-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도서관 체계의 전략적 정립방안 연구 -주제별 국가도서관 모형을 중심으로-』, 2008

- 부천시, 부천시작은도서관협의회, 『작은도서관 운영사례: 부천시 작은도서관』, 2007
- 사회적기업연구원, 『유럽 사회적기업 부문: 정책과 사례』, 2010
- 사회적기업연구원, 『사회적기업: 다양성과 역동성, 배경과 공헌』, 2010
- 에이미 알레시오, 『청소년을 위한 도서관 우수서비스 사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2010
- 예술경영지원센터,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인증 설명회』, 2011
- 윤명희 외, 『(소통과 협력으로 성장하는)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경기도사이버도서관, 2011
- 윤희운, 『공공도서관 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논의』, 제1차 도서관정책포럼, 2010
- 정현태 외, 『생활밀착형 사립 작은도서관의 연계·활성화 방안연구』, 도서관 65(1), pp.38-76, 2010
- 조권중, 『확충이 필요한 서울의 공공도서관』, SDI 정책리포트 18권, 2008
-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연감』, 2006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도서관 통계자료를 이용한 의미분석 연구』, 2009
- 한국문화원연합회, 『2010 지방문화원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사회적기업화 추진용역보고서』, 2010
- 한국법제연구원, 『작은도서관 지원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2007
- 한국출판연구소, 『공동주택 단지내 작은도서관(아파트도서관) 설치 및 운영 실태조사』
- Bernard Vavrek, *Rural and Small Libraries: Providers for Lifelong Learning*, Pennsylvania, 1995
- DTI, *Social Enterprise: A Strategy for Success*, HM Government: London, 2002
- IMLS, 『미국 공공도서관 : 2008 회계연도(Public Libraries in the United States: Fiscal Year 2008)』, 2008

논문

- 김세훈, 심효정,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컨설팅 서비스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vol.43 no.1, 2009
- 김영석, 「우리나라와 영국 공공도서관의 건립정책 비교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 동계학술발표』, vol.2006 no.11, 2006
- 김영석, 「영국 공공도서관의 어린이·청소년 독서 프로그램 운영 사례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18권 제1호, 2007
- 김영석, 「영국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서비스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3권 제2호, 2009
- 김용호, 송경수, 「사회적기업의 행·재정지원제도 보완을 위한 전략적 마케팅」, 『Social Enterprise Studies』, vol.2 no.1, pp.5-35, 2009
- 김종수, 김태영, 「사회적기업과 주민자치센터의 연계 가능성에 대한 연구」, 『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 제23집 제1호, pp.47-68, 2010
- 김홍렬, 「전북지역 작은도서관의 현 단계와 기능 확대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 제41권 제1호, pp.77-98, 2010

- 라마찬드란(R. Ramachandran), 「싱가포르 공공도서관의 현재와 미래」, 『도서관』 vol. 59 no.1, pp. 167-176, 2004
- 류은경, 『국내 공공도서관 조례에 관련된 법규분석 연구』, 전북대 석사학위논문, 2004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시설의 균형적 확충과 운영 활성화」, 『창의한국21』, 2004
- 박미라, 이응봉, 「작은도서관 운동의 현 단계와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한국정보관리학회, 제17회 학술대회 논문집』, pp.123-131, 2010
- 안인자, 오세훈, 「대학도서관 통계항목과 평가항목의 상관적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5(2), pp5-25, 2004
- 유양근, 박송이, 「작은도서관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vol.21 no.1, 2010
- 이용남,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분관 운영체제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0권 제1호, 2006
- 이용재, 「도서관과 지역사회의 협력 방안 -한 책, 한 도시' 운동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0권 제3호, 2009
- 이재희,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방안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이진우, 「작은도서관 설립운동의 실체와 공공도서관과의 관련성」, 『한국도서관·정보학회』, 2006
- 이진우, 『작은도서관의 설립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정현태, 「공공도서관 건립·운영에 대한 컨설팅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vol.42 no.2, 2008
- 조윤희, 「공공도서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방안」,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4권 제2호, 2010
- 최영지, 『공공도서관의 작은도서관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최은주,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공공도서관 시스템 개선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홈페이지

경기도청 <http://www.gg.go.kr/>
 국가도서관 통계시스템 www.libsta.go.kr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
 노컷뉴스 <http://www.nocutnews.co.kr>
 뉴스와이어 <http://www.newswire.co.kr>
 문화체육관광부 <http://www.mcst.go.kr>
 민중언론 <http://media.jinbo.net>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부천시공립문고 <http://bcsl.go.kr>

새마을문고중앙회 홈페이지 <http://www.saemaul.com/member>

순천시청 <http://www.suncheon.go.kr>

자치법규정보시스템 www.elis.go.kr

창원도서관 <http://changwon-lib.or.kr>

행복한아침독서 <http://www.morningreading.org/>

헤럴드 경제 <http://biz.heraldm.com>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http://www.ala.org/ala/mgrps/divs/pla/plaawards/ebscoexcellencesmallruralaward/index.cfm>

Berkeley Public Library <http://www.berkeleypubliclibrary.org/>

Birmingham City Council <http://www.birmingham.gov.uk>

Bolton Council <http://www.bolton.gov.u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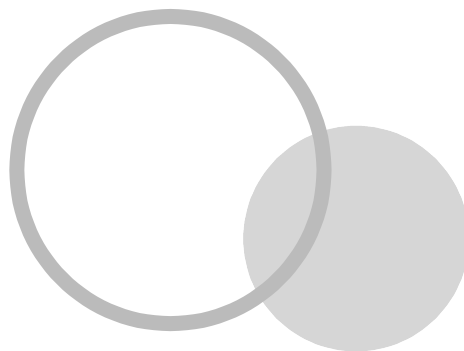
Cleveland Public Library <http://cpl.org/Home.aspx>

Library Journal

http://www.libraryjournal.com/lj/home/888540-264/labor_of_love_best_small.html.csp

WebJunction <http://www.webjunction.org>

부 록



부록 1. 2011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설문지

전국 작은도서관 실태조사지 (운영자 대상)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작은도서관의 관리자 및 운영자를 대상으로 「작은도서관 실태조사」를 실시하오니, 적극적인 협조와 정확한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은 귀하의 동의 없이 절대 공개되지 않으며 순수한 통계적 목적으로만 이용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참여 해주신다면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래의 메일과 팩스를 이용하여 응답결과를 회신해주시기 바라며, 작성 시 문의사항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참여와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1. 4

조사 주관기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책임 : 윤 소 영

문의 : 02-2669-9871, 9856, 9875

회신 : nio290@kcti.re.kr, kcti01@hanmail.net, kcti02@hanmail.net

FAX: 02-2669-6991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응답자 확인 사항(작은도서관 관리자 및 운영자가 작성하도록 합니다.)

Q1. 성 명			Q2. 직 책	☐ 대표자 ☐ 운영자 ☐ 자원봉사자 *운영자이면서 대표자인 경우는 대표자로 확인			
Q3. 연 락 처			Q4. E-mail.				
Q5. 관리 및 운영 횟수	_____ (년, 개월)						
Q6. 본인의 관리 및 운영 시간	요 일 (복수응답)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시 간	_____ 시 _____ 분 ~ _____ 시 _____ 분					

I. 작은도서관 기본정보

Q7. 작은도서관 명칭			Q8. 개관한 년도	_____년 _____월 _____일
Q9. 지 역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7. 울산 8. 경기 A() 9. 강원 10. 충북 11. 충남 12. 전북 13. 전남 14. 경북 15. 경남 16. 제주			
Q10. 주 소	시·군·구	동·읍·면	상세 주소 (※번지까지 구체적으로 기재)	
Q11. 전화번호	() _____ - _____		Q12. 팩스번호	() _____ - _____
Q13. 홈페이지				

[작은도서관 특성]

Q14. 지역 공공도서관 의 분관 여부	☐ 예 (본관이 되는 공공도서관 명칭 : _____ 도서관) ☐ 아니요
Q15. 도서관 유형	☐ 공립 작은도서관 ☞ 운영주체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자체 직영 ☐ 민간 위탁(위탁기관명: _____) ☐ 사립 작은도서관 ☞ 사립 작은도서관은 해당되는 사항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 및 단체가 설립한 작은도서관 ☐ 새마을문고 ☐ 종교 시설 문고 ☐ 법인이 설립한 작은도서관 ☐ 아파트 작은도서관
Q16. 특수 목적 작은 도서관	☐ 다문화 ☐ 청소년 ☐ 장애인 ☐ 종교인 ☐ 기타() ☐ 해당사항없음 * 설립취지에 해당되는 이용자대상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 분관: 공공도서관에 의해 운영 및 관리되고 있는 작은도서관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시간]

Q17. 운영 월 (복수응답)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Q18. 운영 요일 (복수응답)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Q19. 운영시간	평일 _____ 시 _____ 분 ~ _____ 시 _____ 분 주말 _____ 시 _____ 분 ~ _____ 시 _____ 분

※ 다음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작은도서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자료기준입니다.

건물면적 33㎡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도서관자료 1,000권 이상
 (건물면적에 현관, 휴게실, 복도, 화장실,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함)

귀 작은도서관의 면적과 열람석 수, 도서관 자료의 총 권수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20. 건물면적	총 () ㎡	Q21. 열람석	총 () 석	Q22 도서관 자료	총 () 권
--------------	---------	----------	---------	------------	---------

★ 건물면적 : 건물에서 도서관 공간으로만 이용되는 면적의 합계(예. 1층 면적(30㎡) + 2층 면적(25㎡) = 연면적(55㎡))

★ 열람석 : 이용자들이 작은도서관 내에서 이용 가능한 좌석의 수

☞ 면적 33㎡ 미만이거나, 열람석 6석 미만, 도서관 자료 1,000권 미만인 작은도서관의 경우는 설문지 작성을 중단하시고, 지금까지 작성된 사항을 이메일 혹은 fax를 통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적기준에 부합되는 작은도서관의 경우는 다음 페이지의 설문문항을 계속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II.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

Q23. 귀 작은도서관의 **도서자료 및 연속간행물의 권(冊)수**는 어떻게 되십니까?

도서자료 (인쇄)	1) 지난 1년간(2010년) 증가한 장서의 수	() 권
	2) 현재 총 보유 장서의 수	() 권
연속간행물 (인쇄)	3) 지난 1년간(2010년) 증가한 연속간행물의 수	() 종
	4) 현재 총 보유 연속간행물의 수	() 종

Q24. 귀 작은도서관에는 인터넷 이용이 가능한 **컴퓨터**가 있습니까?

1. 있다 → Q25으로 갈 것
2. 없다 → Q26으로 갈 것

Q25. (컴퓨터가 있다면) **컴퓨터는 모두 몇 대** 있습니까?

1) 인터넷 가능 관리자용 컴퓨터	() 대	2) 인터넷 가능 이용자용 컴퓨터	() 대
-----------------------	-------	-----------------------	-------

【 작은도서관 인력현황 】

Q26. 귀 작은도서관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은 모두 몇 명이십니까? **귀하를 포함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직원	() 명	2) 자원봉사자	() 명
-------	-------	----------	-------

Q27. 귀 작은도서관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 중 사서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은 몇 명입니까?

1) 직원	() 명	2) 자원봉사자	() 명
-------	-------	----------	-------

Q28. 귀 작은도서관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 중 지난 한 해(2010년) 동안 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사서) 교육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1) 직원	() 명 () 시간	2) 자원봉사자	() 명 () 시간
-------	-----------------	----------	-----------------

【 작은도서관 예산현황 】

Q29. 귀 작은도서관의 **작년 한 해(2010년) 수입원**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복확인 가능)

1. 행정기관 지원 2. 회원 회비 및 이용료 3. 후원금 4. 자부담(운영자 자체부담) 5. 기타

Q30. 귀 작은도서관의 **작년 한 해(2010년) 예산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지출 내역	도서구입비	() 원
	인 건 비	() 원
	운 영 비 (시설관리비, 일반관리비 포함)	() 원
총 예산 지출 내역		() 원

★ 예산현황 : 도서관에서 집행한 예산의 결산액 기준임(예. 2010년 12월 31일 기준)

[작은도서관 이용자 관리]

Q31. 귀 작은도서관에서는 외부로 도서대출이 가능합니까?

1. 그렇다(외부대출 가능) → Q32로 갈 것
2. 그렇지 않다(외부대출 불가능) → Q35로 갈 것

Q32. 귀 작은도서관은 어떠한 방식으로 대출도서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1. 장부에 수기 입력 → Q34로 갈 것
2. 전용프로그램 사용 → Q33로 갈 것
3. 기타 (구체적으로 : _____) → Q34로 갈 것

★ 전용프로그램 : 도서관 내 도서관리를 위한 별도의 체계화된 프로그램(예. 4L(라이브텍), AIMS(코아정보시스템), KOLAS(국립중앙도서관), ODIS(인포테크), MAE(거일시스템), MAESTRO(오름정보), XMLAS(퓨처인포넷), SLIMA-ST(미르테크), SOLARS(아이네크), TG-VINTAGE-LAS(삼보정보), VINTAGE-LAS(오름정보), VOLCANO-i(라이브텍), OROM(오름정보), SA3000(SA&K), 엑셀 등)

Q33. 귀 작은도서관에서 사용하는 전용프로그램은 지역의 공공도서관과 연계(상호정보협력망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있습니까?

1.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 상호협력망 구축 :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간 상호정보협력망 구축은 정보시스템(전용프로그램) 연계를 통한 공동 대출/반납, 상호대차서비스 등이 정보시스템(전용프로그램)으로 이뤄지는 것을 말함

Q34. 귀 작은도서관의 연간 도서대출 권수는 얼마입니까? ()권

Q35. 귀 작은도서관의 이용자 수(방문자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1) 주중 1일 평균 이용자 수	명	2) 주말 1일 평균 이용자 수	명
3) 연간 총 이용자 수	명		

Q36. 귀 작은도서관에 등록된 총 이용자수(회원등록자 수)는 몇 명입니까? 총 () 명

[지자체 및 공공도서관의 지원 및 연계사항]

Q37. 귀 작은도서관은 이용자가 요구하는 자료가 없을 경우, 협약을 맺은 타 도서관에서 빌려주는 ‘상호대차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1.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Q38. 귀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에서 파견된 사서가 도서관리프로그램, 도서구입 및 정리, 독서프로그램 운영 지원, 업무담당자 및 이용자 교육 등을 실시해 주는 ‘순회사서’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1.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Q39. 귀 작은도서관은 지난 한 해(2010년) 지자체나 공공도서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1. 그렇다 → Q40으로 갈 것
2. 그렇지 않다 → Q41으로 갈 것

Q40. (지원을 받은 적이 있다면) **지난 한 해(2010년) 지원받은 내용**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1) 인 력	() 명
2) 예 산	() 원
3) 지원장서	() 권
4) 독서·문화프로그램	() 건
5) 기타(구체적으로)	

Q41. 귀 작은도서관에서는 **지난 한 해(2010년) 동안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실시한 적이 있었습니까?**

1. 그렇다 → Q42로 갈 것
2. 그렇지 않다 → Q43로 갈 것

Q42. 2010년 동안 진행되었던 **독서·문화프로그램의 수(실시횟수 포함) 및 참가자 수**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프로그램 수	실시횟수	참가자 수
독서·문화프로그램			

★ 프로그램 수 : 일일, 주간, 월간, 계간 등 동일한 독서·문화프로그램(강좌)은 연간 1개로 본다.

★ 실시횟수, 참가자 수 : 매회 실시횟수, 참가자 수를 누적으로 기재한다.

Q43. **작은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유롭게 귀하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귀중한 시간 응답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부록 2.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수요조사 설문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및 주민수요조사
(작은도서관 운영자용)

Study ID	_____	Resp. No.	_____
Interviewer No.	_____	Interview Length	_____
No. Of Queries	_____	Reference No.	_____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케팅·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닐슨컴퍼니 코리아의 면접원 _____입니다.
저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의뢰를 받아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내 작은도서관 운영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대답하신 내용은 향후 보다 나은 정책을 시행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되며, 조사를 위한 통계적인 용도 이외에는 전혀 사용되지 않고 반드시 비밀이 보장됩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주셔서 본 설문에 응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담당연구원 : 송 민 아

담당감독원 : 추 아 름

☎ 전 화 : 02-2122-7314

오늘 내가 진행하고 기록한 면접은 진실하고 정확하며 조사 방법과 구체적인 지시에 따랐으며, ESOMAR규범을 준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면접원 이름 : _____ 코드 : _____ 전화 : _____ 사인 : _____

나는 전화와 면접을 통해 위의 응답자들로부터 위의 정보를 입수하였으며, 지시받은 대로 검증 질문하였습니다.
아래 질문지에 기록된 날짜에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질문지상에 있는 면접 날짜로부터 () 일 지난 후에 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검증의 결과는 응답자들의 응답내용을 사실 그대로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 감독원 : _____ ☐ 코딩원 : _____ ☐ 검증일시 : _____ ☐ 검증원 : _____

I. 공동주택단지 정보

Q1. 공동주택단지 방문일시	1차 방문	2011년 월 일 (오전/오후)	시: 분부터 ()분간
	2차 방문	2011년 월 일 (오전/오후)	시: 분부터 ()분간
	3차 방문	2011년 월 일 (오전/오후)	시: 분부터 ()분간

[조사대상 아파트 정보 기입] ★ 면접원 : 리스트를 보고 조사대상 아파트 정보 기입

Q2. 공동주택단지 번호		Q3. 조사대상 아파트명	
Q4. 지 역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7. 울산 8. 경기 9. 강원 10. 충북 11. 충남 12. 전북 13. 전남 14. 경북 15. 경남 16. 제주		
Q5. 주 소	시·군·구 동·읍·면 상세 주소 (※번지까지 구체적으로 기재)		
Q6. 세대수	1. 300~500세대 미만 2. 500~1,000세대 미만 3. 1,000~2,000세대 미만 4. 2,000세대 이상		

[작은도서관 설치(공간)여부 및 운영 여부 확인]

★ 면접원 :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작은도서관에 대해 응답할 수 있는 직원과 접촉하여 확인. 필요시 공문 제시.
만약 작은도서관에 대해 응답할 수 있는 관리사무소 직원이 전혀 없다면, 주민대표와 접촉하여 응답받을 것.
주민대표와 접촉하여 응답받을 시 아래 “Q8. 응답자 직위”는 “3. 기타(주민대표)”로 기입함.

Q7. 응답자 이름		Q8. 응답자 직위	1. 소장 2. 직원 3. 기타()
Q9. 응답자 연락처	() - -		

Q10. 아파트 단지 내에 **작은도서관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 작은도서관이 설치되어 있음 (작은도서관용 공간 있음)
- 작은도서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작은도서관용 공간 없음)

→ Q14으로 갈 것

Q11. (작은도서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애초부터 작은도서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음 (작은도서관용 공간이 없었음)
- 애초에 작은도서관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용도변경이 되어 현재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
- 기타 (구체적으로 :)
- 잘 모름

→ 설문종료

→ 설문종료

→ 설문종료

Q12.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면) **현재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Q13.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응답 후 설문 종료

Q14. **현재 작은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 그렇다 (현재 작은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음)
- 아니다 (현재 작은도서관이 전혀 운영되고 있지 않음)

→ Q16으로 갈 것

Q15. (운영되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운영비가 없어서
- 주민들 이용도가 떨어져서
- 기타(구체적으로 :)
- 잘 모름

▶ 응답 후 Q23~34까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응답 받고, Q35에 대한 체크 후 설문 종료

Q16. (운영되고 있다면) **현재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 있다 → ★ 면접원 : 별도로 운영자(관리자)가 있거나, 주민대표가 운영하거나, 주민자치회에서 운영조직을 구성하거나, 자원봉사자가 있는 경우 등
- 없다 → ★ 면접원 : Q23부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응답 받은 후, 직접 작은도서관을 방문하여 주민들 이용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마지막 “면접원 평가란” 기재

II. 작은도서관 기본 현황

Q17. 작은도서관 방문일시	1차 방문	2011년 월 일 (오전/오후)	시: 분부터 ()분간
	2차 방문	2011년 월 일 (오전/오후)	시: 분부터 ()분간
	3차 방문	2011년 월 일 (오전/오후)	시: 분부터 ()분간

★ 면접원 : 운영시간이 정해져 있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여러 시간대로 최대 3회까지 방문할 것

[작은도서관 운영자 정보]

★ 면접원 : 작은도서관 “전담 운영(관리)자”가 있을 경우 반드시 전담 운영(관리)자로부터 응답받을 것

Q18. 이 름		Q19. 이메일	_____ @ _____
Q20. 연락처	() _____ - _____	Q21. 사서자격증유무	1. 있다 2. 없다
Q22. 주 소속	1. 작은도서관 전담 운영(관리)자 3. 주민자치회 구성 조직 2. 주민대표 4. 자원봉사자 5. 기타 ()		

[작은도서관 기본 정보]

Q23. 작은도서관 명칭	Q24. 개관 년도 _____년 _____월 _____일		
Q25. 지 역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7. 울산 8. 경기 9. 강원 10. 충북 11. 충남 12. 전북 13. 전남 14. 경북 15. 경남 16. 제주		
Q26. 주 소	시·군·구	동·읍·면	상세 주소 (※번지까지 구체적으로 기재)
Q27. 전화번호	() _____ - _____	Q28. 팩스번호	() _____ - _____
Q29. 홈페이지			
Q30. 지자체 등록 여부	1. 등록되어 있음 () 년 () 월 () 일 → Q32으로 갈 것 2. 등록되어 있지 않음 → Q31으로 갈 것		
Q31. 지자체 미등록 이유	1. 지자체에 등록해야하는 건지 몰라서 4. 등록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2. 지자체 어느 부서로 연락해야 하는지 몰라서 5. 기타() 3. 지자체에 연락해봤는데, 등록절차가 없는 것으로 확인 되어서		

[작은도서관 전반적 시설 현황]

Q32. 전용면적	총 () m ²	Q33. 열람석	총 () 석	Q34. 도서관 자료	총 () 권
-----------	----------------------	----------	---------	-------------	---------

★ 전용면적 : 건물에서 도서관 공간으로만 이용되는 면적의 합계(예. 1층 면적(30m²) + 2층 면적(25m²) = 연면적(55m²))

★ 열람석 : 이용자들이 작은 도서관 내에서 이용가능한 의자의 수

면접원 응답용

Q35. 작은도서관의 전반적 시설 현황을 살펴보았을 때, 도서관 법 시행령 3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부합하는 곳입니까?

★ 도서관 법 시행령 3조 : 면적 33m²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도서관 자료 1000권 이상, 모든 계층 이용 자료 구비 (면적에서 현관, 휴게실, 복도, 화장실,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함)

1. 세 가지 기준에 모두 부합한다
2. 세 가지 기준 중 두 가지만 부합한다
3. 세 가지 기준 중 한 가지만 부합한다
4. 세 가지 기준 중에서 하나라도 부합하지 않는다
5. 파악 불가능 (작은도서관의 전반적 시설 현황 파악(Q32~34)이 안 될 경우)

Ⅲ.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

※ 귀 작은도서관이 운영되는 월 / 요일 / 시간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Q36. 운영 월 (복수응답)	1. 1월 2. 2월 3. 3월 4. 4월 5. 5월 6. 6월 7. 7월 8. 8월 9. 9월 10. 10월 11. 11월 12. 12월
Q37. 운영 요일 (복수응답)	1. 월 2. 화 3. 수 4. 목 5. 금 6. 토 7. 일
Q38. 운영 시간	평 일 주 말 _____ 시 _____ 분 ~ _____ 시 _____ 분 _____ 시 _____ 분 ~ _____ 시 _____ 분

Q39. 귀 작은도서관의 장서의 구성과 권수는 어떻게 되십니까?

도서자료 (인쇄)	1) 지난 1년간(2010년) 증가한 장서의 수	권
	2) 현재 총 보유 장서의 수	권
연속간행물 (인쇄)	3) 지난 1년간(2010년) 증가한 장서의 수	종
	4) 현재 총 보유 장서의 수	종

Q40. 귀 작은도서관에는 인터넷 이용이 가능한 컴퓨터가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 Q42으로 갈 것

Q41. (컴퓨터가 있다면) 컴퓨터는 모두 몇 대 있습니까?

1) 인터넷 가능 관리자용 컴퓨터	대	2) 인터넷 가능 이용자용 컴퓨터	대
-----------------------	---	-----------------------	---

Q42. 귀 작은도서관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과 사서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모두 몇 명입니까? 귀하께서도 작은도서관에 종사하고 계실 경우 귀하를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사자수	사서자격증이 있는 종사자수
1) 직원	명	명
2) 자원봉사자	명	명

Q43. 귀 작은도서관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 중 지난 한 해(2010년) 동안 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련된(사서) 교육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련된(사서) 교육 이수자 수	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련된(사서) 교육 이수 시간
1) 직원 중에서	명	시간
2) 자원봉사자 중에서	명	시간

Q44. 귀 작은도서관의 작년 한 해(2010년) 수입원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수응답)

- | | |
|----------------|----------------------|
| 1. 행정기관 지원 | 4. 기부금(운영자 자체부담) |
| 2. 회원 회비 및 이용료 | 5.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
| 3. 후원금 | |

Q45. 귀 작은도서관의 작년 한 해(2010년) 예산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지출 내역	도서구입비		원
	인 건 비		원
	운 영 비 (시설관리비, 일반관리비 포함)		원
총 예산 지출 내역			원

★ 예산현황 : 도서관에서 집행한 예산의 결산액 기준임(예. 2010년 12월 31일 기준)

Q46. 귀 작은도서관에서는 외부로 도서대출이 가능합니까?

- 그렇다 (외부대출 가능)
- 그렇지 않다 (외부대출 불가능) → Q50으로 갈 것

Q47. (가능하다면) 귀 작은도서관은 어떠한 방식으로 대출도서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 전용프로그램 사용
- 장부에 수기 입력 → Q49로 갈 것
- 기타 (구체적으로 :)

★ 전용프로그램 : 도서관 내 도서관리를 위한 별도의 체계화된 프로그램(예. 4L(라이브텍), AIMS(코이정보시스템), KOLAS(국립중앙도서관), ODIS(인포테크), MAE(거일시스템), MAESTRO(오름정보), XMLAS(퓨처인포넷), SLIMA-ST(미르테크), SOLARS(아이네크), TG-VINTAGE-LAS(삼보정보), VINTAGE-LAS(오름정보), VOLCANO-(라이브텍), OROM(오름정보), SA3000(SA&K), 엑셀 등)

Q48. (전용프로그램을 사용한다면) 귀 작은도서관에서 사용하는 전용프로그램은 지역의 공공도서관과 연계(상호정보협력망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있습니까?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상호정보협력망 구축 :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 간 상호정보협력망 구축은 정보시스템(전용프로그램) 연계를 통한 공동 대출/반납, 상호대차서비스 등이 정보시스템(전용프로그램)으로 이뤄지는 것을 말함

Q49. 귀 작은도서관의 연간 도서대출 권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권

Q50. 귀 작은도서관의 이용자 수(방문자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1) 주중 1일 평균 이용자수	2) 주말 1일 평균 이용자수	3) 연간 총 이용자 수
명	명	명

Q51. 귀 작은도서관에 등록된 총 이용자수(회원등록자 수)는 몇 명입니까? 명

Q52. 귀 작은도서관은 이용자가 요구하는 자료가 작은도서관에 없을 경우 협약을 맺은 타 도서관에서 빌려주는 '상호대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Q53. 귀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에서 파견된 사서가 도서관리 프로그램, 도서구입 및 정리, 독서프로그램 운영 지원, 업무담당자 및 이용자 교육 등을 실시해 주는 '순회사서'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Q54. 귀 작은도서관은 지난 한 해(2010년) **지자체나 공공도서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1.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 Q56으로 갈 것

Q55. (지원을 받은 적이 있다면) 지난 한 해(2010년) **지원받은 내용**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1) 인 력	명
2) 예 산	원
3) 지원장서	권
4) 문화프로그램	건
5) 기타(구체적으로)	

Q56. 귀 작은도서관에서는 지난 한 해(2010년) 동안 **문화프로그램 혹은 도서관 및 독서 관련 프로그램을 실시한 적이 있었습니까?**

1.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 Q58으로 갈 것

Q57. 2010년 동안 진행되었던 **독서·문화프로그램의 수(실시횟수 포함) 및 참가자 수**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프로그램 수	2) 실시횟수	3) 참가자 수
건	회	명

★ 프로그램 수 : 일일, 주간, 월간, 계간 등 동일한 독서·문화프로그램(강좌)은 연간 1개로 본다.

★ 실시횟수, 참가자 수 : 매회 실시횟수, 참가자 수를 누적으로 기재한다.

Q58. 작은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유롭게 귀하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귀중한 시간 응답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면접원 평가란

Q59. 이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은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 활성화된 정도 : 주민들의 이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나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은 정도

1. 매우 활성화되어 있다
2. 활성화되어 있는 편이다
3. 보통이다
4.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편이다
5. 전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다

Q60. 이 공동주택단지 내 주민들의 **작은도서관 이용 및 호응도**는 어떠한 것 같습니다? 자유롭게 의견을 기술해 주세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및 주민수요조사 (주민대표용)

Study ID	_____	Resp. No.	_____
Interviewer No.	_____	Interview Length	_____
No. Of Queries	_____	Reference No.	_____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케팅·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닐슨컴퍼니 코리아의 면접원 _____입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는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및 운영활성화 방안**」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6년 1월 9일 시행된 “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 5항”에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에 작은도서관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작은도서관 이용에 관련된 만족도 및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은 귀하의 동의 없이 절대 공개되지 않으며 순수한 통계적 목적으로만 이용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참여 해주신다면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참여와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담당연구원 : 송 민 아
 담당감독원 : 추 아 름
 ☎ 전 화 : 02-2122-7314

오늘 내가 진행하고 기록한 면접은 진실하고 정확하며 조사 방법과 구체적인 지시에 따랐으며, ESOMAR규범을 준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면접원 이름 : _____ 코드 : _____ 전화 : _____ 사인 : _____

나는 전화와 면접을 통해 위의 응답자들로부터 위의 정보를 입수하였으며, 지시받은 대로 검증 질문하였습니다.

아래 질문지에 기록된 날짜에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질문지상에 있는 면접 날짜로부터 ()일 지난 후에 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검증의 결과는 응답자들의 응답내용을 사실 그대로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 감독원 : ☐ 코딩원 : ☐ 검증일시 : ☐ 검증원:

면접일시	1차	2011년 월 일 (오전/오후) 시: 분부터 ()분간
	2차	2011년 월 일 (오전/오후) 시: 분부터 ()분간
	3차	2011년 월 일 (오전/오후) 시: 분부터 ()분간

I. 응답자 정보

Q1. 공동주택단지 번호 ★ 면접원 : 리스트 상에 부여된 공동주택단지 번호 기입

Q2. 조사대상 아파트명			
Q3. 지 역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7. 울산 8. 경기 9. 강원 10. 충북 11. 충남 12. 전북 13. 전남 14. 경북 15. 경남 16. 제주		
Q4. 주 소	시·군·구	동·읍·면	상세 주소 (※번지까지 구체적으로 기재)

Q5. 이 름		Q6. 연락처	() _____
Q7. 입주시기	년 월	★ 면접원 : 입주한 지 1년 이상된 주민만 응답.	
Q8. 연 령	만 세	★ 면접원 : 보통 세는 나이에서 생일이 지났으면 한 살을, 지나지 않았으면 두 살을 뺌. 15세 이상만 응답.	

Ⅱ. 단지 내 설치된 공공시설에 대한 이용 현황

Q9. 귀하께서 거주하고 계시는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된 공공시설 중에서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복리시설**은 무엇입니까?
아울러 해당 공공시설을 이용하시면서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다음 **각각의 복리시설별로** 응답해 주십시오.

★ 면접원 : 이용경험이 '1. 있다'고 응답한 경우만 만족도 응답

공공주택 내 설치가능 공공시설	이용경험	만족도				
		매우 만족	만족한 편	보통	불만족한 편	매우 불만족
1) 어린이 놀이터(실외/실내),	1. 있다 → 2. 없다	1	2	3	4	5
2) 경로당	1. 있다 → 2. 없다	1	2	3	4	5
3) 보육시설(어린이집)	1. 있다 → 2. 없다	1	2	3	4	5
4) 작은도서관(문고)	1. 있다 → 2. 없다	1	2	3	4	5
5) 기타 ()	1. 있다 → 2. 없다	1	2	3	4	5

Q10. 귀하께서 단지 내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공공시설 중, 지난 1년간(2010년) 가장 많이 이용한 공공시설은 무엇입니까? 가장 많이 이용한 순서대로 2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1순위

2순위

Q11.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위의 공공주택 내 설치가능 공공시설 중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공공시설은 무엇입니까? 필요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2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1순위

2순위

Ⅲ. 단지 내 작은도서관 이용 현황

★ 면접원

- 위 Q9의 "4) 작은도서관(문고)" 항목에서 이용경험이 "1. 있다"고 응답한 경우 → Q18으로 갈 것
- 위 Q9의 "4) 작은도서관(문고)" 항목에서 이용경험이 "2. 없다"고 응답한 경우 → Q12으로 갈 것

[작은도서관 비이용자]

Q12. 귀하께서 작은도서관을 이용해 본 경험이 없으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아파트 내 시설이용에 관심이 없다
- 도서관에 관심이 없다
- 관심은 있었지만, 홍보가 되지 않아서 모르고 있었다
- 이용하고 싶었지만 작은도서관이 운영되지 않을 때가 많았다
- 단지 내 작은도서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 기타(구체적으로 :)

Q13. 귀하께서는 향후 작은도서관을 이용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이용할 의향이 있다 → Q14으로 갈 것
- 이용할 의향이 없다 → Q16으로 갈 것

Q14. (이용할 의향이 있다면) **이용하고 싶은 요일과 시간대는 언제입니까? 평일과 주말 각각 응답해 주세요.**

구 분	요 일 (복수응답)	시간대
1) 평일	1. 월 2. 화 3. 수 4. 목 5. 금	1. 9:00 이전 2. 9:00~12:00 3. 12:00~18:00 4. 18:00 이후
2) 주말	6. 토 7. 일	1. 9:00 이전 2. 9:00~12:00 3. 12:00~18:00 4. 18:00 이후

Q15. (이용할 의향이 있다면) 귀하께서 앞으로 **작은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사항 모두 말씀해 주세요. (복수응답)

1. 책을 빌리기 위해서 이용할 것이다
2. 학습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것이다
3. 도서를 읽는 공간으로 활용할 것이다
4. 자료 검색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할 것이다
5. 다른 지역 주민들과 친해지기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것이다
6.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Q16. 귀하께서는 작은도서관이 공동주택 단지 내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필요함
2. 필요한 편
3. 보통
4. 필요하지 않은 편 → Q27으로 갈 것
5. 전혀 필요하지 않음

Q17. (작은도서관이 필요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 공공도서관까지 가서 빌리려면 불편하지만, 가까워서 책을 빌려볼 수 있기 때문이다
2. 도서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집보다 조용히 책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4. 아이들이 가까워서 도서관을 경험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5.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6.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 **응답 후 Q27으로 갈 것**

[작은도서관 이용자]

Q18. 귀하께서는 **작은도서관을 이용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사항 **모두** 말씀해 주세요. (복수응답)

1. 책을 빌리기 위해서 이용하고 있다
2. 학습하는 공간으로 활용한다
3. 도서를 읽는 공간으로 활용한다
4. 작은도서관에서 운영중인 “문화프로그램”(이용자들을 위한 독서토론, 어린이캠프, 문화강좌, 가족단위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러 온다
5. 정보 검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온다
6. 공공도서관의 “상호대차서비스”(공공도서관의 책을 작은도서관에서 빌려보고 반납할 수 있는 시스템이며, 공공도서관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을 해야 작은도서관에서 그 책을 빌려 볼 수 있음)를 이용하기 위해 온다
7.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Q19. 귀하께서는 **얼마나 자주** 작은도서관을 방문하십니까?

1. 거의 매일
2. 1주일에 한 두 번
3. 보름(15일)에 한 번 정도
4. 한 달에 한 번 정도

Q20. 귀하께서 작은도서관을 한 번 방문할 때 **이용하는 시간**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1. 1시간 이하
2. 1~2시간 이용
3. 2~3시간 이용
4. 3~4시간 이용
5. 4시간 이상

Q21. 귀하께서는 주로 어느 시간대에 작은도서관을 이용하십니까?

1. 9:00 이전 2. 9:00~12:00 3. 12:00~18:00 4. 18:00~21:00 5. 21:00 이후

Q22. 귀하께서는 작은도서관 운영 및 환경과 관련된 다음 각각의 항목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

항 목	만 족 도					
	매우 만족	만족하는 편	보통	만족하지 않는 편	매우 불만족	해당 없음
1) 개관 / 폐관 시간 (이용가능 시간)	1	2	3	4	5	
2) 장서구성 (장서자료의 질, 최신성)	1	2	3	4	5	
3) 장서량	1	2	3	4	5	
4) 열람좌석 수 및 공간의 크기	1	2	3	4	5	
5) 도서관 안내 / 홍보	1	2	3	4	5	
6) 도서관 내 문화프로그램 (*경험 유무 확인)	1	2	3	4	5	6
7) 작은도서관 운영자의 전문성	1	2	3	4	5	

Q23. 귀하께서는 다음 중 작은도서관 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1순위 2순위

1. 개관 / 폐관 시간(이용가능 시간) 5. 도서관 안내 / 홍보
 2. 장서구성 (장서자료의 질, 최신성) 6. 도서관 내 문화프로그램
 3. 장서량 7. 작은도서관 운영자의 전문성
 4. 열람좌석 수 및 공간의 크기 8.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Q24. 귀하께서는 작은도서관이 공동주택 단지 내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필요함
 2. 필요한 편
 3. 보통
 4. 필요하지 않은 편 → Q26으로 갈 것
 5. 전혀 필요하지 않음

Q25. (작은도서관이 필요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 공공도서관까지 가서 빌리려면 불편하지만, 가까워서 책을 빌려볼 수 있기 때문이다
 2. 도서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집보다 조용히 책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4. 아이들이 가까워서 도서관을 경험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5.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6. 공동주택 단지 내의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들 간의 커뮤니티 공간으로써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7.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Q26.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작은도서관 이용에 있어서 불편사항이나, 이용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자유롭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VI. 주민대표 응답 문항

Q27. 귀하께서 거주하고 계신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회**는 무엇입니까?

1. 입주자 대표회의 2. 부녀회의 3.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Q28. 주민자치회에서 **귀하가 맡고 계신 직책**은 무엇입니까?

1. 회장 2. 부회장 3.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Q29. 귀하께서 거주하고 계신 **공동주택 단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복리시설**은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사항 **모두** 말씀해 주세요.

(복수응답) ★ 면접원 : Q9에서 이용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시설인 경우 반드시 체크되어야 함

1. 어린이 놀이터(실내/실외)
2. 경로당
3. 보육시설(어린이집)
4. 작은도서관(문고)
5.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Q30. 앞서 귀하께서 응답하신 공동주택 단지 내 설치되어 있는 공공시설 중에서 **가장 활성화된 시설**은 무엇입니까? ☐

★ 활성화된 시설 : 실제 운영되고 있는 시설 중에서 주민들의 이용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나, 주민대표의 입장에서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

★ 면접원 : Q29에서 설치되어 있다고 응답한 보기 항목 범위 내에서 응답을 받아 해당 번호를 입력할 것

Q31. 앞서 귀하께서 응답하신 공동주택 단지 내 설치되어 있는 공공시설 중에서 운영의 **활성화가 필요한 시설**은 무엇입니까? ☐

★ 면접원 : Q29에서 설치되어 있다고 응답한 보기 항목 범위 내에서 응답을 받아 해당 번호를 입력할 것

Q32. (Q29에서 “4. 작은도서관(문고)”에 체크된 경우) 단지 내 작은도서관 운영은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습니까?**

1. 매우 활성화되어 있음
2. 활성화되어 있는 편
3. 보통
4. 활성화되어 있지 않는 편 —→ Q34으로 갈 것
5. 전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음

Q33. (활성화되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운영주체에 의한 관리
2. 자체적인 문화프로그램
3. 지자체 및 공공도서관의 협조
4. 주민들의 독서에 대한 높은 관심
5.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Q34.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작은도서관 운영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1. 이용자의 관심 부족
2. 도서관으로서의 시설 부족(의자, 책상, 컴퓨터 등)
3. 도서량의 부족
4. 도서 관련 프로그램 부족
5. 공공도서관과 연계서비스 부족
6.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V. 자료분류용 질문

DQ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1. 남 2. 여

DQ2. 귀하의 직업은 다음 중 어디에 속하십니까?

1. 농업/임업/수산업/축산업/원예업
2. 자영업(종업원 9인 이하의 소규모 업소주인 및 가족 종사자, 약국, 개인택시운전자)
3. 블루칼라(판매/서비스직, 기능/숙련공, 일반작업직)
4. 화이트칼라(사무/기술직, 경영/관리직, 전문/자유직)
5. 전업주부
6. 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 포함)
7. 무직
8. 기타

DQ3. 귀하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1. 중재/중졸 이하 2. 고재/고졸 3. 대학재학/대졸 4. 대학원 재학 이상

DQ4. 귀하께서는 결혼을 하셨습니까?

1. 기혼 2. 미혼

DQ5. 귀하를 포함하여 귀 닥의 가족원은 총 몇 명입니까?

공

DQ6. 귀 닥에는 18세 미만 자녀(손자녀 포함)가 함께 살고 있습니까?

1. 그렇다 → 가장 어린 자녀(손자녀) 나이 : 만 세
2. 아니다

DQ7. 귀 닥의 월평균 가게소득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입니까? 가족 구성원의 수입을 모두 합하여 다음 보기 중에서 선택해 주십시오.

- | | | |
|-----------------|-----------------|--------------------|
| 1. 100만원 미만 | 5. 400~500만원 미만 | 9. 800~900만원 미만 |
| 2. 100~200만원 미만 | 6. 500~600만원 미만 | 10. 900~1,000만원 미만 |
| 3. 200~300만원 미만 | 7. 600~700만원 미만 | 11. 1,000만원 이상 |
| 4. 300~400만원 미만 | 8. 700~800만원 미만 | |

귀중한 시간 응답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부록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 비교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실제 작은도서관 운영현황 비교표

지자체	작은도서관 조례		2011년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결과		
	항목	조례내용	항목	공립	사립
서울 강남구	면적		면적	83.8	
	열람석		열람석	19.7	
	장서수		장서수	11,863.5	
	연증가		연증가		
	인력		인력	직원	
				자원봉사	
				직원)사서	
				봉사)사서	
	운영시간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월~토 개관	운영 시간	운영일수	
				평일	
				주말	
서울 양천구	면적		면적	230.5	110.4
	열람석	15석 이상	열람석	23.7	30.4
	장서수	1,000권 이상	장서수	13360	6332.1
	연증가		연증가		
	인력	-사서자격증 소지자로 운영자 임명 -지역주민 중심의 자원봉사단 조직	인력	직원	1.1
				자원봉사	4.6
				직원)사서	0.4
				봉사)사서	1.2
	운영시간	주5일 이상	운영 시간	운영일수	5.0
				평일	6.5
				주말	3.5
부산 중구	면적		면적		170.9
	열람석		열람석		27
	장서수		장서수		8164.5
	연증가		연증가		
	인력		인력	직원	2.5
				자원봉사	2.0
				직원)사서	0.5
				봉사)사서	0
	운영시간	매일 09~22시	운영 시간	운영일수	5
				평일	8.5
				주말	0
광주 서구	면적	33m ² 이상	면적	164	105.2
	열람석	6석 이상	열람석	45.0	35.8
	장서수	1,000권 이상	장서수	5955.5	6,079.3
	연증가		연증가		
	인력	지역주민 중심의 자원봉사단 조직 및 적극 활용	인력	직원	2.1
				자원봉사	11.2
				직원)사서	0.4
				봉사)사서	0.8
	운영시간	주5일, 1일8시간 이상	운영 시간	운영일수	5.5
				평일	8.8
				주말	7.2

지자체	작은도서관 조례		2011년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결과			
	항목	조례내용	항목		공립	사립
광주 남구	면적	33㎡ 이상	면적			85.1
	열람석	6석 이상	열람석			23.6
	장서수	1,000권 이상	장서수			2,335.9
	연증가		연증가			
	인력	지역주민 중심의 자원봉사단 조직 및 적극 활용	인력	직원		1.1
				자원봉사		1.7
				직원)사서		0.3
				봉사)사서		0.3
	운영시간	주5일, 1일8시간 이상	운영 시간	운영일수		5.6
평일				8.1		
주말				5.4		
광주 북구	면적	82㎡ 이상	면적		88.4	76.3
	열람석	15석 이상	열람석		22.1	22.6
	장서수	3,000권 이상	장서수		6,258.3	2,385.8
	연증가	10% 이상	연증가			
	인력	지역주민 중심의 자원봉사단 조직 및 적극 활용	인력	직원	1	1.3
				자원봉사	13.1	2.1
				직원)사서	0.3	0.2
				봉사)사서	0	0.2
	운영시간	·주5일 이상 ·토,일 중 1일 개관	운영 시간	운영일수	5.1	6.8
평일				9.6	9.5	
주말				6.5	6.2	
광주 광산구	면적	67㎡ 이상	면적		166.0	100.0
	열람석	15석 이상	열람석		73.0	30.6
	장서수	2,000권 이상	장서수		5,044.0	3,164.4
	연증가		연증가			
	인력	지역주민 중심의 자원봉사단 조직 및 적극 활용	인력	직원	0	1.1
				자원봉사	1	2.2
				직원)사서	0	0.0
				봉사)사서	0	0.3
	운영시간	주5일 이상	운영 시간	운영일수	5.5	5.6
평일				10.5	7.4	
주말				6	7.1	
대전 유성구	면적	33㎡ 이상	면적		64	118.46
	열람석	6석 이상	열람석		14.8	27.1
	장서수	1,000권 이상	장서수		4454	5986.51
	연증가		연증가			
	인력	·자격요건을 갖춘 운영자 ·지역주민 중심의 자원봉사단 조직	인력	직원	0.8	0.9
				자원봉사	13	10.7
				직원)사서	0	0.1
				봉사)사서	0	1.9
	운영시간	·주5일 이상 ·오전10~오후5시 의무 개관	운영 시간	운영일수	5	4.5
평일				7.2	5.3	
주말				0	3	

지자체	작은도서관 조례		2011년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결과			
	항목	조례내용	항목		공립	사립
울산 중구	면적	67㎡ 이상	면적		58.3	107.3
	열람석	15석 이상	열람석		15	31
	장서수	1,000권 이상	장서수		2770	7763
	연증가		연증가			
	인력	- 자원봉사자 포함 5인 이상 10인 이하	인력	직원	0.5	1.5
				자원봉사	13	17.5
				직원)사서	0	0
				봉사)사서	0	0
운영시간		운영 시간	운영일수	5	5.5	
			평일	8.25	9	
			주말	0	2	
울산 북구	면적	33㎡ 이상	면적			78.5
	열람석	6석 이상	열람석			24.7
	장서수	1,000권 이상	장서수			3,733.9
	연증가		연증가			
	인력	지역주민 중심의 자원봉사단 조직 및 적극 활용	인력	직원		0.5
				자원봉사		23.8
				직원)사서		0
				봉사)사서		0
	운영시간		운영 시간	운영일수		4.8
				평일		4.1
주말				1.0		
경기 파주시	면적	70㎡ 이상	면적		120	121.2
	열람석	20석 이상	열람석		37.7	33.5
	장서수	2,000권 이상	장서수		4345.2	6249.4
	연증가	10% 이상	연증가			
	인력		인력	직원	1.2	3.2
				자원봉사	14	8.4
				직원)사서	0	0.3
				봉사)사서	0	0.1
	운영시간		운영 시간	운영일수	5.7	5.5
				평일	8	5.8
주말				6.5	3.4	
경기 광명시	면적	67㎡ 이상	면적		230.4	104.9
	열람석	15석 이상	열람석		42.5	18.8
	장서수	1,000권 이상	장서수		29271	4,456.4
	연증가		연증가			
	인력	자원봉사자 포함 6명 이상	인력	직원	1	0.6
				자원봉사	2	7.0
				직원)사서	1	0.2
				봉사)사서	2	3.3
	운영시간	-주5일 이상 -토,일 중 1일 개관	운영 시간	운영일수	6.5	4.1
평일				9	5.7	
주말				8	1.6	

지자체	작은도서관 조례		2011년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결과			
	항목	조례내용	항목		공립	사립
경기 안양시	면적	67㎡ 이상	면적			125.2
	열람석	15석 이상	열람석			29.1
	장서수	1,000권 이상	장서수			5835.2
	연증가		연증가			
	인력	자원봉사자 포함 8명 이상	인력	직원		0.7
				자원봉사		6.6
				직원)사서		0.2
				봉사)사서		0.3
	운영시간	-주5일 이상 -1일5시간 이상	운영 시간	운영일수		5.6
평일				6.3		
주말				4.1		
경기 성남시	면적	67㎡ 이상	면적		181.4	137.3
	열람석	15석 이상	열람석		41.2	30.9
	장서수	1,000권 이상	장서수		11586.4	6074.3
	연증가		연증가			
	인력	자원봉사자 포함 8명 이상	인력	직원	1.7	1.1
				자원봉사	5.6	10
				직원)사서	1.1	0.19
				봉사)사서	0.33	1.76
	운영시간	-주5일 이상 -1일5시간 이상	운영 시간	운영일수	5.7	5.6
평일				9.2	6.7	
주말				3.5	3.1	
경기 하남시	면적	80㎡ 이상	면적			53.7
	열람석	10석 이상	열람석			14.7
	장서수	2,000권 이상	장서수			3233.5
	연증가	10% 이상	연증가			
	인력	-관장1인 -사서업무와 행사 및 교육 담당 직원 -자원봉사자 모집·운영	인력	직원		0.3
				자원봉사		3.6
				직원)사서		0
				봉사)사서		5
	운영시간	토,일 중 1일 포함 주5일 이상 개관	운영 시간	운영일수		5.2
평일				5.8		
주말				2.2		
강원 춘천시	면적	33㎡ 이상	면적		43	99
	열람석	15석 이상	열람석		8	21.5
	장서수	1,000권 이상	장서수		6802	4074.8
	연증가		연증가			
	인력	자원봉사자 포함 4명 이상	인력	직원	0	0.5
				자원봉사	1	8.5
				직원)사서	0	0
				봉사)사서	0	0.6
	운영시간	-주5일 이상 -1일 4시간 이상	운영 시간	운영일수	5	5.7
평일				9	7.2	
주말				0	2.7	

지자체	작은도서관 조례		2011년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결과			
	항목	조례내용	항목		공립	사립
강원 원주시	면적	33 m^2 이상	면적			85.2
	열람석	6석 이상	열람석			27.5
	장서수	1,000권 이상	장서수			2,747.0
	연증가		연증가			
	인력	운영자1인과 자원봉사자 포함, 읍·면지역 3인 이상, 동지역 5인 이상	인력	직원		1.8
				자원봉사		3.3
				직원)사서		0.1
				봉사)사서		0.3
	운영시간	·주5일 이상 ·오후1~오후5시 의무 개관	운영 시간	운영일수		5.5
				평일		7.0
주말				7.2		
충남 천안시	면적	49.5 m^2 이상	면적		122.3	109.9
	열람석	10석 이상	열람석		21.7	26.6
	장서수	1,000권 이상	장서수		7493.08	3547.7
	연증가		연증가			
	인력	운영자1인과 자원봉사자 포함, 읍·면지역 3인 이상, 동지역 5인 이상	인력	직원	2	1.6
				자원봉사	2.7	3.8
				직원)사서	2	0.07
				봉사)사서	0.08	0.1
	운영시간	·주5일 이상 ·1일4시간 이상	운영 시간	운영일수	5.9	5
				평일	9	6.1
주말				6.8	3.6	
충남 연기군	면적	50 m^2 이상	면적		204.4	61.6
	열람석		열람석		19	14.1
	장서수		장서수		6996	3255.7
	연증가		연증가			
	인력		인력	직원	1	0.4
				자원봉사	0	6
				직원)사서	0	0.1
				봉사)사서	0	0
	운영시간		운영 시간	운영일수	6	6.2
				평일	5	6
주말				5	5.9	
전북 전주시	면적	33 m^2 이상	면적		316.8	97.6
	열람석	6석 이상	열람석		38.2	29.2
	장서수	1,000권 이상	장서수		6409.8	4897.3
	연증가		연증가			
	인력		인력	직원	0.8	1.1
				자원봉사	4.2	3.3
				직원)사서	0	0.1
				봉사)사서	0.1	0.1
	운영시간		운영 시간	운영일수	5.8	5.9
				평일	8.4	7
주말				3.7	3.3	

지자체	작은도서관 조례		2011년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결과		
	항목	조례내용	항목	공립	사립
전북 익산시	면적	33 m^2 이상	면적	142.01	106.4
	열람석	6석 이상	열람석	41.5	28.03
	장서수	1,000권 이상	장서수	5136.7	3841.8
	연증가		연증가		
	인력		인력	직원	0.4
				자원봉사	4.4
				직원)사서	0.03
				봉사)사서	0.1
	운영시간		운영 시간	운영일수	6.5
				평일	5.1
				주말	4.2
전남 목포시	면적	85 m^2 이상	면적	123.9	62.7
	열람석	10석 이상	열람석	41.3	20
	장서수	1,000권 이상	장서수	6886.8	10042.5
	연증가	10% 이상	연증가		
	인력	관리자1인, 유급자원봉사자 1인 이상	인력	직원	0.5
				자원봉사	2
				직원)사서	0
				봉사)사서	1
	운영시간	주6일 이상 1일 10시간	운영 시간	운영일수	6.5
				평일	9
				주말	8
전남 순천시	면적	67 m^2 이상	면적	229.01	137.4
	열람석	15석 이상	열람석	29.6	26.9
	장서수	1,000권 이상	장서수	5116.8	5670.9
	연증가		연증가		
	인력	자원봉사자 포함 읍,면 지역 5인이상, 동지역 8인 이상	인력	직원	0.9
				자원봉사	4.2
				직원)사서	0.06
				봉사)사서	0
	운영시간	주5일 이상 1일5시간 이상	운영 시간	운영일수	5.2
				평일	4.9
				주말	1.9
전남 나주시	면적	85 m^2 이상	면적	99	182.6
	열람석	15석 이상	열람석	12	30
	장서수	1,000권 이상	장서수	11025	10000
	연증가		연증가		
	인력	운영자 1인, 자원봉사자 5인 이상	인력	직원	0.3
				자원봉사	2
				직원)사서	0
				봉사)사서	0
	운영시간	주6일 이상	운영 시간	운영일수	5.6
				평일	8
				주말	3.6

지자체	작은도서관 조례		2011년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결과			
	항목	조례내용	항목		공립	사립
전남 화순군	면적	33 m^2 이상	면적			53.5
	열람석	6석 이상	열람석			13.1
	장서수	1,000권 이상	장서수			2255.2
	연증가		연증가			
	인력	지역주민 중심의 자원봉사단 조직 및 적극 활용	인력	직원		0.1
				자원봉사		0.3
				직원)사서		0.1
				봉사)사서		0.1
	운영시간	주5일 1일8시간 이상	운영 시간	운영일수		5.1
평일				5.5		
주말				4.2		
전남 무안군	면적	85 m^2 이상	면적			82.4
	열람석	10석 이상	열람석			24
	장서수	1,000권 이상	장서수			2225.1
	연증가		연증가			
	인력	운영자 1인, 자원봉사자 5인 이상	인력	직원		0.06
				자원봉사		0.75
				직원)사서		0
				봉사)사서		0
	운영시간	주6일 이상	운영 시간	운영일수		5.2
평일				7		
주말				6.1		
전남 영광군	면적	67 m^2 이상	면적		140.1	
	열람석	10석 이상	열람석		12	
	장서수	1,000권 이상	장서수		7807	
	연증가		연증가			
	인력	자원봉사자를 포함 5인 이상 10인 이하	인력	직원	2.5	
				자원봉사	4	
				직원)사서	0.5	
				봉사)사서	0	
	운영시간	주6일 이상	운영 시간	운영일수	5.5	
평일				9		
주말				4.5		
전남 신안군	면적		면적		205.3	
	열람석		열람석		15.6	
	장서수		장서수		3080.6	
	연증가		연증가			
	인력		인력	직원	1	
				자원봉사	0	
				직원)사서	0	
				봉사)사서	0	
	운영시간	비고:운영위원회 규정만 있음	운영 시간	운영일수	5.3	
평일				9		
주말				9		

지자체	작은도서관 조례		2011년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결과			
	항목	조례내용	항목		공립	사립
경북 포항시	면적	82㎡ 이상	면적		244.4	
	열람석	20석 이상	열람석		29.7	
	장서수	1,000권 이상	장서수		5287.3	
	연증가		연증가			
	인력	자원봉사자를 포함 읍·면·지 역5인 이상, 동지역8인 이상	인력	직원	1.1	
				자원봉사	6.1	
				직원)사서	0	
				봉사)사서	0	
운영시간	주5일 이상	운영 시간	운영일수	5.4		
			평일	9.2		
			주말	5.5		
경북 경주시	면적		면적		264.9	148
	열람석		열람석		36	50
	장서수		장서수		3891	4880
	연증가		연증가			
	인력	운영자 1인, 자원봉사자 5인 이상	인력	직원	2	3
				자원봉사	10	2
				직원)사서	1	1
				봉사)사서	0	2
	운영시간	주5일 이상	운영 시간	운영일수	5	6
				평일	9	8
주말				9	7	
경북 영양군	면적	80㎡ 이상	면적		139	
	열람석	20석 이상	열람석		24	
	장서수	1,000권 이상	장서수		1693	
	연증가	10% 이상	연증가			
	인력	관리자 1인, 자원봉사자 1인 이상	인력	직원	1	
				자원봉사	0	
				직원)사서	0	
				봉사)사서	0	
	운영시간	·토,일 중 1일 포함 주5일 이상 ·주중40시간이상	운영 시간	운영일수	5	
				평일	9	
주말				9		
경남 창원시	면적	85㎡ 이상	면적		194.3	143.7
	열람석	15석 이상	열람석		33.1	26.5
	장서수	3,000권 이상	장서수		9,790.6	8,331.7
	연증가	400권 이상	연증가			
	인력	관리자 1인, 유급자원봉사자 1인 이상	인력	직원	2.0	1.6
				자원봉사	6.6	7.2
				직원)사서	0.9	0.6
				봉사)사서	0.3	1.2
	운영시간	·토, 일 중 1일 포함 주6일 이상 ·1일 8시간 이상	운영 시간	운영일수	6.7	5.8
				평일	8.4	8.0
주말				7.6	6.9	

지자체	작은도서관 조례		2011년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결과		
	항목	조례내용	항목	공립	사립
경남 사천시	면적	65 m^2 이상	면적	108.2	125.0
	열람석	15석 이상	열람석	22.0	30.7
	장서수	1,000권 이상	장서수	5,372.0	6391.9
	연증가		연증가		
	인력	관장1명, 자원봉사자 5인 이상	인력	직원	0.5
				자원봉사	10.0
				직원)사서	0
				봉사)사서	0
	운영시간	주6일 이상	운영 시간	운영일수	5.4
				평일	6.6
				주말	2.6
경남 김해시	면적	85 m^2 이상	면적	149.4	117.7
	열람석		열람석	33.1	25.5
	장서수	3,000권 이상	장서수	5,987.3	5,117.2
	연증가		연증가		
	인력	관장과 직원	인력	직원	2.5
				자원봉사	4.4
				직원)사서	0.2
				봉사)사서	0.1
	운영시간	-토·일 중 1일 포함 주6일 이상 -1일 8시간 이상	운영 시간	운영일수	5.9
				평일	8.5
				주말	5.2
경남 거제시	면적	33 m^2 이상	면적	141.85	262.0
	열람석	6석 이상	열람석	28.3	50
	장서수	1,000권 이상	장서수	16,917.7	9381
	연증가	10% 이상	연증가		
	인력	관장 및 직원	인력	직원	2.5
				자원봉사	7.5
				직원)사서	0.5
				봉사)사서	0
	운영시간		운영 시간	운영일수	6
				평일	9.5
				주말	4
경남 양산시	면적		면적	55	88.08
	열람석	15석 이상	열람석	25	33.1
	장서수	1,000권 이상	장서수	1800	4586.2
	연증가		연증가		
	인력	자원봉사자 포함 읍, 면 지역은 5인 이상, 동지역은 8인 이상	인력	직원	1.1
				자원봉사	7.3
				직원)사서	0.08
				봉사)사서	0.2
	운영시간		운영 시간	운영일수	5.3
				평일	5.5
				주말	2

지자체	작은도서관 조례		2011년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결과		
	항목	조례내용	항목	공립	사립
경남 고성군	면적	80 m^2 이상	면적	198.26	
	열람석	10석 이상	열람석	32	
	장서수	1,000권 이상	장서수	6286	
	연증가	10% 이상	연증가		
	인력	관리자 1인과 자원봉사자 1인 이상	인력	직원	1
				자원봉사	20
				직원)사서	0
				봉사)사서	0
	운영시간	-토, 일 중 1일 포함 주5일 이상 -1일 10시간	운영 시간	운영일수	7
				평일	13
				주말	13

□ 지방자치단체별 분석

● 서울시 강남구

- 운영시간에 관해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월~토 개관’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지키고 있는 곳은 총 10곳 중 4곳에 불과함. 이 중 2곳은 일요일에도 운영을 하고 있으며, 나머지 6곳은 월~금까지만 운영하고 있음.

● 서울시 양천구

- ‘사서자격증 소지자로 운영자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서 자격을 지닌 직원(운영자 포함)을 둔 곳은 6곳에 불과함. ‘지역주민 중심의 자원봉사단 조직’의 경우 본 실태조사 내용으로는 파악되지 않음. 그러나 지역주민들이 자원봉사자로 활용되고 있으리라고 예상됨
- 운영 시간의 경우 ‘주 5일 이상’이라는 조례 규정이 대체로 지켜지는 듯 하나 주말에만 운영하는 곳과 주 5일을 채우지 못하는 곳이 더러 존재함
- 실태 조사 결과 공립 작은도서관의 주 평균 운영일수는 5.53일, 사립 작은도서관은 5.0으로 나타남.

● 부산시 중구

- ‘매일 9~22시까지 운영’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를 온전히 지키는 경우가 드뭄. 대부분의 경우 운영 시간이 이에 못 미치거나 운영 요일이 지켜지지 않음

● 광주시 서구

- ‘지역주민 중심의 자원봉사단 조직 및 적극 활용’을 인력 관련 항목 조례로 규정함. 본 조사로는 지역주민 여부는 확인되지 않음. 평균 자원봉사자의 수는 공립 작은도서관 6.5명, 사립 작은도서관 11.2명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여지가 남아있음.
- 운영시간의 경우 주5일, 1일8시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립 작은도서관의 주말 운영시간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음

● 광주시 남구

- 면적, 열람석, 장서수 면에서는 양호한 결과를 보였으나 인력 활용면에서 적극성이 떨어짐
- 운영시간의 경우 주5일, 1일 8시간이상이라는 규정을 전반적으로 잘 지키고 있으나 주말 운영시간은 평균 5.4시간으로 조례기준에 미치지 못함

● 광주시 북구

- 인력 활용 측면에서 공립 작은도서관은 평균 13.1명의 자원봉사자 수를 기록, 매우 높은 수치가 나타나고 있지만 사립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 수는 평균 2.1명에 그쳐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
- ‘주5일 이상’이라는 운영시간 조례 규정은 공, 사립 모두가 잘 지키고 있음. 주말 운영시간은 6.5시간(공립), 6.2시간(사립)으로 파악되고 있음

● 광주시 광산구

- 면적, 열람석, 장서수 면에서 양호한 결과를 보임. 그러나 직원수와 자원봉사자 수가 너무 저조하여 인력 활용 면에서 뒤떨어진 것으로 파악됨
- 운영시간은 공, 사립 모두 조례의 규정대로 ‘주 5일 이상’ 개관함

● 대전시 유성구

- 공립 작은도서관에는 사서 자격을 지닌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 0명, 사립 작은도서관은 0.13명(직원), 1.86(자원봉사자)로 파악되는 바, ‘자격요건을 갖춘 운영자’를 둘 것을 명시하는 조례가 지켜지지 않음
- 운영시간의 경우 공립 작은도서관은 ‘주5일 이상’, ‘오전 10시~오후 5시 개관’이라는 규정을 지키고 있으나, 사립 작은도서관은 이를 지키지 않음

● 울산시 중구

- 면적, 열람석, 장서수 면에서 조례 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자원봉사자 포함 5인 이상 10인 이하’라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공립 작은도서관은 총 인력 13.5명, 사립 작은도서관은 총 인력 19명으로 조례 규정 범위를 벗어남

● 울산시 북구

- 운영시간에 관한 조례를 포함하지 않음. 운영시간 실태조사 결과도 저조한 편임.
- 인력 활용 측면에서 보면, 평균 자원봉사자 수 12.2명으로 ‘지역주민 중심의 자원봉사 단 조직 및 적극 활용’이라는 조례 내용에 부합함

● 경기도 파주시

- 면적, 열람석, 장서수 모두 양호함. 그러나 인력과 운영시간에 관한 조례를 포함하지 않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항목 모두에서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공립보다는 사립이 낮은 수치를 보였음

● 경기도 광명시

- 인력 관련 조례로서 ‘자원봉사자 포함 6명 이상’을 제시함. 실태조사 결과, 평균적으로 공립 작은도서관은 직원 1명, 자원봉사자 1명 사립 작은도서관은 직원 0.6명, 자원봉사자 7명으로 공립 작은도서관은 조례기준보다 인력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파악됨.
- 운영시간 관련 조례로는 ‘주5일 이상’, ‘토,일 중 1일 개관’을 제시함. 공립 작은도서관을 이를 지키고 있으나, 사립 작은도서관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음. 운영일수 1주당 평균 4.1일, 주말 평균 1.5시간 운영 등으로 조사됨.

● 경기도 안양시

- ‘자원봉사자 포함 8명 이상’이라는 조항을 제시함. 그러나 평균 자원봉사자수가 6.6명으로 조례기준에 미치지 못함.
- ‘주5일 이상’, 1일 5시간 이상’이라는 조항 또한 평일 평균 운영시간은 6.3시간으로 부합하지만 주말 평균 운영시간은 4.1시간으로 조례기준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 성남시

- 면적, 열람석, 장서수 등 모든 기초항목에서 공립이 사립보다 좋은 결과를 보임
- ‘자원봉사자 포함 8명 이상’이라는 인력 관련 조항의 경우 사립 작은도서관이 이를 더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공립은 7.3명, 사립은 11.1명으로 조사됨

- 운영시간의 '주5일 이상', '1일 5시간 이상'은 공, 사립 모두에서 잘 지켜지고 있으며, 공립이 보다 양호함.

● 경기도 하남시

- 공립 작은도서관이 없음. 사립 작은도서관의 경우 평균 면적 53.7㎡로 조례 기준인 80㎡에 미치지 못함.
- 인력 관련 항목으로 '관장 1인', '사서업무와 행사 및 교육 담당 직원', '자원봉사자 모집, 운영' 등 기준을 비교적 상세히 제시한 데 비해, 총 직원수 평균 0.3명, 사서 직원 0명으로 조사됨.
- 운영시간 조례인 '토,일 중 1일 포함 주5일 이상 개관'에 관해서는 평균 운영일수는 5.2일로 조사되어 조례에 부합하는 반면, 주말 운영시간이 2.2시간에 불과함.

● 강원도 춘천시

- 조례 규정으로 '자원봉사자 포함 4명 이상'을 제시하고 있으나 공립 작은도서관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음. 공립 평균 인력 1명, 사립 평균 인력 9명으로 조사됨.
- '주5일 이상', '1일 4시간 이상' 항목은 전반적으로 잘 지켜지고 있음

● 강원도 원주시

- 인력 운영과 관련, '운영자1인과 자원봉사자 포함, 읍면지역 3인 이상, 동지역 5인 이상'이라고 규정함. 그러나 실제 직원수는 평균 1.8명, 자원봉사자수는 평균 3.3명으로 인원 측면에서 부실한 결과를 나타냄.
- 운영시간의 '주5일 이상', '오후1시~오후 5시 의무 개관' 조항은 잘 지켜지고 있음

● 충청남도 천안시

- 인력 관련 조례는 강원 원주시의 조례와 동일함. 공립 작은도서관 총인력 2.9명, 작은도서관 총 인력 5.4명으로 조사되어 그리 양호하지 못한 결과를 기록함.

● 충청남도 연기군

- 면적 관련 기준 50㎡, 실태조사 결과 204.4㎡(공립), 61.6㎡(사립)을 기록함

● 전라북도 전주시

- 면적, 열람석, 장서수 부분에서 양호한 결과를 보이며, 공립이 사립보다 더 나은 수치를 보임.

● 전라북도 익산시

- 면적, 열람석, 장서수 부분에서 양호한 결과를 보이며, 공립이 사립보다 더 나은 수치를 보임.

● 전라남도 목포시

- 관리자1인, 유급자원봉사자 1인 이상 둘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조사 결과 공립은 유급 직원(관리자 포함) 1명, 사립은 0.5명으로 집계되어 조례 규정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운영시간의 경우 ‘주6일 이상 1일 10시간’ 개관할 것을 명시한 바, 전반적인 조사 결과가 크게 양호하지는 않으나 규정치에 근접함.

● 전라남도 순천시

- 면적, 열람석, 장서수 면에서 양호한 결과를 나타냄. 인력 항목인 ‘자원봉사자 포함 ...동 지역 8인 이상’ 부분에서 공립 5명, 사립 5.1명으로 파악된 바, 조례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남.
- 운영시간 면에서는 ‘주5일 이상’, ‘1일 5시간 이상’ 규정이 주말 운영시간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지켜짐.

● 전라남도 나주시

- 면적, 열람석, 장서수 면에서 양호하며, 특히 장서수가 기준치를 크게 상회함.
- 인력 항목의 경우 직원(운영자 포함)은 공립 0명, 사립 0.3명, 자원봉사자는 공립 1명, 사립 2명으로 조사되어 ‘운영자 1인, 자원봉사자 5인 이상’을 명시한 조례에 크게 못 미침.
- 운영시간 조례인 ‘주6일 이상’ 기준은 공, 사립 모두에서 약간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됨

● 전라남도 화순군

- 평균 직원 0.1명, 자원봉사자 0.3명으로 조사되어 ‘지역주민 중심의 자원봉사자 조직 및 적극 활용’이라는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함.
- ‘주5일 1일 8시간 이상’을 명시한 운영시간 측면에서는 ‘주5일’ 이상 운영되고 있으나 1일 운영시간 부분에서 기준에 미달함.

● 전라남도 무안군

- 인력 면에서 직원(운영자 포함) 0.06명, 자원봉사자 0.75명으로 조사되어 ‘운영자 1인,

자원봉사자 5인 이상'으로 규정한 조례에 크게 미달함.

- 운영시간도 '주 6일 이상' 규정과 비교, 근접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으나 조례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함

● **전라남도 영광군**

- 총 인력 6.5명의 조사결과로, 인력 관련 조례인 '자원봉사자를 포함 5인 이상 10인 이하'에 부합함
- 운영시간은 '주6일 이상' 규정에 미달하나, 이에 근접한 수치를 보이고 있음

● **전라남도 신안군**

- 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규정만 지니고 있음

● **경상북도 포항시**

- 인력을 제외한 면적, 열람석, 장서수, 운영 시간 등 모든 면에서 조례 기준을 상회하고 있음. 인력 면에서는 조사 결과 총 7.2명의 인력을 보임으로서, 조례의 '8인 이상'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경상북도 경주시**

- 운영시간 관련 조례인 '주 5일 이상'은 공, 사립 모두에서 지켜지는 반면, 인력 관련 조례는 사립 작은도서관에서 준수되지 않고 있음

● **경상북도 영양군**

- 인력 면에서 직원 1명의 결과를 나타냄. 이는 '관리자 1인, 자원봉사자 1인 이상'을 규정한 조례에 어긋나는 결과임
- 운영시간의 경우 '토, 일 중 1일 포함, 주5일 이상', '주중 40시간 이상' 기준이 모두 지켜지는 것으로 조사됨

● **경상남도 창원시**

- 실태조사 결과 '관리자 1인, 유급자원봉사자 1인 이상'의 조례기준에 공, 사립 모두 부합함.
- 공립 작은도서관은 '토, 일 중 1일 포함 주6일 이상' 운영시간 기준을 약간 상회하는 반면, 사립 작은도서관은 이에 다소 미흡한 결과를 보였음
- '1일 8시간 이상' 규정은 공립 작은도서관의 평일 운영시간 이외에는 준수되지 않음

● 경상남도 사천시

- 인력과 관련해서 ‘관장 1명, 자원봉사자 5인 이상’ 규정에 대체로 부합함.
- 공립 작은도서관은 ‘주6일 이상’ 규정을 지키고 있는 반면, 사립 작은도서관은 5.4일로 이에 약간 못 미침

● 경상남도 김해시

- 조례에서 명시한대로 인력 구성이 ‘관장과 직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에 더하여 복수의 자원봉사자를 두고 있음
- 전반적으로 볼 때 조례에서 규정한대로 ‘토, 일 중 1일 포함 주6일 이상’ 운영되고 있음. 평일에는 ‘1일 8시간 이상’ 운영되지만 주말에는 그렇지 못함

● 경상남도 거제시

- 조례에서 명시한대로 인력 구성이 ‘관장과 직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에 더하여 복수의 자원봉사자를 두고 있음

● 경상남도 양산시

- 인력부분에서 공립 총 인력 5명, 사립 총 인력 8.4명으로 조사되어 ‘8인 이상’ 규정에 미달함

● 경상남도 고성군

- 운영인력에서 ‘관리자 1인과 자원봉사자 1인 이상’을 두도록 한 조례의 규정에 부합함. 특히 자원봉사자 수가 20명으로 조사되어 매우 활성화되어 있음을 확인함
- 운영시간 또한 ‘토, 일 중 1일 포함 주5일 이상’, ‘1일 10시간’이라는 기준에 상회하는 결과를 보임.

부록 4. 전국 작은도서관 현황 일람표

지역	시군구	공립		사립		면적(m ²)		열람석(석)		장서(권)		운영일(일)		평일 운영시간(시간)		주말 운영시간(시간)		직원(명)		사서자격 직원		자원봉사자 (명)		사서자격 자원봉사자	
		빈도	%	빈도	%	공립	사립	공립	사립	공립	사립	공립	사립	공립	사립	공립	사립	공립	사립	공립	사립	공립	사립	공립	사립
서울	강남구	8	100.0	0	0.0	83.9		19.7		11,863.5		5.6		8.8		2.9		1.7		0.4		5.5		0.0	
서울	강동구	3	23.1	10	76.9	1,028.8	72.3	31.3	15.2	6,751.0	7,201.6	4.3	4.8	7.0	3.9	2.3	0.3	2.0	0.6	0.7	0.0	2.7	10.6	0.0	1.7
서울	강북구	1	3.8	25	96.2	35.0	89.8	15.0	28.3	3,000.0	4,965.0	5.0	5.3	9.0	7.2	0.0	3.8	1.0	0.8	0.0	0.0	10.0	6.6	0.0	0.0
서울	강서구	16	48.5	17	51.5	149.7	121.0	22.1	24.5	5,600.6	6,218.5	5.6	5.8	9.0	7.9	2.7	5.4	0.7	0.8	0.0	0.0	5.7	15.8	0.0	0.0
서울	관악구	14	35.0	26	65.0	81.0	102.7	21.3	20.7	5,405.9	6,340.5	5.4	5.3	7.0	4.3	3.1	1.6	0.6	0.4	0.4	0.1	2.3	10.8	0.0	0.1
서울	광진구	1	4.3	22	95.7	68.0	77.7	30.0	21.1	3,000.0	6,658.5	5.0	5.0	9.0	4.7	0.0	6.8	2.0	1.6	0.0	0.0	0.0	14.5	0.0	0.3
서울	구로구	0	0.0	19	100.0		81.0		18.8		6,500.7		5.3		6.1		1.9		0.2		0.1		6.9		0.0
서울	금천구	3	18.8	13	81.2	35.0	77.1	13.3	24.2	4,992.3	4,757.9	4.3	5.3	3.0	5.8	0.0	2.1	0.0	0.5	0.0	0.0	9.7	8.3	0.0	0.0
서울	노원구	17	56.7	13	43.3	112.9	90.2	16.6	25.6	11,193.4	6,416.6	5.0	5.5	9.0	6.6	0.0	2.4	0.5	0.8	0.0	0.2	13.9	6.5	0.0	0.1
서울	도봉구	9	42.9	12	57.1	52.8	135.3	11.9	20.9	11,170.0	7,647.5	4.3	5.3	5.7	6.0	0.0	2.4	0.9	0.4	0.0	0.2	19.6	5.7	0.0	0.0
서울	동대문구	13	72.2	5	27.8	141.1	138.2	20.2	36.0	6,805.5	8,600.0	5.2	6.0	9.3	7.9	1.7	4.7	1.2	1.8	0.1	0.4	0.0	15.8	0.0	2.2
서울	동작구	8	44.4	10	55.6	57.0	94.7	14.9	36.8	3,852.0	3,765.5	5.1	4.9	8.9	6.8	1.0	2.9	0.9	0.3	0.1	0.2	4.8	4.7	0.0	0.3
서울	마포구	9	40.9	13	59.1	114.2	155.8	31.3	29.8	6,560.1	14,782.7	5.8	5.7	8.9	6.7	4.2	5.2	0.9	0.7	0.2	0.1	7.7	5.2	0.2	0.2
서울	서대문구	6	42.9	8	57.1	181.7	241.8	61.1	89.0	6,479.1	4,352.5	5.6	5.9	8.1	7.4	6.9	5.6	1.6	1.3	0.2	0.0	4.6	5.3	0.0	0.1
서울	서초구	14	77.8	4	22.2	299.8	93.2	12.5	16.8	9,322.3	16,205.0	5.1	6.0	8.3	8.3	0.0	3.0	1.0	1.3	0.0	0.5	10.8	7.3	0.0	0.0
서울	성동구	9	39.1	14	60.9	70.1	116.9	13.8	32.8	6,956.4	6,438.4	5.1	5.1	7.8	6.6	0.8	3.4	0.9	0.6	0.0	0.2	5.2	5.4	0.0	0.2
서울	성북구	4	14.8	23	85.2	51.4	145.1	13.0	25.1	4,863.5	5,013.0	4.5	5.3	7.0	6.3	0.0	2.2	0.8	1.1	0.0	0.0	5.8	6.9	4.5	0.0
서울	송파구	0	0.0	20	100.0		59.3		17.1		7,171.5		5.2		5.2		2.8		1.7		0.3		12.1		0.9
서울	양천구	17	60.7	11	39.3	230.6	110.4	23.7	30.5	13,360.1	6,332.2	5.5	5.0	9.0	6.5	2.9	3.5	1.2	0.7	0.4	0.2	8.9	3.4	0.0	0.6
서울	영등포구	0	0.0	27	100.0		87.2		24.6		8,256.6		5.4		8.0		3.1		0.9		0.2		7.5		1.0
서울	용산구	2	20.0	8	80.0	90.5	77.9	10.5	24.8	7,288.0	4,837.4	5.0	5.3	6.5	5.7	0.0	2.8	0.5	1.1	0.0	0.0	9.5	3.6	0.0	0.1

지역	시군구	공립		사립		면적(m ²)		열람석(석)		장서(권)		운영일(일)		평일 운영시간(시간)		주말 운영시간(시간)		직원(명)		사서자격 직원		자원봉사자 (명)		사서자격 자원봉사자	
		빈도	%	빈도	%	공립	사립	공립	사립	공립	사립	공립	사립	공립	사립	공립	사립	공립	사립	공립	사립	공립	사립	공립	사립
서울	은평구	8	22.2	28	77.8	110.1	90.8	27.3	27.9	5,641.3	5,782.0	5.0	5.5	9.0	6.3	0.0	3.3	1.0	0.6	0.0	0.1	5.1	7.5	0.0	1.0
서울	종로구	1	7.1	13	92.9	85.0	76.9	20.0	21.5	5,300.0	4,222.8	5.0	5.3	6.0	7.6	0.0	2.2	1.0	0.7	0.0	0.1	0.0	13.2	1.0	0.0
서울	중구	2	18.2	9	81.8	245.2	3,832.2	32.0	36.7	16,308.0	12,821.1	6.0	5.1	9.0	7.1	9.0	2.4	0.5	1.2	0.5	0.3	0.0	3.1	0.0	0.3
서울	중랑구	2	6.3	30	93.7	39.0	55.8	11.0	16.1	3,739.5	5,254.7	6.0	4.9	11.0	6.2	6.5	2.1	1.0	0.4	0.0	0.1	1.0	7.6	0.0	0.5
부산	중구	0	0.0	2	100.0	.	170.9	.	27.0	.	8,164.5	.	5.0	.	8.5	.	0.0	.	2.5	.	0.5	.	1.0	.	0.0
부산	동구	1	50.0	1	50.0	130.0	40.0	40.0	10.0	7,000.0	3,000.0	6.0	6.0	10.0	11.0	4.0	11.0	2.0	0.0	1.0	0.0	1.0	1.0	0.0	0.0
부산	서구	1	9.1	10	90.9	89.0	124.5	20.0	35.0	3,500.0	4,140.6	6.0	5.2	12.0	5.0	9.0	3.5	0.0	1.3	0.0	0.1	0.0	3.7	0.0	0.2
부산	사하구	3	75.0	1	25.0	142.2	231.0	45.3	70.0	7,563.0	15,873.0	6.7	7.0	11.7	13.0	12.0	13.0	1.0	1.0	0.0	0.0	4.0	2.0	0.0	0.0
부산	영도구	0	0.0	5	100.0	.	67.1	.	48.0	.	6,700.0	.	5.6	.	7.6	.	2.4	.	1.0	.	0.2	.	8.6	.	0.2
부산	동래구	2	22.2	7	77.8	62.3	68.9	15.0	20.3	4,100.0	6,695.4	5.5	5.1	8.5	8.0	4.5	2.5	0.5	0.4	0.0	0.1	5.0	12.3	0.0	1.4
부산	남구	7	43.8	9	56.2	68.8	105.0	23.4	26.1	7,142.9	4,545.9	6.3	4.8	10.9	6.9	9.1	4.0	1.9	0.8	0.0	0.0	1.6	9.7	0.1	4.9
부산	금정구	0	0.0	4	100.0	.	81.2	.	22.8	.	4,050.0	.	5.3	.	6.3	.	4.3	.	1.0	.	0.0	.	1.0	.	0.0
부산	연제구	2	33.3	4	66.7	166.5	139.3	20	67.0	10,121	2012.5	6.0	5.3	10.0	6.5	4.0	4.0	1.5	0.5	0.5	0.0	0.0	2.3	0.0	0.5
부산	해운대구	1	14.3	6	85.7	54.0	75.7	36.0	33.0	2,000.0	2,102.3	7.0	4.0	7.0	4.8	3.0	1.8	1.0	0.8	0.0	0.5	1.0	2.2	0.0	0.0
부산	수영구	0	0	0	0	.	.	.	.	.	.	.	.	.	.	.	.	.	.	.	.	.	.	.	.
부산	부산진구	1	4.8	20	95.2	99.0	97.5	30.0	30.0	17,000.0	4,871.6	6.0	5.0	8.0	6.5	10.0	4.2	2.0	0.9	0.0	0.1	3.0	6.5	0.0	15.5
부산	북구	2	33.3	4	66.7	47.2	50.6	30.0	16.8	4,650.0	1,625.0	6.0	3.0	10.0	2.5	8.5	4.0	0.5	0.8	0.0	0.0	7.5	1.3	0.0	0.3
부산	사상구	3	27.3	8	72.7	89.1	186.1	30.0	38.1	8,982.7	9,996.4	6.0	5.3	9.7	7.9	9.3	4.6	0.7	1.9	0.0	0.1	35.0	277.6	0.0	0.4
부산	강서구	1	50.0	1	50.0	100.0	66.0	50.0	20.0	1,000.0	3,500.0	6.0	5.0	10.0	10.0	4.0	2.0	2.0	0.0	0.0	0.0	3.0	1.0	0.0	0.0
부산	기장군	1	33.3	2	66.7	112.0	127.9	38.0	33.0	4,772.0	2,770.0	6.0	6.5	8.0	7.5	10.0	6.0	0.0	1.5	0.0	0.0	1.0	9.0	0.0	0.0
대구	중구	3	33.3	6	67.7	210.1	76.7	13.7	38.7	6,088.3	3,702.7	5.3	4.5	10.0	6.3	3.0	5.5	1.7	1.3	0.0	0.2	0.0	8.8	0.0	0.0

전국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및 운영활성화 방안 연구

지역	시군구	공립		사립		면적(m ²)		열람석(석)		장서(권)		운영일(일)		평일 운영시간(시간)		주말 운영시간(시간)		직원(명)		사서자격 직원		자원봉사자 (명)		사서자격 자원봉사자	
		빈도	%	빈도	%	공립	사립	공립	사립	공립	사립	공립	사립	공립	사립	공립	사립	공립	사립	공립	사립	공립	사립	공립	사립
대구	동구	1	11.1	8	88.9	99.0	100.3	20.0	28	12,000.0	5,237.4	5.0	5.0	9.0	8.0	0.0	7.4	1.0	2.1	1.0	0.3	1.0	14.1	0.0	0.1
대구	서구	0	0.0	3	100.0	.	200.5	.	26.7	.	4,418.3	.	5.3	.	8.7	.	3.0	.	2.3	.	1.3	.	3.3	.	1.0
대구	남구	1	50.0	1	50.0	121.5	200.0	30.0	58.0	3,500.0	10,455.0	5.0	6.0	10.0	7.0	0.0	7.0	2.0	1.0	0.0	0.0	35.0	2.0	0.0	0.0
대구	북구	1	4.8	20	95.2	201.5	79.4	40.0	26.5	8,500.0	4,170.2	5.0	4.8	8.0	5.6	8.0	4.3	1.0	1.3	0.0	0.0	2.0	3.6	0.0	0.3
대구	수성구	2	10.5	17	89.5	106.0	82.5	21.5	20.4	6,479.5	2,339.5	5.5	5.9	9.0	7.2	4.0	7.3	0.5	1.6	0.5	0.2	1.5	2.6	0.0	0.5
대구	달서구	5	17.2	24	82.8	154.2	120.9	30.2	38.1	18,582.0	5,157.0	5.4	5.1	8.6	5.7	5.6	3.3	1.0	0.5	0.6	0.0	19.2	18.6	0.0	0.3
대구	달성군	5	35.7	9	64.3	178.8	180.4	48.2	30.1	12,359.6	3,128.7	5.8	4.9	7.8	5.0	5.8	2.1	2.4	0.8	0.0	0.1	0.2	7.8	0.0	0.0
인천	중구	0	0.0	1	100.0	.	201.3	.	16.0	.	7,000.0	.	6.0	.	7.0	.	7.0	.	1.0	.	0.0	.	15.0	.	0.0
인천	동구	1	16.7	5	83.3	132.0	151.2	30.0	45.0	5,083.0	6,652.2	6.0	5.6	8.0	6.6	4.0	1.4	1.0	1.2	0.0	0.0	16.0	2.0	1.0	0.0
인천	서구	7	24.1	22	75.9	67.9	102.3	38.9	29.6	6,251.9	6,907.6	5.1	9.3	4.9	4.3	2.0	1.8	1.1	3.0	0.3	0.0	0.6	0.9	0.0	0.0
인천	남구	4	30.8	9	69.2	130.3	89.2	29.0	28.4	7,039.0	4,344.9	5.5	5.3	8.5	5.8	4.0	3.9	2.3	0.8	0.5	0.1	3.0	8.0	0.0	0.0
인천	부평구	3	18.8	13	81.2	88.7	85.1	22.0	35.8	7,843.3	4,330.8	6.0	5.5	9.7	6.2	5.0	3.7	0.7	0.9	0.0	0.0	2.7	4.4	0.0	0.3
인천	강화군	2	100.0	0	0.0	69.8	.	25.5	.	6,275.0	.	5.5	.	8.0	.	7.0	.	1.0	.	0.0	.	1.0	.	0.0	.
인천	옹진군	1	100.0	0	0.0	103.1	.	37.0	.	11,324.0	.	7.0	.	11.0	.	8.0	.	2.0	.	0.0	.	0.0	.	0.0	.
인천	연수구	1	11.1	8	88.9	322.0	83.9	60.0	30.5	28,000.0	5,527.0	5.0	5.3	8.0	6.0	0.0	3.0	0.0	0.6	0.0	0.0	9.0	13.3	1.0	0.1
인천	남동구	4	12.9	27	87.1	176.3	130.2	35.3	37.2	9,798.3	4,186.3	5.3	5.7	9.0	7.3	1.0	4.2	0.3	1.1	0.0	0.0	1.8	4.8	0.0	0.1
인천	계양구	1	12.5	7	8	112.0	99.1	30.0	38.9	5,400	4,514.3	5.0	5.1	9.0	5.9	.	3.1	1.0	0.9	0.3	0.3	1.0	1.9	0.0	1.0
광주	동구	2	18.2	9	81.8	123.4	133.5	17.0	21.2	5,019.5	3,947.3	7.0	6.2	9.0	9.8	9.0	5.3	1.0	1.8	0.0	0.0	6.5	3.1	0.0	0.0
광주	서구	2	14.3	12	85.7	164.0	105.2	45.0	35.8	5,955.5	6,079.3	6.5	5.5	10.0	8.8	9.0	7.2	0.5	2.1	0.0	0.4	6.5	11.2	0.0	0.8
광주	남구	0	0.0	17	100.0	.	85.1	.	23.6	.	2,335.9	.	5.6	.	8.1	.	5.4	.	1.1	.	0.3	.	1.7	.	0.3
광주	북구	9	11.4	70	88.6	88.4	76.3	22.1	22.6	6,258.3	2,385.8	5.1	6.8	9.6	9.5	6.5	6.2	1.0	1.3	0.3	0.2	13.1	2.1	0.0	0.2
광주	광산구	2	6.9	27	93.1	166.0	100.0	73.0	30.6	5,044.0	3,164.4	5.5	5.6	10.5	7.4	6.0	7.1	0.0	1.1	0.0	0.0	1.0	2.2	0.0	0.3

지역	시군구	공립		사립		면적(m ²)		열람석(석)		장서(권)		운영일(일)		평일 운영시간(시간)		주말 운영시간(시간)		직원(명)		사서자격 직원		자원봉사자 (명)		사서자격 자원봉사자	
		빈도	%	빈도	%	공립	사립	공립	사립	공립	사립	공립	사립	공립	사립	공립	사립	공립	사립	공립	사립	공립	사립	공립	사립
대전	동구	1	4.2	23	95.8	36.7	104.9	7.0	26.9	3,430.0	3,371.3	6.0	5.6	10.0	7.0	4.0	7.7	0.0	1.7	0.0	0.0	2.0	3.4	0.0	0.0
대전	서구	1	2.0	49	98.0	47.0	72.7	18.0	27.7	5,420.0	3,777.3	4.0	5.3	5.0	5.9	0.0	3.8	0.0	0.3	0.0	0.0	21.0	4.7	0.0	0.2
대전	유성구	5	11.9	37	88.1	64.0	118.5	14.8	27.2	4,454.0	5,986.5	5.0	4.5	7.2	5.2	0.0	1.6	0.6	0.5	0.0	0.0	10.4	6.6	0.0	0.7
대전	대덕구	6	27.3	16	72.7	256.5	101.8	12.8	31.6	4,146.5	4,924.3	5.0	5.1	6.3	6.0	0.0	2.1	0.7	0.8	0.3	0.1	9.5	5.7	0.3	0.1
대전	충구	10	22.2	35	77.8	66.4	89.6	17.9	26.7	3,462.0	3,051.9	4.7	5.3	7.2	7.1	1.3	1.3	0.7	0.5	0.0	0.0	8.1	1.0	0.1	0.0
울산	중구	2	50.0	2	50.0	58.3	107.3	15.0	31.0	2,770.0	7,763.0	5.0	5.5	8.3	9.0	0.0	2.0	0.5	1.5	0.0	0.0	13.0	17.5	0.0	0.0
울산	남구	5	41.7	7	58.3	121.6	99.1	27.2	19.4	7,192.8	3,613.6	5.2	5.7	9.6	8.3	1.8	3.7	1.4	0.7	0.0	0.0	5.8	7.6	0.0	0.1
울산	동구	4	66.7	2	33.3	179.5	64.8	23.3	19.0	7,054.0	5,420.0	6.0	5.0	8.8	4.5	8.3	4.5	2.5	0.5	0.8	0.0	18.8	0.5	0.0	0.0
울산	북구	0	0.0	17	100.0	.	78.5	.	24.7	.	3,733.9	.	4.8	.	4.1	.	1.0	.	0.5	.	0.0	.	23.8	.	0.0
울산	울주군	8	57.1	6	42.9	836.0	117.0	15.0	13.2	4,424.5	3,086.5	5.1	5.7	9.3	6.2	4.5	1.2	1.0	0.3	0.1	0.0	3.3	7.3	0.0	0.0
경기도	고양시	8	17.0	40	83.0	112.0	85.8	20.8	22.1	10,196.8	4,966.8	5.6	5.4	8.0	5.7	5.8	3.5	1.1	0.5	0.6	0.1	3.4	6.2	0.0	0.1
경기도	파주시	4	15.4	22	84.6	120.0	121.3	37.8	33.5	4,345.3	6,249.4	5.8	5.5	8.0	5.9	6.5	3.5	1.3	2.8	0.0	0.2	14.0	7.7	0.0	0.1
경기도	김포시	3	17.6	14	82.4	148.1	116.8	37.0	23.9	13,047.3	2,582.1	5.0	5.1	7.3	6.1	5.7	5.1	1.6	1.5	0.0	0.0	0.3	1.7	0.0	0.1
경기도	군포시	3	17.6	14	82.4	104.5	90.9	24.0	28.9	5,689.0	3,133.6	5.3	4.7	9.0	6.7	8.0	1.8	1.3	0.7	0.2	0.0	6.2	2.1	0.8	0.0
경기도	부천시	13	28.3	33	71.7	161.7	88.9	35.3	27.4	12,856.4	6,941.9	5.6	5.1	9.2	4.5	4.0	2.5	2.7	0.7	1.2	0.2	5.5	1.7	0.2	0.5
경기도	광명시	2	8.7	21	91.3	230.4	104.9	42.5	18.8	29,271.0	4,456.4	6.5	4.1	9.0	5.7	8.0	6.6	1.0	0.6	1.2	0.2	1.0	7.0	1.0	3.3
경기도	안산시	6	11.5	46	88.5	189.1	103.8	19.0	27.2	9,991.7	3,715.8	5.5	5.4	9.5	7.5	9.2	3.6	1.5	0.8	0.8	0.1	1.0	2.0	0.0	0.3
경기도	과천시	1	14.3	6	85.7	265.0	69.5	67.0	20.2	6,941.0	3,121.7	5.0	4.7	7.0	3.7	7.0	0.0	2.0	0.2	1.0	0.0	0.0	7.8	0.0	0.2
경기도	시흥시	7	30.4	15	69.6	101.4	202.8	28.6	29.1	10,950.0	3,074.0	5.3	5.5	9.0	7.8	5.1	3.5	0.6	1.1	0.3	0.0	0.3	1.0	0.0	0.0
경기도	안양시	0	0.0	42	100.0	.	125.2	.	29.1	.	5,835.2	.	5.6	.	6.3	.	4.1	.	0.7	.	0.2	.	6.6	.	0.3
경기도	포천시	5	26.3	14	73.7	176.6	95.5	33.0	29.6	7,680.0	3,038.2	6.0	5.2	9.5	6.3	6.8	4.5	1.4	0.9	0.0	0.0	2.4	0.9	0.0	0.0
경기도	의왕시	5	24.0	19	76.0	68.8	98.6	20.0	26.2	4,207.6	7,169.5	5.0	2.6	2.8	3.9	.	0.2	1.0	0.7	0.0	0.0	0.0	0.3	0.0	0.0

전국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및 운영활성화 방안 연구

지역	시군구	공립		사립		면적(m ²)		열람석(석)		장서(권)		운영일(일)		평일 운영시간(시간)		주말 운영시간(시간)		직원(명)		사서자격 직원		자원봉사자 (명)		사서자격 자원봉사자	
		빈도	%	빈도	%	공립	사립	공립	사립	공립	사립	공립	사립	공립	사립	공립	사립	공립	사립	공립	사립	공립	사립	공립	사립
경기도	수원시	4	4.9	77	95.1	464.0	113.3	107.5	27.3	22,555.8	8,753.0	6.3	5.2	10.5	4.9	8.3	1.7	2.8	0.6	1.3	0.0	15.8	11.1	0.0	0.6
경기도	구리시	5	27.8	13	72.2	204.0	76.6	26.0	23.4	7,032.0	3,461.5	7.0	4.9	9.0	5.7	6.0	1.9	2.8	0.8	1.0	0.1	0.0	1.9	0.0	0.1
경기도	화성시	9	18.0	41	82.0	216.3	86.9	32.0	30.6	5,879.2	4,252.9	5.4	5.3	5.0	6.0	3.3	3.7	1.9	0.8	0.0	0.1	5.4	5.5	0.0	0.5
경기도	오산시	1	16.7	5	83.3	143.7	65.7	37.0	34.6	1,675.0	2,500.0	7.0	4.6	12.0	7.0	5.0	6.6	2.0	0.4	2.0	0.0	0.0	1.8	0.0	0.0
경기도	용인시	5	8.0	59	92.0	134.9	122.0	32.0	37.5	9,806.0	5,644.2	5.4	4.9	8.0	5.9	2.6	3.5	1.2	1.0	0.0	0.0	4.8	9.1	0.0	2.6
경기도	평택시	0	0.0	19	100.0	.	103.6	.	36.5	.	4,076.3	.	4.9	.	6.3	.	5.4	.	1.3	.	0.1	.	2.4	.	0.5
경기도	안성시	7	87.5	1	12.5	257.5	245.0	29.1	98.0	16,480.7	6,000.0	6.0	6.0	9.0	6.0	9.0	10.0	1.6	0.0	0.1	0.0	0.7	3.0	0.0	0.0
경기도	성남시	10	33.3	20	66.7	181.4	137.3	41.2	30.9	11,586.4	6,074.3	5.7	5.7	9.2	6.8	3.5	3.1	1.7	1.0	1.1	0.2	3.4	9.0	0.2	1.5
경기도	광주시	1	9.0	10	91.0	99.0	70.5	33.0	20.8	4,000.0	2,895.4	7.0	4.3	13.0	8.3	13.0	8.0	1.0	1.2	0.0	0.3	0.0	2.2	0.0	0.3
경기도	하남시	0	0.0	4	100.0	.	53.7	.	14.8	.	3,233.5	.	5.3	.	5.9	.	2.3	.	0.3	.	0.0	.	2.8	.	3.8
경기도	이천시	8	22.9	27	77.1	134.6	80.8	19.0	21.1	2,835.5	3,455.5	5.1	4.9	7.9	6.1	0.0	3.1	1.0	1.3	0.1	0.0	3.0	2.1	0.0	0.0
경기도	여주군	1	5.6	18	94.4	323.0	420.6	72.0	19.3	8,906.0	2,445.6	6.0	5.2	9.0	6.6	9.0	4.7	3.0	0.5	1.0	0.1	2.0	0.9	0.0	0.1
경기도	연천군	3	50.0	3	50.0	95.0	45.2	23.3	10.0	6,623.0	1,163.0	6.3	7.0	9.0	9.0	5.7	9.0	0.7	0.0	0.3	0.0	2.0	0.0	0.3	0.0
경기도	남양주시	7	9.7	55	90.3	142.7	129.7	23.6	27.6	3,378.0	3,629.1	6.3	5.2	9.5	5.8	8.1	3.1	4.9	1.1	0.3	0.1	5.0	1.8	0.0	0.0
경기도	양평군	1	50.0	1	50.0	70.0	36.0	33.0	50.0	11,089.0	6,000.0	6.0	5.0	9.0	9.0	9.0	9.0	1.0	1.0	0.0	0.0	20.0	7.0	0.0	0.0
경기도	가평군	0	0.0	3	100.0	.	57.5	.	21.7	.	3,333.3	.	6.3	.	9.0	.	6.0	.	0.3	.	0.0	.	1.0	.	0.0
경기도	의정부시	14	61.6	8	38.4	96.9	98.5	18.6	60.4	12,810.6	3,300.0	5.1	5.8	9.0	7.6	0.8	3.9	1.7	1.3	0.1	0.1	1.4	2.9	0.1	2.1
경기도	양주시	0	0.0	34	100.0	.	77.2	.	23.4	.	6,430.0	.	5.3	.	4.9	.	1.5	.	0.2	.	0.1	.	6.7	.	0.0
경기도	동두천시	5	100.0	0	0.0	202.8	.	38.6	.	8,447.0	.	5.6	.	8.4	.	6.4	.	2.2	.	0.6	.	0.0	.	0.0	.
강원도	춘천시	1	5.9	16	94.1	43.0	99.1	8.0	21.5	6,802.0	4,074.8	5.0	5.8	9.0	7.3	0.0	2.8	0.0	0.4	0.0	0.0	1.0	8.5	0.0	0.5
강원도	화천군	2	100.0	0	0.0	85.4	.	17.5	.	3,518.0	.	6.0	.	10.5	.	10.5	.	0.5	.	0.5	.	1.0	.	0.5	.
강원도	강릉시	8	50.0	8	50.0	321.7	108.6	77.9	32.9	7,754.1	2,792.9	6.0	4.8	11.0	4.2	9.8	3.6	2.0	0.8	0.0	0.0	0.0	0.5	0.0	0.0

지역	시군구	공립		사립		면적(m ²)		열람석(석)		장서(권)		운영일(일)		평일 운영시간(시간)		주말 운영시간(시간)		직원(명)		사서자격 직원		자원봉사자 (명)		사서자격 자원봉사자	
		빈도	%	빈도	%	공립	사립	공립	사립	공립	사립	공립	사립	공립	사립	공립	사립	공립	사립	공립	사립	공립	사립	공립	사립
강원도	양양군	0	0.0	2	100.0	.	72.6	.	18.0	.	2,250.0	.	6.5	.	10.5	.	10.5	.	1.5	.	0.0	.	0.5	.	0.0
강원도	속초시	2	50.0	2	50.0	129.0	138.3	13.0	15.0	4,867.0	5,750.0	7.0	6.0	11.0	8.8	11.0	8.0	1.5	1.0	0.0	0.0	2.0	2.0	0.0	0.5
강원도	고성군	0	0.0	4	100.0	.	134.5	.	27.3	.	4,195.8	.	6.8	.	9.3	.	8.5	.	0.5	.	0.3	.	1.0	.	0.0
강원도	원주시	0	0.0	32	100.0	.	85.2	.	27.5	.	2,747.0	.	5.5	.	7.0	.	7.2	.	1.8	.	0.1	.	3.3	.	0.3
강원도	횡성군	2	66.7	1	33.3	211.5	152.7	37.5	45.0	4,450.0	4,724.0	5.5	7.0	9.5	9.0	5.0	9.0	1.5	2.0	0.0	0.0	0.0	0.0	0.0	0.0
강원도	영월군	0	.	0	.	.	.	.	.	.	.	.	.	.	.	.	.	.	.	.	.	.	.	.	.
강원도	평창군	0	0.0	2	100.0	.	143.0	.	40.0	.	6,000.0	.	6.0	.	9.5	.	6.5	.	1.0	.	0.0	.	5.0	.	0.0
강원도	정선군	0	0.0	4	100.0	.	83.5	.	27.8	.	5,025.0	.	7.0	.	10.8	.	10.3	.	1.0	.	0.0	.	3.8	.	0.0
강원도	태백시	0	0.0	11	100.0	.	121.0	.	32.5	.	4,472.7	.	6.2	.	8.3	.	6.5	.	0.7	.	0.0	.	1.7	.	0.1
강원도	동해시	3	25.0	9	75.0	171.3	214.9	52.7	50.6	5,785.0	2,116.7	5.7	6.1	9.0	9.7	9.0	8.3	5.0	1.3	0.0	0.1	0.0	1.2	0.0	0.1
강원도	삼척시	0	0.0	11	100.0	.	78.4	.	23.0	.	2,747.3	.	5.5	.	6.9	.	5.8	.	1.3	.	0.0	.	1.5	.	0.4
강원도	홍천군	0	0.0	3	100.0	.	50.9	.	25.3	.	2,833.3	.	5.7	.	7.0	.	8.3	.	1.0	.	0.0	.	1.3	.	0.0
강원도	인제군	0	0.0	2	100.0	.	115.5	.	18.0	.	5,000.0	.	5.0	.	9.0	.	6.0	.	0.5	.	0.0	.	2.5	.	0.0
강원도	양구군	0	0.0	1	100.0	.	66.0	.	40.0	.	2,500.0	.	4.0	.	6.0	.	9.0	.	2.0	.	1.0	.	4.0	.	0.0
강원도	철원군	0	0.0	0	100.0	.	.	.	.	.	.	.	.	.	.	.	.	.	.	.	.	.	.	.	.
충청북도	청원군	0	0.0	15	100.0	.	244.3	.	38.3	.	5,025.8	.	5.5	.	4.4	.	2.7	.	0.7	.	0.0	.	7.9	.	0.0
충청북도	청주시	1	3.1	31	97.9	221.3	231.0	32.0	34.4	9,400.0	3,642.5	6.0	5.7	9.0	8.9	9.0	7.9	0.0	1.4	0.0	0.2	4.0	5.5	0.0	0.1
충청북도	진천군	0	0.0	6	100.0	.	53.7	.	16.2	.	2,916.7	.	5.3	.	6.9	.	3.2	.	0.8	.	0.0	.	2.2	.	0.0
충청북도	괴산군	0	0.0	5	100.0	.	76.6	.	26.4	.	2,898.0	.	5.2	.	8.6	.	0.0	.	0.4	.	0.0	.	0.6	.	0.6
충청북도	음성군	0	0.0	9	100.0	.	80.2	.	32.0	.	2,171.1	.	5.3	.	8.1	.	5.2	.	0.2	.	0.0	.	0.1	.	0.0
충청북도	영동군	2	20.0	8	80.0	148.5	100.0	51.0	16.5	4,030.0	1,779.8	5.5	5.5	6.5	8.9	3.5	3.0	1.5	0.9	0.0	0.0	0.5	0.6	0.0	0.0

전국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및 운영활성화 방안 연구

지역	시군구	공립		사립		면적(m ²)		열람석(석)		장서(권)		운영일(일)		평일 운영시간(시간)		주말 운영시간(시간)		직원(명)		사서자격 직원		자원봉사자 (명)		사서자격 자원봉사자	
		빈도	%	빈도	%	공립	사립	공립	사립	공립	사립	공립	사립	공립	사립	공립	사립	공립	사립	공립	사립	공립	사립	공립	사립
충청북도	옥천군	0	0	0	0	.	.	.	.	.	.	.	.	.	.	.	.	.	.	.	.	.	.	.	.
충청북도	보은군	2	66.7	1	33.3	116.5	200.0	50.0	30.0	6,600.0	1,414.0	5.5	5.0	9.5	9.0	4.5	0.0	0.5	1.0	0.5	0.0	0.0	0.0	0.0	0.0
충청북도	충주시	3	23.1	10	76.9	77.2	74.2	34.3	21.4	1,233.3	1,965.0	4.7	5.8	5.0	7.1	7.3	6.4	0.0	0.8	0.0	0.1	0.3	3.0	0.3	0.2
충청북도	제천시	0	0.0	16	100.0	.	112.3	.	23.1	.	3,326.2	.	5.1	.	5.1	.	0.7	.	0.4	.	0.0	.	4.8	.	0.5
충청북도	단양군	0	0	0	0	.	.	.	.	.	.	.	.	.	.	.	.	.	.	.	.	.	.	.	.
충청북도	증편군	0	0.0	6	100.0	.	124.2	.	30.3	.	2,870.2	.	5.3	.	8.2	.	3.8	.	0.2	.	0.0	.	3.2	.	0.0
충청남도	금산군	2	66.7	1	33.3	75.0	45.0	9.0	18.0	4,500.0	1,000.0	6.0	7.0	11.0	9.0	9.0	6.0	1.0	1.0	0.0	0.0	5.0	0.0	0.0	0.0
충청남도	공주시	0	0	0	0	.	.	.	.	.	.	.	.	.	.	.	.	.	.	.	.	.	.	.	.
충청남도	논산시	0	0.0	7	100.0	.	101.3	.	22.9	.	4,297.0	.	5.0	.	6.0	.	3.7	.	0.9	.	0.1	.	2.9	.	0.0
충청남도	부여군	0	0.0	3	100.0	.	82.5	.	16.7	.	2,333.3	.	5.3	.	8.8	.	9.0	.	0.3	.	0.0	.	2.0	.	1.0
충청남도	서천군	0	0.0	3	100.0	.	175.0	.	23.3	.	2,666.7	.	6.3	.	6.7	.	2.3	.	2.0	.	0.0	.	2.0	.	0.0
충청남도	천안시	12	25.0	36	75.0	122.4	93.9	21.8	22.2	7,493.1	2,530.8	5.9	5.0	9.0	9.4	6.8	2.4	2.0	0.6	2.0	0.0	2.8	2.0	0.1	0.1
충청남도	아산시	0	0.0	42	100.0	.	88.5	.	28.0	.	2,985.5	.	4.6	.	5.9	.	6.2	.	1.0	.	0.2	.	2.3	.	0.3
충청남도	연기군	1	12.5	7	87.5	204.5	61.6	19.0	14.1	6,996.0	3,255.7	6.0	6.3	5.0	6.0	5.0	5.9	1.0	0.4	0.0	0.1	0.0	6.0	0.0	0.0
충청남도	예산군	0	0.0	2	100.0	.	72.1	.	25.0	.	3,150.0	.	3.5	.	4.0	.	3.0	.	1.0	.	0.0	.	0.5	.	0.0
충청남도	당진군	9	69.2	4	30.8	177.3	87.3	42.1	22.8	10,266.6	4,775.0	6.0	6.3	9.0	7.3	8.0	6.0	2.0	0.8	0.0	0.0	0.0	1.8	0.0	0.3
충청남도	청양군	0	0	0	0	.	.	.	.	.	.	.	.	.	.	.	.	.	.	.	.	.	.	.	.
충청남도	홍성군	1	33.3	2	66.7	226.8	91.0	8.0	24.5	4,527.0	2,407.0	6.0	4.5	11.0	6.8	9.0	6.5	1.0	0.5	0.0	0.0	4.0	5.0	0.0	0.0
충청남도	보령시	0	0.0	6	100.0	.	124.1	.	30.8	.	6,742.5	.	5.7	.	8.2	.	6.8	.	1.5	.	0.2	.	4.7	.	0.3
충청남도	서산시	1	7.0	14	93.0	82.0	91.2	20.0	34.7	5,326.0	3,899.1	6.0	4.6	9.0	5.9	9.0	4.1	1.0	1.1	0.0	0.1	0.0	4.6	0.0	0.2
충청남도	계룡시	0	0.0	2	100.0	.	90.8	.	27.5	.	1,850.0	.	7.0	.	8.0	.	6.5	.	0.0	.	0.0	.	3.0	.	0.0
충청남도	태안군	1	50.0	1	50.0	90.0	62.5	12.0	15.0	4,259.0	3,879.5	6.0	6.0	9.0	8.5	9.0	7.0	1.0	0.0	0.0	0.0	1.0	3.5	0.0	0.0

지역	시군구	공립		사립		면적(m)		열람석(석)		장서(권)		운영일(일)		평일 운영시간(시간)		주말 운영시간(시간)		직원(명)		사서자격 직원		자원봉사자 (명)		사서자격 자원봉사자	
		빈도	%	빈도	%	공립	사립	공립	사립	공립	사립	공립	사립	공립	사립	공립	사립	공립	사립	공립	사립	공립	사립	공립	사립
전라북도	전주시	9	13.4	56	86.6	246.4	94.3	29.8	28.2	4,985.4	4,728.5	4.6	5.7	6.6	6.8	2.9	3.2	0.7	1.1	0.0	0.1	3.3	3.3	0.1	0.2
전라북도	군산시	8	33.3	16	66.7	201.8	167.2	41.0	26.2	11,314.3	5,186.9	6.0	5.6	8.9	7.2	8.4	3.4	1.1	1.2	0.0	0.1	2.5	3.8	0.1	0.1
전라북도	익산시	4	12.9	27	87.1	142.0	106.5	41.5	28.0	5,136.8	3,841.9	5.3	6.6	8.5	5.1	4.8	4.3	1.0	0.4	0.3	0.0	10.0	4.5	0.0	0.1
전라북도	정읍시	2	22.2	7	77.8	114.5	57.5	30.0	11.9	4,502.5	2,186.9	6.0	4.6	12.0	6.4	12.0	1.9	2.0	1.1	0.0	0.1	0.0	0.7	0.0	0.0
전라북도	남원시	6	50.0	6	50.0	126.1	84.0	12.7	18.7	3,510.3	2,765.2	5.7	5.7	7.2	8.3	0.5	4.2	0.2	0.5	0.0	0.2	0.2	0.5	0.0	0.0
전라북도	김제시	2	18.2	9	81.8	200.0	107.9	40.0	24.7	11,750.0	5,385.4	6.0	5.6	8.0	7.3	1.5	5.7	1.0	2.0	0.0	0.3	5.5	5.7	0.0	0.2
전라북도	완주군	5	45.5	6	54.5	138.2	66.7	22.0	23.7	6,920.0	2,350.3	6.0	3.5	9.0	2.8	8.8	3.8	1.0	1.2	0.2	0.0	1.2	1.5	0.4	0.3
전라북도	진안군	3	50.0	3	50.0	181.5	143.7	29.7	21.3	5,624.0	7,631.3	6.0	6.7	5.7	8.0	5.0	3.7	1.7	1.3	0.0	1.0	8.3	8.7	0.0	0.0
전라북도	무주군	0	0.0	3	100.0	.	93.9	.	12.7	.	3,273.0	.	6.3	.	9.0	.	7.3	.	1.0	.	0.0	.	2.7	.	0.3
전라북도	부안군	2	50.0	2	50.0	78.5	115.0	19.0	32.5	2,650.0	2,250.0	5.0	7.0	9.0	7.5	4.5	7.5	1.0	1.0	0.0	0.0	0.0	2.0	0.0	0.0
전라북도	임실군	1	33.3	2	66.7	300.0	42.5	80.0	22.5	6,779.0	3,750.0	6.0	7.0	12.0	7.5	9.0	2.5	1.0	3.0	0.0	0.0	0.0	0.0	0.0	0.0
전라북도	순창군	1	100.0	0	0.0	132.4	.	24.0	.	5,371.0	.	5.0	.	9.0	.	8.0	.	2.0	.	0.0	.	0.0	.	0.0	.
전라북도	고창군	4	80.0	1	20.0	178.8	100.0	24.0	50.0	4,700.5	4,871.0	5.8	5.0	9.8	9.0	6.3	0.0	1.0	0.0	0.0	0.0	4.0	3.0	0.3	0.0
전라북도	장수군	0	0.0	8	100.0	.	101.9	.	21.3	.	2,048.0	.	5.0	.	8.8	.	9.0	.	0.9	.	0.0	.	0.0	.	0.0
전라남도	목포시	6	75.0	2	25.0	123.9	62.8	41.3	20.0	6,886.8	10,042.5	5.8	6.5	10.0	9.0	10.0	8.0	1.0	0.5	0.0	0.0	1.3	2.0	0.0	1.0
전라남도	여수시	1	4.5	21	95.5	199.0	96.9	40.0	35.0	5,000.0	3,419.0	6.0	5.9	10.0	7.1	8.0	0.9	1.0	1.0	0.0	0.1	2.0	2.3	0.0	0.2
전라남도	순천시	16	51.6	15	48.4	229.0	137.4	29.7	26.9	5,116.9	5,670.9	5.3	5.2	5.4	4.9	3.0	1.9	1.0	0.9	0.0	0.1	4.9	4.3	0.0	0.0
전라남도	나주시	1	25.0	3	75.0	99.0	182.7	12.0	30.0	11,025.0	10,000.0	5.0	5.7	9.0	8.0	0.0	3.7	0.0	0.3	0.0	0.0	1.0	2.0	0.0	0.0
전라남도	광양시	4	80.0	1	20.0	117.7	145.0	29.0	24.0	5,115.8	2,800.0	5.5	6.0	6.5	9.0	4.3	9.0	1.5	0.0	0.0	0.0	6.8	4.0	0.0	0.0
전라남도	담양군	1	20.0	4	80.0	50.0	204.2	40.0	68.0	1,500.0	5,458.8	7.0	6.8	7.0	4.5	7.0	4.5	3.0	0.3	0.0	0.0	1.0	0.3	0.0	0.0
전라남도	곡성군	1	14.3	6	85.7	290.0	112.1	60.0	19.5	3,000.0	5,283.3	6.0	6.3	9.0	7.2	9.0	6.0	0.0	1.2	0.0	0.0	2.0	0.0	0.0	0.0
전라남도	구례군	0	0.0	4	100.0	.	64.3	.	37.3	.	3,000.0	.	4.0	.	7.2	.	4.2	.	1.0	.	0.0	.	1.3	.	0.0

전국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및 운영활성화 방안 연구

지역	시군구	공립		사립		면적(㎡)		열람석(석)		장서(권)		운영일(일)		평일 운영시간(시간)		주말 운영시간(시간)		직원(명)		사서자격 직원		자원봉사자 (명)		사서자격 자원봉사자		
		빈도	%	빈도	%	공립	사립	공립	사립	공립	사립	공립	사립	공립	사립	공립	사립	공립	사립	공립	사립	공립	사립	공립	사립	
전라남도	고흥군	3	100.0	0	0.0	180.3	.	27.0	.	4,273.0	.	5.0	.	9.0	.	9.0	.	1.0	.	0.0	.	0.0	.	0.0	.	
전라남도	보성군	0	0.0	7	100.0	.	57.7	.	42.9	.	1,777.1	.	4.7	.	8.0	.	0.0	.	1.0	.	0.0	.	0.0	.	0.0	.
전라남도	화순군	0	0.0	17	100.0	.	53.6	.	13.1	.	2,255.3	.	5.2	.	5.5	.	4.2	.	0.2	.	0.2	.	0.4	.	0.2	.
전라남도	장흥군	5	83.3	1	16.7	161.6	70.0	29.6	8.0	2,132.0	2,000.0	4.6	6.0	8.2	6.0	3.6	6.0	0.6	0.0	0.0	0.0	0.6	1.0	0.0	0.0	
전라남도	강진군	0	0.0	7	100.0	.	149.9	.	17.9	.	2,411.6	.	6.7	.	7.8	.	8.4	.	0.4	.	0.0	.	1.3	.	0.0	.
전라남도	해남군	0	0.0	2	100.0	.	51.0	.	14.0	.	2,350.0	.	4.0	.	8.3	.	1.5	.	1.0	.	0.0	.	1.0	.	0.0	.
전라남도	영암군	0	0.0	2	100.0	.	150.0	.	45.0	.	3,500	.	6.0	.	9.0	.	8.0	.	1	.	0.0	.	5.0	.	0.5	.
전라남도	무안군	0	0.0	16	100.0	.	82.5	.	24.0	.	2,225.1	.	5.3	.	7.0	.	6.2	.	0.1	.	0.0	.	0.8	.	0.0	.
전라남도	함평군	2	100.0	0	0.0	131.1	.	17.5	.	4,214.5	.	6.0	.	10.5	.	9.5	.	0.0	.	0.0	.	1.0	.	0.0	.	
전라남도	영광군	2	100.0	0	0.0	140.1	.	12.0	.	7,807.0	.	5.5	.	9.0	.	4.5	.	2.5	.	0.5	.	4.0	.	0.0	.	
전라남도	장성군	0	0.0	4	100.0	.	56.3	.	23.8	.	2,750.0	.	3.8	.	6.5	.	5.0	.	1.3	.	0.0	.	0.8	.	0.0	.
전라남도	완도군	0	0.0	4	100.0	.	158.7	.	52.0	.	5,625.0	.	6.3	.	10.4	.	8.8	.	1.3	.	0.3	.	0.8	.	0.0	.
전라남도	진도군	0	0	0	0	.	.	.	.	.	.	.	.	.	.	.	.	.	.	.	.	.	.	.	.	
전라남도	신안군	3	100.0	0	0.0	205.3	.	15.7	.	3,080.7	.	5.3	.	9.0	.	9.0	.	1.0	.	0.0	.	0.0	.	0.0	.	
경상북도	포항시	19	100.0	0	0.0	244.4	.	29.7	.	5,287.3	.	5.4	.	9.2	.	5.5	.	1.1	.	0.0	.	6.1	.	0.0	.	
경상북도	경주시	1	50.0	1	50.0	265.0	148.0	36.0	50.0	3,891.0	4,880.0	5.0	6.0	9.0	8.0	9.0	7.0	2.0	3.0	1.0	1.0	10.0	2.0	0.0	2.0	
경상북도	김천시	8	72.7	3	27.3	154.1	82.3	31.4	33.3	7,622.3	3,433.3	5.0	6.3	5.0	6.7	5.0	4.3	1.0	0.3	0.0	0.3	18.8	2.7	0.1	0.0	
경상북도	안동시	0	0.0	7	100.0	.	100.0	.	26.4	.	6257.1	.	6.1	.	7.3	.	7.0	.	0.3	.	0.6	.	0.0	.	0.0	.
경상북도	구미시	0	0.0	25	100.0	.	99.1	.	40.6	.	4,587.4	.	3.4	.	2.8	.	0.6	.	0.6	.	0.0	.	15.5	.	0.6	.
경상북도	영주시	2	22.2	7	77.8	61.5	98.5	21.0	27.9	3,120.5	4,900.4	4.5	5.1	7.5	5.8	7.5	0.9	1.0	1.4	0.5	0.0	0.0	9.0	0.0	0.0	
경상북도	영천시	3	33.3	6	66.7	129.0	142.9	17.0	24.2	4,385.0	3,059.8	5.3	5.3	7.0	7.5	5.0	4.5	1.0	0.5	0.3	0.0	2.0	1.8	0.3	0.2	
경상북도	상주시	0	0	0	0	.	.	.	.	.	.	.	.	.	.	.	.	.	.	.	.	.	.	.	.	

지역	시군구	공립		사립		면적(㎡)		열람석(석)		장서(권)		운영일(일)		평일 운영시간(시간)		주말 운영시간(시간)		직원(명)		사서자격 직원		자원봉사자 (명)		사서자격 자원봉사자		
		빈도	%	빈도	%	공립	사립	공립	사립	공립	사립	공립	사립	공립	사립	공립	사립	공립	사립	공립	사립	공립	사립	공립	사립	
경상북도	문경시	0	0.0	4	100.0	.	137.6	.	42.0	.	4,177.5	.	5.8	.	8.3	.	3.5	.	1.0	.	0.0	.	0.8	.	0.0	.
경상북도	경산시	0	0.0	6	100.0	.	75.3	.	29.3	.	3,416.7	.	5.3	.	8.7	.	6.2	.	1.2	.	0.0	.	2.5	.	1.2	.
경상북도	군위군	2	66.7	1	33.3	46.0	50.0	13.5	8.0	1,477.0	1,158.0	5.0	5.0	8.0	9.0	4.5	0.0	1.0	0.0	0.0	0.0	0.0	0.0	0.0	0.0	
경상북도	의성군	0	0.0	4	100.0	.	70.3	.	25.0	.	6,000.0	.	6.0	.	4.5	.	0.0	.	0.5	.	0.0	.	5.0	.	0.0	.
경상북도	청송군	0	0.0	1	100.0	.	163.0	.	18.0	.	1,864.0	.	5.0	.	9.0	.	0.0	.	1.0	.	0.0	.	0.0	.	0.0	.
경상북도	영양군	1	100.0	0	0.0	139.0	.	24.0	.	1,693.0	.	5.0	.	9.0	.	9.0	.	1.0	.	0.0	.	0.0	.	0.0	.	
경상북도	영덕군	1	50.0	1	50.0	122.8	72.0	26.0	14.0	12,000.0	1,500.0	6.0	7.0	12.0	8.0	12.0	5.0	1.0	1.0	0.0	0.0	0.0	1.0	0.0	0.0	
경상북도	청도군	1	100.0	0	0.0	250.0	.	50.0	.	6,962.0	.	5.0	.	9.0	.	8.0	.	2.0	.	0.0	.	13.0	.	0.0	.	
경상북도	고령군	0	0.0	3	100.0	.	111.9	.	26.7	.	4,333.3	.	6.0	.	7.3	.	4.0	.	1.3	.	0.0	.	8.3	.	0.0	.
경상북도	성주군	0	0.0	9	100.0	.	42.7	.	12.9	.	1,594.4	.	3.4	.	5.7	.	0.0	.	0.1	.	0.0	.	0.9	.	0.0	.
경상북도	칠곡군	0	0.0	29	100.0	.	114.0	.	32.8	.	3,905.7	.	4.5	.	4.9	.	3.8	.	0.7	.	0.0	.	10.1	.	1.0	.
경상북도	예천군	0	0.0	2	100.0	.	125.0	.	58.0	.	5,200.0	.	6.5	.	7.5	.	3.0	.	1.0	.	0.0	.	0.5	.	0.0	.
경상북도	봉화군	0	0.0	6	100.0	.	62.2	.	35.0	.	2,626.0	.	3.5	.	8.0	.	2.7	.	0.0	.	0.0	.	11.2	.	0.0	.
경상북도	울진군	0	0.0	2	100.0	.	133.0	.	48.0	.	3,500.0	.	4.5	.	8.5	.	4.0	.	0.0	.	0.0	.	0.5	.	3.5	.
경상북도	울릉군	0	0	0	0	.	.	.	.	.	.	.	.	.	.	.	.	.	.	.	.	.	.	.	.	
경상남도	창원시	29	50.9	28	49.1	194.3	143.7	33.1	26.5	9,790.6	8,331.7	6.7	5.8	8.4	8.0	7.6	6.9	2.0	1.6	0.9	0.6	9.3	6.6	0.3	1.2	
경상남도	진주시	0	0.0	33	100.0	.	90.1	.	27.2	.	3,842.3	.	5.3	.	6.9	.	2.7	.	0.3	.	0.0	.	12.2	.	0.6	.
경상남도	통영시	0	0.0	13	100.0	.	54.1	.	19.5	.	4,000.0	.	5.3	.	8.0	.	2	.	0.4	.	0.0	.	6.5	.	1.8	.
경상남도	사천시	2	16.7	10	83.3	108.2	125.0	22.0	30.7	5,372.0	6,391.9	6.0	5.4	4.5	6.6	2.5	2.6	0.5	0.5	0.0	0.0	10.0	6.7	0.0	0.0	
경상남도	김해시	14	38.9	22	61.1	149.4	117.7	33.1	25.5	5,987.3	5,117.2	6.2	6.0	8.8	8.5	6.2	5.2	1.1	1.0	0.3	0.2	6.1	4.9	0.0	0.1	
경상남도	밀양시	0	0.0	5	100.0	.	106.0	.	24.6	.	2,612.6	.	4.6	.	7.0	.	3.6	.	0.4	.	0.0	.	1.6	.	0.0	.
경상남도	거제시	3	60.0	2	40.0	149.1	262.0	28.3	50.0	16,917.7	9,381.0	5.3	6.0	8.7	9.5	8.5	4.0	1.3	2.5	0.5	0.5	1.0	7.5	0.0	0.0	

전국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및 운영활성화 방안 연구

지역	시군구	공립		사립		면적(m ²)		열람석(석)		장서(권)		운영일(일)		평일 운영시간(시간)		주말 운영시간(시간)		직원(명)		사서자격 직원		자원봉사자 (명)		사서자격 자원봉사자	
		빈도	%	빈도	%	공립	사립	공립	사립	공립	사립	공립	사립	공립	사립	공립	사립	공립	사립	공립	사립	공립	사립	공립	사립
경상남도	양산시	1	2.7	36	97.3	55.0	88.1	25.0	33.1	1,800.0	4,586.2	5.0	5.3	4.0	5.5	0.0	2.0	0.0	1.1	0.0	0.1	5.0	7.3	0.0	0.2
경상남도	의령군	0	0.0	10	100.0	.	97.6	.	34.0	.	2,360.0	.	6.4	.	8.9	.	7.0	.	0.8	.	0.1	.	1.6	.	0.0
경상남도	함안군	0	0.0	5	100.0	.	100.0	.	26.2	.	4,580.0	.	5.3	.	4.3	.	6.0	.	1.8	.	0.3	.	5.0	.	3.0
경상남도	창녕군	1	11.1	8	88.9	100.0	149.7	60.0	39.9	7,000.0	2,123.1	6.0	5.0	8.0	8.4	6.5	7.0	1.0	0.1	1.0	0.1	0.0	2.5	0.0	0.0
경상남도	고성군	1	100.0	0	0.0	198.3	.	32.0	.	6,286.0	.	7.0	.	13.0	.	13.0	.	1.0	.	0.0	.	20.0	.	0.0	.
경상남도	남해군	0	0.0	6	100.0	.	61.4	.	11.6	.	2,993.3	.	5.3	.	4.6	.	4.3	.	0.0	.	0.0	.	2.6	.	0.0
경상남도	하동군	1	9.1	10	90.9	410.0	63.6	25.0	23.6	1,100.0	2,050.0	6.0	6.9	12.5	8.0	12.5	8.0	1.0	0.1	0.0	0.0	4.0	6.5	0.0	1.3
경상남도	산청군	1	14.3	5	85.7	110.0	567.4	30.0	12.6	7075.0	1,174.4	6.0	6.8	9.0	9.4	9.0	7.6	1.0	0.6	0.0	0.2	.	0.2	.	0.0
경상남도	함양군	0	0.0	8	100.0	.	33.0	.	13.8	.	1,625.0	.	6.1	.	9.0	.	9.0	.	0.0	.	0.0	.	0.0	.	0.0
경상남도	거창군	1	50.0	1	50.0	130.0	33.0	10.0	16.0	9,124.0	2,000.0	5.0	6.0	9.0	11.0	0.0	11.0	1.0	0.0	0.0	0.0	0.0	10.0	0.0	0.0
경상남도	합천군	0	0.0	9	100.0	.	69.8	.	21.8	.	4,370.2	.	5.8	.	8.6	.	6.5	.	1.3	.	0.0	.	5.6	.	0.1
제주도	제주시	5	9.3	49	90.7	134.3	156.7	24.0	31.6	5,555.8	4,511.6	5.0	5.7	8.0	7.6	5.8	8.2	2.3	1.0	0.3	0.1	13.8	4.2	0.5	0.5
제주도	서귀포시	2	6.1	31	93.9	79.5	164.5	27.0	31.9	2,510.0	2,858.6	6.5	5.7	9.8	5.7	10.8	4.5	0.5	2.1	0.0	0.0	19.0	4.4	0.0	0.0

- 빈도상 '0'으로 표시된 지역의 평균값은 모두 '.'으로 표시함.
- 지역별 평균값은 표준오차로 인해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공립 작은도서관의 전국 총합은 669, 사립 작은도서관의 전국 총합은 2,680임.

연구진

연구책임

윤소영 책임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공동연구자(가나다순)

곽철환 (강남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김세훈 (상명대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안인자 (동원대 이동문헌정보과 교수)

윤종옥 (경기대 융합정보통계학과 교수)

연구원

변지용 위촉연구조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신아름 위촉연구조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윤연정 위촉연구조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미령 연구보조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주연 연구보조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지애 연구보조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조사원

공상희 연구보조원

권순일 연구보조원

김하나 연구보조원

정용주 연구보조원

전국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및 운영활성화 방안 연구

발 행 일 2011년 8월
발 행 처 문화체육관광부
연구기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인 쇄 처 크리홍보(주)

© 2011 · 문화체육관광부

ISBN 978-89-7820-389-0 93020